

譯主

壯勇營大節目

卷二·三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해 제

곽낙현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번 역

김동근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나영훈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이남옥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이병유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교 정

김미연 |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김하임 |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기 획

유현희 | 수원학연구소 센터장

발행일 2023년 10월 20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Tel. 031-220-8057

편집디자인·제작

신원커뮤니케이션

원문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ISBN 979-11-6819-139-6

979-11-6819-018-4 (세트)

비매품/무료

94910



9 791168 191396

일
러
두
기

1. 본서는 『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 전체 3권 중 권2~3에 해당하는 27개 항목에 대한 장용영 운영 관련 절목 내용이다.
2. 본서의 번역과 표점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소장 『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 권2~3(K2-3369)을 저본으로 삼았다.
3. 원문에 나와 있는 간지 표시는 '서력(왕대, 간지)' 으로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4. 원문에 쓰인 한자 중 약자(略字)로 표기된 것은 표점본에 정자(正字)로 일관되게 표기하였다.
5. 표점본에 이두로 표현된 한자는 글자 크기를 줄여 표기하였다.
6. 원문의 세주는 표점본에 []로, 세주 내의 별도의 세주는 표점본에 < >로 단계를 나누어 표기하였다.
7. 원문 가운데 교감을 해야 하는 글자의 경우에는 각주로 설명하였다.

I. 『장용영대절목』 권2~3 해제

- 1. 들어가며 9
- 2. 『장용영대절목』 권2~3의 구성과 내용 11
- 3. 수원 화성과 장용영 외영 설치 17
- 4. 마치며 20

II. 『장용영대절목』 권2 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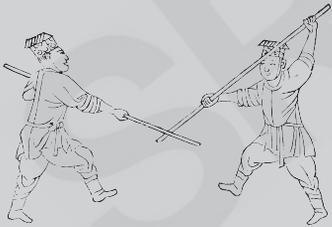
- 1. 경용(經用) 24
- 2. 지방(支放) 31
- 3. 곡부(穀簿) 42
- 4. 회외(會外) 44
- 5. 포평(褒貶) 52
- 6. 상견(相見) 61
- 7. 회좌(會坐) 63
- 8. 문첩(文牒) 65
- 9. 시상(施賞) 73
- 10. 회계(會計) 97
- 11. 번열(反關) 100
- 12. 주홀(周恤) 103
- 13. 연한(年限) 108
- 14. 잡식(雜式) 115



Ⅲ. 『장용영대절목』 권3 역주

외영(外營)	140
1. 승유수(陞留守)	140
2. 제치(制置)	148
3. 분공(分供)	156
4. 친군위(親軍衛)	161
5. 보군(步軍)	171
6. 유방(留防)	177
7. 별군관(別軍官)	185
8. 도시(都試)	192
배봉진(拜峯鎭)	195
고성진(古城鎭)	217
1. 장별도시(壯別都試)	237
2. 갈마창(葛麻倉)	240
노량진(露梁津)	246

Ⅳ. 『장용영대절목』 권2~3 원문 259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壯勇營大節目

卷二·三

해제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곽낙현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장용영대절목』 권2~3의 구성 및 장용영 외영 설치

1. 들어가며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正祖는 조선시대 전반에 흐르던 숭문천무崇文賤武의 사상을 문무겸전文武兼全으로 바꾸어 놓았고, 완전한 군권장악을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서 무예 진흥을 장려하였다. 특히 국왕의 친위군영인 장용영壯勇營 창설은 무예진흥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정조는 장용영 내영內營을 이현궁梨峴宮에 설치하고, 장용영 외영外營을 수원 화성華城에 창설하여 국왕 호위와 궁궐 숙위 등 중앙 5군영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임무를 부여하여 성장시켰다.

또한, 정조는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읍성과 방어용 산성을 합한 하나의 성곽도시로 화성華城을 건설했으며,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사도세자의 묘호를 현릉원顯隆園으로 격상시키고, 66회의 능행을 시행

하였다. 또한, 장용영 외영을 설치하여 현릉원을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정조는 이를 통해 왕권 및 종통 의식을 강화하고자 하였다.¹ 이를 통해 현재까지 정조의 무예진흥정책으로 수원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이어 수원시 산하 수원문화재단의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무예24기 상설공연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² 특히 『무예도보통지』의 무예를 공연하는 무예24기 정기공연은 화성행궁 신평루新豊樓 앞에서 시행하고 있다. 1790년(정조 14)에 편찬된 『무예도보통지』의 무예가 현재까지 무예 24기라는 명칭으로 전달되어 대중들에게 공연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장용영 외영 군사들이 수원 화성에서 시행한 장용영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과 규정을 『장용영대절목』 권2의 14개 항목과 권3의 13개 항목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1 곽낙현, 「도검무예의 현황과 과제」, 『동양고전연구』 86집, 2022, 247~248쪽.

2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swcf.or.kr) 참조.

2. 『장용영대절목』 권2~3의 구성과 내용

『장용영대절목』 권2와 권3의 27개 항목의 목차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 『장용영대절목』 권2·권3 장용영 운영 내용(27개 항목)

순번	수록(권)	항목명	순번	수록(권)	항목명
1	2	경용(經用)	1	3	승유수(陞留守)
2	2	지방(支放)	2	3	제치(制置)
3	2	곡부(穀簿)	3	3	분공(分供)
4	2	회의(會外)	4	3	친군위(親軍衛)
5	2	포괘(褒貶)	5	3	보군(步軍)
6	2	상견(相見)	6	3	유방(留防)
7	2	회좌(會坐)	7	3	별군관(別軍官)
8	2	문첩(文牒)	8	3	도시(都試)
9	2	시상(施賞)	9	3	배봉진(拜峯鎭)
10	2	회계(會計)	10	3	고성진(古城鎭)
11	2	반열(反閱)	11	3	장별도시(壯別都試)
12	2	주휰(周恤)	12	3	갈마창(葛麻倉)
13	2	연한(年限)	13	3	노량진(露梁津)
14	2	잡식(雜式)			

위의 <표 1>을 통해 제시된 권2의 14개 항목과 권3의 13개 항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2의 첫째, 경용經用은 매일 일정하게 사용하는 비용으로 현재의 경상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支放은 관아의 원역이나 병영의 군병에게 지급하는 급료이다. 향색餉色, 군수색軍需色, 향군색鄉軍色, 외탕고外帑庫, 관천고籠千庫, 별잉고別剩庫, 군기색軍器色 등에 매년 내려주어야 할 각종 곡식 및 물품에 대해 열거하였다.

셋째, 곡부穀簿는 곡식의 출납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각 도에서 받은 원곡 및 본영 소속의 각 진(배봉진, 고성진, 노량진)의 원곡 수량이 명시되어 있고, 환곡을 통해 이자를 취하도록 하였다.

넷째, 회외會外는 중앙 기관의 회계 장부에 기록한 것 이외에 별도로 마련한 물자이다. 다양한 명목의 각종 곡식과 전錢 외에도 납약臘藥, 역서曆書, 시유柴油 등 여러 물품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포폄褒貶은 매년 관료의 근무 성적을 평가한 후 포상이나 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매년 5월과 11월 30일 저녁에 종사관이 도제조에게 나아가 포폄하는 일자에 대해 품의한 뒤에 제조와 대장에게 와서 고하는 내용, 포폄하는 달의 1일에 대장이 포폄을 청하고 당상과 당하의 장관이 모여 개좌開坐 한다는 내용 등이 자세히 실려 있다.

여섯째, 상견相見은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 및 서로 만났을 때 행하는 의절에 대한 내용이다. 도제조·제조·대장이 새로 제수되었을 때 이하의 장관과 장교들이 알현하는 의절 및 별장·파총이 새로 제수되었을 때 이하의 군병들이 알현하는 의절, 선기장·초관이 새로 제수되었을 때 서패·기대총이 알현하는 의절 등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유고시有故時 체파되었을 때 알현하는 의절도 있다.

일곱째, 회좌會坐는 관원들이 한 곳에 모여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것이다. 함께 모였을 때의 복제 및 의절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덟째, 문첩文牒은 장용영에서 다른 관서와 주고받는 문서식에 대한 내용이다. 점목粘目, 계목啓目, 별단別單, 단자單子, 계본啓本, 초기草記, 전령傳令, 차첩差帖, 봉교 차첩奉敎差帖, 소단小單, 이문移文, 보첩鞞牒, 시책試冊 등의 문서를 주고받는 방식 및 문서식과 낙인의 형태와 찍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

아홉째, 시상施賞은 매년 4등等に 시행하는 시사방試射放을 통해 계급별·부서별로 등급을 나누어 포상을 시행하는 것이다. 각 종목별 기예 시험 및 장관과 장교, 보군, 마군, 선기대, 각초 군병 등을 대상으로 시사試射, 중일시사中日試射, 대비교大比較 등의 시험과 그에 대한 시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열째, 회계會計는 금전의 출납에 관한 내용이다. 전錢과 곡식의 각 종류를 막론하고 매일 거두어들인 것을 낱날이 등사하여 올렸으며, 해당하는 달 안에 수정修正하고 다음 달 6일에 제조에게 성첩成貼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열한째, 번열反閱은 전錢이나 곡식의 출납 문서를 조사하는 것으로, 관리의 교체가 이루어질 때 행해지는 일종의 해유解由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열둘째, 주홀周恤은 장용영과 관련하여 소속 장교와 군병, 원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방도에 관한 내용이다. 장용영의 사체는 다른 친위군영과는 다르기 때문에 장교와 군병, 원역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거두지 못하게 하였고, 이

들과 관련된 비용은 장용영의 돈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열셋째, 연한年限은 상례常例적으로 장용영에 지급하는 여러 물품과 관련하여 정해진 기한과 횟수를 명시한 내용이다.

열넷째, 잡식雜式은 여러 기타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진肆陣의 시행 일시와 방법, 봉족奉足 및 삭하朔下의 지급, 대비교大比較의 시행, 각종 급축給縮, 여러 원역의 요포料布, 출장 시 노자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권3의 첫째, 승유수陞留守는 수원부가 유수로 승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릉원을 수원부로 천원遷園하였는데, 종3품의 부사府使에게 맡기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한 현릉원을 높이고 예우하는 뜻이 아니었다. 또 군정軍政에 있어서는 장용영 외영이 설치되었고, 직무에 있어서는 행궁行宮 정리整理의 책임이 주어졌으니, 이것이 정조가 유수로 승격시킨 이유였다. 수원 유수로 승격된 이후 장용외사壯勇外使와 행궁정리사行宮整理使의 칭호를 겸하게 하였으며, 승격된 지위에 걸맞게 바뀌게 된 여러 행정 체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둘째, 제치制置는 외영 설치와 관련한 여러 규정이다. 유수留守는 양도兩都의 예대로 비변사 당상이 예겸例兼하게 하였다. 또한 유수의 임기는 양도의 예대로 2주년으로 하였으며, 판관判官은 경력經歷의 예대로 30개월을 정식으로 하였다. 이 밖에도 외영과 관련한 제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셋째, 분공分供에 대한 것이다. 수원부가 유수로 승격되었고 또 판관을 두었는데, 유수는 양도의 제도를 사용하고 판관은 7도道의 규례를 사용하게 되니 나누어 둘로 한다면 공무에 있어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양도의 예만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

원 유수의 경비 조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넷째, 친군위親軍衛에 대한 것이다. 수원 유수는 수원부 시절부터 훈련도감의 마보군 제도를 모방하여 평소에 외도감外都監으로 칭해졌었다. 장용외영으로 승격한 뒤에 군제를 개혁하였고, 마병의 호칭은 국초 영안도永安道の 마병을 친군위라고 칭한 예를 모방하여 친군위로 고쳤다. 이것은 임금이 내리는 특별한 은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친군위의 조직 및 규정에 대해 조목별로 상세하게 나열하였다.

다섯째, 보군步軍에 대한 것이다. 외영으로 승격된 뒤 유수의 전체 군병을 단속하여 군제를 정밀하게 만들었다. 기존 26초哨 가운데 13초는 건장한 양정良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13초는 강등하여 보군으로 삼아 호보戶保가 서로 돕는 구조로 재편성 하였다. 이외에 보군의 조직 및 규정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여섯째, 유방留防은 군대가 머무르면서 방비하는 것이다. 외영에 머무르면서 한편으로는 행궁을 호위하고 한편으로는 날마다 훈련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일곱째, 별군관別軍官에 대한 것이다. 기존의 별효사別驍士의 호칭을 별군관으로 고치고 무과 출신 가운데 사대부인 선전관천宣傳官薦 및 중인이나 서얼인 부장천部將薦·수문장천守門將薦과 장용영 군병 가운데 무과 출신인 자를 통틀어서 차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정원 200명에서 절반을 줄인 100명의 정예병으로 좌열과 우열을 편성하여 유수영留守營에 직속시켰다. 별군관과 관련한 각종 규정들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여덟째, 도시都試는 무관과 한량을 대상으로 무예와 강서를 시험 보는 무과의 한 유형으로, 외영의 군제를 개편하면서 새롭게 마련된 도

시의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아홉째, 배봉진拜峯鎭에 대한 것이다. 배봉진은 장용영 내영의 속진屬鎭 2곳 중 1곳이다. 사도세자의 원침이 있던 곳으로 수원으로 천원遷園을 하자 원래 있던 곳을 수호하기 위하여 진鎭을 설치한 것이다. 장용영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했기에 직접 추천하여 임명할 수 있는 자벽과自辟窠로 만들었으며, 별장은 별후사 파총別後司把總이라 하였다.

열째, 고성진古城鎭에 대한 것이다. 고성진은 1792년(정조 16)에 장용영의 속진으로 편입되어 장용영의 둔전으로써의 역할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열한째, 장별도시莊別都試에 대한 것이다. 고성진에서의 훈련에 참여하는 장별군관莊別軍官 200인에 대한 별도의 도시都試 설행 및 별무사別武士를 취재하는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열둘째, 갈마창葛麻倉에 대한 것이다. 1792년 10월에 평안병영 소속이었던 갈마창이 장용영으로 이속되었다. 갈마창은 1747년(영조 23)부터 회외곡會外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용영에서 평안도 소재 환곡을 출납하는 제도적 장치를 갈마창을 통해 마련할 수 있었다.

열셋째, 노량진露梁鎭에 대한 것이다. 노량진은 장용영 내영의 속진屬鎭 2곳 중 1곳이다. 매년 원행園幸을 할 때 어기御駕가 머무르는 곳에 해당하므로 장용영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곳 또한 장용영에서 추천하여 임명할 수 있는 자벽과로 만들었다. 배봉진에서 확보한 아병牙兵 2초哨와 노량진의 별아병別牙兵 1초를 묶어서 3초의 제도로 만들었다. 배봉진 별장은 별후사 파총이라 부르고 노량진 별장은 별아병장別牙兵將이라고 하였다.

3. 수원 화성과 장용영 외영 설치

정조는 영조대 중앙군영 중심의 도성방어체제를 도입하여 장용영 중심의 화성방어체제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도세자 사업을 관할하는 관청의 명령체계를 일원화시켰고, 정기적인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정조는 특히 진법은 『병학통兵學通』, 군사훈련은 『무예도보통지』의 무예를 표준교범으로 삼아 시행하였다. 또한 사도세자 관련 사업은 효자가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외정리소外整理所로 통제하였다.

장용영 외영은 주나라 군대의 미봉책彌縫策, 제나라 군대의 편오編伍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수원 화성이 관북의 땅과 더불어 풍패지향豐沛之鄉으로 선침을 수호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이다. 화성유수부華城留守府는 사도세자가 머물던 왕가의 고향이면서 중국의 능읍陵邑제도를 이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조는 사도세자에 대한 효자의 발현을 위해 혜경궁과 사도세자를 명분으로 삼아 화성부 관련 사업으로 화성 행차와 인화人和 정책을 추진하였다. 화성 행차는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임을 백성들에게 각인 시키는 일종의 정치 행위였다. 인화 정책은 모곡耗穀의 폐지와 보미保米의 변통 등 정리곡整理穀을 통해 전국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실패하자, 화성부 백성으로 한정하여 시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조는 화성유수부의 장용영 외영 설치 명분과 목적을 명확하게 밝혔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장용영 설치를 통해 궁부일체宮府一體의 의義를 바라보는 외연을 넓히려고 시도하였다. 도성의 이현궁梨峴宮에 있는 내영과 화성유수부華城留守府에 있는 외영으로 체계화하였다. 사도세자에 대한 효

심과 백성들을 위한 정사로 표현되는 궁부(宮府)와 정조와 장용영으로 하나 되는 일체(一體)를 강조하였다. 장용영의 군제 변화에 영향을 받은 중앙군영은 총용(憵廳)과 수어청(守禦廳)이었다. 화성유수부 중심으로 장용영 외영 군제가 재편되면서 방어체제의 구조적 변화는 경기지역 방어체제로 변화로 나타났다. 장용영 군제의 핵심은 정조가 머물고 있는 궁궐을 숙위하고 국왕의 행차를 호위하는 역할의 군사력 마련과 둔전 등을 통한 재정 확충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운영되었다. 이는 화성성역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기구이며, 정조의 큰 구상을 위한 밑그림이 바로 친위군영인 장용영이었다. 그러나 정조의 서거와 함께 장용영은 1802년(순조 2) 2월 혁파되었다.

장용영 외영의 군사훈련은 장교인 마군(馬軍), 군졸인 보군(步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용영 외영 군사들은 『무예도보통지』에 실려 있는 단병무예 24기를 중심으로 보급 전수되었다. 군영의 목표인 1인 1기의 도검무예 전문 군사 양성과 함께 군사들은 포상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대의 군병들의 목표가 일치되었다. 1793년(정조 17) 장용영 내영과 외영 운영으로 중앙군영으로 도약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장용영은 왕권강화를 위한 친위군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기적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정조는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66회 능행(陵幸)을 시행하며, 화성(華城)에서 주간훈련인 성조(城操)와 야간훈련인 야조(夜操)를 실시하였다.

장용영 외영 병종의 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색 표하군(各色標下軍)은 뇌자(牢子), 순령수(巡令手), 취고수(吹鼓手), 대기수(大旗手), 당보수(塘報手), 등룡군(燈籠軍), 장막군(帳幕軍), 아병(牙兵), 별장 표하군(別將標下軍), 사사파총 표하군(四司把憵標下軍), 선기장 표하군(善騎將標下軍)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의장대에 해당하는 병종이다. 선기대善騎隊와 경군京軍은 정조의 호위 순수병력으로 국왕호위와 수도방위를 담당하는 병력이다. 이외에 경기도의 향군鄉軍, 공장아병工匠牙兵, 치중복마군輜重卜馬軍, 고성아병古城牙兵, 배봉아병拜峯牙兵, 노량아병露梁牙兵 등은 장용영과 국왕의 위엄을 세우는 의장대의 역할을 담당하는 병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의 수원 화성에 장용영의 설치는 군사개혁을 통해 군권을 장악하여 왕권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책의 일환이었다. 장용영의 임무는 궁궐 숙위, 국왕 호위, 행행 시 배호 등이었다. 장용영 내영과 외영으로 이원화하였지만 명령체계는 일원화시켰으며, 사도세자에 대한 효의 발현으로 무武를 계승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장용영 외영의 설치는 군사력 마련과 재정 확충의 두 가지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특히, 장용영은 화성성역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기구이며 정조의 큰 구상을 위한 밑그림이었다.

장용영의 실체는 역사속의 기억으로 사라졌지만, 장용영 관련 문헌인 『장용영대절목』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고, 오늘날 장용영 외영에서 시행하였던 군사무예인 『무예도보통지』 도검무예는 수원 화성 행궁에서 전통무예의 무형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4. 마치며

『장용영대절목』 권2와 권3의 27개 주요 항목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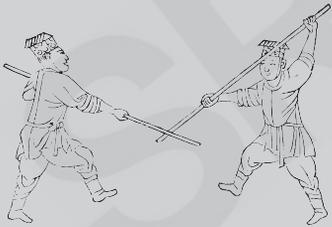
첫째, 『장용영대절목』 권2는 경용經用, 지방支放, 곡부穀簿, 회외會外, 포핍褒貶, 상견相見, 회좌會坐, 문첩文牒, 시상施賞, 회계會計, 번열反閱, 주홀周恤, 연한年限, 잡식雜式 등의 14개 항목, 권3의 외영外營은 승유수陞留守, 제치制置, 분공分供, 친군위親軍衛, 보군步軍, 유방留防, 별군관別軍官, 도시都試, 배봉진拜峯鎮, 고성진古城鎮, 장별도시壯別都試, 갈마창葛麻倉, 노량진露梁鎮 등의 13개 항목이다.

둘째, 정조의 무예진흥 정책은 재위 24년 동안 문무겸전文武兼全 사상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무예훈련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효孝의 발현 사업의 실현을 위해 무덤을 현릉원顯陵園으로 이장하고, 수원 화성을 건축, 장용영 외영 창설, 『무예도보통지』 편찬 등 왕권강화와 부국강병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정조의 군사무예는 오늘날 전통무예로 계승되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셋째, 장용영 외영의 설치는 군사개혁을 통해 군권을 장악하여 왕권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책의 일환이었다. 장용영의 임무는 궁궐 숙위, 국왕 호위, 행행 시 배호 등이었다. 장용영 내영과 외영으로 이원화하였지만 명령체계는 일원화시켰으며, 사도세자에 대한 효孝의 발현으로 무武를 계승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아울러 장용영 외영 설치의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은 군사력 마련과 재정 확충의 두 가지가 있었다. 특히, 장용영 외영은 화성성역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기구이며 정조의 큰 구상을 위한 밑그림이었다. 장용영 외영의 실제

는 역사속의 기억으로 사라졌지만, 장용영 관련 문헌인 『장용영대절목』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고, 오늘날 장용영 외영에서 시행하였던 군사무예인 『무예도보통지』 도검무예는 수원 화성 행궁에서 전통무예의 무형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壯勇營大節目

卷二 역주

1. 경용(經用)¹

경용

1. 향색(餉色)과 군수색(軍需色)은 연례적으로 전錢과 곡식을 거두지만 경비 중에서 가져다 쓰지 않고 내탕고(內帑庫)의 물건을 덜어낸다. 각종 곡식을 이무(移貿)²하여 곡식은 적고 백성이 많은 곳에는 환곡에 보태어서 모곡(耗穀)을 취하고, 곡식은 많고 백성이 적은 곳에는 품지(稟旨)한 다음 돈으로 바꾸어 민폐를 없앤다. 또 액례(掖隸) 이하의 경우 하는 일 없이 먹는 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히 헤아려 존감(存減)하고 그 요포(料布)를 군수(軍需)로 바꾸되, 경외(京外)를 구획하고 조목(別)로 나열하여 정식으로 삼은 다음, 각 창고의 경비로 쓸 밑천으로 삼는다. 향색이 1년에 거두는 것은 미 25,609섬[石], 태(太) 4,210섬, 전 80,678냥(兩), 목면 330동(同) 37필(疋), 포(布) 29동 25필이고, 군수색이 1년에 거두는 것은 미 252섬, 전 10,875냥, 목면 50동, 포 10동, 장지(壯紙)³ 500권(卷), 백지(白紙) 700권, 진묵(眞墨) 20동, 창병목(槍柄木)⁴ 255개(箇), 가시목(加時木)⁵ 120개, 화피(樺皮)⁶ 30동, 숫돌(礪石) 100괴(塊)로 정식대로 거둔다.

-
- 1 경용(經用) : 날마다 계속하여 일정하게 쓰는 비용으로, 경비(經費)라고도 한다.
2 이무(移貿) : 지방 관원들이 자기 고을 환곡의 시세가 오르면 내다 팔고, 값이 싼 다른 고을의 곡식을 사서 채워 넣어 시세차익을 취하던 일을 가리킨다.
3 장지(壯紙)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두껍고 단단하며 품질이 좋은 종이를 이른다.
4 창병목(槍柄木) : 창(槍)의 자루를 만들 감으로 쓰는 나무이다.
5 가시목(加時木) : 참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성 활엽 교목으로, 조총(鳥銃)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6 화피(樺皮) : 벚나무의 껍질이다. 활을 만드는 데나 그 밖에 여러 곳에 쓰인다.



1. 향군색鄉軍色은 향군 10초哨를 경기 고을에 설치하고, 우사右司 3초는 지평砥平·양근楊根·가평加平·파주坡州 등 4개 고을에 설치한다. 납저臘猪⁷를 위해 사냥을 할 때 구군驅軍 가운데 수어청의 아병에 소속된 자는 특별히 액수를 감하여 본래의 역을 바꾸어 정해주고, 그대로 둔전屯田을 설치한 다음 둔군屯軍으로 만든다. 그리고 매년 진상하는 납저는 특별히 관찰사에게 명하여 평으로 대신 봉진하도록 하여서 영구히 그 폐단을 혁파한다.[좌초左哨는 지평, 중초中哨 [양근 64명, 가평 63명], 후초後哨는 파주이다. 이 3초는 수어청의 아병 15초 가운데 매 초마다 각각 25명을 줄여서 이 3초를 만든 것이다.] 2초는 양주楊州와 고양高陽 두 고을의 도망가거나 사망한 군병 가운데서 중첩해서 역을 지는 자에 대해 특별히 액수를 감한 다음 바꾸어 정하고 급대給代해서 군충은 많고 백성은 적은 폐단을 제거한다.[우초右哨는 고양, 전초前哨는 양주이다. 이 2초는 고양에서 감액한 것 가운데 양정良丁 254명으로 이 2초를 만든 것이다.] 전사前司 5초에 대해서는 매년 원행園行할 때 경군을 배종하고 호위하는 노고를 특별히 진념軫念⁸하여, 수원부水原府 소속 중부中部 1사시를 특별히 감액하여서 수가하는 군병을 삼아 설치한다.[해당 부府의 속오군 3부部 6사 가운데 중부 1사의 보군으로 이 5초를 만든

7 납저(臘猪) : 납향제(臘享祭)에 쓰는 돼지고기를 말한다. 납향제는 납일(臘日)에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들을 여러 신에게 고하는 제사이다.

8 진념(軫念) : 임금이 신하나 백성의 사정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른다.

것이다.]

각 항목의 접제接濟하는 비용은 그 향군이 있는 각 고을의 둔세屯稅 및 어영청의 부部와 사司가 감액한 보포保布, 경기 감영에서 쌀을 사들이는 등의 조항을 별도로 구획한 다음 연례로 삼아서 가져다 쓸 밀천으로 삼게 한다. 본래의 명목으로 1년에 거두어야 할 미 2,019섬, 태太 129섬, 전錢 9,185냥, 목면 10동, 포 3동은 정식대로 거두어들인다.

1. 외탕고外帑庫에서는 매년 원행할 때 위로는 열읍列邑에서 어공御供하는 물품을 없애고, 아래로는 군교가 양식을 가지고 가는 폐단을 덜어 낸다. 두 고을[수원水原, 과천果川]에 전과 곡식을 옮겨 획급하여, 연례적으로 가져다 쓰는 밀천으로 삼는다. 본 창고에서 1년에 거두어야 할 미 497섬, 전 5,600냥, 목면 5동, 전죽箭竹 100부浮는 정식대로 거두어들인다.
1. 관천고筥千庫⁹에서는 원소의 화소火巢¹⁰ 내에 종자를 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개간하도록 허락하고, 원속園屬을 떼어준 다음 그대로 그 나머지를 붙여준다. 원관園官 및 지방관은 해마다 세를 거두어서 원소에 공급하고, 나무를 심고 흙을 보충하

9 관천고(筥千庫) : 현릉원(顯陵園)의 정자각(丁字閣)과 비각(碑閣), 담장 등의 석축(石築)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식목(植木)이나 보토(補土)에 들어가는 재원을 충당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창고이다. 정조가 원행(園幸)과 관련하여 정부의 경상 비용(經常費用)을 사용하지 않고 공계(貢契)의 피해를 줄여 주기 위해 별도의 재정 관리소로서 화성에 설치한 내용고(內用庫)의 하나이다.

10 화소(火巢) :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원(陵園)이나 묘(墓) 등의 해자(坎字) 밖에 있는 풀과 나무를 불살라 버린 구역을 말한다.



는 물력 및 원관의 공비公費는 원속에서 거두어들여 급대하는 비용으로 한다. 본 창고에서 1년에 거두어야 할 전 2,097냥은 정식대로 거두어들인다.

1. 별잉고別剩庫에서는 장관 이하의 군교와 원역에게 새로 들어가는 비용과 거두어들이는 명목을 모두 혁파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전의 것을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 열에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이른바 각 청廳의 공용조公用條와 마보군의 각 초哨·색色の 부비조浮費條이다. 혼수를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참작하여 마련하되, 급대할 물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의 창고를 설치한 다음 책응責應¹¹하도록 하여 더 거두어들이거나 별도로 징수하는 폐단이 없게 한다.

매년 영營에서 구관句管하여 각 도의 원곡元穀과 모조耗條¹²를 상정한 것 이외에 남는 것은 떼어서 귀속시킨다. 본 창고의 그 외에 부족한 수량은 영營의 전으로써 편리한 대로 이자를 취하여 비용에 보태게 한다. 본 창고에서 1년에 거두어야 할 전 20,727냥, 목면 2동은 정식대로 거두어들인다.

1. 군기색軍器色에서는 좌변과 우변, 무예청 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약환藥丸에 대해 비변사에서 연례적으로 복정卜定하였

11 책응(責應) : 물품을 내어주는 일을 말한다.

12 모조(耗條) : 모곡(耗穀)을 말한다. 환곡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곡식을 채우기 위해 빌려준 곡식의 10분의 1을 이자로 거두었다.

고, 사용하고 남은 전죽箭竹은 매년 옮겨 왔다. 부족한 수량 및 기타 활·화살·총·칼 등 각종 군기軍器는 본영에서 별도로 만들어 수용할 밀천으로 삼는데[일정하게 정해진 수량은 없다.] 본 명목으로 1년에 거두어야 할 화약火藥 107근斤, 연환鉛丸 9,000개箇, 전죽 100부浮는 정식대로 거두어들인다.

經用

- 一. 餉色·軍需色, 年例所捧錢·穀, 不以經費中取用, 捐出內帑. 移買各穀, 而穀少民多處, 添還取耗, 穀多民少處, 稟旨作錢, 以除民弊. 又於掖隸以下, 凡係冗食者, 酌量存減, 以其料布移作軍需爲白乎矣. 京外區劃, 條列定式, 以爲各庫經用之資. 餉色一年應捧, 米二萬五千六百九石, 太四千二百十石, 錢八萬六百七十八兩, 木三百三十同三十七疋, 布二十九同二十五疋, 軍需色一年應捧, 米二百五十二石, 錢一萬八百七十五兩, 木五十同, 布十同, 壯紙五百卷, 白紙七百卷, 眞墨二十同, 槍柄木二百五十五箇, 加時木一百二十箇, 樺皮三十同, 礪石一百塊, 依定式捧上爲白齊.
- 一. 鄉軍色段, 鄉軍十哨設於畿邑, 右司三哨, 則以砥·楊·加·坡等四邑. 臘猪行獵時, 驅軍之屬於守禦牙兵者, 特爲減額, 換定本役, 仍置屯田, 作爲屯軍. 每年進供臘猪, 特命道臣, 以雉代封, 永革其弊[左哨砥平, 中哨[楊根六十四名, 加平六十三名], 後哨坡州. 此三哨, 守禦牙兵十五哨中, 每哨各減二十五名, 作此三哨.]. 二哨



則以楊·高兩邑軍之逃故，疊役者，特爲減額，換定給代，以除軍多民少之弊[右哨高陽，前哨楊州。此二哨，以高陽減額中，良丁二百五十四名，作此二哨.]。前司五哨，則每年園行時，特軫京軍陪扈之勞，水原府屬中部一司，特爲減額，設置作爲隨駕之軍[該府東伍三部六司中，以中部一司步軍，作此五哨.]。各項接濟之需，以其鄉軍所在各邑屯稅，及御廳部·司減保，畿營買米等條，別爲區劃，俾作年例，取用之資。本色一年應奉，米二千十九石，太一百二十九石，錢九千一百八十五兩，木十同，布三同，依定式捧上爲白齊。

- 一. 外帑庫段，每年園行時，上以除列邑御供之需，下以除軍校齎糧之弊。移劃錢穀於兩邑[水原·果川]，以爲年例取用之資。本庫一年應捧，米四百九十七石，錢五千六百兩，木五同，箭竹一百浮，依定式捧上爲白齊。
- 一. 筦千庫段，園所火巢內，不合種植處，許民耕墾，而劃給園屬，仍以其餘付之。園官及地方官，歲收其稅，俾供園所，植木·補土物力，及園官公費，園屬收斂，給代之需。本庫一年應奉，錢二千九十七兩，依定式收稅爲白齊。
- 一. 別剩庫段，將官以下軍校·員役，新入浮費，收斂名色，一切革罷。其中不得不仍舊者，十存一二，所謂各廳公用條，馬步各哨·色浮費條，助婚需，更爲¹³ 酌磨鍊，而其所給代之需，別設一庫，使之責應，俾

13 본래 이 글자의 정자(正字)는 '參' 이지만 중국의 『주례(周禮)』나 조선의 『경국대전(經國大典)』 등에서는 '參' 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관직명 등에 사용하였다. 이 책에서는 '參' 을 대표자로 보고 사용하였다.

除加斂·別徵之弊爲白乎矣. 每年營句管, 各道元穀·耗條之詳定外, 餘剩劃屬. 本庫其外不足之數, 以營錢從便取殖, 以爲補用之地. 本庫一年應捧, 錢二萬七百二十七兩, 木二同, 依定式捧上爲白齊.

- 一. 軍器色段, 左右番·武藝廳中, 日用餘藥丸, 備局年例卜定, 用餘箭竹, 每年移來. 不足之數, 及其他弓·箭·銃·刀等, 各樣軍器, 自本營, 別爲造備, 以爲需用之資[多寡無定數], 本色一年應捧, 火藥一百七斤, 鉛丸九千箇, 箭竹一百浮, 依定式捧上爲白齊.



2. 지방(支放)¹⁴

지방

1. 각 창고에 내려주는 것이 매우 많아 조목별로 열거하기가 어려우니, 단지 매년 내려주어야 할 것만 분류한 다음 개록開錄하여 정식으로 삼아 준행한다.

1. 향색에 1년에 내려주어야 할 미는 21,537섬[石] 4말[斗][장관의 요
료 200섬 ○장교의 요 2,230섬 ○각 청廳의 노奴에 대한 요 316섬
12말 ○원역의 요 965섬 3말 ○팔색군八色軍의 요 4,214섬 6말 ○
각 색의 군병各色軍의 요 1,490섬 6말 ○마보군의 요 8,035섬 3말
○가료加料¹⁵ 285섬 9말 ○장용위壯勇衛의 호군護軍과 사과司果의 가
급조加給條 4섬 12말 ○기예 교졸技藝校卒의 점심미點心米 15섬 8말
○순뢰巡牢¹⁶가 별영別營에서 요를 받는 것에 대한 가승조加升條¹⁷ 33섬
○예하조例下條 85섬 ○세찬조歲饌條 49섬 10말 ○겸료兼料 2,265섬
9말 ○방료放料할 때 축조縮條 1,346섬 1말]이다.

태(太)는 4,184섬 9말[장관의 마태馬太 128섬 12말 ○장교의 마

14 지방(支放) : 관아의 일꾼이나 병영(兵營)의 군병에게 능료(廩料)를 지급하는 일, 또는 그 능료를 말한다.

15 가료(加料) : 조선 후기 직업군인 가운데 특수 임무를 겸한 사람에게 본봉 이외에 더 지급하던 급여를 말한다.

16 순뢰(巡牢) : 순령수(巡令手)와 군뢰(軍牢)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순령수는 대장의 호위와 전령을 담당하며 순시기(巡視旗)·영기(令旗)를 받들었고, 군뢰는 군영 안에서 죄인을 구금하거나 형벌을 집행하는 일을 담당했다.

17 가승조(加升條) : 전세 미태(田稅米太)를 거둘 때 잡비조(雜費條)로 더 거두는 명목을 말한다. 1섬 당 가승으로 3되, 곡상(斛上)으로 3되씩을 더 거둔다.

태 1,267섬 3말 ○마군의 마태 2,440섬 12말 ○입대마立待馬의 마태 57섬 9말 ○장용위의 호군과 사과의 가급조 7섬 3말 ○노태爐太 13섬 ○각 창고로 옮겨 보내는 태 270섬이다.

전錢은 40,915냥兩[각 청의 삭하朔下¹⁸ 552냥 ○원역의 삭하 1,632냥 ○각 초哨와 색色의 서패書牌의 삭하 1,632냥 ○각 청 군사 삭하 828냥 ○각 처의 시유채柴油債 669냥 ○각 처의 거촉가炬燭價 124냥 ○각 처의 등유채燈油債 36냥 ○각 처의 시가柴價 128냥 ○각 처 입대마의 초가草價 144냥 ○고사告祀를 지내기 위한 36냥 ○장교의 옷감으로 목면 대신 2,952냥 ○장교의 마초가馬草價 816냥 ○필가筆價와 두건채頭巾債 324냥 ○원역의 옷감으로 목면 대신 204냥 ○팔색군의 봉족奉足 목면 대신 3,480냥 ○각 색의 군병의 봉족 목면 대신 1,164냥 ○마보군의 봉족 목면 대신 5,760냥 ○마군의 초가로 목면 대신 2,526냥 ○미태米太와 목포木布를 해마다 사들이는 값 4,809냥 ○진상하는 납약臘藥¹⁹과 역서曆書의 값 464냥 ○각 청의 군복을 위한 709냥 ○동탄가冬炭價 20냥 ○행행할 때 장교의 군복을 위한 734냥 ○원역의 군복을 위한 238냥 ○포핍褒貶²⁰의 예

18 삭하(朔下) : 하급 벼슬아치나 원역(員役)들에게 다달이 주는 급료를 이른다.

19 납약(臘藥) : 해마다 납일(臘日)에 임금이 가까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던 환약(丸藥)으로, 내의원에서 만든 소합원(蘇合元), 안신원(安神元), 청심원(淸心元) 같은 것이다.

20 포핍(褒貶) : 매년 6월과 12월에 벼슬아치들의 근무 성적을 매기는 일이다. 경관(京官)은 해당 관아의 제조와 당사관이, 지방관은 관찰사와 절도사가 상·중·하의 세 단계로 고과(考課)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면 이를 도목 정사(都目政事) 때 반영하였다.



하조 414냥 ○세찬조歲饌條 214냥 ○봉부동조封不動條 10,000냥 ○고직庫直의 백일조百一條²¹ 306냥]이다.

목면은 359동同 9필匹[각 청의 삭하 1동 34필 ○원역의 삭하 19동 34필 ○각 청의 옷감 3동 26필 ○원역의 옷감 8동 8필 ○팔색 표하군의 봉족 69동 30필 ○각 색의 군병의 봉족 23동 14필 ○마보군의 봉족 115동 10필 ○사후포伺候布 1동 16필 ○가포加布 48필 ○행행할 때의 군복채軍服債 39필 ○상격조賞格條 15동 ○봉부동조 100동]이다.

포는 27동 41필[각 청의 발매조發賣條 14동 28필 ○치중복마輜重卜馬의 언치彦赤를 위한 13필 ○이송조移送條 3동 ○상격조 10동]이다. 매년 정식대로 값을 지급한다.

1. 군수색에 1년에 내려주어야 할 미는 74섬 3말[감관 이하 원역의 요료 66섬 6말 ○세찬조歲饌條 3섬 3말 ○방료放料할 때 축조縮條 4섬 9말]이다. 전錢은 2,107냥[감관 이하 원역의 삭하朔下 456냥 ○필채筆債와 두건채頭巾債 72냥 ○행행할 때 군복을 위한 6냥 ○시유채柴油債 21냥 ○황촉가黃燭價 1,000냥 ○무포가貿布價 500냥 ○세찬조 31냥 ○고직의 백일조百一條 21냥]이다.

목면은 2동 1필[원역의 삭하 48필 ○감관 이하 원역의 옷감 1동 ○행행할 때 군복을 위한 3필]이다.

21 백일조(百一條) : 조세를 징수할 때에 잡비의 명목으로 1냥에 2문씩을 덧붙여 받는 것을 말한다.

장지(壯紙)는 270권[감관청(監官廳) 48권 ○향색 120권 ○군색 96권 ○군기색 6권]이다.

백지(白紙)는 606권[감관청 72권 ○향색 228권 ○군색 138권 ○조보 서리(朝報書吏) 72권 ○대령 서리(待令書吏) 36권 ○야소(冶所) 36권 ○군기색 12권 ○약방 12권]이다.

참먹(眞墨)은 12동[감관청 3동 6정(丁) ○향색 4동 8정 ○군색 3동 6정]이다.

흑삼승(黑三升)²²은 80필[행행할 때 원역의 군복을 위한 48필 ○서패의 군복을 위한 32필]이다. 매년 정식으로 값을 지급한다.

1. 향군색에게 1년에 내려주어야 할 미는 1,736섬 8말[장관의 요리는 196섬 12말 ○노(奴)의 요는 18섬 ○원역의 요는 30섬 6말 ○표하군의 요는 705섬 9말 ○사후군(伺候軍)의 요는 34섬 12말 ○가료(加料)는 31섬 3말 ○향군이 상변하는 6개월 간의 요는 457섬 3말 ○역인(役人)의 점심미 2섬 6말 ○세찬조 7섬 9말 ○겸료조(兼料條) 144섬 ○방료(放料)할 때 축조(縮條) 108섬 8말]이다.

태(太)는 170섬 3말[장관의 마태(馬太)는 139섬 3말 ○훈태(燠太)²³는 31섬]이다.

전(錢)은 3,200냥[장관 이하 원역의 삭(沙)하 528냥 ○거가(炬價) 36냥 ○필채와 두견채 24냥 ○표하군의 봉족 및 북마군의 마초가(馬草價)로

22 흑삼승(黑三升) : 흑삼승포(黑三升布)를 말하며, 예순 울로 짠 굵은 베를 가리킨다.

23 훈태(燠太) : 메주를 쑤는 데 쓰는 콩을 말한다.



목면 대신 558냥 ○상변하는 3초哨 향군의 자보資保²⁴[돌아가며 번을 선다] 1,395냥 ○거느리는 색리의 지서채紙書債 9냥 ○인석茵席 및 시유채柴油債 154냥 ○회량回糧²⁵하는 데에 드는 미米 대신 140냥 ○훈조爇造²⁶하는 데에 드는 공임 18냥 ○행행할 때 원역의 군복을 위한 6냥 ○태太와 포로 맞바꾸는 대신 290냥 ○원역의 세찬조 11냥 ○고직의 백일조 31냥]이다.

목면은 14동 34필[원역의 삭하 48필 ○장관 이하의 옷감 34필 ○행행할 때 원역의 군복을 위한 1필 ○봉족 및 옷감 11동 20필 ○거느려 호송하는 감색의 상격 12필 ○하변하는 향군의 시사방射放과 관련한 상격 45필 ○회량하는 데에 드는 목면 24필]이다.

포는 3동 6필[거느리는 감색의 상격 6필 ○하변하는 향군의 시사방과 관련한 상격 3동]이다. 매년 정식으로 값을 지급한다.

1. 외탕고外帑庫에서 1년에 내려주어야 할 미는 207섬 8말[원행園行할 때 수가隨駕하는 장교와 군졸의 군량 90섬 ○전마戰馬와 복마卜馬의 마태馬太 대신 15섬 ○원역의 접제조接濟條 47섬 12말 ○감색료조監色料條 49섬 9말 ○방료放料할 때 축조縮條 5섬 2말]이다.

전錢은 1,534냥[원행할 때 지공조支供條 1,200냥 ○수가하는 장교와 군졸의 궤죽조饋粥條 300냥 ○진두陣頭에서 대령하는 향군의 시

24 자보(資保) : 보포(保布)를 내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정(軍丁)을 돕는 보인(保人)을 가리킨다.

25 회량(回糧) : 목적지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6 훈조(爇造) : 콩을 삶아서 찜는 다음 덩이를 지어서 말리는 것, 즉 메주를 만드는 일을 말한다.

초紫草와 마초馬草의 값 1냥 6전錢 ○시유채柴油債 17냥 4전 ○고직의 백일조百一條 15냥]이다. 매년 정식으로 값을 지급한다.

1. 관천고筥千庫에 1년에 내려주어야 할 전錢은 154냥[봉안각奉安閣의 온돌에 대한 점화목點火木의 값 14냥 4전 ○겸서원兼書員의 지필채紙筆債 4냥 8전 ○위장衛將 직소直所의 인석茵席 및 시유채柴油債 25냥 ○제향祭享을 올릴 때 번관番官 이하 원역의 지공조支供條 59냥 3전 ○재실齋室에 포진鋪陳하는 값 10냥 ○산직山直의 고가雇價 및 배석拜席의 값 39냥 ○고직의 백일조 1냥 5전]이다. 매년 정식으로 값을 지급한다.

1. 별잉고別剩庫에 1년에 내려주어야 할 전錢은 13,574냥[각 청廳의 공용조公用條 1,700냥 ○서패의 방역조防役條 122냥 7전 ○팔색군의 방역조 573냥 ○각 색의 군병의 방역조 120냥 ○마보군의 방역조 457냥 ○외영에서 눈을 치우고 풀을 제거하는 값 50냥 ○지구관청知穀官廳의 시유채 21냥 6전 ○원역의 배삭조排朔條 7,827냥 ○좌초 선기대左哨善騎隊의 요기饒氣를 위한 120냥 ○중초中哨와 우초 선기대右哨善騎隊의 요기를 위한 72냥 ○복마의 마철가馬鐵價 85냥 ○복마의 언치[彦赤]로 포 대신 87냥 5전 ○행행할 때 장용위의 장설조掌設條 180냥 ○취고수吹鼓手의 마세조馬貰條 500냥 ○갑마甲馬의 견부세牽夫貰 20냥 ○원역의 마세조 176냥 ○치중복마輕重卜馬의 고가 37냥 ○시초와 마초를 담당하는 무사의 마세馬貰 7냥 6전 ○마보군 각 초哨 색군色軍의 부비조浮費條 404냥 ○장관 이하 원역의 양찬가糧饌價 153냥 6전 ○예하조例下條 860냥]이다. 매년 정식으로



값을 지급한다.

1. 군기색에 1년에 내려주어야 할 화약火藥은 826근 9냥[장용위의 중일시사中日試射 때 22근 8냥, 출번군의 사회射會 때 27근 1냥 5전 ○5초哨에서 합동으로 조련을 할 때 506근 4냥, 사습私習할 때 49근 3냥 5전, 중일시사 때 56근 4냥 ○향군의 중일시사 때 84근 6냥 ○사냥할 때 42근 ○아병牙兵의 사습 때 34근 10냥 ○연말의 방포放砲로 4근 5냥]이다.

연환鉛丸은 16,254개[장용위의 중일시사 때 1,440개, 출번군의 사회 때 1,734개 ○5초哨의 사습 때 2,100개, 중일시사 때 2,400개 ○향군의 중일시사 때 3,600개 ○아병의 사습 때 2,280개 ○사냥할 때 2,700개]이다. 매년 정식으로 값을 지급한다.

支放

- 一. 各庫所下, 極其浩多, 難以條列, 只每年應下者, 分類開錄, 以爲定式遵行之地爲白齊.
- 一. 餉色一年應下, 米二萬一千五百三十七石四斗[將官料二百石 ○將校料二千二百三十石 ○各廳奴料三百十六石十二斗 ○員役料九百六十五石三斗 ○八色軍料四千二百十四石六斗 ○各色軍料一千四百九十石六斗 ○馬步軍料八千三十五石三斗 ○加料二百八十五石九斗 ○壯勇衛護軍·司果加給條四石十二斗 ○技藝校卒點心米十五石八斗 ○巡牢別營受料加升條三十三石 ○例下

條八十五石 ○歲饌條四十九石十斗 ○兼料二千二百六十五石九斗 ○放料時縮條一千三百四十六石一斗]. 太四千一百八十四石九斗 [將官馬太一百二十八石十二斗 ○將校馬太一千二百六十七石三斗 ○馬軍馬太二千四百四十石十二斗 ○立待馬馬太五十七石九斗 ○壯勇衛護軍·司果加給條七石三斗 ○爐太十三石 ○各庫移送太二百七十石]. 錢四萬九百十五兩 [各廳朔下五百五十二兩 ○員役朔下一千六百三十二兩 ○各哨·色書牌朔下一千六百三十二兩 ○各廳軍士朔下八百二十八兩 ○各處柴油債六百六十九兩 ○各處炬燭價一百二十四兩 ○各處燈油債三十六兩 ○各處柴價一百二十八兩 ○各處立待馬草價一百四十四兩 ○告祀次三十六兩 ○將校衣資木代二千九百五十二兩 ○將校馬草價八百十六兩 ○筆價·頭巾債三百二十四兩 ○員役衣資木代二百四兩 ○八色軍奉足木代三千四百八十兩 ○各色軍奉足木代一千一百六十四兩 ○馬步軍奉足木代五千七百六十兩 ○馬軍草價木代二千五百二十六兩 ○米太·木布年例貿取價四千八百九兩 ○進上臘藥·曆書價四百六十四兩 ○各廳軍服次七百九兩 ○冬炭價二十兩 ○行幸時將校軍服次七百三十四兩 ○員役軍服次二百三十八兩 ○褒貶例下條四百十四兩 ○歲饌條二百十四兩 ○封不動條一萬兩 ○庫直百一條三百六兩]. 木三百五十九同九疋 [各廳朔下一同三十四疋 ○員役朔下十九同三十四疋 ○各廳衣資三同二十六疋 ○員役衣資八同八疋 ○八色標下軍奉足六十九同三十疋 ○各色軍奉足二十三同十四疋 ○馬步軍奉足一百十五同十疋 ○伺候布一同十六疋 ○加布四十八疋 ○



行幸時軍服債三十九疋 ○賞格條十五同 ○封不動條一百同], 布二十七同四十一疋[各廳發賣條十四同二十八疋 ○輜重卜馬彥赤次十三疋 ○移送條三同 ○賞格條十同], 每年依定式上下爲白齊.

- 一. 軍需色一年應下, 米七十四石三斗[監官以下員役料六十六石六斗 ○歲饌條三石三斗 ○放料時縮條四石九斗], 錢二千一百七兩[監官以下員役朔下四百五十六兩 ○筆債·頭巾債七十二兩 ○行幸時軍服次六兩 ○柴油債二十一兩 ○黃燭價一千兩 ○貿布價五百兩 ○歲饌條三十一兩 ○庫直百一條二十一兩], 木二同一疋[員役朔下四十八疋 ○監官以下員役衣資一同 ○行幸時軍服次三疋], 壯紙二百七十卷[監官廳四十八卷 ○餉色一百二十卷 ○軍色九十六卷 ○軍器色六卷], 白紙六百六卷[監官廳七十二卷 ○餉色二百二十八卷 ○軍色一百三十八卷 ○朝報書吏七十二卷 ○待令書吏三十六卷 ○治所三十六卷 ○軍器色十二卷 ○藥房十二卷], 眞墨十二同[監官廳三同六丁 ○餉色四同八丁 ○軍色三同六丁], 黑三升八十疋[行幸時員役軍服次四十八疋 ○書牌軍服次三十二疋], 每年依定式上下爲白齊.

- 一. 鄉軍色一年應下, 米一千七百三十六石八斗[將官料一百九十六石十二斗 ○奴料十八石 ○員役料三十石六斗 ○標下軍料七百五十九斗 ○伺候軍料三十四石十二斗 ○加料三十一石三斗 ○鄉軍上番六朔料四百五十七石三斗 ○役人點心米二石六斗 ○歲饌條七石九斗 ○兼料條一百四十四石 ○放料時縮條一百八石八斗], 太一百七十石三斗[將官馬太一百三十九石三斗 ○燻太三十一石], 錢三千二百

兩[將官以下員役朔下五百二十八兩 ○炬價三十六兩 ○筆債·頭巾債二十四兩 ○標下軍奉足及卜馬軍馬草價，木代五百五十八兩 ○上番三哨鄉軍資保[回番]，一千三百九十五兩 ○領付色吏紙書債九兩 ○茵席及柴油債一百五十四兩 ○回糧米代一百四十兩 ○燻造工錢十八兩 ○行幸時員役軍服次六兩 ○太·布換貿代二百九十兩 ○員役歲饌條十一兩 ○庫直百一條三十一兩]，木十四同三十四疋[員役朔下四十八疋 ○將官以下衣資三十四疋 ○行幸時員役軍服次一疋 ○奉足及衣資十一同二十疋 ○領付護送監色賞格十二疋 ○下番鄉軍試射放賞格四十五疋 ○回糧木二十四疋]，布三同六疋[領付監色賞格六疋 ○下番鄉軍試射放賞格三同]，每年依定式上下爲白齊。

一. 外帑庫一年應下，米二百七石八斗[園行時隨駕將卒軍糧九十石 ○戰卜馬太代十五石 ○員役接濟條四十七石十二斗 ○監色料條四十九石九斗 ○放料時縮條五石二斗]，錢一千五百三十四兩[園行時支供條一千二百兩 ○隨駕將卒饋粥條三百兩 ○陣頭待令鄉軍柴馬草價一兩六錢 ○柴油債十七兩四錢 ○庫直百一條十五兩]，每年依定式上下爲白齊。

一. 筓千庫一年應下，錢一百五十四兩[奉安閣溫埃點火木價十四兩四錢 ○兼書員紙筆債四兩八錢 ○衛將直所茵席及柴油債二十五兩 ○祭享時番官以下員役支供條五十九兩三錢 ○齋室鋪陳價十兩 ○山直雇價及拜席價三十九兩 ○庫直百一條一兩五錢]，每年依定式上下爲白齊。

一. 別剩庫一年應下，錢一萬三千五百七十四兩[各廳公用條一千七百



兩 ○書牌防役條一百二十二兩七錢 ○八色軍防役條五百七十三兩
○各色軍防役條一百二十兩 ○馬步防役條四百五十七兩 ○外營掃
雪·除草價五十兩 ○知穀官廳柴油債二十一兩六錢 ○員役排朔條
七千八百二十七兩 ○左哨善騎隊饒氣次一百二十兩 ○中右哨善騎
隊饒氣次七十二兩 ○卜馬馬鐵價八十五兩 ○卜馬彥赤布代八十七
兩五錢 ○行幸時壯勇衛掌設條一百八十兩 ○吹鼓手馬貫條五百
兩 ○甲馬牽夫貫二十兩 ○員役馬貫條一百七十六兩 ○輜重卜馬雇
價三十七兩 ○柴馬草次知武士馬貫七兩六錢 ○馬步各哨·色軍浮
費條四百四兩 ○將官以下員役糧饌價一百五十三兩六錢 ○例下條
八百六十兩]. 每年依定式上下爲白齊.

- 一. 軍器色一年應下, 火藥八百二十六斤九兩[將勇衛中日時二十二斤八
兩, 出番射會時二十七斤一兩五錢 ○五哨合操時五百六斤四兩, 私
習時四十九斤三兩五錢, 中日時五十六斤四兩 ○鄉軍中日時八十四
斤六兩 ○行獵時四十二斤 ○牙兵私習時三十四斤十兩 ○年終放砲
四斤五兩]. 鉛丸一萬六千二百五十四箇[壯勇衛中日時一千四百四十
箇, 出番射會時一千七百三十四箇 ○五哨私習時二千一百箇, 中日時
二千四百箇 ○鄉軍中日時三千六百箇 ○牙兵私習時二千二百八十
箇 ○行獵時二千七百箇]. 每年依定式上下爲白齊.

3. 곡부(穀簿)²⁷

곡부

1. 각 도의 원곡元穀은 394,408섬 6말 1되[卍][관서關西는 207,658섬 6말 1되 ○영남嶺南은 66,000섬 ○호서湖西는 19,000섬 ○호남湖南은 62,000섬 ○해서海西는 18,750섬 ○관동關東은 7,000섬 ○경기京畿는 4,000섬]로, 매년 정식대로 취모取耗²⁸하도록 한다. 호남의 7,000섬과 호서의 500섬은 선혜청에서 논보論報한 것으로 인하여 저치미儲置米를 바꾸어 기록한 다음 본래의 명목으로 전선全船에 옮겨 떼어 준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전錢으로 바꾸고 고을을 비교한 다음 곡식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때에 따라 비싸지게 되는 폐단이 없게 한다.
1. 각 진鎭의 원곡은 8,948섬[배봉진拜峯鎭은 4,700섬 ○고성진古城鎭은 3,228섬 ○노량진露梁鎭은 1,020섬]으로, 그대로 각 해당 진에 두고 정식대로 조적糶糶²⁹하여 취모한다.

27 곡부(穀簿) : 곡식의 출납을 기록하는 장부를 이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장부상의 곡식 자체를 뜻하는 듯하다.

28 취모(取耗) : 취모십일(取耗什一)로 환자(還子)의 모곡(耗穀)을 보충하기 위하여 빌린 곡물의 10분의 1을 이식(利息)으로 받는 일을 말한다.

29 조적(糶糶) : 봄에 나라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는 것을 조(糶)라 하고, 가을에 백성들에게 꾸어 주었던 곡식에 10분의 1 이자를 붙여서 거두어 들이는 것을 적(糶)이라 한다.



穀簿

- 一. 各道元穀三十九萬四千四百八石六斗一升 [關西二十萬七千六百五十八石六斗一升 ○嶺南六萬六千石 ○湖西一萬九千石 ○湖南六萬二千石 ○海西一萬八千七百五十石 ○關東七千石 ○京畿四千石], 每年依定式取耗爲白乎矣, 湖南七千石·湖西五百石, 因惠廳論報, 換錄儲置, 以本色全船移劃, 其餘竝作錢而較邑, 量穀恒定分排, 俾無隨時從貴之弊爲白齊.
- 一. 各鎮元穀八千九百四十八石 [拜峯鎮四千七百石 ○古城鎮三千二百二十八石 ○露梁鎮一千二十石], 仍留各該鎮, 依定式糶糴取耗爲白齊.

4. 회외(會外)³⁰

회외

1. 별하고別下庫³¹에서 1년에 거두어야 할 미리는 99섬[石][본영에서 거두는 미태米太는 모두 29,700섬인데 매 1,000섬마다 잉조剩條 가운데서 거족가炬燭價의 미 3섬 5말[斗]씩을 마련하여 이속移屬시킨다]이다. 전錢은 6,807냥(兩) 9전錢 3푼[分][보환곡補還穀³²의 모미秣米 1,000섬 대신 3,000냥 ○영전營錢으로 환매換賣한 선혜청의 미 500섬 대신 3,000냥 ○호남에서 진상하는 첨가 모미添價耗米 200섬 대신 600냥 ○금위영·어영청 두 영에서 패선敗船과 관련한 부비조浮費條 207냥 9전 3푼]이다. 매년 정식대로 거둔다.
1. 1년에 내려주어야 할 미 65섬 11말 내에서 행하조行下條는 60섬 [제조는 매달 2섬 ○대장은 3섬]이고, 포핍 예하褒貶例下는 5섬 11말[하夏·동冬 두 등등에 있어서, 매 등마다 예방 서리에게 3말 ○전배 취고수前排吹鼓手에게 5말 ○순시수巡視手에게 1섬 ○뇌자牢子에게 1섬 ○장막군帳幕軍에게 5말]이다.
전錢은 5,426냥 9전 5푼 내에서 구채驅賃³³는 2,286냥[도제조의 구

30 회외(會外) : 회계 장부에 회록(會錄)하고 남은 것을 말한다.

31 별하고(別下庫) : 조선 후기 선혜청에 부속된 창고의 하나이다. 균역청에서 급대(給代)를 마련하고 난 잉여부의 쌀·목면·돈 등을 여기에 보관하여 종이·붓·먹 등의 쓰임에 보충하였다.

32 보완곡(補還穀) : 1784년(정조 8) 봄에 진제(賑濟)를 마친 뒤에 균역청의 결전(結錢)과 해세(海稅) 등으로 곡식을 사서 진제에 보충하고 그 나머지를 환상(還上)으로 만든 것이다.

33 구채(驅賃) : 관원에게 녹봉 이외에 사사로이 부리는 하인의 급료로 더 주는 전곡(錢穀)이나 포백(布帛)을 이른다. 구가(驅價)라고 하기도 한다.



채는 8냥, 탄소목炭燒木의 값은 3냥, 거축炬燵의 값은 1냥 8전 ○제조와 대장의 구채는 각 10냥이고, 약채藥債는 30냥, 행하조는 20냥 [대장에게는 20냥을 더 준다.]이고, 탄소목의 값은 3냥, 거축의 값은 6냥, 청직廳直의 삭하朔下는 3냥 ○종사관의 구채는 10냥, 탄소목의 값은 1냥 5전, 거축의 값은 2냥 2전]이다.

봄과 가을의 모채帽債와 필채筆債는 250냥 8전[제조와 종사관의 모채는 각 8냥 ○시필試筆 280자루[綱], 매 자루마다 값은 2전 3푼, 초필抄筆은 1,420자루, 매 자루마다 1전 2푼]이다.

조보정사채朝報政事債³⁴는 228냥[대장의 조보정사채는 매달 11냥 ○당상소堂上所의 정사채는 6냥 ○감관청의 정사채는 2냥]이다.

포핌 예하褒貶例下는 45냥 6전[하夏·동冬 두 등등에 있어서 매 등마다 도제조를 배종하는 녹사에게 2냥, 군관에게 1냥, 배종하는 하인에게 1냥, 권두權頭에게 3전, 색구色驅와 대솔구종帶率驅從에게 2냥, 별배구종別陪驅從에게 5전, 배기수陪旗手에게 1냥 ○제조와 대장을 배종하는 하인에게 각 1냥, 색구와 대솔구종에게 2냥, 별배구종에게 1냥, 배기수[대장의 경우 순뢰巡率]에게 2냥 ○종사관을 배종하는 하인에게 1냥, 대솔구종에게 1냥, 배기수에게 1냥]이다.

무미조買米條는 1,850냥[영전營錢으로 환무換買한 균역청의 미조米條]이다.

34 조보정사채(朝報政事債) : 승정원의 조보를 발행하는 비용으로 벼슬아치들이 내던 돈이다.

납약臘藥과 역서曆書의 값 196냥 6전 2푼[청장력靑粧曆은 26건件으로 매 건당 값은 3전 ○중력中曆은 279건으로 매 건당 값은 1전 ○단력單曆은 441건으로 매 건당 값은 7푼 ○상력常曆은 350건으로 매 건당 값은 6푼 ○청심원淸心元은 60환丸으로 매 환당 값은 8전 ○장춘원長春元은 60환으로 매 환당 값은 2전 ○소합원蘇合元은 150환으로 매 환당 값은 5푼 ○제중단濟衆丹은 160환으로 매 환당 값은 2푼 ○광제환廣濟丸은 300환으로 매 환당 1푼 5리리 ○봉과封裹하는 종이의 값은 3냥 ○겹보자기[袂袱]의 값은 30냥 8전 5푼]이다.

세찬조歲饌條는 60냥[도제조는 10냥 ○제조와 대장은 각 20냥 ○종사관은 10냥]이다.

예하조例下條는 113냥[북창北倉에서 고사告祀하기 위한 45냥 ○북창에서 점화하는 값 3냥 ○해당하는 서고書庫에 으레 지급하는 50냥 ○겨두어 내려주는 회계책會計冊 및 단자채單子債 5냥 ○무역할 때의 보축조補縮條 10냥]이다.

시유채柴油債는 43냥 2전[제조 배기수提調陪旗手 및 대장 사령大將使令의 번방番房 두 곳에 각 2냥 2전[3월부터 8월까지 각 1냥 5전]]이다.

각종 잡하조雜下條는 300냥[어림잡작하여 마련]이고, 고직의 백일조百一條는 53냥 7전 3푼[1년에 5,373냥 2전 2푼의 값을 지급해주는데, 매 냥당 1푼을 축조縮條한다.]이다. 매년 값을 지급해 준다.

1. 도제조 1원에게는 시필試筆 40병柄[봄, 가을에 각 20병], 초필抄筆



100명[봄, 가을에 각 50명], 대과大科의 정초지正草紙³⁵ 2장張[절제節製³⁶도 같다.], 소과小科의 명지名紙³⁷ 2사事[식년式年때만], 청장력 3건, 중력 10건, 단력 20건, 상력 30건, 청심원 10환, 장춘원 10환, 소합원 20환, 제중단 30환, 광제환 30환을 지급한다.

제조와 대장 각 1원에게는 시필 100명[봄, 가을에 각 50명], 초필 200명[봄, 가을에 각 100명], 대과의 정초지 2장, 소과의 명지 2사, 청장력 5건, 중력 40건, 단력 50건, 상력 60건, 청심원 20환, 장춘원 20환, 소합원 50환, 제중단 50환, 광제환 100환을 지급한다.

종사관 1원에게는 시필 40명[봄, 가을에 각 20명], 초필 60명[봄, 가을에 각 30명], 대과의 정초지 2장, 소과의 명지 2사, 청장력 3건, 중력 20건, 단력 30건, 상력 40건, 청심원 10환, 장춘원 10환, 소합원 30환, 제중단 30환, 광제환 79환을 지급해 준다.³⁸

1. 감관 4원에게는 초필 200명[봄, 가을에 각 100명], 청장력 8건, 중력 60건, 단력 80건, 상력 120건을 지급한다. 별부료別付料 2원에

35 정초지(正草紙) : 과거 시험에 사용하던 시지(試紙)이다.

36 절제(節製) : 절일제(節日製) 또는 절일시(節日試)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 매년 정월 7일[人日], 3월 3일[上巳日], 7월 7일[七夕], 9월 9일[重陽]마다 성균관의 거재 유생(居齋儒生) 및 지방 유생들에게 보이던 시험으로, 이에 합격하면 문과의 전시(殿試)나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거나 또는 시상하기도 하였다.

37 명지(名紙) : 과거 시험에 쓰던 종이 또는 시험 답안지를 말한다.

38 도제조 1원에게는……지급해 준다 : 원문에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앞뒤 문맥을 살펴 도제조, 제조, 대장, 종사관에게 나열된 물품들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게는 초필 60병[봄, 가을에 각 30병], 청장력 2건, 중력 20건, 단력 30건, 상력 40건을 지급한다. 서리 16인에게는 초필 480병[봄, 가을에 각 240병], 중력 80건, 단력 160건을 지급한다. 서사 3인에게는 초필 120병[봄, 가을에 각 60병], 중력 9건, 단력 21건을 지급해 준다.³⁹

1. 대장이 공고公故⁴⁰할 때 역마부의 요기감 및 역마를 외양喂養하는 값은 매일 매 시간 당 각 1전 5푼씩으로 마련하여 값을 지급해주되, 종일인 경우에는 두 시간을, 밤을 지새우는 경우에는 1시간을 더하여 주고, 그 외에는 모두 1시간으로써 값을 지급해 준다.
1. 마보군이 합동으로 조련操鍊할 때 대장이 만일 참석한다면 대장 종사관·별장의 반공飯供에 들어가는 것은 본 창고에서 회감會減⁴¹해 준다.

39 감관 4원……지급해 준다 : 원문에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앞뒤 문맥을 살펴 감관, 별부료, 서리, 서사에게 나열된 물품들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40 공고(公故) : 관원으로서 조회(朝會)·진하(進賀)·거동(擧動) 등 제반 궁중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41 회감(會減) : 주고받을 것을 맞비기고 남은 것을 셈하는 것을 이른다.



會外

- 一、別下庫一年應捧，米九十九石[本營捧上米太，竝二萬九千七百石，每千石剩條中，炬燭價米三石五斗式，磨鍊移屬]。錢六千八百七兩九錢三分[補還穀耗米一千石代三千兩 ○營錢換賣惠廳米五百石代三千兩 ○湖南進上添價耗米二百石代六百兩 ○禁·御兩營敗船浮費條二百七兩九錢三分]。每年依定式捧上爲白齊。
- 一、一年應下米六十五石十一斗內，行下條六十石[提調每朔二石 ○大將三石]，褒貶例下五石十一斗[夏·冬兩等，每等禮房書吏三斗 ○前排吹鼓手五斗 ○巡視手一石 ○牢子一石 ○帳幕軍五斗]。錢五千四百二十六兩九錢五分內，驅債二千二百八十六兩[都提調驅債八兩，炭燒木價三兩，炬燭價一兩八錢 ○提調·大將驅債各十兩，藥債三十兩，行下條二十兩[大將加二十兩]，炭燒木價三兩，炬燭價六兩，廳直朔下三兩 ○從事官驅債十兩，炭燒木價一兩五錢，炬燭價二兩二錢]。春秋帽債·筆債二百五十八兩[提調·從事官帽債各八兩 ○試筆二百八十柄，每柄價二錢三分，抄筆一千四百二十柄，每柄價一錢二分]。朝報政事債二百二十八兩[大將朝報政事債，每朔十一兩 ○堂上所政事債六兩 ○監官廳政事債二兩]。褒貶例下四十五兩六錢[夏·冬兩等，每等都提調陪錄事二兩，軍官一兩，陪下人一兩，權頭三錢，色驅·帶牽驅從二兩，別陪驅從五錢，陪旗手一兩 ○提調·大將陪下人各一兩，色驅·帶牽驅從二兩，別陪驅從一兩，陪旗手[大將巡牢]二兩 ○從事官陪下人一兩，帶牽驅從一兩，

陪旗手一兩]. 買米條一千八百五十兩[營錢換買均廳米條]. 臘藥·曆書價一百九十六兩六錢二分[青粧曆二十六件, 每件價三錢 ○中曆二百七十九件, 每件價一錢 ○單曆四百四十一件, 每件價七分 ○常曆三百五十件, 每件價六分 ○清心元六十丸, 每丸價八錢 ○長春元六十丸, 每丸價二錢 ○蘓合元一百五十丸, 每丸價五分 ○濟衆丹一百六十丸, 每丸價二分 ○廣濟丸三百丸, 每丸價一分五厘 ○封裹紙價三兩 ○袂袱價三十兩八錢五分]. 歲饌條六十兩[都提調十兩 ○提調·大將各二十兩 ○從事官十兩]. 例下條一百十三兩[北倉告祀次四十五兩 ○北倉點火價三兩 ○該掌書庫例給五十兩 ○捧下會計册及單子價五兩 ○貿易時補縮條十兩]. 柴油價四十三兩二錢[提調陪旗手, 及大將使令, 番房兩處, 各二兩二錢[自三月至八月, 各一兩五錢]. 各樣雜下條三百兩[假令〈量〉⁴²磨鍊], 庫直百一條五十三兩七錢三分[一年上下五千三百七十三兩二錢二分, 每兩縮條一分]. 每年上下爲白齊.

- 一. 都提調一員, 試筆四十柄[春秋各二十柄], 抄筆一百柄[春秋各五十柄], 大科正草紙二張[節製同], 小科名紙二事[式年岔], 青粧曆三件, 中曆十件, 單曆二十件, 常曆三十件, 清心元十丸, 長春元十丸, 蘓合元二十丸, 濟衆丹三十丸, 廣濟丸三十丸. 提調·大將各一員, 試筆一百柄[春秋各五十柄], 抄筆二百柄[春秋各一百柄], 大科正草紙

42 〈量〉: 원문에는 '수'로 되어 있으나 앞뒤 문맥을 살펴 '량'으로 교감하였다.



二張, 小科名紙二事, 靑粧曆五件, 中曆四十件, 單曆五十件, 常曆六十件, 淸心元二十丸, 長春元二十丸, 蘓合元五十丸, 濟衆丹五十丸, 廣濟丸一百丸. 從事官一員, 試筆四十柄[春秋各二十柄], 抄筆六十柄[春秋各三十柄], 大科正草紙二張, 小科名紙二事, 靑粧曆三件, 中曆二十件, 單曆三十件, 常曆四十件, 淸心元十丸, 長春元十丸, 蘓合元三十丸, 濟衆丹三十丸, 廣濟丸七十丸爲白齊.

- 一. 監官四員, 抄筆二百柄[春秋各一百柄], 靑粧曆八件, 中曆六十件, 單曆八十件, 常曆一百二十件. 別付料二員, 抄筆六十柄[春秋各三十柄], 靑粧曆二件, 中曆二十件, 單曆三十件, 常曆四十件. 書吏十六人, 抄筆四百八十柄[春秋各二百四十柄], 中曆八十件, 單曆一百六十件. 書寫三人, 抄筆一百二十柄[春秋各六十柄], 中曆九件, 單曆二十一件爲白齊.
- 一. 大將公故時, 大馬夫饒氣次, 及大馬喂養價, 每日每時, 各一錢五分式磨鍊, 上下爲白乎矣, 終日則兩時, 經夜則加一時, 其外竝以一時上下爲白齊.
- 一. 馬步軍合操時, 大將若進去, 則大將從事官·別將飯供所入, 自本庫會減爲白齊.

5. 포핼(褒貶)

포핼

1. 매년 5월과 11월 30일 저녁에 종사관이 도제조에게 나아간 다음 포핼하는 일자에 대해 품의한 뒤에 제조와 대장에게 와서 고한다.
1. 도제조가 혹 사고가 있어 포핼 좌기(褒貶坐起)를 설행하지 못하게 되면[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설행하지 않는다.], 종사관이 도제조의 뜻으로써 마감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탈계(頤啓)한다.
1. 포핼하는 달의 1일에 대장이 포핼강(褒貶講)을 어떤 날에 먼저 설행하겠다는 뜻을 던지시 여쭙 뒤 당상과 당하의 장관을 모아 개좌(開坐)한다. 고강(考講)[입직하게 되면 먼저 강(講)을 한 사람을 대신 입직시키고 강에 응한다. ○당상 장관으로 나이가 50이면 강을 면제해 준다.]은 별도로 봉해 두어서 당일에 고과 성적으로 삼는다.
1. 포핼 설행 단지(褒貶設行單子)는 당일 이른 새벽에 승정원에 올린다.
1. 복색은 도제조·제조·대장·종사관은 흑단령(黑團領)을, 여러 장관과 장교는 용복(戎服)을 갖춘다[감관·별부료·침의(鍼醫)·약방의 화원·사자관(寫字官)은 용복으로 하되 칼만 착용한다].
전배(前排)의 경우 대장은 15쌍(雙), 제조는 7쌍, 도제조는 10쌍으로 거행하고[도제조와 제조의 전배는 신지에서 해당 차지 지구관이 기일 전에 나아가 고하는 것으로 거행한다. ○대장소의 경우에는 교련관의 고과(告課)로 거행한다], 취고수는 먼저 신지에 들어간다.
마보군·기대총(旗隊總)·통수(統首) 등은 모두 등대(等待)한다[대차일(大遮日)·포진(鋪陳)은 장막색(帳幕色)에서 거행한다. ○교의(交椅)·고족상(高足



床·서안書案·답상踏床·휘건揮巾·계판啓板·계본지啓本紙·유지油紙·소삭小索 등의 물품은 군수색과 야소冶所에서 등대한다.].

1. 당일에 종사관 이하 및 장관 이하가 미리 먼저 와서 모인 뒤 종사관이 대장에게 출석을 청하고 다음으로 제조에게 청하며[제조와 대장의 분부가 있으면 서리가 대행한다.], 다음으로 도제조에게 청한다.

1. 도제조·제조·대장이 나아갈 때 종사관과 여러 장관은 중문 내에서 차례대로 국궁鞠躬하고 지영祇迎한다[장교는 장관의 뒤에 있는다.]. 도제조가 나아갈 때 제조와 대장은 첨계簷階 위에서 국궁하고 지영하고[정1품은 지영하지 않는다. ○종1품은 동정東庭에서 2품은 서정西庭에 있는다. ○종사관·여러 장관·장교는 예전대로 신지에서 지영한다.] 도제조는 몸을 돌려 답음答揖한다[제조가 만약 동서로 나누어 지영하면 도제조는 중간에 서서 좌우로 답음하는데 동쪽을 먼저 하고 서쪽을 뒤로 한다.].

1. 예를 행할 때 도제조는 주벽主壁에, 제조와 대장은 품계에 따라 동서로 나누어 있다. 제조와 대장이 먼저 도제조 앞으로 나아가 재배再拜를 행하면 도제조가 답으로 재배를 하고, 제조와 대장이 각각 본래의 자리로 나아가 서로를 향해 재배한 뒤에 자리에 앉는다. 도제조 군관이 먼저 영외楹外에서 참현參現을 행하고, 다음으로 종사관이 동계東階에서 영내楹內로 들어가 도제조·제조·대장에게 예를 행한다. 다음으로 감관·별부료·약방의 침의·화원·사자관이 영외에서 예를 행한다[예를 행한 뒤 도로 반차班次로 나아간다.].

별장·과총·선기장善騎將은 서계西階에서 영내로 들어가 차례대로 군례軍禮를 행하고, 초관 및 여러 장교는 영외에서 한다[예를 행한 뒤 도로 반차로 나아간다. ○종사관·감관·별부료·약방의 침의·화원·사자관은 공례公禮를 한다. ○여러 장관과 장교는 군례를 한다.].

1. 사례私禮를 할 때[도제조·제조·대장·종사관은 시복時服이다. ○여러 장관·장교는 용복戎服으로 하되 칼만 착용한다. ○혹은 예를 제외할 때도 있다.] 제조와 대장이 도제조 앞으로 나아가 단배單拜하면, 도제조는 앉아서 답음하고[정1품 제조의 경우에는 앞으로 나아가 상읍相揖한다.], 종사관·여러 장관·감관·별부료·약방의 침의·화원·사자관은 도제조·제조·대장 앞으로 나아가 단배한다 [동계와 서계에서 영내와 영외를 경유한다. 공례조公禮條를 참고한다.].

1. 사례가 끝난 뒤 제조와 대장이 도제조 앞으로 나아가 등제等第⁴³를 논의하되, 군색 제조軍色提調가 글을 쓴다.

1. 포폄 제목褒貶題目은 종사관 이하부터 초관에 이르기까지 다른 영의 예례대로 4자字를 갖추어서 쓴다⁴⁴.

1. 지구관·교련관의 고과 성적 및 기대총·통수 등의 근만勤慢은 원래

43 등제(等第) : 관원의 근무 성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포폄에서 매긴 상·중·하의 등급을 말한다.

44 포폄 제목(褒貶題目)은 …… 쓴다 : 포폄 계본(褒貶啓本)에는 상·중·하로 성적을 매김과 동시에 그 근거를 4자(字) 1구(句) 내지 2구로 요약하여 기록하는데, 이를 포폄 제목(褒貶題目)이라고 한다.



의 포핌이 마감되기를 기다렸다가 대장과 종사관이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개좌(開坐)하여 거행하고 종사관이 글을 쓴다.

1. 종사관·여러 장관의 사일 단자(仕日單子)는 기일 전에 거두어들이고, 기대총·통수 등의 근만 단자(勤慢單子)는 포핌하는 날에 거두어들여 서 정식대로 함께 수계(修啓)한다.

1. 포핌 계본(褒貶啓本)은 종사관 1도(度), 당상 장관 1도, 초관 1도, 별중 사(別中司)·별후사(別後司)·과총·별아병장(別牙兵將) 1도를 합하여 4도를 미리 수정(修正)한다.

1. 포핌 계본과 고적 계본(考績啓本)은 호봉(糊封)⁴⁵한 다음 각각 싸서[모두 계판(啓板)에 사용한다.] 종사관이 정문을 경유하여 승정원에 내어 올린[포핌을 마감하는 초기는 도제조가 하고, 고적과 관련한 초기는 군색 제조가 한다.] 뒤에 회보(回報)를 기다렸다가 일을 마친다. 도제조·제조·대장이 도로 돌아갈 때 지송(祇送)하는 등의 일은 한결같이 나아갈 때의 예대로[혹은 예를 제외할 때도 있다.]거행한다.

1. 종사관과 여러 장관 가운데 계하 받은 뒤에 3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일천(日淺)’이라고 주를 단다. 입직할 장관의 경우에는 대직(代直)하게 하여 참석시키며[교련관이 대직한다.], 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례대로 중고(中考)로 시행한다.

1. 포핌 계본 가운데 만일 문질러 곱아서 고친 곳이 있으면 몇 글자를

45 호봉(糊封) : 봉미(封彌)와 같다. 봉미는 과거시험 때 답안지 오른쪽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풀칠해 봉하여 붙이던 것을 말한다.

칼로 끊어내었다고 초기를 올렸었는데, 아직 마감을 하지 않은 때 라면 모두 탕척하겠다고 또한 초기를 올린다.

1. 당일 도제조·제조·대장·종사관·당상 장관의 반과⁴⁶는 각 영의 예대로 향색에서 준비하고, 초관 이하 각 청의 장교에 대해서는 전 錢으로 적절하게 마련하여 값을 지급해 준다[반과를 만일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만 둘 것].
1. 지구관·교련관·별무사 가운데 첫 번째로 태만한 자는 비록 수사首 任일지라도 중고⁴⁷의 예대로 일도목⁴⁷에 올리고, 연이어 두 차례 태만한 자와 간격을 두고 세 차례 태만한 자는 태거한다. 장 용위의 통수와 미부료무사⁴⁷의 통수 가운데서 연이어 두 차례 태만한 자와 간격을 두고 세 차례 태만한 자는 곤을 치고 징계 한다.
1. 마보군·기대총·통수 가운데 연이어 다섯 차례 태만한 자는 엄하게 곤을 치고, 연이어 여섯 차례 태만한 자는 곤을 친 다음 태거한다. 기대총 가운데 연이어 다섯 차례 근면한 자와 통수 가운데 연 이어 열 차례 근면한 자에 대해서는 함께 취재한다[자원하는 것에 따라 각각의 기예를 시험한다.]. 수석을 차지한 1인은 별무사로 승

46 반과(盤果) : 허기를 면하기 위해 가져가는 술과 과일을 말한다.

47 일도목(一都目) : 관리의 근무 성적을 고찰하여 출척(黜陟)을 행하던 것을 도목이라 하는데, 일년에 한 차례 하는 것을 일도목(一都目), 6월과 12월 두 차례 하는 것을 양도목(兩都目), 4개월에 한 번 씩 세 차례 하는 것을 삼도목(三都目)이라 하였다.



차陞差시키고, 그 나머지에게는 각각 목면 1필疋을 지급한다.

1. 포폄 계본 가운데 대장의 직함職銜은 훈련도감의 예대로 제조가 쓰도록 하여서 군병과 향곡에 함께 관장하지 않는 법의法意를 남긴다.
1. 당하 장관이 만일 중고인 경우에는 비록 첫 번째 일지라도 근무일수 10개월을 감하고, 연이어 두 차례인 경우에는 개차改差하며, 간격을 둔 경우에는 논하지 않는다. 만일 중고를 탕척하라는 명이 있으면 도로 전의 근무일수를 회복시켜 준다.

褒貶

- 一. 每年五月·十一月三十日夕, 從事官進詣都提調, 稟褒貶日子後, 來告提調·大將爲白齊.
- 一. 都提調, 或有故, 貶坐不得設行則[大將有故時, 亦不得設行], 從事官以都提調意, 不得磨勸之由, 頓啓爲白齊.
- 一. 貶月初一日, 大將以褒貶講, 某日先爲設行之意, 微稟後, 聚會堂上·堂下將官開坐. 考講[入直, 則以先講人代直, 應講 ○堂上將官, 年五十, 則除講], 別爲封置, 以爲當日考績之地爲白齊.
- 一. 褒貶設行單子, 當日曉頭呈政院爲白齊.
- 一. 服色段, 都提調·提調·大將·從事官黑團領, 諸將官·將校具戎服[監官·別付料·鍼醫·藥房畫員·寫字官, 戎服只佩釘]. 前排則大將以十五雙, 提調以七雙, 都提調以十雙舉行[都提調·提調前排, 信地該次知知教官, 前期進告舉行 ○大將所則教鍊官告課舉行], 吹

鼓手，先入信地。馬步軍·旗隊摠·統首等，一體等待[大遮日·鋪陳，自帳幕色舉行 ○交椅·高足床·書案·踏床·揮巾·啓板·啓本紙·油紙·小索等物，自軍需色·治所等待]爲白齊。

- 一. 當日從事官以下，及將官以下，預先來會後，從事官請坐于大將，次請提調[提調·大將有分付，則書吏替行]，次請都提調爲白齊。
- 一. 都提調·提調·大將進詣時，從事官·諸將官，以次鞠躬·祇迎於中門內[將校在將官之後]。都提調進詣時，提調·大將，鞠躬·祇迎於簷階上[正一品不爲祇迎 ○從一品東庭，二品西庭 ○從事官·諸將官·將校，依前信地祇迎]，都提調回身答揖[提調若分東西祇迎，則都提調當中立，左右答揖，先東後西]爲白齊。
- 一. 行禮時，都提調主壁，提調·大將隨品分東西，而提調·大將，先詣都提調前，行再拜，則都提調答再拜，提調·大將各就本位，相向再拜後坐定。都提調軍官，先行參現於楹外，次從事官自東堦入楹內，行禮於都提調·提調·大將。次監官·別付料·藥房鍼醫·畫員·寫字官，行禮於楹外[行禮後還就班次]。別將·把摠·善騎將，自西堦入楹內，以次行軍禮，哨官及諸將校，楹外爲之[行禮後還就班次 ○從事官·監官·別付料·藥房鍼醫·畫員·寫字官公禮 ○諸將官·將校軍禮]爲白齊。
- 一. 私禮時[都提調·提調·大將·從事官，時服 ○諸將官·將校，戎服只佩劔 ○或有除禮之時]，提調·大將，進詣都提調前單拜，則都提調坐而答揖[正一品提調，則進前相揖]，從事官·諸將官·監官·別付料·藥房鍼醫·畫員·寫字官，於都提調·提調·大將進前單拜[自東



西階，由楹內外。見公禮條]爲白齊。

- 一. 私禮罷後，提調·大將進詣都提調前，就議等第爲白乎矣，軍色提調執筆爲白齊。
- 一. 褒貶題目，自從事官以下至哨官，依他營例，俱以四字，書之爲白齊。
- 一. 知穀官·教鍊官考績，及旗隊摠·統首等勤慢，待元褒貶磨勘，大將與從事官，別爲開坐於他所舉行，而從事官執筆爲白齊。
- 一. 從事官·諸將官仕日單子，前期收捧，旗隊摠·統首等勤慢單子，貶日收捧，依定式，同爲修啓爲白齊。
- 一. 褒貶啓本，則從事官一度，堂上將官一度，哨官一度，別中司·別後司·把摠·別牙兵將一度，合四度，預爲修正爲白齊。
- 一. 褒貶啓本，與考績啓本，糊封各裹[皆用啓板]，從事官由正門，出呈政院[褒貶磨勘草記，都提調爲之，考績草記，軍色提調爲之]，後待回報罷坐爲白乎矣，都提調·提調·大將，還歸時祇送等事，一依進詣時例[或有除禮之時]舉行爲白齊。
- 一. 從事官·諸將官，啓下後未滿三十日，則以‘日淺’懸註，入直將官，則代直進叅[教鍊官代直]，受由不叅者，依例中考施行爲白齊。
- 一. 褒貶啓本中，如有擦改處，則以幾字刀擦之意，草記有去等，未磨勘之時，則一體蕩滌之意，亦爲草記爲白齊。
- 一. 當日都提調·提調·大將·從事官·堂上將官盤果，依各營例，自餉色辦備，哨官以下各廳將校，以錢量宜磨鍊，上下[盤果如不設行，則置之]爲白齊。
- 一. 知穀官·教鍊官·別武士，初次慢者，雖當首仕，依中考例，陳一都

目, 連二次慢及間三次慢者汰去. 壯勇衛統首·未付<料>⁴⁸ 武士統首, 連二次慢及間三次慢者, 決棍懲礪爲白齊.

- 一. 馬步軍·旗隊摠·統首之連五次慢嚴棍, 連六次慢棍汰. 旗隊摠之連五勤·統首之連十勤, 通同取才[從自願, 各試技藝]. 居首一人, 陞差別武士, 其餘各給木一疋爲白齊.
- 一. 褒貶啓本中, 大將職銜, 依訓局例, 以提調書之, 俾存軍與餉, 勿令竝管之法意爲白齊.
- 一. 堂下將官, 若中考, 則雖初次, 減仕十朔, 連二次改差, 間次勿論爲白乎矣, 如有中考蕩滌之命, 則還復前仕爲白齊.

48 料 : 원문은 '未付武士' 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未付料武士' 로 바로잡았다.



b. 상견(相見)

상견

1. 도제조·제조·대장이 새로 제수되는 날에 종사관·별장 이하, 각 청의 장관·장교, 각 초哨·색色の 두목頭目은 영숙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무리를 이루어 가서 알현한다[감관·별부로는 단지 도제조·제조에게만 자현⁴⁹한다. ○부료 무사 및 각 초·색의 두목은 단지 대장에게만 가서 알현한다. ○자현할 때 영樞의 내외 등급을 나누는 것은 의절조儀節條를 참고한다.].
1. 별장·파총이 새로 제수되는 날 별장의 경우에는 선기장 이하 해당 소所의 무사 및 두목·군병 등이 가서 자현하고[초관은 비록 해당 사司가 아니더라도 모두 가서 자현한다.], 파총의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초관·무사 및 두목·군병 등이 가서 자현하며[다른 사의 초관은 비록 해당 사가 아니더라도 또한 가서 자현한다.], 선기장의 경우에는 파총에게서만 알현을 받는다.
1. 선기장 및 초관이 새로 제수되는 날 해당 초의 서패 및 기대총 등은 가서 알현한다.
1. 동지冬至와 정조正朝 및 도제조·제조·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와 체파遞罷되었을 때에는 각 청의 장관과 장교가 무리를 이루어 가서 알현한다[단자는 없다.].

49 자현(刺現) : 극진히 뵈고 인사하는 것을 말한다.

相見

- 一. 都提調·提調·大將新除日, 從事官·別將以下, 各廳將官·將校, 各哨·色頭目, 待出令, 成廳往現[監官·別付料, 只都提調·提調刺現 ○付料武士及各哨·色頭目, 只大將往現 ○刺現時楹內外等分, 見儀節條]爲白齊.
- 一. 別將·把摠新除日, 別將, 則善騎將以下, 該所武士, 及頭目·軍等往刺[哨官, 雖非該司, 一體往刺], 把摠, 則當司哨官·武士, 及頭目·軍等往刺[他司哨官, 雖非該司, 亦爲往刺], 善騎將, 則於把摠只往現爲白齊.
- 一. 善騎將及哨官新除日, 該哨書牌及旗隊摠等, 往現爲白齊.
- 一. 冬至·正朝, 及都提調·提調·大將有故時, 遞罷時, 各廳將官·將校, 成廳往現[單子則無]爲白齊.



7. 회좌(會坐)⁵⁰

회좌

1. 제조와 대장이 포퓰 좌기 외에 일이 있어 관아의 건물에 서로 모이게 되면, 모두 시복時服으로 하고 전배는 거행하지 않는다.
1. 대장은 봄과 가을에 말을 점고하고 대좌기大坐起⁵¹에는 용복을 갖추고 거행하는데, 선기장은 선기대의 두국頭局에서 무릎 꿇고 맞이하 고, 장관은 계단 위에서, 당하 장관은 계단 아래에서, 각 청의 장교는 뜰 가운데서 지영한다. 개좌開坐한 뒤에는 규례대로 반열을 나누어 참현參現한다.
1. 상변하는 향군을 점고하고, 하변하는 향군은 시사방試射放을 하며, 승호군陞戶軍을 점고하고, 장초군壯抄軍을 점고하며, 노제군老除軍을 점고하고, 여러 장관은 사회射會하며, 각 청의 장교는 강회講會하고, 함께 소좌기小坐起를 거행한다. 그리고 긴요하지 않은 장관과 장교는 좌기에 참석하지 말도록 한다.

50 회좌(會坐) : 관원들이 한 곳에 모여 앉아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관계(官階)가 가장 높은 사람은 동쪽에, 그 다음은 서쪽, 나머지는 남쪽에 앉았다.

51 대좌기(大坐起) : 좌기는 관아의 장관이 사진(仕進)하여 자기 자리인 상석(上席)에 좌정하여 부하를 대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의식 또는 큰 사건이 있을 때는 대좌기(大坐起)라 하여 위(威儀)를 더 갖춘다.

會坐

- 一. 提調·大將, 貶坐外有事, 相會於公廡, 則竝以時服, 前排則不爲舉行爲白齊.
- 一. 大將春秋馬點, 大坐起具戎服舉行, 而善騎將, 於善騎隊頭局跪迎, 別將階上, 堂下將官階下, 各廳將校庭中祇迎. 開坐後, 依例分班參現爲白齊.
- 一. 上番鄉軍點考, 下番鄉軍試射放, 陞戶點考, 壯抄點考, 老除點考, 諸將官射會, 各廳將校講會, 竝以小坐起舉行. 不緊將官·將校, 勿爲參坐爲白齊.



8. 문첩(文牒)

문첩

1. 점목粘目은[장지壯紙 3절折] 보고된 문부文簿를 점련粘連하여 날날이 열거하여 품지稟旨하되, 곧바로 처분을 청하는 일과 관련된 경우에는 단점목單粘目으로 거행한다.
1. 계목啓目은[계사지啓辭紙 2절] 군물軍物을 수개한 뒤에 감동監董한 사람에게 상을 청하는 것과 한 해 걸러서 하는 대비교大比較⁵² 때 입격인의 상격을 모두 품지하여 거행한다.
1. 별단別單은[대소의 구별이 있는 상격 별단賞格別單은 계사지 3절 ○ 절목 별단節目別單은 2절] 대소 시사大小試射 때 입격한 사람의 상격과 각종 절목을 서계書啓할 때 사용한다.
1. 단자單子是 크고 작은 제도와 양식이 각각 같지 않는데 문안 단자問安單子가 있고, 정사 단자呈辭單子가 있으며 각종 좌기할 때의 진거 단자進去單子가 있다[문안 단자는 장지와 백지를 막론하고 모두 2절 ○제조·대장·종사관·당상과 당하 장관·감관은 모두 장지를 사용한다. ○별부로 이하 각 청의 장교는 백지를 사용한다. ○대장·별장·종사관이 좌기할 때의 진거 단자는 장지 3절 ○정사 단자는 장지 전장全張을 사용한다. ○포핍 설행 단자褒貶設行單子是 계사지 2절]. 한결같이 정식대로 하고 어기지 말도록 한다.

52 대비교(大比較) : 1793년(정조 17)부터 1799년(정조 23)까지 장용영 소속 향군에게 한 해 걸러 시행한 시사(試射)를 말한다.

1. 계본啓本은[전최殿最⁵³는 도련지搗鍊紙 전장을 사용한다. ○근만은 계사지 전장을 사용한다.] 포핍할 때 종사관 이하 여러 장관의 등 제等第와 장교·군병의 근만을 써서 들일 때 사용한다.
1. 초기草記는[계사지 3절이고 매 절마다 9첩貼이다.] 계품啓稟하는 일과 관련되어 사용하는 데 매 첩마다 2행行을 넘기지 않고, 중요한 문자에 대해서는 극항極行⁵⁴하여 쓰는데 사이에 한 글자가 없는 예로 한다.
1. 전령傳令은 사체가 존엄하고 각각 차등이 있으니 대장 이하 별장·파총이 새로 제수되었을 때의 전령이 있고, 내영과 외영에 분부하는 전령이 있다. 대장이 새로 제수되었을 때에는 어압御押을 찍고 [자문지咨文紙 전장], 별장·파총이 새로 제수되었을 때에는 내인內印을 찍고 또 장용영을 찍으며[도련지 2절], 모두 해서楷書로 크게 쓴다[직職·성명姓名은 전령 아래에 약간 작게 쓴다. ○단지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만 쓴다.]. 내영과 외영의 전령은[모두 내인 및 장용영만 찍고, 장지 2절을 사용한다. ○대신大臣이 지방에 사신으로 나갈 때에는 계사지를 사용한다.] 모두 초서草書로 쓴다.
1. 차첩差帖은[계사지 2절] 선기장·배봉 별장拜峯別將·감관·초관·액외 장용위額外壯勇衛를 차출하여 제수할 때 사용하고, 내인을 찍고 또 장용영을 찍는다[모두 직·성명을 쓴다. ○대연호大年號를 쓴다.].

53 전최(殿最) : 성적을 고사(考査)하는 일로 상(上)을 최(最), 하(下)를 전(殿)이라 한다.

54 극항(極行) : 존경 등의 표시로 별행한 해당 글자를 다른 줄보다 높이 쓰는 것을 이른다.



1. 봉교 차첩奉敎差帖은[장지 2절] 각 청의 장교를 새로 차출할 때 사용하고, 별부료·약방의 침의·화원·사자관은 향색 제조인餉色提調印을 찍는다[대연호를 쓰고, 좌방左傍에 제조의 직과 신묘·성姓을 쓰고 착함着衡한다.]. 통장統長은 본사本司의 근무를 면제해주고, 지구관·장용위는 대장인大將印을 찍는다[연·월, 직함은 위와 같다.].
1. 소단小單은[계사지 5절 10파破] 화원·사자관 및 무예청을 새로 차출할 때 계하 받는다.
1. 이문移文은[장지 3절] 본영의 사체가 자별하므로 비변사·의정부·규장각·오상사五上司와는 서로 관문關門을 주고받는다. 안으로는 각 사司와 각 영, 밖으로는 여러 도에 모두 초관草關으로 하고, 경외京外 각 아문의 경우에는 본영에 첩정牒보을 올린다.
비록 삼공三公이 예겸例兼하는 아문일지라도 주관하는 당상이 있으면 당상이 첩정을 올리고 낭청이 대신 보고하게 하지 말아서 일의 체모를 중히 여기도록 한다.
외영의 경우 정2품 유수일 때에는 내영에서는 초관하고 외영에서는 첩보牒報하며, 대신大臣이 유수일 때에는 내영에서는 관문을 보내고, 수원부 판관이 혹 종사관이면 외영에서는 종사관이 서목書目을 구비하여 첩정을 올린다.
1. 영營 내에서의 보첩報牒은[백지 2절] 별장·파총·선기장이 제조와 대장에게 한다. 수본手本은[백지 3절] 각 해당 장령將領과 군색은 전보轉報한 다음 사찰자를 찍고, 향색은 직접 수본을 올리며, 차지次知는 전보할 곳이 없으니 군향색에게 직접 보고한다.

감결甘結은[백지 2절] 군향색을 막론하고 모든 통지하는 일과 관계된 것은 비변사 이하 각 아문에서 모두 한다.

1. 시책試冊은[대비교 할 때 어람건御覽件 1건件은 장지 전장[먼저 백지 2절로 책을 수정修正하고, 시험을 마친 뒤에는 원래의 책에 옮겨 쓴다.]이고, 시관건試官件 2건은 백지 전장. ○사등 시사四等試射 할 때 어람건 1건은 장지 3절. ○시관건 2건은 장지 2절의 횡축橫軸], 매년 사등 시사와 한해 걸러 하는 대비교 때에 거행하고, 관무재觀武才와 서총대瑞葱臺를 할 때도 또한 시책으로 한다[어람건은 장지 3절. ○시관건은 대비교 할 때와 같다.].

1. 본영의 문첩은 긴요한지 아닌지를 막론하고 사체가 자별하니 각도의 영읍營邑[경기 ○황해도 ○평안도]에 관문을 보낼 때 만일 중도에 부침浮沈이 있거나 혹은 지체되는 폐단이 있다면 해당 참站의 발장撥將⁵⁵을 본도의 감영으로 하여금 각별히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도록 하고, 신척하지 못한 지방관 및 도수신道帥臣⁵⁶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초기를 올려 논책한다.

1. 양서兩西⁵⁷로 내려 보내는 공문서 가운데 시급한 일과 관련된 것은 전인專人을 직접 보내도록 하고 공문서의 봉투에는 ‘직발直撥’을 찍는다.

55 발장(撥將) : 각 역참에 속하여 중요한 공문서를 교대로 번방에 급히 전하던 군졸인 발군(撥軍)의 우두머리이다.

56 도수신(道帥臣) : 관찰사인 도신(道臣)과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인 수신(帥臣)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57 양서(兩西) : 해서(海西)와 관서(關西), 곧 황해도와 평안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그 다음으로 시급한 공문서의 봉투에는 ‘삼현령^{三懸鈴}’을 찍고, 또 그 다음으로 시급한 공문서의 봉투에는 ‘삼성화^{三星火}’를 찍는다.

1. 직발은 지나가는 각 읍에[발군^{撥軍}의 초료^{草料}⁵⁸에 대해서는 경기 감영에서 만들어 줄 것.] 경기 감영에서 써서 주고, 전령^{傳令}이 지나가는 일시에 각 발장으로 하여금 즉시 경기 감영에 보고하게 한 다음 경기 감영에서 본영에 전보하여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한다.
 1. 삼현령은 차례대로 파발을 교체하고 지나가는 시각도 또한 경기 감영에 보고하여 전보할 수 있게 한다.
 1. 삼성화는 삼현령의 예대로 차례대로 전발^{傳撥}하게 하되 도착하는 읍과 진^鎭에서만 도부^{到付}하는 일자를 본영에 직접 보고하도록 한다.
 1. 일반적인 규례대로 공문서를 파발에 부치는 것은 규례대로 거행한다.
 1. 군향읍의 문서에 대해 서로 회점^{回粘}하는 데 한갓 번거롭고 쓸데없기만 하니, 식례^{式例}에 실려 있는 것은 해당 소^所의 수본에 현록^{懸錄}하여 보고하고, 군색에서 직접 점계^{粘啓}하도록 한다. 만일 일이 군향읍과 관계되어 별도의 예로 마련하여 거행하는 일이 있으면, 두 제도가 하나의 점목^{粘目}에 연명^{聯名}으로 계사를 올리고, 만일 각각의 점목으로 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비로소 회점한다.
 1. 경기 감영의 문부 가운데 품의하여 재기를 받는 것과 관련된 것은 한결같이 외영의 예대로 별단으로 직접 내영에 올린다.

58 초료(草料) : 관원이 공무로 지방에 여행할 때에 지나가는 길의 각 역참(驛站)에 거마(車馬)·식료(食料) 등의 공급을 명령하는 문서이다.

文牒

- 一. 粘目段[壯紙三折], 粘連報來文簿, 枚舉稟旨爲白乎矣, 事係直請處分者, 以單粘目舉行爲白齊.
- 一. 啓目段[啓辭紙二折], 軍物修改後, 監董人請賞, 間年大比較時, 入格人賞格, 並以此稟旨舉行爲白齊.
- 一. 別單段[有大小之別, 賞格別單, 啓辭紙三折 ○節目別單二折], 大小試射時, 入格人賞格, 各樣節目, 書啓時用之爲白齊.
- 一. 單子段, 大小制樣, 各自不同, 有問安單子, 有呈辭單子, 有各樣坐起時進去單子[問安單子, 無論壯白紙, 並二折 ○提調·大將·從事官·堂上堂下將官·監官, 並用壯紙 ○別付料以下, 各廳將校, 用白紙 ○大將·別將·從事官, 坐起時進去單子, 壯紙三折 ○呈辭單子, 用壯紙全張 ○褒貶設行單子, 啓辭紙二折]. 一依定式, 毋得違越爲白齊.
- 一. 啓本段[殿最, 用搗鍊紙全張 ○勤慢, 用啓辭紙全張], 褒貶時, 從事官以下, 諸將官等第, 將校·軍兵勤慢, 書入時用之爲白齊.
- 一. 草記段[啓辭紙三折, 每折九貼], 凡係啓稟之事用之, 而每貼無過二行, 所重文字, 極行書之, 無間一字之例爲白齊.
- 一. 傳令段, 事體尊嚴, 各有等分, 有大將以下別將·把總新除時傳令, 有內外營分付之傳令. 大將新除時, 御押安寶[咨文紙全張], 別將·把總新除時, 踏內印又踏壯勇營[搗鍊紙二折]爲白乎矣, 並以楷字大書[職·姓名, 則傳令下差小書之 ○只書某年月日]. 內外營傳令[竝踏



內印及壯勇營，用壯紙二折 ○大臣外使時，則用啓辭紙，竝以草書書之爲白齊。

- 一. 差帖段[啓辭紙二折]，善騎將·拜峯別將·監官·哨官·額外壯勇衛，差除時用之爲白乎矣，踏內印又踏壯勇營[竝書職·姓名 ○書大年號]爲白齊。
- 一. 奉教差帖段[壯紙二折]，各廳將校新差時用之爲白乎矣，別付料·藥房·鍼醫·畫員·寫字官，則踏餉色提調印[書大年號，左傍書提調職·臣·姓，着銜]。統長除本仕，知穀官·壯勇衛，則踏大將印[年·月·職銜，上同]爲白齊。
- 一. 小單段[啓辭紙五折十破]，畫員·寫字官，及武藝廳，新差時，啓下爲白齊。
- 一. 移文段[壯紙三折]，本營事體自別，備局·政府·內閣·五上司，互相通關。內以各司·各營，外以諸道，竝草關，京外各衙門，則於本營牒呈爲白乎矣，雖三公例兼衙門，有主管堂上，則堂上牒呈，勿以郎廳替報，以重事面。外營段，正二品留守時，內營則草關，外營則牒報，大臣留守時，內營則行關，水原府判官或從事官，外營，則從事官具書目，牒呈爲白齊。
- 一. 營中報牒段[白紙二折]，別將·把摠·善騎將，於提調·大將爲之，手本段[白紙三折]，各該將領·軍色，則轉報踏查字，餉色則直手本，次知段，既無轉報處，直報軍餉色爲白乎矣，甘結段[白紙二折]，無論軍餉色，凡係知委之事，備局以下各衙門，一體爲之爲白齊。
- 一. 試冊段[大比較時，御覽件一件，壯紙全張]先以白紙二折冊修正，畢

試後，移謄於原冊]，試官件二件，白紙全張 ○四等試射時，御覽件一件，壯紙三折 ○試官件二件，壯紙二折橫軸]，每年四等試射，間年大比較時舉行，觀武才·瑞葱臺時，亦以試冊[御覽件壯紙三折 ○試官件，與大比較時同]爲白齊。

- 一. 本營文牒，無論緊漫，事體自別，各道營邑[京畿 ○黃海道 ○平安道]，行關時，若有中路浮沈，或遲滯之弊，則該站撥將，令本道監營，各別重繩，不飭之地方官及道帥臣，從輕重草記，論責爲白齊。
- 一. 兩西下去公事之，事係時急者，專人直撥，而公事皮封踏‘直撥’。其次公事皮封踏‘三懸鈴’，又其次公事皮封踏‘三星火’爲白齊。
- 一. 直撥段，所經各邑良中[撥軍草料，自畿營成給]，自畿營書付，傳令過去日時，令各其撥將，卽報畿營，自畿營轉報本營，以爲憑考之地爲白齊。
- 一. 三懸鈴段，次次替撥，而過去時刻，亦報畿營，以爲轉報之地爲白齊。
- 一. 三星火段，依三懸鈴例，次次傳撥爲白乎矣，所到邑·鎮瓮，到付日子，直報本營爲白齊。
- 一. 循例公事付撥段，依例舉行爲白齊。
- 一. 軍餉邑文書，互相回粘，徒涉繁冗，載在式例者，該所手本，懸錄以報，自軍色直爲粘啓。若事關軍餉邑，有別例磨鍊舉行之事，則兩提調一粘目中聯啓，如有不可不各爲粘目者，始爲回粘爲白齊。
- 一. 畿營文簿之凡係稟裁者，一依外營例，以別單直呈內營爲白齊。



9. 시상(施賞)

시상

1. 매년 등시사(等試射)를 할 때, 장관의 경우 유엽전(柳葉箭)⁵⁹은 변(邊)⁶⁰ 3중 이상이면 승서(陞敍)하고[장교의 경우 관(貫) 1중·변 2중 이상이면 숙마첩(熟馬帖)⁶¹, 변 3중이면 반숙마첩], 변 2중 이상이면 궁전(弓箭) 1부(部)[장교는 궁자(弓子) 1장(張)], 변 1중 이상이면 궁자 1장[장교는 전죽(箭竹) 100개(箇)], 소포(小布)⁶² 5중은 직부 전시(直赴殿試)⁶³, 4중은 직부 회시(直赴會試)⁶⁴[특교가 있으면 직부 전시 ○이상은 장교도 동일하다.], 3중은 궁자 1장과 전죽 50개[장교는 궁자 1장] 2중은 전죽 200개[장교는 100개] 1중은 전죽 100개[장교는 50개] 시상한다.

1. 장용위의 하(夏)·동(冬) 두 등(等)의 시사는 좌열과 우열을 통합한 다음 등급을 나누어 산정한다[유엽전의 관(貫)과 변(邊)은 모두 1(分)으로 하고, 기추(騎騫)⁶⁵는 점수를 배로 주지 않는다.]. 5(分) 이상을 취득하는

59 유엽전(柳葉箭) : 조선시대에 무과와 교습 등에 사용했던 화살로 화살촉이 버드나무 잎(柳葉)처럼 생겼다.

60 변(邊) : 과(科)의 정중앙을 맞히면 '관(貫)', 주변을 맞히면 '변(邊)'이라 하였다.

61 숙마첩(熟馬帖) : 숙마 1필을 하사하는 첩지로, 숙마를 얻어 탈 수 있는 첩이다.

62 소포(小布) : 유엽전을 시험할 때 관혁(貫革)과 대비되는 과목으로, 보통보다 작은 과녁을 사용하였다.

63 직부 전시(直赴殿試) : 전시(殿試)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던 일을 말한다. 전시는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행하던 과거의 마지막 시험으로, 여기에서 그 결과에 따라 갑과(甲科)·을과(乙科)·병과(丙科)의 등급을 정했다.

64 직부 회시(直赴會試) : 회시(會試), 즉 복시(覆試)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던 일을 말한다. 복시는 문과·무과 및 잡과의 2차 시험으로서 복시 합격자는 왕이 주재하는 전시(殿試)를 쳤다.

65 기추(騎騫) :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것으로 무과 및 군사를 시험하는 주요 종목 중 하나였다.

자는 50인을 넘기지 말고[매 等等마다 동점자가 정해진 수와 비교하여 초과되면, 기추 점수를 배로 주고 관은 반획을 더 계산해주는데, 그런데도 또 동점자가 있으면 자급 및 좌차에 따라 올려준다.], 1등 1인에 대해 출신은 가자加資하고[동등冬等에는 변장邊將에 제수한다.] 2등 2인은 상호군上護軍에 부치며, 3등 2인은 사과司果에 부치고, 4등 5인은 숙마첩을, 5등 5인은 반숙마첩을, 6등 5인은 아마첩兒馬帖을, 7등 5인은 동개筒箇⁶⁶ 1부를, 8등 5인은 궁시 1부를, 9등 5인은 궁전 1부를, 10등 10인은 궁자 1장을 시상한다. 비록 10등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5품을 넘지 못한 자에게는 시상하지 않는다.

각 기예 중에서 만일 몰기沒技⁶⁷한 자가 있다면 별단으로 서계書啓하며[비록 등수等數 내에 있을 지라도 중첩하여 시상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춘등春等에 기추 4중 이상이면 폼지하여 거행하고, 3중은 숙마첩[혹은 동개 1부] 2중은 전죽 100개, 1중은 시상하지 않는다. 추등秋等에 별기別技는 초등超等⁶⁸은 목면 2필, 상상上上等은 목면과 포 각 1필, 상중인 경우 목면 1필, 상하인 경우 포 1필을 시상한다.

66 동개(筒箇) : 활과 화살을 꽂아 넣는 물건이다.

67 몰기(沒技) : 무과(武科)의 시취(試取)에 있어서 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추(騎筈) 등 정한 화살의 수를 다 맞히는 것을 말한다.

68 초등(超等) : 일반 등급을 월등히 넘는 점수이다.



1. 선기대善騎隊의 하등夏等 시사는 매 초哨마다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계산한다. 3푼 이상을 취득한 자는 52인을 넘기지 말고[점수를 계산하는 규정에서 동점자를 올리는 방법은 장용위의 예와 같다.] 1등 3인은 숙마첩, 2등 6인은 반숙마첩, 3등 9인은 아마첩, 4등 14인은 궁전 1부, 5등 20인은 전죽 100개를 시상한다. 비록 5등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3푼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는 시상하지 않는다. 동등冬等 시사는 마재馬才의 경우 초등은 목면과 포 각 2필, 상상은 목면 1필·포 2필, 상중은 목면과 포 각 1필, 상하는 목면 1필이다.

쌍마재雙馬才의 경우 초등은 목면 2필·포 3필, 상상은 목면과 포 각 2필, 상중은 목면 1필·포 2필, 상하는 목면과 포 각 1필이다.

별기의 초등은 목면 2필, 상상은 목면과 포 각 1필, 상중은 목면 1필, 상하는 포 1필로 시상한다.

1. 각 초와 색의 군병의 하등 시사는 기예技藝 1차次, 동등 시사는 조총鳥銃 3방放이다. 조총은 관 2중·변 1중 이상이면 별단으로 서계하고, 변 3중 이상이면 목면 2필·포 1필이며[아직 말[斗]⁶⁹에 준하지 않았다면 2말을 올려주고, 이미 말에 준하였으면 승금陞禁⁷⁰한다.] 관 2중이면 목면 2필, 변 2중 이상이면 목면과 포 각 1필[이상 아직 말에 준하지 않았다면 1말을 올려준다.], 관 1중이면 목면

69 말[斗] : 점수의 일종이다. 9말까지 올려주고, 9말 이상은 승금(陞禁)하였다.

70 승금(陞禁) : 금군으로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1필, 변 1중이면 시상하지 않는다.

포廩 대신 실시하는 유엽전에서 5중이면 별단으로 서계하고, 4중이면 직부 회시, 3중[관과 변을 논하지 않는다.]은 궁자 1장[아직 말에 준하지 않았다면 2말을 올려주고, 이미 말에 준하였으면 승급한다.], 관 2중이면 전축 200개, 관과 변에 각 1중이면 전축 150개, 변 2중이면 전축 100개[이상 아직 말에 준하지 않았다면 1말을 올려 준다.], 관 1중이면 전축 50개, 변 1중이면 시상하지 않는다. 기예의 상격은 선기대의 별기別技와 동일하게 한다.

1. 차비 무사差備武士 및 궁시인은 유엽전 4중 이상이면 품지한 다음 거행하고, 변 3중 이상이면 궁자 1장, 변 2중 이상이면 전축 200개, 변 1중 이상이면 전축 100개, 서리와 서사는 매 등마다 각각 목면 1필을 시상한다.
1. 한 해 걸러 대비교大比較를 할 때에, 장관과 장교의 유엽전이 4중이나 5중이면 출신은 가자하고, 한량은 직부 전시한다. 3중 5푼 이상⁷¹은 출신은 숙마첩을, 한량은 직부 전시하며, 3중 4푼은 출신은 변장에 제수하며 한량은 직부 전시한다. 3중이면 아마첩[혹은 동개 1부], 2중이면 상현궁 1장, 1중이면 목면 1필을 시상한다.

71 3중 5푼 이상 : 유엽전에서 3중이면서 관에 2중(4푼), 변에 1중(1푼)인 경우이다. 유엽전의 경우 관[과녁]이 변[표적] 안의 1/3 크기이다. 관과 변 상관없이 1푼을 주는 경우도 있고, 관을 두 배로 쳐서 2푼을, 변은 1푼을 주는 경우도 있다. 표적에 맞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4중이나 5중이 가장 높은 점수였고, 3중인 경우는, 3중 6푼(관에 3중), 3중 5푼, 3중 4푼 등의 편차가 있다. 단순히 3중이라고만 하면 변에 3중을 하였다는 것이다.



기추가 4중이나 5중이면 출신은 가자하고 한량은 직부 전시한다. 3중이면 출신은 반숙마첩, 한량은 직부 회시하고, 2중이면 상현궁 1장과[혹은 궁현사弓弦絲 1근] 전죽 100개, 1중이면 목면 1필[장관은 유엽전의 경우 3중 6푼에서 4푼까지이고 또 기추 3중으로 입격한 자는 한량은 장교의 시상과 동일하고, 그 나머지는 때에 따라 품지한다.]을 시상한다.

1. 마군은 유엽전·기추·편추鞭薊⁷² 3개의 기예를 합산하여 점수를 계산하는데[유엽전은 관과 변 모두 1푼이다. ○기추는 배회倍劃⁷³한다. ○편추는 6중은 2푼, 4중이나 5중은 1푼이다.], 8푼 이상은 숙마첩, 7푼은 반숙마첩, 6푼은 아마첩, 5푼은 목면 2필[이상 한량은 승급한다.], 4푼은 목면 1필을 시상한다.

1. 보군은 기예 2차, 조총 3방 등 3가지 기예를 통합하여 점수를 계산하는데[조총은 관과 변 모두 1푼이다. ○관 2중은 3푼이다. ○기예가 초등이면 4푼이다. ○상상은 3푼이다. ○상중은 2푼이다. ○상하는 1푼이다.], 7푼 이상은 숙마첩, 6푼은 반숙마첩, 5푼은 아마첩, 4푼은 목면 2필[이상 한량은 승급한다.], 3푼은 목면 1필[한량은 조총 3중 5푼에서 변 3중까지는 승급, 7말[척]에서 8말에 이르는 군은 포술을 통산하여 매 1푼마다 1말씩을 올려주고, 9말에서 그친다.]을 시상한다.

72 편추(鞭薊) : 말을 타고 달리면서 편곤을 이용하여 짚 인형을 공격하는 무예이다.

73 배회(倍劃) : 점수를 배로 더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1. 마군 가운데 유엽전에서 물기한 자와 보군 가운데 조총에서 관 3
중인 자는 모두 직부 전시한다. 장관 이하 마보군 가운데 별기에서
초등한 자에게는 목면 2필·포 1필, 상상이면 목면과 포 각 1필,
상중이면 목면 1필, 상하이면 포 1필을 시상한다.
1. 사후군伺候軍·공장·아병이 조총 3방에서 관 3중이면 직부 전시한
다. 관 2중·변 1중이면 목면 2필, 포 1필[공장은 승급한다.] 관 1
중·변 2중이면 목면 1필, 포 1필[공장은 승급한다.], 변 3중이면
포 3필[공장은 승급한다.], 관 2중이면 목면 2필, 관 1중·변 1중이
면 목면과 포 각 1필, 변 2중이면 포 2필, 관 1중이면 목면 1필, 변
1중이면 포 1필을 시상한다.
1. 향군이 소재한 고을의 지방관이 유엽전에서 3중 4품 이상이면 품
지한 다음 거행하고, 관과 변에 1중 이상이면 궁시 1부, 변 2중이
면 궁전 1부, 변 1중 이상이면 상현궁 1장을 시상한다.
1. 향무사 및 시소試所의 고을에서 거행한 장교가 유엽전에서 3중 4품
이상이면 출신은 가자하고, 이미 가자했으면 변장에 제수하며, 한
량은 직부 전시한다. 변 3중이면 동개 1부, 한량은 직부 회시한다.
관 2중이면 아마첩, 관과 변에 각 1중이면 궁시 1부[혹 상현궁 1
장], 변 2중이면 궁전 1부[혹 상현궁 1장], 관 1중이면 상현궁 1장
[혹 전축 100개], 변 1중이면 전축 100개를 시상한다.
기추는 3중 이상이면 출신은 가자하고 한량은 직부 전시, 2중이면
궁전 1부[은 상현궁 1장], 1중이면 상현궁 1장[혹 전축 100개]을
시상한다.



1. 향군은 유엽전이 3중 4푼이거나, 조총에서 변 3중 이상이면 모두 직부 전시하고, 유엽전에서 변 3중이면 직부 회시한다[후차後次的 시사에서 관과 변에 1중 이상으로 입격하면 직부 전시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모두 계산해서 7푼 이상이면 직부 전시, 6푼이면 직부 회시, 5푼이면 아마첩[혹 동개 1부], 4푼이면 동개 1부[혹 목면 2필], 3푼이면 목면과 포 각 1필, 2푼이면 목면 1필, 1푼이면 포 1필[혹 미 2말]을 시상한다.
1. 장관·장교·군병이 공무로 외방에 나가서 참석하지 못한 경우, 장관과 장교에게는 목면 1필, 군병에게는 포 1필을 시상한다.
1. 서리와 서사에게는 각각 목면과 포 1필을, 글씨를 잘 쓰는 서리와 서사에게는 각각 목면 1필을 더하여 시상한다.
1. 중일 시사中日試射⁷⁴ 때에 장관·장교·선기대는 유엽전과 기추를 막론하고 5중이면 별단으로 서계하고, 4중이면 전축 100개를 시상한다. 보군은 조총에서 관 3중이면 별단으로 서계하고, 변 3중 및 기예가 초등한 경우 1년에 한하여 승급한다[승급 첩문陞禁帖文은 본영에서 만들어 준다.]. 1년 내에 몰기하거나 초등인 자는 영구히 승급해 주며, 이미 승급한 자에게는 아마첩[무예청의 예대로 목면

74 중일 시사(中日試射) : 조선시대에 중일(中日)마다 행하던 사격술(射擊術)의 시험이다. 궁내에 입직하여 숙위하는 선전관(宣傳官)·무겸(武兼)·부장(部將)·수문장(守門將)·금군(禁軍)·호위군관(扈衛軍官)·총익위(忠翊衛)·무예포수(武藝砲手)·살수(殺手)·기대장(旗隊長)·숙위기사(宿衛騎士)·포수(砲手) 등에게 중일마다 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조총(鳥銃) 등으로 사격을 시험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상을 주거나 전시(殿試)에 응시하게 하였다.

과 포를 지급한다.]을 시상한다.

1. 서충대瑞憲臺에서 시사할 때에, 장관과 장교가 유엽전에서 관 1중·변 2중 이상이면 출신은 가자하고 한량은 직부 전시한다. 변 3중이면 동개 1부, 관과 변에 각 1중이면 궁시 1부, 변 2중이면 궁전 1부, 관 1중이면 후궁幬弓 1장, 변 1중이면 장궁 1장을 시상한다.

기추의 경우 3중 이상이면 출신은 가자하고 한량은 직부 전시한다. 2중이면 궁전 1부, 1중이면 전죽 100개를 시상한다.

선기대의 경우 마재馬才에서 초등한 자는 목면 3필, 상상이면 목면 2필·포 1필, 상중이면 목면과 포 각 1필, 상하면 목면 1필을 시상한다. 별기別技에서 초등한 자는 목면 2필, 상상이면 목면과 포 각 1필, 상중이면 목면 1필, 상하면 포 1필을 시상한다.

1. 장관이 사강射講⁷⁵할 때에 소포小布에서 연이어 5순巡을 전포全布⁷⁶한 경우, 유엽전에서 연이어 3순을 모두 맞힌 경우, 편전片箭⁷⁷에서 연이어 2순을 모두 맞힌 경우, 기추에서 연이어 3차를 물기한 경우, 강진講陣에서 연이어 5차를 모두 통通한 경우에는 모두 별단으로 서계한다.

75 사강(射講) : 무신의 궁술과 강서, 진법 등을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76 전포(全布) : 화살을 목표 주변에 전부 맞히는 것을 지칭한다.

77 편전(片箭) : 1천 보(步) 이상의 먼 거리를 쏠 수 있는 가늘고 짧은 화살이다. 화살의 크기가 작아 일명 '아기살' 이라고 하는데, 나무로 만든 대롱(筒兒)에 넣고 쏘았다.



소포 45시⁷⁸ 이상, 유엽전 30시 이상, 편전 관 3중인 경우에는 모두 궁자 1장과 목면 2필을 시상한다. 소포 40시 이상, 유엽전 25시 이상, 편전 변 3중, 기추 5중인 경우에는 모두 궁자 1장, 강진에서 모두 순통⁷⁸한 경우에는 3일간 입번을 감해준다.

소포에서 8시를 채우지 못하고, 유엽전에서 4시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초차⁷⁸에는 벌로 3일 입번하고, 재차⁷⁸에는 6일을 입번하고, 3차⁷⁸에는 15일을 입번하고, 4차⁷⁸에는 곤장으로 다스리며, 5차⁷⁸에는 태거⁷⁸시킨다. 소포와 유엽전에서 점수가 없는 자 또한 태거시킨다.

강진에서 모두 불⁷⁸을 받은 경우는 초차에는 벌로 3일 입번하고, 재차에는 6일 입번하고, 3차에는 곤장으로 다스리고, 4차에는 태거시키며, 연말에 도합하여 계산해서 1등을 한 자는 별단으로 서계하고 대내에서 내리는 죽전 100개로 시상한다.

1. 지구관과 교련관이 사강을 할 때에, 소포 50시를 연이어 5순을 전포한 경우에는 별단으로 서계한다. 45시 이상은 궁자 1장과 미마 1섬⁷⁸, 40시 이상은 궁자 1장을 시상한다. 4시를 채우지 못한 경우 벌로 3일을 입번시킨다. 1년을 도합하여 계산해서 1등을 한 경우 궁자 1장, 전죽 100개를 시상하고, 꼴찌한 자는 벌로 6일을 입번시킨다[별무사도 동일하다.].

78 순통(純通) : 보통의 강경시에는 순(純), 통(通), 조(粗), 락(略), 불(不)의 다섯 등급이며 혹은 순통(純通), 순조(純粗), 순락(純略), 불통(不通)의 네 등급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강진은 3개월을 계산해서 1등을 한 경우 궁전 1부를 시상하며, 꼴찌를 한 경우 벌로 3일을 입번시킨다. 연이어 6차에서 24번 ‘불’을 받은 경우 태거한다[그 사이에 미처 차례에 준하지 못한 경우에는 논하지 않는다.]. 1년을 도합하여 계산하며 1등을 한 경우 동개 1부를 시상하고 꼴찌를 한 경우 벌로 6일을 입번하게 한다.

1. 장용위의 강진은 1년을 도합하여 계산하며, 1등인 경우 궁전 1부를 시상하며, 꼴찌인 경우 벌로 6일을 입번시키며, 12차에서 24번 모두 ‘불’을 받은 경우에는 태거한다[그 사이에 미처 차례에 준하지 못한 경우에는 논하지 않는다.].

4폭 소포四幅小布 10순에서 연이어 5순을 전포한 자는 별단으로 서계하며, 4시를 채우지 못한 자는 벌로 3일을 입번시킨다. 1년을 도합하여 계산하며[유엽전·기추·마기馬技도 동일하다.] 1등인 경우 궁전 1부를 시상하며, 꼴찌인 경우 벌로 6일을 입번하게 한다.

1. 한번하는 향군이 시사방試射放을 할 때에, 영군領軍·장령將領 및 향군은 유엽전에서 변 3중 이상이면 품지하고, 관 2중이면 궁시 1부, 변 2중 이상이면 궁전 1부, 관 1중이면 궁자 1장, 변 1중이면 전죽 100개를 시상한다.

편전에서 2중 이상이면 품지하고, 변 1중이면 궁자 1장을 시상한다. 조총에서 관 1중·변 2중 이상이면 품지하고, 변 3중이면 목면 3필, 관 2중이면 목면 2필, 변 2중 이상이면 목면과 포 각 1필, 관 1중이면 목면 1필, 변 1중이면 포 1필을 시상한다.

기예에서 초등超等한 경우 목면 2필, 상상은 목면과 포 각 1필, 상



중은 목면 1필, 상하는 포 1필을 시상한다. 강진은 모두 통인 경우 목면 2필, 강은 통이고 진은 약略인 경우 목면과 포 각 1필, 강진이 모두 약인 경우 목면 1필, 강은 약이고 진은 조粗인 경우 포 1필, 강진이 모두 조인 경우 모자帽子 2립立을 시상한다.

입격을 하지 못한 군병에게는 회량미回糧米 2말[내], 병으로 응시하지 못한 군병에게는 회량목回糧木 1필匹을 시상하며, 시사방을 설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량목을 매 3명마다 1필씩을 마련하여 값을 지급한다.

1. 선기대의 사습私習은 춘등과 추등에 계산하는데 매 등마다 마재의 1등은 미米 3말을, 별기의 1등은 미 2말을, 유엽전과 기추의 1등은 각각 미 1말을 주며, 교관과 교사教師에게는 각각 궁자 1장을 시상한다.

1. 서패 및 원군元軍, 능마이能磨兒는 매년 두 차례 계산하는데, 매 등마다 1등은 목면과 포 각 1필, 2등은 목면 1필, 3등은 포 1필을 시상한다[초차에 꼴찌한 자는 별로 3일을 입번하고, 재차에는 6일을 입번하고, 3차에는 곤장으로 다스린다.].

1. 대년군待年軍⁷⁹과 능마이는 매년 두 차례 계산하는데, 매 등마다 1등은 원군元軍으로 올려준다.

1. 기대총旗家總과 능마이는 연말에 계산하는데, 1등은 6일의 입번을

79 대년군(待年軍) : 정규군의 아들이나 손자로 아직 16세가 되지 않은 사내아이를 이른다.

감해주고, 2등과 3등은 각각 3일의 입번을 감해준다.

1. 경군京軍이 사습할 때에, 조총 3발發로 6중이면 목면 1필을 시상하며, 향군이 사습할 때에, 조총 3발로 6중 및 연이어 3차례 몰기한 경우는 모두 직부 전시한다. 재차에서 몰기한 경우는 다시 시험을 치른다.

소포에서 2중 이상 및 초차에 몰기한 경우에 다시 시험을 치르며, 소포에서 3중 이상이면 직부 전시하고, 재차에서 몰기한 경우에는 다시 시험을 치른다. 소포에서 1중[비록 아직 입격하지 않았더라도 직부 회시한다.] 및 초차에 몰기한 경우에는 다시 시험을 치르고, 소포에서 2중인 경우 직부 회시하고, 초차에 몰기한 경우에는 다시 시험을 치른다. 소포에서 1중이면 목면과 포 각 1필[아직 입격하지 않았으면 목면 1필 ○만일 조총으로 다시 시험을 치러서 2중이면 직부 전시하고, 1중이면 특교가 있을 경우 직부 전시하고 특교가 없으면 소포의 상과 동일하게 한다.], 몰기한 사람 가운데 영수를 내리기 전에 내려간 자에게는 목면 1필을 시상한다.

1. 장관과 장교의 말을 점고點考할 때에 개인 말이 일비一肥면 목면 1필, 삼기三旗를 달리면 포 1필을 준다. 수척한 말에 대해서는 경중을 나누어서 곤장으로 다스리거나 혹은 벌번罰番하게 한다. 날을 정하여 외양喂養하는데, 만일 기름지고 튼실하게 하지 못하면 별도로 논감하되, 모두 품지한 다음 거행한다.

1. 선기대의 개인 말이 일비이고 삼기를 달리면 목면 2필[관마는 목면과 포 각 1필 ○단비單肥나 단기單旗를 논하지 않는다.], 일비이고



이기를 달리면 목면과 포 각 1필[관마는 목면 1필], 일비이고 일기를 달리면 목면 1필, 이비이고 삼기를 달리면 목면과 포 각 1필[관마는 목 1필] 삼비이고 삼기를 달리면 목면 1필을 시상한다. 수척한 말은 관마와 사마를 막론하고 곤 5도度を 친 뒤에 7일을 물려정한 다음 외양한다.

1. 사냥할 때에 대호大虎 1두頭를 잡아 바친 영군장領軍將에게 동개 1부 [사렵私獵⁸⁰의 경우에는 없다.], 첫 번째로 죽인 군병에게는 목면 5필과 포 3필,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죽인 군병에게는 각각 목면 4필과 포 2필을 준다. 중호中虎를 잡아 바친[중표中豹도 동일하다.] 영군장에게는 궁시 1부[사렵의 경우에는 없다.], 첫 번째로 죽인 군병에게는 목면 4필과 포 2필을,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죽인 군병에게는 각각 목면 3필과 포 1필을 준다. 소호小虎를 잡아 바친[소표小豹도 동일하다.] 영군장에게는 궁전 1부[사렵의 경우에는 없다.], 첫 번째로 죽인 군병에게는 목면 3필과 포 1필,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죽인 군병에게는 각각 목면 2필과 포 1필을 시상한다[대·중·소호의 대거상對擧賞은 목면 각 1필로 모두 들인다. ○비록 초기로 거행할 때에도 내하상 및 대거상은 동일하다.].
1. 연이어 세 차례 호랑이를 잡은[대·중·소호 모두 동일하다.] 영군장은 가자하고, 대년군待年軍 중에서 대호 1두를 잡아 낸 자에게는

80 사렵(私獵) : 강무장(講武場)에 들어가 몰래 사냥을 하던 일을 말한다. 이는 금지된 행위로서 나라에서 엄벌을 가하였다.

[중호는 2두, 소호는 3두] 곧 바로 원군元軍으로 올린다.

1. 큰 사슴·곰·돼지를 먼저 잡아 죽인 군병에게는 목면 2필, 두 번째로 잡아 죽인 군병에게는 목면과 포 각 1필, 중간 크기 사슴·오소리[土獺]의 경우 각각 목면과 포 1필, 작은 사슴 및 노루의 경우 목면 1필, 가마우지[鷗]·거위[鵞] 및 까마귀[鵙]인 경우 각각 미米 3말[斗], 꿩[雉]·오리[鴨]는 각각 미 1말을 시상한다.
1. 행행行幸할 때에 어전 전배御前前排를 담당하는 지구관에게는 궁전 1부[대내에서 내려준다.], 목면 2필[훈련도감 ○경숙經宿하는 경우에는 1필을 더해준다.], 초요기招搖旗 담당과 집조執操·집기執旗·취타吹打·행군 등을 담당하는 지구관에게는 각각 궁전弓箭 1부[대내에서 내려준다.], 어전 전배에게는 각각 목면 1필[대내에서 내려준다.], 대거상으로 목면 2필[훈련도감 ○경숙하는 경우에는 1필을 더해준다.], 신전수信箭手에게는 목면 2필[대내에서 내려준다.], 대거상으로 목면 2필과 포 1필[훈련도감 ○경숙하는 경우에는 1필을 더해준다.], 취타수吹打手에게는[어전에서 거행할 경우에만] 각각 목면 2필[호조], 초요기수招搖旗手에게는 목면 1필, 대장소의 관이貫耳·영전수令箭手·열패두列牌頭·회자수劄子手·대기수大旗手에게는[기旗를 들 때만] 각각 목면 1필[본영], 험마挾馬와 순뢰巡率에게는 각각 목면 1필[대내에서 내려준다.]을 시상한다.
1. 별사射別試射 할 때에, 장관과 장교가 유엽전에서 관 1중·변 2중 이상이면 출신은 가자하고 한량은 직부 전시하고, 변 3중이면 출신은 숙마첩을, 한량은 직부 전시하며, 관 2중이면 출신은 반숙마첩, 한량은 직부 회시한다. 변 2중 이상이면 아마첩을, 관 1중이면 상현궁 1장, 변 1중이면 부장궁不粧弓 1장을 시상한다.



편전에서 관과 변 1중 이상이면 출신은 가자하고, 한량은 직부 전시, 변 2중이면 한량은 직부 회시[출신은 가자하거나 혹 승륙(陞六)한다.], 변 1중 이상이면 상현궁 1장을 시상한다.

군병이 조총에서 관 2중·변 1중 이상이면 직부 전시하고, 변 3중 이상이면 한량은 승금(陞禁)[이미 승금하였으면 목면 4필], 관 2중이면 목면 2필과 포 1필, 변 2중 이상이면 목면 2필, 변 1중 이상이면 목면과 포 각 1필을 시상한다. 기예에서 상상인 경우 목면 3필, 상중이면 목면 2필, 상하면 목면 1필을 시상한다.

1. 향군 세 초(哨)가 상변할 때, 매 초마다 거느리는 감색 2인에게는 매차마다 목면과 포 각 1필, 호송하는 감색 2인에게는 매차마다 각각 목면 1필을 시상한다.
1. 별무사의 강진(講陣)에 대한 상벌은 지구관과 교련관의 예대로 시행한다.

施賞

- 一. 每年等試射時, 將官, 柳葉箭, 邊三中以上, 陞叙[將校, 貫一中·邊二中以上, 熟馬帖, 邊三中, 半熟馬帖], 邊二中以上, 弓箭一部[將校, 弓子一張]. 邊一中以上, 弓子一張[將校, 箭竹一百箇], 小布, 五中, 直赴殿試, 四中, 直赴會試[有特教, 則直赴殿試 ○以上將校同], 三中, 弓子一張, 箭竹五十箇[將校, 弓子一張], 二中, 箭竹二百箇[將校, 一百箇], 一中, 箭竹一百箇[將校, 五十箇], 施賞爲白齊.
- 一. 壯勇衛, 夏冬兩等, 通左右列, 分等計劃[柳葉箭, 貫與邊, 皆一分, 騎蒭, 勿爲倍劃]. 取五分以上, 毋過五十人[每等同分, 過定數比較, 則騎蒭倍劃, 貫加計半劃, 而又爲同分, 則從資級及座次, 陞付], 而一等一人, 出身加資[冬等, 則邊將除授], 二等二人, 付上護軍, 三等二人, 付司果, 四等五人, 熟馬帖, 五等五人, 半熟馬帖, 六等五人, 兒馬帖, 七等五人, 筒箇一部, 八等五人, 弓矢一部, 九等五人, 弓箭一部, 十等十人, 弓子一張. 雖未滿十等, 未及五分者, 勿許施賞. 各技中, 如有沒技, 則別單書啓[雖在等內, 勿拘疊賞]爲白乎旂, 春等騎蒭, 四中以上, 稟旨舉行, 三中熟馬帖[或筒箇一部], 二中, 箭竹一百箇, 一中勿施. 秋等別技, 超等, 木二疋, 上上, 木·布各一疋, 上中, 木一疋, 上下, 布一疋施賞爲白齊.
- 一. 善騎隊, 夏等, 則每哨分等計劃. 取三分以上, 毋過五十二人[計劃之規, 同分陞付之法, 同壯勇衛例], 而一等三人, 熟馬帖, 二等六人, 半熟馬帖, 三等九人, 兒馬帖, 四等十四人, 弓箭一部, 五等



二十人，箭竹一百箇，雖未滿五等，未及三分者，勿許施賞爲白乎旆，冬等，則馬才，超等，木·布各二疋，上上，木一疋·布二疋，上中，木·布各一疋，上下，木一疋，雙馬才，超等，木二疋·布三疋，上上，木·布各二疋，上中，木一疋·布二疋，上下，木·布各一疋，別技，超等，木二疋，上上，木·布各一疋，上中，木一疋，上下，布一疋施賞爲白齊。

- 一. 各哨·色軍兵，夏等，技藝一次，冬等，鳥銃三放，鳥銃，貫二中·邊一中以上，別單書啓，邊三中以上，木二疋·布一疋[未准斗陞二斗，已准斗陞禁]，貫二中，木二疋，邊二中以上，木·布各一疋[以上未准斗陞一斗]，貫一中，木一疋，邊一中，勿施。砲代柳葉箭，五中，別單書啓，四中，直赴會試，三中[勿論貫邊]，弓子一張[未准斗陞二斗，已准斗陞禁]，貫二中，箭竹二百箇，貫·邊中，箭竹一百五十箇，邊二中，箭竹一百箇[以上未准斗陞一斗]，貫一中，箭竹五十箇，邊一中，勿施。技藝賞格，與善騎隊別技同爲白齊。
- 一. 差備武士，及弓矢人，柳葉箭，四中以上，稟旨舉行，邊三中以上，弓子一張，邊二中以上，箭竹二百箇，邊一中以上，箭竹一百箇，書吏·書寫，每等各木一疋施賞爲白齊。
- 一. 間年大比較時，將官·將校，柳葉箭，四五中，出身加資，閑良直赴殿試，三中五分以上，出身熟馬帖，閑良直赴殿試，三中四分，出身邊將除授，閑良直赴殿試，三中，兒馬帖[或筒箇一部]，二中，上弦弓一張，一中，木一疋。騎筈，四五中，出身加資，閑良直赴殿試，三中，出身半熟馬帖，閑良直赴會試，二中，上弦弓一張[或弓弦絲一斤]，箭

竹一百箇，一中，木一疋[將官，則柳葉箭，三中六分，至四分，及騎
箭，三中入格者，閑良同將校賞，餘則臨時稟旨]，施賞爲白齊。

一. 馬軍柳葉箭·騎箭·鞭箭，三技通同計劃[柳葉箭，貫與邊，皆一分○
騎箭倍劃○鞭箭六中二分，四五中一分]，八分以上，熟馬帖，七分，
半熟馬帖，六分，兒馬帖，五分，木二疋[以上閑良陞禁]，四分，木一
疋施賞爲白齊。

一. 步軍，技藝二次，鳥銃三放，三技通同計劃[鳥銃，貫與邊，皆一分○
貫二中，則三分○技藝，超等，四分○上上，三分○上中，二分○
上下，一分]，七分以上，熟馬帖，六分，半熟馬帖，五分，兒馬帖，四
分，木二疋[以上閑良陞禁]，三分，木一疋[閑良，則鳥銃三中五分，
至邊三中，陞禁，七斗至八斗，軍通砲藝，每一分，陞一斗，止九斗]，
施賞爲白齊。

一. 馬軍之柳葉箭沒技者，步軍之鳥銃貫三中者，竝直赴殿試。將官以
下，馬步軍，別技，超等，木二疋·布一疋，上上，木·布各一疋，上
中，木一疋，上下，布一疋施賞爲白齊。

一. 伺候軍·工匠·牙兵，鳥銃三放，貫三中，直赴殿試。貫二中·邊一中，
木二疋·布一疋[工匠陞禁]，貫一中·邊二中，木一疋·布一疋[工匠
陞禁]，邊三中，布三疋[工匠陞禁]，貫二中，木二疋，貫邊中，木·布各
一疋，邊二中，布二疋，貫一中，木一疋，邊一中，布一疋施賞爲白齊。

一. 鄉軍所在邑地方官，柳葉箭，三中四分以上，稟旨舉行，貫·邊中
以上，弓矢一部，邊二中，弓箭一部，邊一中以上，上弦弓一張施賞爲
白齊。



- 一. 鄉武士, 及試所邑舉行將校, 柳葉箭, 三中四分以上, 出身加資, 已加資邊將除授, 閑良直赴殿試. 邊三中, 筒箇一部, 閑良, 直赴會試. 貫二中, 兒馬帖, 貫·邊中, 弓矢一部[或上弦弓一張], 邊二中, 弓箭一部[或上弦弓一張], 貫一中, 上弦弓一張[或箭竹一百箇], 邊一中, 箭竹一百箇. 騎葛, 三中以上, 出身加資, 閑良直赴殿試, 二中, 弓箭一部[或上弦弓一張], 一中, 上弦弓一張[或箭竹一百箇], 施賞爲白齊.
- 一. 鄉軍, 柳葉箭, 三中四分, 鳥銃, 邊三中以上, 竝直赴殿試, 柳之邊三中, 直赴會試[後次試射, 貫·邊以上, 入格, 則直赴殿試]. 其餘通同計劃, 七分以上, 直赴殿試, 六分, 直赴會試, 五分, 兒馬帖[或筒箇一部], 四分, 筒箇一部[或木二疋], 三分, 木·布各一疋, 二分, 木一疋, 一分, 布一疋[或米二斗], 施賞爲白齊.
- 一. 將官·將校·軍兵之因公出使, 未叅者, 將官·將校, 木一疋, 軍兵, 布一疋施賞爲白齊.
- 一. 書吏·書寫, 各木·布各一疋, 繕寫書吏·書寫, 各加木一疋施賞爲白齊.
- 一. 中日時, 將官·將校·善騎隊, 勿論柳葉箭·騎葛, 五中, 別單書啓, 四中, 箭竹一百箇. 步軍, 鳥銃, 貫三中, 別單書啓, 邊三中以上, 及技藝超等, 限周年陞禁[陞禁帖文, 本營成給]. 周年內, 沒技·超等者, 永爲陞禁. 已陞禁者, 兒馬帖[依武藝廳例, 木·布上下], 施賞爲白齊.
- 一. 瑞蔥臺時, 將官·將校, 柳葉箭, 貫一中·邊二中以上, 出身加資, 閑良直赴殿試. 邊三中, 筒箇一部, 貫·邊中, 弓矢一部, 邊二中, 弓箭

一部, 貫一中, 幟弓一張, 邊一中, 長弓一張. 騎蓐, 三中以上, 出身加資, 閑良直赴殿試. 二中, 弓箭一部, 一中, 箭竹一百箇. 善騎隊, 馬才, 超等, 木三疋, 上上, 木二疋·布一疋, 上中, 木·布各一疋, 上下, 木一疋. 別技, 超等, 木二疋, 上上, 木·布各一疋, 上中, 木一疋, 上下, 布一疋施賞爲白齊.

一. 將官射講時, 小布, 連五巡全布, 柳葉箭, 連三巡俱中, 片箭, 連二巡俱中, 騎蓐, 連三次沒技, 講陣, 連五次俱通, 竝別單書啓. 小布, 四十五矢以上, 柳葉箭, 三十矢以上, 片箭之貫三中, 竝弓子一張·木二疋. 小布, 四十矢以上, 柳葉箭, 二十五矢以上, 片箭, 邊三中, 騎蓐, 五中, 竝弓子一張, 講陣, 俱純通, 減番三日. 小布, 未滿八矢, 柳葉箭, 未滿四矢, 初次罰番三日, 再次六日, 三次十五日, 四次決棍, 五次汰去. 小布·柳葉箭無分者, 亦爲汰去. 講陣, 俱不者, 初次罰番三日, 再次六日, 三次決棍, 四次汰去爲白乎跡, 年終都計劃, 居首別單書啓, 內下箭竹一百箇施賞爲白齊.

一. 知穀官·教錄官射講時, 小布五十矢, 連五巡全布, 別單書啓, 四十五矢以上, 弓子一張·米一石, 四十矢以上, 弓子一張. 未滿四矢, 罰番三日. 一年都計劃, 居首, 弓子一張·箭竹一百箇施賞, 居末, 罰番六日[別武士同]. 講陣, 三朔計劃, 居首, 弓箭一部施賞, 居末, 罰番三日. 連六次純, 二十四不者, 汰去[間不及未准次, 勿論]. 一年都計劃, 居首, 筒箇一部施賞, 居末, 罰番六日爲白齊.

一. 壯勇衛講陣, 一年都計劃, 居首, 弓箭一部施賞, 居末, 罰番六日, 十二次, 純二十四不者, 汰去[間不及未准次, 勿論]. 四幅小布十巡, 連五巡,



全布者, 別單書啓, 未滿四矢者, 罰番三日. 一年都計劃[柳葉箭·騎
蒭·馬技同], 居首, 弓箭一部施賞, 居末, 罰番六日爲白齊.

- 一. 下番鄉軍, 試射放時, 領軍·將領, 及鄉軍, 柳葉箭, 邊三中以上, 稟
旨, 貫二中, 弓矢一部, 邊二中以上, 弓箭一部, 貫一中, 弓子一張,
邊一中, 箭竹一百箇. 片箭, 二中以上, 稟旨, 邊一中, 弓子一張. 鳥
銃, 貫一中·邊二中以上, 稟旨, 邊三中, 木三疋, 貫二中, 木二疋,
邊二中以上, 木·布各一疋, 貫一中, 木一疋, 邊一中, 布一疋. 技
藝, 超等, 木二疋, 上上, 木·布各一疋, 上中, 木一疋, 上下, 布一
疋. 講陣, 俱通, 木二疋, 講通陣略, 木·布各一疋, 講陣俱略, 木一
疋, 講略陣粗, 布一疋, 講陣俱粗, 帽子二立. 未入格軍, 回糧米二
斗, 病未應試軍, 回糧木一疋, 施賞爲白乎旆, 試射放, 不爲設行, 則
回糧木, 每三名一疋式磨鍊, 上下爲白齊.
- 一. 善騎隊私習, 春秋計劃, 每等, 馬才居首, 米三斗, 別技居首, 米二斗,
柳葉箭·騎蒭居首, 各米一斗, 教官·教師, 各弓子一張施賞爲白齊.
- 一. 書牌及元軍·能麼兒, 每年兩次計劃, 每等居首, 木·布各一疋, 第
二, 木一疋, 第三, 布一疋施賞[初次居末, 罰番三日, 再次六日, 三
次決棍]爲白齊.
- 一. 待年軍·能麼兒, 每年兩次計劃, 每等居首, 陞元軍爲白齊.
- 一. 旗隊摠·能麼兒, 年終計劃, 居首, 減番六日, 第二·第三, 各減番三
日爲白齊.
- 一. 京軍私習時, 鳥銃, 三發六中, 木一疋施賞爲白乎旆, 鄉軍私習時, 鳥
銃, 三發六中, 及連三次沒技者, 竝直赴殿試. 再次沒技, 更試. 小

布, 二中以上, 及初次沒技, 更試, 小布, 三中以上, 直赴殿試, 再次沒技, 更試. 小布, 一中[雖未入格, 直赴會試], 及初次沒技, 更試, 小布, 二中, 直赴會試, 初次沒技, 更試. 小布, 一中, 木·布各一疋[未入格, 則木一疋 ○若以鳥銃, 更試, 二中, 則直赴殿試, 一中, 則有特教直赴殿試, 如無特教, 同小布賞], 沒技人中, 令前下去者, 木一疋施賞爲白齊.

一. 將官·將校馬點時, 私馬一肥, 木一疋, 走三旗, 布一疋. 瘦馬分輕重, 決棍, 或罰番. 定日喂養, 如不肥健, 則別爲論勘爲白乎矣, 竝稟旨舉行爲白齊.

一. 善騎隊私馬, 一肥走三旗, 木二疋[官馬, 木·布各一疋 ○單肥·單旗勿論], 一肥, 走二旗, 木·布各一疋[官馬, 木一疋], 一肥, 走一旗, 木一疋, 二肥, 走三旗, 木·布各一疋[官馬, 木一疋], 三肥, 走三旗, 木一疋施賞. 瘦馬段, 勿論官私馬, 決棍五度後, 退定七日, 喂養爲白齊.

一. 行獵時, 大虎一頭捉納, 領軍將, 筒箇一部[私獵, 則無], 先殺軍, 木五疋·布三疋, 再殺·三殺軍, 各木四疋·布二疋. 中虎[中豹同], 領軍將, 弓矢一部[私獵, 則無] 先殺軍, 木四疋·布二疋, 再殺·三殺軍, 各木三疋·布一疋. 小虎[小豹同], 領軍將, 弓箭一部[私獵, 則無], 先殺軍, 木三疋·布一疋, 再殺·三殺軍, 各木二疋·布一疋施賞[大中小虎對舉賞, 木各一疋, 竝入 ○雖草記舉行之時, 內下賞及對舉賞同]爲白齊.

一. 連三次捉虎[大中小虎同], 領軍將加資, 待年軍中, 捉納大虎一頭者



[中虎, 則二頭, 小虎, 則三頭], 直陞元軍爲白齊.

- 一. 大鹿·熊·猪, 則先殺軍, 木二疋, 再殺軍, 木·布各一疋, 中鹿·土猪, 各木·布各一疋, 小鹿及獐, 木一疋, 鷓·鵝及鴉, 各米三斗, 雉·鴨, 各米一斗施賞爲白齊.
- 一. 行幸時, 御前前排次知知穀官, 弓箭一部[內下], 木二疋[訓局 ○經宿, 則加一疋], 招搖旗次知, 執操·執旗·吹打·行軍等次知知穀官, 各弓箭一部[內下], 御前前排, 各木一疋[內下], 對舉賞, 木二疋[訓局 ○經宿, 則加一疋], 信箭手, 木二疋[內下], 對舉賞, 木二疋·布一疋[訓局 ○經宿, 則加一疋], 吹打手[御前舉行時益], 各木二疋[戶曹], 招搖旗手, 木一疋, 大將所貫耳·令箭手·列牌頭·劊子手·大旗手[奉旗時益], 各木一疋[本營], 挾馬·巡牢, 各木一疋[內下], 施賞爲白齊.
- 一. 別試射時, 將官·將校, 柳葉箭, 貫一中·邊二中以上, 出身加資, 閑良直赴殿試, 邊三中, 出身熟馬帖, 閑良直赴殿試, 貫二中, 出身半熟馬帖, 閑良, 直赴會試. 邊二中以上, 兒馬帖, 貫一中, 上弦弓一張, 邊一中, 不粧弓一張. 片箭, 貫·邊中以上, 出身加資, 閑良直赴殿試, 邊二中, 閑良直赴會試[出身加資, 或陞六], 邊一中以上, 上弦弓一張. 軍兵鳥銃, 貫二中·邊一中以上, 直赴殿試, 邊三中以上, 閑良, 陞禁[已陞禁, 木四疋]. 貫二中, 木二疋·布一疋, 邊二中以上, 木二疋, 邊一中以上, 木·布各一疋. 技藝, 上上, 木三疋, 上中, 木二疋, 上下, 木一疋施賞爲白齊.
- 一. 鄉軍三哨上番時, 每哨, 領付藍色二人, 每次, 木·布各一疋, 護送

監色二人, 每次, 各木一疋施賞爲白齊.

一. 別武士講陣賞罰段, 依知穀·教練官例, 施行爲白齊.





10. 회계(會計)

회계

1. 공화公貨의 거래는 중대한 일과 관련되니 전錢과 곡식의 각 종류를 막론하고 매일 거두어들인 것을 낱낱이 등사하여 올려서 해당 달 내에 수정修正하고 다음 달 6일에 제조에게 성첩成貼을 받도록 한다.
1. 봉하捧下한 문서를 회계하는 법은 지극히 엄중하니 각 해당 색의 서리가 봉하한 물종과 관계된 것은 혹시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일일이 헤아려 초안을 작성해 낸다. 회계한 뒤에는 회계 감관·별부료가 함께 고준考准하도록 하고, 종사관도 또한 일일이 확인하여서 조금이라도 착오가 생기는 폐단이 없게 한다.
1. 전과 곡식의 각 종류를 봉하하는 것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책자를 막론하고 등사하여 올릴 때 혹 굵어내어 고치지 말도록 함으로써 법의를 중히 여기도록 한다.
1. 향색·향군색·군수색·외탕고·관천고筥千庫·별잉고別剩庫·야소·약방의 봉하 및 회계는 향색 제조에게서 마감하도록 하고, 군기색이 주관하는 무기의 각 종류 및 각 초와 색의 봉하와 회계는 군색 제조에게서 마감한다.
1. 회계를 성첩成貼할 때 회계 감관과 별부료는 서리를 거느리고 함께 제조[향색·군색]에게 나아가 거행한다.
1. 회계의 날짜를 정하는데 공고公故와 서로 겹치게 되면 상께 넘지시여쥔 다음 물러서 행하고, 납월臘月의 경우에는 연말에 해당되어

거행하는 것이 매우 많으니 15일로 기한을 정하여 장부를 마감한다.

1. 각각 소장하고 있는 것 및 각 초와 색의 도록都錄은 각 3건으로, 1건은 회계 감관 및 별부료가 고준한 다음 대내로 들인다. 다른 1건은 두 개의 단冊으로 나누어 향색에서 관장하는 것은[향색 ○향군색 ○군수색 ○외탕고 ○관천고 ○별잉고 ○야소 ○약방] 해당 관리가 수정修正한 다음 향색 제조에게 남겨 두고, 군색에서 관장하는 것은[군기색 ○각 청의 각 초와 색] 군색의 서리와 해당 색의 서원이 함께 수정한 다음 군색 제조에게 남겨 둔다. 그리고 남은 1건은 나누어 배치하여 각각 소장하도록 하되, 매 달 회계한 뒤에 이들 내에 모두 수정한다[대내에 들일 건과 관련하여 만약 날을 넘기게 되면 회계 감관 및 서리에게 곤을 칠 것.].



會計

- 一. 公貨去來, 事係關重, 毋論錢·穀各種, 每日捧下, 這這膾上, 當朔內修正, 翌月初六日, 成貼於提調爲白齊.
- 一. 捧下文書會計之法, 至爲嚴重, 各該色書吏, 凡係捧下物種, 毋或遺漏, 一一叩籌, 成出草, 會計後, 會計監官·別付料, 眼同考准, 從事官, 亦爲叩准, 俾無一毫差誤之弊爲白齊.
- 一. 錢·穀各種捧下, 毋論巨細冊子, 膾上之際, 毋或擦改, 以重法意爲白齊.
- 一. 餉色·鄉軍色·軍需色·外帑庫·筦千庫·別剩庫·冶所·藥房, 捧下及會計, 磨勘於餉色提調, 軍器色所管戎器各種, 及各哨·色捧下·會計, 磨勘於軍色提調爲白齊.
- 一. 會計成貼時, 會計監官·別付料, 率書吏, 同詣提調[餉色·軍色]舉行爲白齊.
- 一. 會計定日, 公故相值, 則微稟退行, 臘月則係是年終, 舉行浩多, 以十五日定限勘簿爲白齊.
- 一. 各所掌及各哨·色都錄, 各以三件, 一件會計監官及別付料考准內入, 一件分作兩丹, 餉色所管者[餉色 ○鄉軍色 ○軍需色 ○外帑庫 ○筦千庫 ○別剩庫 ○冶所 ○藥房], 該吏修正, 留置餉色提調, 軍色所管者[軍器色 ○各廳各哨·色], 軍色書吏與該色書員, 眼同修正, 留置軍色提調, 一件分置, 各所掌爲白乎矣, 每朔會計後, 兩日內, 竝爲修正[內入件, 若踰日, 則會計監官及書吏決棍]爲白齊.

11. 번열(反閱)⁸¹

번열

1. 종사관을 교체할 때와 고자(庫子)를 바꾸어 관장하도록 할 때 각 창고를 번열하는 것에 대해서는 품지하여 거행한다.
1. 번열할 때에는 당상과 당하 장관 가운데서 장망(長望)⁸²으로 차출하여 함께 거행하도록 하고, 해당 창고의 감관 외에 다른 감관 1원(員)도 또한 장망으로 차출하여 모두 참석한다.
1. 어사(御史) 혹은 제조가 명을 받들어 번열할 때에는 각 해당 창고의 감관 및 별부료에 대해 모두 상계 언지시 여쭙어 나가도록 하고, 군물과 무기를 번열할 때에는 각 장령 및 차지가 또한 대령한다.
1. 번열한 뒤에 포흠(逋欠)이 많고 적은 것을 막론하고 회계에 착오가 있는 것은 회계 감관·별부료·해당 색의 서리를 모두 논감(論勘)한다. 문서 가운데서 누락된 것은 해당 관리에게 징출(徵出)⁸³하게 한 다음 감죄(勘罪)하고, 창고 가운데서 흠축(欠縮)이 생긴 것은 고자(庫子)에게 또한 징출하게 한 다음 감죄한다.
1. 회계의 착오·문서의 누락·창고의 흠축을 막론하고 비록 사소한 일에 관련된 것일지라도 반드시 죄목을 점목(粘目)하여서 일의 체모

81 번열(反閱) : 돈이나 곡식의 출납 문서를 뒤적이며 일일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2 장망(長望) : 관리를 추천할 때 후보자 여러 사람을 써서 올리는 것이다. 보통 3명을 올리는 삼망(三望)이 일반적이었다.

83 징출(徵出) : 조세나 빚 등을 갚지 않는 경우, 친척이나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를 중히 여기도록 한다.

1. 외탕고·관천고에 있는 전錢과 곡식의 각 종류는 매년 원행園行할 때에 어공御供에 들어가는 것 및 원관園官 이하 원역에게 접제接濟하는 것이다. 나무를 심는 데에 사용되는 것은 일의 체모가 다른 곳과는 자별한데, 해당 창고가 이미 수원 유수에 있으니 구관句管하고 봉하하며 본부의 소속으로 또 두어서 검색이 관장하도록 한다. 유수가 교체될 때 번열·전장傳掌·논보論報 등의 일은 각 도 영읍의 예대로 거행한다.
1. 외탕고에서 관할하는 전과 곡식은 또한 과천에 있는데 수량이 많지 않아서 또 별도로 창고를 건립하지 않지만, 단지 수량이 교체될 때 번열 등의 일은 수원의 예대로 거행한다.
1. 경외의 각 창고를 막론하고 번고反庫⁸⁴ 할 때 사사로움을 따라서 사실대로 하지 않는 자는 법전대로 논감한다.

84 번고(反庫) : 창고에 저장한 물건을 모두 꺼내어 장부와 대조해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反閱

- 一. 從事官交遞時, 庫子換掌時, 各庫反閱, 稟旨舉行爲白齊.
- 一. 反閱時, 堂上·堂下將官中, 長望差出, 眼同舉行, 該庫監官外, 他監官一員, 亦爲長望差出, 一體進參爲白齊.
- 一. 御史或提調, 捧命反閱時, 則各該庫監官及別付料, 竝爲微稟進去, 軍物·器械反閱時, 則各將領及次知, 亦爲待令爲白齊.
- 一. 反閱後, 毋論逋欠之多少, 會計差錯者, 會計監官·別付料·該色書吏, 竝論勘. 文書之遺漏者, 該吏處, 徵出勘罪, 庫中欠縮者, 庫子處, 亦爲徵出勘罪爲白齊.
- 一. 毋論會計差錯·文書遺漏·庫中欠縮, 雖係微細之事, 必以粘目諸罪, 以重事面爲白齊.
- 一. 外帑庫·筦千庫所在錢·穀各種, 乃是每年園行時御供所入, 及園官以下員役接濟, 植木所用, 則事面與他自別, 而該庫既在水原留守, 旬管捧下, 府屬中又置, 監色以掌之. 留守交遞時, 反閱·傳掌·論報等事, 依各道營邑例, 舉行爲白齊.
- 一. 外帑庫所管錢·穀, 亦在果川, 而數旣不多, 又無別建庫舍, 只邑倅交遞時, 反閱等事, 依水原例, 舉行爲白齊.
- 一. 無論京外各庫, 反庫時, 循私不以實者, 依法典, 論勘爲白齊.



12. 주휼(周恤)

주휼

1. 본영의 사체가 자별하니 단속을 거듭 엄하게 하고, 장교와 군졸, 원역을 막론하고 모든 거두어들이는 명목을 모두 금단한다. 그리고 특별히 영의 전錢을 참작한 다음 마련하여[마련하는 수효는 별잉고의 차하조上下條를 참조.] 각 청의 각 초와 색에 나누어 지급하여서 수용需用과 방역防役의 밑천으로 삼는다.
1. 매년 원행을 할 때 수가하는 장교와 군졸의 군량과 마태馬太를 별도로 마련하여서 여러 날 동안 양식을 싸가지고 가는 폐단을 없애고, 반찬·장醬·미역도 또한 마련하여[마보군 1명당 각각 감장甘醬 3홉[勺], 감곽甘藿 1립立 반] 품지한 다음 나누어 지급한다.
1. 매년 원행할 때 장용위의 장설조掌設條[봄과 가을에 행행할 때 모두 마련한다.]와 마보군병의 각종 비용을 별도로 마련하여[각종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잉고의 차하조를 참조] 거두어들이는 폐단을 없앤다.
1. 마보군이 기예를 익힐 때 선기대의 요기를 위한 것[마련하는 것은 별잉고의 차하조를 참조]과 별기군의 점심미를 마련하여 값을 지급함으로써 위로하고 권장하는 바탕으로 삼는다.
1. 마보군의 각 초와 색의 군병 가운데 가난하여 혼례를 치르지 못한 자의 혼수를 보조해 주되, 1명당 목면 2필疋·전錢 5냥兩을 마련하여 값을 지급해 준다.
1. 마보군의 각 초와 색의 군병 가운데 부모 상 및 처의 상을 당하였

는데 가난하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부류에 대해서는 미리 봉족 俸足을 내려 주급⁸⁵하게 하되 등급을 나누어 계감^{計減}하는 식은 혼련도감의 예대로 거행한다.

1. 장교와 군병의 집이 무너진 것과 불에 타 버린 것을 막론하고 장교와 군졸을 구별하여 집의 칸 수를 계산한다. 장교의 경우 집 1칸에 전^錢 1냥, 2칸 이상에 전 2냥·공석^{空石} 10립^立, 4칸 이상에 전 3냥·공석 15립, 7칸 이상에 전 4냥·공석 20립이고, 군병의 경우 1칸에 공석 10립, 2칸 이상에 전 1냥·공석 10립, 4칸 이상에 전 2냥·공석 15립, 7칸 이상에 전 3냥·공석 20립을 마련하여 값을 지급해 준다.

1. 입직한 군병 가운데 동절기 옷이 얇은 부류에 대해서는 마땅히 헤아려 도와주는 은전이 있어야 한다. 홑옷과 겹옷을 입은 자에게는 목면 1필^匹·씨를 제거한 솜 2근^斤을, 누비옷^{縷飛衣}을 입은 자에게는 목면 1필·씨를 제거한 솜 1근을, 얇고 해진 옷을 입은 자에게는 목면 1필을 제급^{題給}하되, 특교가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한다.

1. 상변하는 향군에게 탈이 있으면 미^米 3말^斗·목면 2필·전 1냥·유^油 2부^浮·장목^{長木} 2개^箇를 모두 전 대신 값을 지급하고, 부모상을 당하여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 노자^{路資} 2냥을 또한 마련하여

85 주급(周急) :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을 구휼해 주는 것을 이른다.



값을 지급한다.

1. 마보군병 가운데 만일 여역(厲疫)으로 출막(出幕)⁸⁶하는 부류가 있다면 공석·장목·양미(糧米)를 제공한다[공석 10립 ○장목 6개 ○양미는 10일에 한하여 매일 1되(升)]. 집에서 치료를 하는데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에게도 또한 마련해 주되[10일에 한하여 매일 미 1되], 별정 장교 및 사환군으로 하여금 간검하게 하고 각 해당 병든 군병에 대해 두목이 패장에게 진고하면 패장이 함께 간심한 뒤 해당 장령 및 차지가 전보(轉報)하기를 기다렸다가 구별하여 제공한다.

周恤

- 一. 本營事體自別, 約束申嚴, 無論校卒·員役, 凡係收斂名色, 一切禁斷. 特以營錢酌量磨鍊[磨鍊數交, 見別剩庫上下條], 分給各廳各哨·色, 以爲需用·防役之資爲白齊.
- 一. 每年園行時, 隨駕將卒軍糧·馬太, 別爲磨鍊, 以除多日齎糧之弊, 饌需·醬·藿, 亦爲磨鍊[馬步軍, 每名各甘醬三合, 甘藿一立半], 稟旨分給爲白齊.

86 출막(出幕) :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격리 수용을 위해 외떨어진 곳에 친 막, 또는 그 막으로 옮기는 것을 이른다.

- 一. 每年園行時, 壯勇衛之掌設條[春秋行幸時, 一體磨鍊], 馬步軍兵, 各樣浮費, 別爲磨鍊[各樣磨鍊, 見別剩庫上下條], 以除收斂之弊爲白齊.
- 一. 馬步軍技藝肄習時, 善騎隊之饒氣次[磨鍊, 見別剩庫上下條], 別技軍之點心米, 磨鍊上下, 以爲慰悅勸獎之地爲白齊.
- 一. 馬步各哨·色軍兵中, 貧不能嫁娶者, 助給婚需爲白乎矣, 每名木二疋·錢五兩, 磨鍊上下爲白齊.
- 一. 馬步各哨·色軍兵中, 遭故及妻喪, 貧不能自辦之類, 預下奉足, 使之周急, 而分等計減之式, 依訓局例, 舉行爲白齊.
- 一. 毋論將校·軍兵家舍之類壓與被燒, 區別校卒, 計其家舍間數. 將校則家舍一間錢一兩, 二間以上錢二兩·空石十立, 四間以上錢三兩·空石十五立, 七間以上錢四兩·空石二十立, 軍兵則一間空石十立, 二間以上錢一兩·空石十立, 四間以上錢二兩·空石十五立, 七間以上錢三兩·空石二十立, 磨鍊上下爲白齊.
- 一. 入直軍兵, 冬節衣薄之類, 宜有顧助之典. 着單·衾衣者, 木一疋·去核二斤, 着縷飛衣者, 木一疋·去核一斤, 着薄破衣者, 木一疋題給爲白乎矣, 待特教舉行爲白齊.
- 一. 上番鄉軍有頃, 則米三斗·木二疋·布一疋·錢一兩·油芘二浮·長木二箇, 竝以代錢上下, 遭故下鄉, 則路需二兩, 亦爲磨鍊, 上下爲白齊.
- 一. 馬步軍中, 如有厲疫出幕之類, 空石·長木·糧米, 磨鍊題給[空石十立 ○長木六箇 ○糧米限十日, 每日一升]. 在家治療之, 貧不能自活者, 亦爲磨鍊[限十日, 每日米一升]爲白乎矣, 別定將校及使喚軍,



使之看檢，而各該病軍，頭目進告牌將，則牌將眼同看審後，待該將領及次知之轉報，區別題給爲白齊。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3. 연한(年限)

연한

1. 한 해 걸러 상례常例로 내리는 것으로[갑년甲年에 지급하고, 병년丙年에 다시 갓춘다.] 교련관의 저포苧布 군복을 위하여 매 벌[額당 5냥兩 6전錢 6푼分[저포 값 4냥 6전 6푼 ○전대戰帶 값 1냥], 장용위의 전립戰笠 값으로 각 2냥 8전 5푼[내공內拱의 값도 모두 포함], 목면 군복을 위하여 6냥 6푼, 사색군四色軍[뇌자牢子 ○순령수巡令手 ○대기수大旗手 ○등룡군燈籠軍]의 다로기[多衆只]⁸⁷의 값으로 각 2냥, 각 색의 군병[팔색 표하八色標下 ○향색 배기수餉色陪旗手]의 마포麻布 군복을 위하여 각 1필, 각 청廳[초관청 ○지구관청 ○교련관청 ○장용위청 ○별무사청]의 주락朱絡·상모象毛 1쌍雙에 들어가는 각종 물품[매 쌍당 두석豆錫 8냥 ○상모 4냥 ○공전工錢 3전 ○장피獐皮 15파破 1편片]에 대해 연한 및 식례式例를 상고한 다음 마련하여 값을 지급한다.
1. 두 해 걸러 상례로 내리는 것으로[갑년에 지급하고, 정년丁年에 다시 갓춘다.] 별무사의 저포 군복을 위해 각 5냥 6전 6푼[마련하는 것은 위를 참조], 각 색의 군병[뇌자·순령수[대장소에서만], 취고수吹鼓手 ○대기수 ○등룡군 ○아병牙兵 ○향색 배기수]이 번쯤을 설 때의 군복을 위하여 매 벌당 미 1되[升] 8홉[勺]·목면 1필 29척

87 다로기[多衆只] : 가족으로 지은 긴 버전이다. 가족 털이 안으로 가게 지은 것으로, 추운 지방의 주민들이 겨울에 신으며 신발로도 신는다.



尺·전 2냥 3푼, 전대를 위하여 남화주藍禾紬 2척 3촌寸[협수挾袖 매
 벌당 내공과 외공으로 목면 각 20척 ○외공의 흑염黑染 값 9전 5푼
 ○내공의 청염靑染 값 1전 5푼 ○도침搗砧 값 2전 ○봉조繼造하는 실
 의 값은 공전으로 모두 2전 ○교말膠末·교미膠米는 매 필당 1되
 ○동정同正⁸⁸의 목면 4파破 1골骨 1척 3촌 ○괘자掛子는 매 벌당 내
 공과 외공의 목면 각 12척 ○내공과 외공의 청염 값 1전 5푼 ○교
 말·교미는 매 필당 1되 ○포백曝白하는 값 매 필당 1전 ○도침 값
 1전 ○봉조하는 실의 값은 공전으로 모두 1전 ○전대는 매 건당
 반골半骨 4척 6촌], 유삼油衫의 값 전으로 각 2냥 2전[뇌자 ○순령
 수], 선기대의 초대草蓆⁸⁹에 대해 연한과 식례를 상고한 다음 마련
 하여 값을 지급한다.

1. 세 해 걸러 상례로 내리는 것으로[갑년에 지급하고, 무년戊年에
 다시 갓춘다.] 각 색의 군병[뇌자 ○순령수 ○취고수 ○대기수 ○
 당보수塘報手 ○등룡군 ○장막군帳幕軍 ○아병 ○향색 배기수 ○중
 사관 배기수]이 진陣을 칠 때의 군복을 위한 것과 각 색의 군병
 [취고수 ○세악수細樂手 ○대기수 ○당보수 ○등룡군 ○장막군 ○
 아병 ○향색 배기수 ○초군]의 유삼 값[군복 및 유삼을 마련하는
 것은 위를 참조]에 대해 연한과 식례를 상고한 다음 마련하여 값
 을 지급한다.

88 동정(同正) : 한복에서 저고리의 깃 위에 조붓하게 덧대는 형값 오리를 말한다.

89 초대(草蓆) : 짚 같은 것으로 자루처럼 엮어 만든 물건을 말한다.

1. 네 해 걸러 상례로 내리는 것으로[갑년에 지급하고, 기년己년에 다시 갓춘다.] 선기대 및 각 색의 군병[선기대 ○별장 표하 ○사취수 司吹手 ○선기장 표하 ○공장 아병]의 유삼 값 각 2냥 2전[선기대는 2냥 7전]에 대해 연한과 식례를 상고한 다음 마련하여 값을 지급한다.
1. 여섯 해 걸러 상례로 내리는 것으로[갑년에 지급하고, 신년辛年에 다시 갓춘다.] 장관·장교[초관 ○지구관 ○교련관 ○장용위 ○별무사]의 유삼 값 각 2냥 7전, 각 처 직소直所의 군물[당상소 ○장관청 ○지구관청 ○장용위청 ○별무사청 ○부료무사청], 동개筒筒 1부部[궁자弓子·장편전長片箭·통아筒兒⁹⁰를 갓춘다.], 환도環刀 1병柄 [비록 연한이 되었더라도 깨지거나 훼손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둔다.]에 대해 연한과 식례를 상고한 다음 마련하여 값을 지급한다.
1. 일곱 해 걸러 상례로 내리는 것으로[갑년에 지급하고, 임년壬年에 다시 갓춘다.] 선기대[서패書牌는 제외한다.]에게 각각 후궁幬弓)1장張을 연한과 식례를 상고한 다음 마련하여 값을 지급한다.
1. 유삼에 기름을 더하는 것은 장관·장교는 한 해 걸러서 하고[매 별당 4전], 순뢰의 유삼은 3년에 1차례, 취고수·세약수·대기수·당보수·등롱군·장막군·아병·향색 배기수·초군의 유삼은 4년에 1차례, 선기대·공장 아병·별장 표하·사취수·선기장 표하의 유삼

90 통아(筒兒) : 짧은 화살을 쏠 때에 살을 담아, 시위에 올려서 쏘던 가느다란 나무통을 가리킨다. 화살이 빠져 나가면 통은 앞으로 떨어진다.



은 5년에 2차례[매 별당 3전 5푼 ○선기대는 장교와 같다.] 한다.

1. 장막군·당보수·종사관 배기수는 다른 색군色軍과 차이가 있어 번을 설 때의 군복을 마련할 필요가 없으니, 퇴건退件⁹¹ 가운데서 한 해 걸러 지급한다. 각색 복마군이 입는 것도 또한 퇴건으로 내어 주되 이것은 세 해 걸러 지급한다.

1. 뇌자·순령수·등롱군·아병·창검군槍劍軍 등이 진에서 입는 홍괘자紅掛子는 그 연한이 오래되고 훼손된 것에 따라 혹 수보하거나 다시 갖춘다.

1. 군복을 개염改染하는 것은 또한 두 해 걸러 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니 매 별당 전錢 8전 5푼[협수 매 별당 외공의 흑염 값 3전 ○내공의 청염 값 5푼 ○도침 값 1전 ○봉조하는 실의 값은 모두 1전 5푼 ○괘자 매 별당 청염 값 5푼 ○도침 값 5푼 ○봉조하는 실의 값 모두 1전 ○합교말合膠末 값 3푼]을 연한과 식례를 상고한 다음 마련하여 값을 지급한다.

1. 장용위 입대마立待馬의 말 안장을 수리하여 고치는 연한과 관련하여 안갑鞍匣⁹²은 5년 안에 새로 갖추고 3년 안에 수보하며, 매양이 등자每樣伊鐙子⁹³는 10년 안에 새로 갖추고 5년 안에 수보하며, 장니

91 퇴건(退件) : 남이 쓰다가 물려준 것을 말한다.

92 안갑(鞍匣) : 안장을 덮는 형권을 말한다.

93 매양이 등자(每樣伊鐙子) : 등자(鐙子)는 말을 타고 앉아 두 발로 디디게 되어 있는 물건으로, 안장에 달아 말의 양쪽 옆구리로 늘어뜨린 것을 말한다. 매양이(每樣伊)는 '발걸이'를 의미하는 듯하다.

障泥⁹⁴는 5년 안에 새로 갖추고 3년 안에 수보하며, 삼거리三巨里⁹⁵는 3년 안에 새로 갖추고 매년 수보하며, 두대肚帶⁹⁶·등피鎧皮⁹⁷ 및 가죽은 매년 새로 갖춘다.

1. 건양문建陽門의 패장 군복은 한 해 걸러 새로 갖추되 기한 내에 혹 손상되면 간심한 다음 다시 갖춘다.

年限

一. 間年例下[甲年上下, 丙年改備], 敎鍊官苧布軍服次, 每領五兩六錢六分[苧布價四兩六錢六分 ○戰帶價一兩], 壯勇衛戰笠價, 各二兩八錢五分[內拱價竝入], 木軍服次六兩六分, 四色軍[牢子 ○巡令手 ○大旗手 ○燈籠軍], 多景只價各二兩, 各色軍[八色標下 ○餉色陪旗手], 麻布軍服次各一疋, 各廳[哨官廳 ○知穀官廳 ○敎鍊官廳 ○壯勇衛廳 ○別武士廳], 朱絡·象毛一雙所入各種[每雙豆錫八兩 ○象毛四兩 ○工錢三錢 ○獐皮十五破一片], 相考年限及式例, 磨鍊上下爲白齊.

94 장니(障泥) : 말다래로, 말의 배 양쪽에 늘어뜨려서 진흙 등이 옷에 묻는 것을 방지하는 도구이다.

95 삼거리(三巨里) : 말치레 중 하나인 가슴걸이를 일컫는다. 언덕을 올라갈 때 안장이 뒤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슴에 둘러매는 끈이다.

96 두대(肚帶) : 말의 배에 대는 끈을 말한다.

97 등피(鎧皮) : 가늘게 직조한 말의 등자 가죽을 말한다.



一. 間二年例下[甲年上下, 丁年改備], 別武士芋布軍服次, 各五兩六錢六分[磨鍊見上], 各色軍[牢子·巡令手[只大將所], 吹鼓手 ○大旗手 ○燈籠軍 ○牙兵 ○餉色陪旗手], 番軍服次, 每領米一升八合·木一疋二十九尺·錢二兩三分, 戰帶次藍禾紬二尺三寸[挾袖每領內外拱, 木各二十尺 ○外拱黑染價九錢五分 ○內拱青染價一錢五分 ○搗砧價二錢 ○縫造絲價工錢竝二錢 ○膠末·米, 每疋一升 ○同正木, 四破一骨一尺三寸 ○掛子每領內外拱木各十二尺 ○內外拱青染價一錢五分 ○膠末·米, 每疋一升 ○曝白價, 每疋一錢 ○搗砧價一錢 ○縫造絲價, 工錢竝一錢 ○戰帶每件, 半骨四尺六寸], 油衫價錢各二兩二錢[牢子 ○巡令手], 善騎隊草帑, 相考年限及式例, 磨鍊上下爲白齊.

一. 間三年例下[甲年上下, 戊年改備], 各色軍[牢子 ○巡令手 ○吹鼓手 ○大旗手 ○塘報手 ○燈籠軍 ○帳幕軍 ○牙兵 ○餉色陪旗手 ○從事官陪旗手], 陣軍服次, 各色軍[吹鼓手 ○細樂手 ○大旗手 ○塘報手 ○燈籠軍 ○帳幕軍 ○牙兵 ○餉色陪旗手 ○哨軍], 油衫價[軍服及油衫, 磨鍊見上], 相考年限及式例, 磨鍊上下爲白齊.

一. 間四年例下[甲年上下, 己年改備], 善騎隊及各色軍[善騎隊 ○別將標下 ○司吹手 ○善騎將標下 ○工匠牙兵], 油衫價各二兩二錢[善騎隊則二兩七錢], 相考年限及式例, 磨鍊上下爲白齊.

一. 間六年例下[甲年上下, 辛年改備], 將官·將校[哨官 ○知穀官 ○教鍊官 ○壯勇衛 ○別武士], 油衫價各二兩七錢, 各處直所軍物[堂上所 ○將官廳 ○知穀官廳 ○壯勇衛廳 ○別武士廳 ○付料武士廳],

筒箇一部[弓子·長片箭·筒兒具], 環刀一柄[雖當年限, 如不破傷仍置], 相考年限及式例, 上下爲白齊.

- 一. 間七年例下[甲年上下, 壬年改備], 善騎隊[書牌除], 各候弓一張, 相考年限及式例, 上下爲白齊.
- 一. 油衫加油次段, 將官·將校, 間一年[每領四錢], 巡牢油衫三年內一次, 吹鼓手·細樂手·大旗手·塘報手·燈籠軍·帳幕軍牙兵·餉色陪旗手·哨軍油衫四年內一次, 善騎隊·工匠牙兵·別將標下·司吹手·善騎將標下油衫五年內二次[每領三錢五分 ○善騎隊, 同將校]爲白齊.
- 一. 帳幕軍·塘報手·從事官陪旗手段, 與他色軍有異, 番軍服不必磨鍊, 以退件中, 間一年上下爲白乎跡, 各色卜馬軍所着, 亦以退件出給, 而此則間三年上下爲白齊.
- 一. 牢子·巡令手·燈籠軍·牙兵·槍劍軍等, 陣上所着紅掛子, 隨其年久滄傷, 或修補·改備爲白齊.
- 一. 軍服改染段, 亦以間二年爲定, 而每領錢八錢五分[挾袖每領外拱黑染價三錢 ○內拱青染價五分 ○搗砧價一錢 ○縫造絲價, 竝一錢五分 ○掛子每領青染價五分 ○搗砧價五分 ○縫造絲價竝一錢 ○合膠末價三分], 相考年限及式例, 磨鍊上下爲白齊.
- 一. 壯勇衛立待馬馬鞍修改年限段, 鞍匣限五年新備·三年修補, 每樣伊鐙子十年新備·五年修補, 障泥五年新備·三年修補, 三巨里三年新備·每年修補, 肚帶·鐙皮及革, 每年新備爲白齊.
- 一. 建陽門牌將軍服段, 間年新備爲白乎矣, 限內如或滄傷, 則看審改備爲白齊.



14. 잡식(雜式)

잡식

1. 이진(肄陣)은 매년 사맹삭(四孟朔)⁹⁸의 10일에[이진조(肄陣條)를 참조] 어떻게 할지 여쭙고, 등시사(等試射)는 사계삭(四季朔)⁹⁹의 1일에 어떻게 할지 여쭙며[부료 시사(付料試射)와 동일하다.] 봄·가을 말의 점고는 2월과 8월 10일에 거행하되, 만일 일이 생기면, 무고(無故)한 날로 품지하여 물려 거행한다.
1. 봉족(奉足)의 지급은 매년 정월, 4월, 10월 10일에 하며, 향군에 대한 징번(徵番)은 7월, 9월, 11월 1일에 한다. 향군을 서울에서 점고하는 것은 8월, 10월, 12월 30일에 하되, 12월은 혹 28일이나 29일로 품지한 다음 거행한다.
1. 삭하(朔下)의 지급은 매달 1일에 하며[12월은 20일이다.] 각 소(所)에서 관장하는 회계는 6일에 한다[납월(臘月)에는 15일에 한다.]. 지구관·교련관·장용위의 강진(講陣)은 7일, 17일에 한다[장용위의 경우 좌열은 7일에 한다. ○우열은 17일에 한다.]. 여러 장관의 사회(射會)는 10일, 20일, 30일에 한다[매달 두 차례 하는데 10일과 20일이다.]. 요(料)는 좌기(坐起)에 준해서 15일에[납월에는 10일이다.], 군병의 방료는 20일에[납월에는 15일이다.], 복마(卜馬)의 점고는 월말

98 사맹삭(四孟朔) :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각 첫 달인 음력의 1월, 4월, 7월, 10월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99 사계삭(四季朔) : 네 계절의 마지막 달, 즉 음력 3·6·9·12월을 말한다.

에 한다.

1. 한 해 걸러 하는 대비교大比較는 3월과 9월 1일에 어떻게 할지 여쭙고[시사조試射條를 참조], 승호陞戶를 뽑아 올리는 것은 매 식년式年마다 7월 1일에 관문을 보내며, 승호를 점고하는 것은 9월 20일에 한다.

1. 각종 급축給縮과 관련하여 미米는 매 섬[石]당 1말[斗], 전錢은 매 냥兩당 1푼分, 화약은 매 근斤당 1냥, 전죽은 매 부浮당 2개箇, 두석豆錫·숙동熟銅·수은水銀·붕사礬砂·주홍 단목朱紅丹木·상모象毛·당향사唐鄉絲는 매 근당 5전錢, 정철正鐵·연철鉛鐵은 매 근당 6전, 정근正筋은 매 근당 1냥 5전, 어교魚膠·아교阿膠는 매 근당 1냥으로 한다.

1. 공장의 요포는 은장銀匠·옥장玉匠·야장冶匠·목수木手·칠장柒匠·개장蓋匠은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요미 12말·목면 4필[순전純錢의 경우 12냥]이고, 10월부터 정월까지는 매달 요미 12말·목면 3필[순전의 경우 10냥]로 한다.

1. 야장·석수石手의 조역助役은, 장조역壯助役인 경우 매달 미 6말·목면 2필[순전의 경우 6냥]이고, 아조역兒助役인 경우 매달 미 6말·목면 1필[순전의 경우 4냥]로 한다.

1. 제색 장수諸色匠手는 매달 미 12말·목면 2필 17척尺 5촌寸[순전의 경우 9냥 ○내역內役은 매일 4전을 마련한다.]으로 한다.

1. 공장 아병은 매달 미 6말·목면 1필[순전의 경우 4냥 ○내역은 목면 1필·전 2냥 1전을 더 지급한다.]로 한다.

1. 군물軍物을 수개할 때 각색장各色匠의 요료는 매달 미 9말·목면 2



필[순전의 경우 7냥], 침선비[針線婢·인석장[茵席匠]의 매일 밥 값은 모두 2전이며, 차비 원역과 장수[匠手]의 경우 매일 두 차례의 식사만 제공한다.

1. 외방으로 출장을 가는 장교의 노자[路資]는 매일 양미[糧米] 3되[升][대전[代]錢하는 경우 1전 3푼], 찬가[饌價]는 전[錢] 1전 5푼이다. 기수[旗手]의 양미는 3되[대전하는 경우는 위와 같다.], 찬가는 전 9푼이다. 노자[奴子]의 경우에는 매일 양미 3되[대전하는 경우는 위와 같다.], 찬가는 전 6푼이다. 기마[騎馬]의 경우 매일 죽태[粥太] 3되[대전하는 경우 6푼], 기장[稷] 3되[대전하는 경우 3푼 ○사냥할 때 영군장 이하의 노복과 마필의 요[料]는 같다.]를 지급한다.

1. 사냥하는 아병의 양찬[糧饌]은 매일 미[米] 3되[대전하는 경우 1전 2푼], 전 6푼이고, 매 3차례 장가[醬價]는 전 1푼이다. 복마[卜馬]는 매일 죽태 3되[대전하는 경우 6푼], 마철가[馬鐵價]는 2전 5푼이다. 구군[驅軍][명수와 연한은 각각 같지 않다.]에게는 매일 점심미 2되, 찬가 5푼[해당 고을의 둔세[屯稅] 중에서 지급한다.]을 날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치중 복마[輜重卜馬軍]에게는 매일 양미 3되[대전하는 경우 1전 2푼], 죽태 2되[대전하는 경우 4푼], 매 10리[里]마다 전 1전[왕복을 모두 계산한다.]을 지급한다.

1. 제조와 대장을 각 능침의 제관으로 차출할 때, 매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 전 1냥 5전이고, 하인·노복과 마필의 요[料]는 매 참[站]마다 각각 1전 5푼이다[사령 2 ○인배[引陪] 1 ○의막 사령[依]

幕使令 1 ○구중驅從 2 ○노자奴子 1 ○복마군卜馬軍 1 ○기마騎馬 1 ○의롱마衣籠馬 1[○초哨의 복마로 거행한다.].

종사관은 매일 1냥이고, 하인·노복과 마필의 요는[사령 2 ○우장 직兩裝直 1 ○의막 군사依幕軍士 1 ○노자 1 ○복마군 1 ○기마 1.○의롱마 1] 제조와 대장의 예대로 지급한다.

1. 각 능·원·묘의 제관으로 차출된 장관 이하의 양찬가는 그 도로의 원근을 계산하여서, 장관은 매 참마다 2전[15리 이하는 왕복 2참 ○20리 이상은 왕복 3참 ○30리 이상은 왕복 4참], 하인·노복과 마필의 요는 각 1전 5푼을 지급한다.
1. 대장이 소분掃墳¹⁰⁰하러 내려갈 때 수행하는 집사 이하 각 사람의 반전盤纏¹⁰¹은 별잉고別剩庫에서 마련하여 지급하되, 집사 1인에게는 매일 2전 7푼을, 기수 6명·사령 2명·구중 1명·사후군 1명·복마군 2명에게는 각 2전 1푼을, 노자 1명에게는 1전 8푼을, 기마 1필, 의롱마 2필[초哨의 복마], 각 9푼씩은 날짜를 계산해서 지급한다.
1. 대장이 새로 제수되었을 때에 집사청執事廳의 값은 전錢 700냥이니 별잉고에서 지급하고, 체임된 이후에는 내다 팔고 다시 들이되, 수개修改할 때의 물력은 또한 해당 창고에서 지급한다.
1. 장관과 장교의 신규 차출과, 마보군병이 새로 들어오는 것을 막론하고 보름 이전이면 요미를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보름 이후

100 소분(掃墳) :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조상의 묘에 가서 제사지내는 것이다.

101 반전(盤纏) : 먼 길을 여행할 때에 쓴 노잣돈이다.



이면 모두 논하지 말게 한다.

1. 장관과 장교, 원역, 군병을 막론하고 이미 다른 아문에서 요미를 받고 본영으로 이차_{移差}되어 온 자의 경우에는 모두 논하지 말게 한다.
1. 당상 장관 가운데 만일 해유_{解由}¹⁰²를 미처 내지 않았거나 월봉_{越俸}되어 구애가 있거나 파직된 다음 미처 서용되지 않은 인원이 있다면 다른 군영의 예대로 요미를 마련하여 지급한다.
1. 대년균을 내어 쓰면 매일 매 명당 미_米 2되_斗[배봉 아병_{拜峯牙兵}도 동일하다.]를 지급한다.
1. 무릇 초기를 올릴 때 직방_{直房}에 입직한 초관이 거행하게 되면 별무사_{別武士}가 대신 입직하고, 외영에 입직한 초관이 거행하게 되면 당상 장관이 모두 거느린다. 췌내에서 재숙_{齋宿}할 때에는 난후초관_{欄後哨官}으로 거행한다.
1. 성 내외를 거동할 때를 막론하고 수가하는 군병을 혹 거느리거나 넘겨줄 때에는 실제 수효 단자를 승정원에 들인다.
1. 각각 관장하는 봉하_{捧下}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단지 별부료_{別付料}만 조사하여 교정하였으니, 소홀하거나 누락되었을 우려가 없지 않다. 각각 관장하는 감관_{監官}이 별부료와 함께 조사하고 교정한 다음 아울러 착명_{着名}하고 착서_{着署}한다.

102 해유(解由) : 관리가 갈릴 때, 전임자가 회계와 물품의 출납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이를 호조나 병조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1. 요준 문서(料准文書)¹⁰³는 훈련도감의 예대로 각 해당 장령(將領)과 차지(次知)가 직접 자세히 조사한다. 겸양(兼良)·말수(斗數)·인명의 거래에 대해서는 뒤늦게 드러나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고준(叩准)하여 착서한 다음 차례로 전보(轉報)하면 별장과 파총이 또한 고준(考準)한 다음 착서한 뒤에 각 사司에서 표지(標識)한다. 15일이 되면 요준 좌기(料准坐起)를 종사관에게 보낸다. 종사관은 모두 조사하여 착서하고 대장소에 보내며, 대장은 열람한 후에 견고하게 봉한 뒤 답인(踏印)하고 향색(餉色)으로 이송하면, 향색은 성책에 의거하여 마련한 다음 지급한다.

만일 착오하는 폐단이 생기면, 각 해당 장령 및 차지는 가벼운 경우에는 본영에 청하여 감죄하고, 무거운 경우에는 유사(倂司)에 요청하여 법에 따라 무겁게 다스린다. 대장은 작은 경우에는 추고하고, 큰 경우에는 파직하며, 종사관은 이보다 등급을 올려 죄를 다스려서, 통할(統轄)하는 데 있어 실제 효험이 있게 하도록 정식(奉職) 문서(奉足文書)에 미리 내려준 수량을 일체 고준한다.]으로 삼는다.

1. 요준 좌기는 종사관이 매월 15일에 외영이나 직방에서 편한 대로 개좌(開坐)하되, 혹 도착하지 않은 초(哨)나 색(色)이 있다면, 해당 서패(書牌)를 곧으로 다스리고 징계한다.

1. 군병과 장교 가운데,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다과를 막론하고, 절가

103 요준 문서(料准文書) : 요미나 요포 등 급료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한다.



折價로 30냥 이상이면 해당 장령 및 차지가 년지시 여쭈운 뒤에, 대 장소에 접계粘啓로 보고하고, 10냥 이상이면 대장이 포도청에 분 부하여서 그들이 찾아내게 하며, 10냥 이하이면 대장에게 보고한 뒤 에, 포도청에 보고하고 일일이 찾아낸다.

1. 배봉진拜峯鎭에서 조적糶糶할 때에는 장관과 장교 가운데서 매번 창고를 열고 때가 되면 별도로 보내어 염탐하도록 정식으로 삼아 시행한다.
1. 각 초와 색 군병의 유삼油衫은 매년 2월과 8월에 각 해당 장령 및 차지가 날을 정해 점고하되, 만일 기한을 넘겼는데도 하지 않았다 면 해당 장령 및 차지는 즉시 논감한다.
1. 시사와 관련하여 상을 반사할 때에, 만일 임금께서 친림하지 않으 면 제조와 종사관이 인원을 갖추어 거행한다.
1. 각 창고의 쇠약鎖鑰 및 자절字折에 대해서는 제조가 자세히 조사하 되, 매번 봉하捧下할 때에 자절은 책자에 기록해 두고, 쇠약은 각 2 건을 돌아가며 봉쇄封鎖한다.
1. 장용위 가운데 가자한 사람은 무신 당상 녹시사武臣堂上祿試射 때에 참여[각 청의 장교도 동일하다.]한다.
1. 일찍이 본영의 장관과 장교를 지낸 자는 외방의 병영과 포도청의 포교捕校에 구애받지 말고 차정한다.
1. 제조가 파면될 때가 만일 임금의 거동 일자와 일치하게 되면, 서리 가 승정원에 가서 보고하고, 승정원에서는 계사啓辭로 품지한다.
1. 요준料准할 때에 각 초와 색의 군병을 막론하고 만약 군안軍案에서

제외하라고 점계粘帖하였는데 문서가 아직 하달되기 전이라면, 성책 가운데 조어措語에 주註를 달고, 판하判下 받은 뒤에 만일 그대로 두라고 한다면, 추후에 지급한다.

1. 군병이 규정을 위반했는데 제대로 신칙하지 못한 해당 기대총(旗隊) 摠에 대해서는 날날이 경계하여 다스리고, 서패의 경우에는 체치(替治)하지 말게 한다.
1. 본영에서 좌기할 때에, 도제조와 제조, 대장, 종사관은 중문 밖에서 말에서 내린다.
1. 별장과 파총은 각 영의 당상 장관이 입번할 때의 예대로 협로(挾路)에서 직소(直所) 문 밖에 이르러서 말에서 내린다.
1. 선기장·초관·감관 이하 각 청의 장교는 각 영의 예대로 대문 밖에서 말에서 내린다.
1. 여러 장관 가운데 영내(營內)에서 말에서 내리는 자들은 만일 제조와 대장들이 모여서 서로 만나고 있을 때에는 영 밖에서 말에서 내린다.
1. 장관과 장교, 마보군병을 막론하고 각각 직소의 창호(窓戶)와 풍차(風遮)¹⁰⁴ 등에 들어가는 것은 각 해당 장령이 기일 전에 향색에 보고하여서 규례대로 마련한 다음 매년 10월 1일에 지급한다.
1. 낙인(烙印)은 사체가 지극히 엄중하다. 무릇 사용할 때에는 대장이 품지하여 낙인을 내줄 것을 청한 이후에 안과 밖을 봉한 다음 ‘일

104 풍차(風遮) : 털가죽으로 만든 방한용 두건이다. 앞은 이마까지 내려오고 옆은 귀를 덮게 되어 있으며 뒤로 보면 삼각형으로 가운데가 뾰족하고 길게 늘어졌다.



일 신이 삼가 봉합니다.[月日臣謹封]’라고 쓴다.

대장 이하 여러 장관을 막론하고 그날 감낙인監烙人이 착서한 다음 지구관에게 보내어 봉입封入하며, 마필과 기계 등에 낙인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명색과 수효를 건기件記로 만들어 감관에게 보내면, 낮에 출근한 감관監官이 모두 출납하는 날짜와 함께 책자에 기록해 두고, 내인內印을 찍어서 궤에 넣는다[열쇠를 담당하는 감관은 ‘신 근봉臣謹封’이라고 쓰고 착서하며, 쇠약 밖을 봉한 다음 ‘계자인啓字印’을 찍는다.]

목물에 낙인을 찍을 때에는[제조가 청하여 꺼낸다.] 감관과 별부료 가운데 1인이 소관하는 장교와 함께 감독하여 낙인을 찍고, 낙인을 봉납한 책자에 기록해 두며, 마필과 기계에 낙인할 때의 예대로 거행한다.

1. 전시殿試¹⁰⁵를 행할 때 본영의 장관과 장교, 경향의 군병 가운데 직부直赴하는 부류는 전시가 닦쳤을 때 모두 가려 뽑아서 서울은 미리 통지하고 지방은 기일 전에 관문을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일에 맞춰 와서 대기하게 하며 별도로 정한 장교와 기수, 총령도 미리 대기하도록 한다[먼저 외방을 일일이 점고한다.]

호명하기를 기다렸다가 차례로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창방唱榜·사은謝恩·알성講聖을 할 때에도 또한 이 규례를 따라서 번잡스러운 폐

105 전시(殿試) : 임금이 몸소 참여하는 최종 시험이다.

단이 없게 하되, 만일 부지런히 거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구검 장교 句檢將校를 각별히 엄히 다스린다.

1. 팔색 서패(八色書牌)와 능행군의 옷값은 매년 한 차례 지급한다고 하였으니, 연한을 제한하여 상례(常例)로 내려주었던 군복값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게 한다.
1. 각 초와 색의 군병이 군의 물품을 분실했다면 곤장으로 다스려서 물어내게 한 뒤에 물품을 검수하여 낙인한다.
1. 영내에 죄수를 가둘 때 장교를 엄중히 가두게 되면 군사 1명이 수직(守直)하고 바깥 문을 봉쇄한다. 열쇠는 입직하는 당상이 있는 곳에 보관하며, 공궤(供饋) 등의 일은 문틈으로 한다. 특교가 아니라면 족쇄를 채우지 말게 한다[군사의 경우에는 족쇄를 한다.].
1. 무릇 군마를 분실하게 되면 정식대로 포도청에 분부하여 수사하고 체포한 다음 찾아 들이게 하는데, 여러 차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본영에서 좌우변 포도대장을 추고하기를 청하고, 해당 장교에 대해서는 곤으로 다스려서 징계한다.
1. 대장소 배기수(大將所陪旗手)는 순뢰(巡率)의 예대로 곧바로 9말(斗)에 부쳐 준다.
1. 금화(禁火)와 관련된 물종은 기계색(器械色) 감관이 담당하여 거행하는데, 매년 각 해당 청에 물 항아리를 많이 두어서, 오랜 시간 물을 보관하되, 물을 길는 것은 각 해당 청의 군사로 하여금 거행하게 한다.
1. 서패의 사역은 매우 고통스러우니, 비록 신입이라도 곧바로 올려



서 급료를 더 해주고, 만일 죄를 입어 강등하게 되면 도로 9말에 부쳐 준다.

1. 환속군還屬軍은 겸양兼良을 막론하고, 모두 이전의 말수[斗數]대로 요미를 부쳐주고, 다른 영에서 군안에서 제외된 자가 만일 입속하였다면 먼저 7말[斗]에 부친다. 만일 다른 영에서 이미 승급하였다면 그 첩문帖文을 확인해서, 급료를 더 주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다.

1. 각 청의 장교 및 마보군·각 초와 색의 군병 가운데 신입에게 드는 비용으로 지구관과 교련관은 각 전 26냥[대전代錢하여 마련하는 것은 아래에 이와 같이 한다. ○지면례知面禮¹⁰⁶ 2냥 ○예목禮木 2필 ○풍월례(風月禮) 1냥 ○전별례餞別禮 5냥 ○방석方席 10립 ○장지莊紙 1속束 ○백지白紙 3속 ○황필黃筆 2병柄 ○진묵眞墨 1정丁 ○남초南草 15근[교련관은 20근] ○노례奴禮 5냥 ○두 번째 올 경우 다만 지면례 2냥만 납부 ○세 번째는 납부하지 않는다. ○선생의 자제는 다만 예목禮木은 반만 감해준다.]이다.

장용위는 전 31냥[지면례 2냥 ○예목 2필 ○좌목례座目禮 1냥 ○건납乾納 5냥 ○방석을 위해 2냥 ○장지 1속 ○백지 2속 ○황필 2병 ○진묵 1정 ○남초 30근 ○노례 5냥 ○새로 말을 들일 때 군색 서리에게 1냥 5전[말을 바꿀 때는 5전] ○마의馬醫에게 5전[말을 바꿀 때는 2전] ○대장소의 순뢰에게 2냥[말을 바꿀 때는 4전] ○두

106 지면례(知面禮) : 새로 부임한 군졸이 이전의 색리나 장교를 대접하는 비용이다.

번째와 세 번째, 선생 자제의 예목은 위와 같다.]이다.

별무사는 전 14냥 5전[지면례 1냥 ○예목 2필 ○풍월례 5전 ○전별례 2냥 ○방석 5립 ○장지 1속 ○백지 1속 ○황필 1병 ○진묵 1정 ○남초 15근 ○두 번째 올 경우에는 다만 지면례 1냥만 납부 ○세 번째와 선생 자제의 예목은 위와 같다.]이다.

선기대는 전 10냥 5전[방례房禮 1냥 ○행례行禮 1냥 ○기례旗禮 5전 ○대례隊禮 5전 ○기에청례技藝廳禮 5전 ○남초 2근 ○서자지[書字的]¹⁰⁷에게 1냥 ○패두牌頭에게 5전 ○별장소別將所의 서자지에게 1냥 ○패두에게 5전 ○군색 서리에게 5전 ○문서직文書直에게 1전 ○지구관청의 방자房子에게 1전 ○새로 말을 들일 때 군색 서리에게 5전[말을 바꿀 때는 2전] ○마의에게 5전[말을 바꿀 때는 2전] ○대장소의 순뢰巡率에게 2냥[말을 바꿀 때는 4전]]이다.

순뢰 두 색色은 각각 전 6냥 5전[대장소 순뢰와 도제조·제조·종사관의 배기수는 같다. ○방례 2냥 ○번례番禮 1냥 ○지면례 5전 ○남초 2근 ○백지 1속 ○황필 1병 ○진묵 1정 ○서자지에게 1냥 ○패두에게 5전 ○군색 서리에게 5전 ○문서직에게 1전 ○지구관청의 방자에게 1전]이다.

취대당등장이吹大塘燈帳牙¹⁰⁸ 6색은 각각 전 8냥[대장소의 배기수와

107 서자지[書字的] : 하급 군졸로 군안(軍案), 통안(統案), 마안(馬案) 등 문서기록을 담당하였다.

108 취대당등장아(吹大塘燈帳牙) : 취고수(吹鼓手), 대기수(大旗手), 당보군(塘報軍), 등롱군(燈籠軍), 장막군(帳幕軍), 아병(牙兵)의 줄임말이다.



아병도 동일하다. ○방례 2냥 ○번례 1냥 ○지면례 5전 ○남초 2근
○서자지에게 1냥 ○패두에게 5전 ○군색 서리에게 5전 ○문서직에
게 1전 ○지구관청의 방자에게 1전 ○대장소 순퇴에게 2냥이다.

각 소所의 표하標下는 각각 전 8냥 5전[방례 1냥 ○행례行禮 1냥 ○
기례 5전 ○대례 5전 ○기예청례技藝廳禮 5전 ○남초 2근 ○서자지
에게 1냥 ○패두에게 5전 ○군색 서리에게 1냥 ○문서직에게 1전
○지구관청의 방자에게 1전 ○대장소 순퇴에게 2냥]이다.

보군步軍 각 초哨는 각각 전 9냥[방례 1냥 ○행례 1냥 ○기례 5전 ○
대례 5전 ○기예청례 5전 ○남초 2근 ○서자지에게 1냥 ○패두에
게 5전 ○중사中司의 서자지에게 5전 ○군색 서리에게 1냥 ○문서
직에게 1전 ○지구관청의 방자에게 1전 ○대장소 순퇴에게 2냥 ○
마보군은 각 초·각 색 군병을 막론하고 두 번째이면, 다만 방례전
만을 납부하고, 검사복은 미례米禮 2냥을 납입 받는다.].

각 초와 색의 북마군이 새로 말을 들였을 때, 각각 전 1냥 1전[군
색 서리에게 5전[말을 바꿀 때는 3전] ○마의에게 3전[말을 바꿀
때는 2전] ○대장소 순퇴에게 3전[말을 바꿀 때는 2전]]을 정식으
로 삼아 준행한다.

군안에서 제외된 군병이 다른 초와 색으로 환속하는 경우에는 새
로 들어온 군병의 예대로 시행한다. 각 색의 군병을 순퇴로 올려
부치는 경우는 규례대로 납례納禮한다. 최고수 이하 각 초의 군병
이 만일 이전移填하거나 바꾸어 정하는 일이 있다면, 방례전 및 군
색 서리의 부표채付標債, 해당 색 서패의 필채筆債는 반으로 감한다

[초군의 방례전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군영의 원군 중에서 선기대로 옮긴 경우 방례는 으레 반으로 감해주고 새로 들이는 말은 마의에게만 5전을 주고, 그대로 본래 말을 들이는 경우에는 논하지 않는다. 초군을 옮긴 경우는 다만 방례전 1냥, 군색 서리에게 3전, 중사의 서자지에게 2전, 해당 초의 서패에게 5전, 대장소 순뢰에게 5전만을 납부한다.

각 색의 군병을 옮기는 경우는 다만 방례전 1냥, 군색 서리에게 3전, 대장소 순뢰에게 5전, 해당 색의 서패에게 7전만을 납부한다[해당 영에 있을 때 사용하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포함된 종류는 새로 들이는 예대로 한다.]. 내입번(內入番)하는 순뢰를 옮기는 경우는 각 항목의 예납(禮納)을, 새로 들이는 군병의 예대로 시행한다.

1. 장막군(帳幕軍)의 사역이 매우 고통스러우므로, 입속한 뒤 1년을 수행하게 되면 훈련도감의 예대로 올려서 9말에 부친다.
1. 영에 입직 및 직방에 입직하는 장관 이하의 입대마(立待馬)는 장용위의 예대로 장기간 대령하게 하되,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돌려가며 대기하도록 해서[외영의 경우 초관의 말은 일출 때부터 정오까지 ○당상 장관의 말은 정오부터 일몰 때까지 ○지구관의 말은 일몰 때부터 4경 1점(四更一點)까지 ○별무사의 말은 4경 1점부터 일출 때까지 ○직방의 경우 장관의 말은 일출 때부터 정오까지 ○선기대의 말 1필은 정오부터 일몰 때까지, 다른 1필은 일몰부터 4경 1점까지, 또 다른 1필은 4경 1점부터 일출 때까지] 여기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雜式

- 一. 肄陣, 每年四孟朔初十日[見肄陣條], 取稟, 等試射, 四季朔初一日, 取稟[付料試射同], 春秋馬點, 二·八月初十日, 舉行爲白乎矣, 若有事, 則以無故日稟旨, 退行爲白齊.
- 一. 奉足上下, 每年正月·四月·十月初十日爲之, 鄉軍徵番, 七月·九月·十一月初一日爲之. 鄉軍京中逢點, 八月·十月·十二月三十日爲之爲白乎矣, 十二月段, 或二十八日·二十九日稟旨, 舉行爲白齊.
- 一. 朔下上下, 每朔初一日[十二月, 則二十日], 各所掌會計初六日[臘月, 則十五日]. 知穀官·教鍊官·壯勇衛講陣, 初七日·十七日[壯勇衛, 則左列初七日. ○右列十七日]. 諸將官射會, 初十日·二十日·三十日[每朔二次, 則初十日·二十日]. 料準坐起十五日[臘月, 則初十日], 軍兵放料二十日[臘月, 則十五日], 卜馬點考, 朔末爲之爲白齊.
- 一. 間年大比較, 三月·九月初一日, 取稟[見試射條], 陞戶抄上, 每式年七月初一日發關, 陞戶逢點, 九月二十日爲之爲白齊.
- 一. 各種給縮段, 米每石一斗, 錢每兩一分, 火藥每斤一兩, 箭竹每浮二箇, 豆錫·熟銅·水銀·研砂·朱紅丹木·象毛·唐鄉絲, 每斤五錢, 正鐵·鉛鐵, 每斤六錢, 正筋每斤一兩五錢, 魚膠·阿膠, 每斤一兩爲白齊.
- 一. 工匠料布段, 銀匠·玉匠·冶匠·木手·柒匠·盖匠, 自二月至九月, 每朔料米十二斗·木四疋[純錢, 則十二兩], 十月至正月, 每朔米十二斗·木三疋[純錢, 則十兩]爲白齊.
- 一. 冶匠·石手助役段, 壯助役, 每朔米六斗·木二疋[純錢, 則六兩], 兒

助役, 每朔米六斗·木一疋[純錢, 則四兩]爲白齊.

- 一. 諸色匠手, 每朔米十二斗·木二疋十七尺五寸[純錢, 則九兩 ○內役, 則每日四錢磨鍊]爲白齊.
- 一. 工匠牙兵, 每朔米六斗·木一疋[純錢, 則四兩 ○內役, 則木一疋·錢二兩一錢, 加上下]爲白齊.
- 一. 軍物修改時, 各色匠料段, 每朔米九斗·木二疋[純錢, 則七兩], 針線婢·茵席匠段, 每日食價, 竝二錢, 差備員役·匠手, 則每日只供兩時飯爲白齊.
- 一. 出使將校路資段, 每日糧米三升[代錢, 則一錢三分], 饌價錢一錢五分. 旗手糧米三升[代錢上同], 饌價錢九分. 奴子, 每日糧米三升[代錢上同], 饌價錢六分. 騎馬, 每日粥太三升[代錢, 則六分], 稷三升[代錢, 則三分 ○行獵時, 領軍將以下, 奴馬料同], 上下爲白齊.
- 一. 行獵牙兵糧饌段, 每日米三升[代錢, 則一錢二分], 錢六分, 每三時醬價, 錢一分. 卜馬, 每日粥太三升[代錢, 則六分], 馬鐵價, 二錢五分. 驅軍[名數年各不同], 每日點心米二升, 饌價五分[以該邑屯稅中上下], 計日上下爲白齊.
- 一. 輜重卜馬軍, 每日糧米三升[代錢, 則一錢二分], 粥太二升[代錢, 則四分], 每十里, 錢一錢[往還竝計], 上下爲白齊.
- 一. 提調·大將, 各陵寢差祭時, 每日支應所入, 各錢一兩五錢, 下人·奴馬料, 每站各一錢五分[使令二 ○引陪一 ○依幕使令一 ○驅從二 ○奴子一 ○卜馬軍一 ○騎馬一 ○衣籠馬一[○以哨卜馬舉行]]. 從事官, 每日一兩, 下人·奴馬料[使令二 ○雨裝直一 ○依幕軍士一 ○奴子一 ○卜



- 馬軍一○騎馬一○衣籠馬一], 依提調·大將例, 上下爲白齊.
- 一. 各陵·園·墓差祭, 將官以下糧饌價段, 計其道里遠近, 將官, 每站二錢[十五里以下, 往還二站 ○二十里以上, 往還三站 ○三十里以上, 往還四站], 下人·奴馬料, 各一錢五分上下爲白齊.
 - 一. 大將掃墳下去時, 隨率執事以下, 各人等盤纏, 自別剩庫磨鍊上下爲白乎矣, 執事一人, 每日二錢七分, 旗手六名·使令二名·驅從一名·伺候軍一名·卜馬軍二名, 各二錢一分, 奴子一名, 一錢八分, 騎馬一匹, 衣籠馬二匹[哨卜馬], 各九分式, 計日上下爲白齊.
 - 一. 大將新除時, 執事廳價, 錢七百兩, 自別剩庫上下, 遞任後, 發賣還納爲白乎矣, 修改時物力, 亦自該庫上下爲白齊.
 - 一. 毋論將官·將校之新差, 馬步軍兵之新入者, 在於望前, 則料米計日上下, 在於望後, 則竝勿論爲白齊.
 - 一. 毋論將官·將校·員役·軍兵, 已自他衙門受料, 而移差本營者, 竝勿論爲白齊.
 - 一. 堂上將官中, 如有解由未出, 越俸拘碍, 罷散未叙之員, 則依他營例, 以料米磨鍊, 上下爲白齊.
 - 一. 待年軍出用, 則每日每名, 米二升[拜峯牙兵同], 上下爲白齊.
 - 一. 凡草記入呈時, 直房入直哨官舉行, 則別武士代直, 外營入直哨官舉行, 則堂上將官都領. 闕內齋宿時, 則以攔後哨官舉行爲白齊.
 - 一. 毋論城內外動駕時, 隨駕軍兵, 或都領, 或領付之時, 則實數單子, 呈于政院爲白齊.
 - 一. 各所掌捧下文書, 只以別付料, 句檢校準, 不無疏漏之慮. 各其所掌

監官，與別付料，眼同句檢校準，竝爲着名·着署爲白齊。

- 一. 料准文書，依訓局例，各該將領，及次知，親執詳查。兼良·斗數·人名去來，追現未現，叩准着署，次次轉報，則別將·把摠，亦爲考准着署後，各署標識。趁十五日，料准坐起，送于從事官。從事官，一位查准着署，送于大將所，大將考閱後，堅封踏印，移送于餉色，則餉色依成冊磨鍊，上下爲白乎矣，如或有差誤之弊，則各該將領及次知，輕則自本營請勘，重則請付攸司，照法重繩。大將，小則推考，大則罷職，從事官，加等勘罪，俾有統轄之實效事，定式[奉足文書段，預下之數，一體考准]爲白齊。
- 一. 料准坐起，從事官，每月十五日，外營或直房，從便開坐爲白乎矣，或有未到之哨·色，則當該書牌，決棍懲勵爲白齊。
- 一. 軍校中，見失物件，毋論多寡，折價三十兩以上，該將領及次知，微稟後，報于大將所粘啓，十兩以上，大將分付捕廳，使之推給，十兩以下，告于大將後，言送捕廳，這這推給爲白齊。
- 一. 拜峯鎮糶糶時，將官·將校中，每於開倉，臨時別遣廉探事，定式施行爲白齊。
- 一. 各哨·色軍兵油衫，每年二·八月，各該將領及次知，定日點考爲白乎矣，若過限不爲，則該將領及次知，登時論勘爲白齊。
- 一. 試射頒賞時，如非親臨，則提調·從事官，備員舉行爲白齊。
- 一. 各庫鎖鑰及字折，提調句檢爲白乎矣，每於捧下時，字折，則膽置冊子，鎖鑰，則各以二件，輪回封鎖爲白齊。
- 一. 壯勇衛中，加資人，武臣堂上祿試射時，許赴[各廳將校同]爲白齊。



- 一. 曾經本營將官·將校者, 外幕·京校, 勿拘差定爲白齊.
- 一. 提調坐罷時, 若動駕相值, 則書吏往告政院, 自政院以啓辭稟旨爲白齊.
- 一. 料准時, 毋論各哨·色軍, 如以除案事粘啓, 而文書未下之前, 則成册中措語懸註, 判下後, 如或仍存, 則追後給料爲白齊.
- 一. 軍兵犯科不飭之該旗隊摠, 這這懲治, 書牌, 勿爲替治爲白齊.
- 一. 本營坐起時, 都提調·提調·大將·從事官, 中門外下馬爲白齊.
- 一. 別將·把摠, 依各營堂上將官入番之例, 以挾路至直所門外, 下馬爲白齊.
- 一. 善騎將·哨官·監官以下, 各廳將校, 依各營例, 大門外下馬爲白齊.
- 一. 諸將官之於營內下馬者, 若值提調·大將開坐相望之時, 則營外下馬爲白齊.
- 一. 毋論將官·將校·馬步軍兵, 各其直所窓戶·風遮等所入, 各該將領, 前期報于餉色, 依例磨鍊, 每年十月初一日, 上下爲白齊.
- 一. 烙印事體至爲嚴重. 凡有使用之時, 大將稟旨, 請出烙給後, 內外封書, ‘月日臣謹封’. 無論大將以下諸將官, 伊日監烙人着署, 送于知穀官, 封入爲白乎旂, 所烙馬匹·器械等, 名色數爻, 成出件記, 送于監官, 則晝仕監官, 竝與出納月日, 而錄置册子後, 踏內印入櫝[開金監官書, ‘臣謹封’, 着署, 鎖鑰外封踏, ‘啓字’]. 木物烙印時[提調請出], 監官·別付料中一人, 與所幹將校, 眼同監烙, 而烙印封納册子錄置, 依馬匹·器械烙給時例, 舉行爲白齊.
- 一. 殿試時, 本營將官·將校·京鄉軍兵, 直赴之類, 殿試臨時, 竝皆抄出, 京則預先知委, 鄉則前期發關, 使之趁期來待, 別定將校·旗手·摠領等待[先爲外打點]. 待呼名次次應試, 唱榜·謝恩·謁聖之

時，亦用此例，俾無紛雜之弊爲白乎矣，如有不勤舉行，當該句檢將校，各別重治爲白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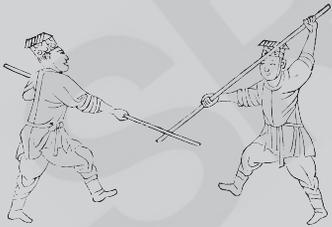
- 一. 八色書牌，陵行軍服債，每年一次上下是白如乎，限年例下軍服債，則勿論爲白齊。
- 一. 各哨·色軍兵，闕失軍物，則決棍徵出後，看品烙給爲白齊。
- 一. 營內拘囚時，將校嚴囚，則軍士一名守直，外門封鎖，開金，則納于入直堂上所，供饋等節，從門隙爲之，非特教，勿爲鎖足[軍士，則鎖足]爲白齊。
- 一. 凡有軍馬闕失，依定式分付捕廳，使之譏捕推納，而屢過期限，則自本營，請推左右捕將，該校決棍懲勸爲白齊。
- 一. 大將所陪旗手，依巡牢例，直付九斗爲白齊。
- 一. 禁火物種，器械色監官次知舉行，而每年多置水瓮，於各該廳，長時貯水爲白乎矣，汲水段，使各該廳軍士舉行爲白齊。
- 一. 書牌使役偏苦，雖新入直陞兼料，若有罪降付，還付九斗爲白齊。
- 一. 還屬軍，毋論兼良，竝依前斗數付料，他營除案者，若入屬，則初付七斗，若自他營，已爲陞禁，則考其帖文，許付兼料爲白齊。
- 一. 各廳將校及馬步·各哨·色軍兵，新入浮費段，知穀官·教鍊官，各錢二十六兩[代錢磨鍊，以下倣此 ○知面禮二兩 ○禮木二疋 ○風月禮一兩 ○餞別禮五兩 ○方席十立 ○壯紙一束 ○白紙三束 ○黃筆二柄 ○真墨一丁 ○南草十五斤[教鍊官二十斤] ○奴禮五兩 ○重來，只納知面禮二兩 ○重重來否 ○先生子弟，只禮木半減]。壯勇衛，錢三十一兩[知面禮二兩 ○禮木二疋 ○座目禮一兩 ○乾納五兩 ○



方席次二兩 ○壯紙一束 ○白紙二束 ○黃筆二柄 ○真墨一丁 ○南
草三十斤 ○奴禮五兩 ○新納馬時, 軍色書吏一兩五錢[改馬時五錢]
○馬醫五錢[改馬時二錢] ○大將所巡牢二兩[改馬時四錢] ○重來,
重重來, 先生子弟禮木, 上同]. 別武士, 錢十四兩五錢[知面禮一
兩 ○禮木二疋 ○風月禮五錢 ○餞別禮二兩 ○方席五立 ○壯紙一
束 ○白紙一束 ○黃筆一柄 ○真墨一丁 ○南草十五斤 ○重來, 只
納知面禮一兩 ○重重來, 先生子弟禮木, 上同]. 善騎隊, 錢十兩五
錢[房禮一兩 ○行禮一兩 ○旗禮五錢 ○隊禮五錢 ○技藝廳禮五
錢 ○南草二斤 ○書字的一兩 ○牌頭五錢 ○別將所書字的一兩 ○
牌頭五錢 ○軍色書吏五錢 ○文書直一錢 ○知穀官廳房子一錢 ○
新納馬時, 軍色書吏五錢[改馬時二錢] ○馬醫五錢[改馬時二錢] ○
大將所巡牢二兩[改馬時四錢]]. 巡牢兩色, 各錢六兩五錢[大將所巡
牢, 都提調·提調·從事官陪旗手同 ○房禮二兩 ○番禮一兩 ○知
面禮五錢 ○南草二斤 ○白紙一束 ○黃筆一柄 ○真墨一丁 ○書字
的一兩 ○牌頭五錢 ○軍色書吏五錢 ○文書直一錢 ○知穀官廳房
子一錢]. 吹大塘燈帳牙六色, 各錢八兩[大將所陪旗手·牙兵同 ○
房禮二兩 ○番禮一兩 ○知面禮五錢 ○南草二斤 ○書字的一兩 ○
牌頭五錢 ○軍色書吏五錢 ○文書直一錢 ○知穀官廳房子一錢 ○
大將所巡牢二兩]. 各所標下, 各錢八兩五錢[房禮一兩 ○行禮一兩
○旗禮五錢 ○隊禮五錢 ○技藝廳禮五錢 ○南草二斤 ○書字的一
兩 ○牌頭五錢 ○軍色書吏一兩 ○文書直一錢 ○知穀官廳房子一
錢 ○大將所巡牢二兩]. 步軍各哨, 各錢九兩[房禮一兩 ○行禮一兩

○旗禮五錢 ○隊禮五錢 ○技藝廳禮五錢 ○南草二斤 ○書字的一兩 ○牌頭五錢 ○中司書字的五錢 ○軍色書吏一兩 ○文書直一錢 ○知穀官廳房子一錢 ○大將所巡牢二兩 ○毋論馬步各哨·各色軍, 重來, 則只納房禮錢, 兼司僕, 則納得米禮二兩]. 各哨·色卜馬軍, 新納馬時, 各錢一兩一錢[軍色書吏五錢[改馬時三錢] ○馬醫三錢[改馬時二錢] ○大將所巡牢三錢[改馬時二錢]], 定式遵行為白乎矣, 除案軍之還屬他哨·色者, 依新入軍例施行. 各色軍之陞付巡牢者, 依例納禮. 吹鼓手以下, 各哨軍, 如有移填換定之事, 則房禮錢, 及軍色書吏付標債, 該色書牌筆債, 半減[哨軍房禮錢否]. 他營元軍中, 移定善騎隊, 則房禮例納半減, 而新納馬, 則馬醫盆五錢, 仍納本馬, 則勿論. 移定哨軍, 則只納房禮錢一兩, 軍色書吏三錢, 中司書字的二錢, 該哨書牌五錢, 大將所巡牢五錢. 移定各色軍, 則只納房禮錢一兩, 軍色書吏三錢, 大將所巡牢五錢, 該色書牌七錢[在該營時不用, 浮費之類, 用新入例]. 移定內入番巡牢, 則各項禮納, 依新入軍例, 施行為白齊.

- 一. 帳幕軍使役偏苦, 入屬後, 周年隨行, 則依訓局例, 陞付九斗為白齊.
- 一. 營入直及直房入直, 將官以下立待馬, 依壯勇衛例, 長時鞫待為白乎矣, 每日定時輪鞫[外營, 則哨官馬, 自日出時, 至午正 ○堂上將官馬, 自午正, 至日暮時 ○知穀官馬, 自日暮時, 至四更一點 ○別武士馬, 自四更一點, 至日出時 ○直房, 則將官馬, 自日出時, 至午正 ○善騎隊馬一匹, 自午正, 至日暮時, 一匹, 自日暮時, 至四更一點, 一匹, 自四更一點, 至日出時], 俾無違越之弊為白齊.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원

壯勇營大節目

卷三

역주

외영(外營)

1. 승유수(陞留守)

승유수

1. 수원부는 원침(園寢)을 받든 뒤로 호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는데, 3품의 수령에게 위임한 것은 높이고 예우하는 뜻이 아니다. 또 군정(軍政)에 있어서는 본영의 내외가 모두 설치되었고, 직무에 있어서는 행궁(行宮) 정리(整理)의 책임이 주어져 있으니, 이것이 성상께서 결단하여 특별히 유수로 승격시킨 이유이다. 차제(差除)는 정탈(定奪) 받은 대로 양도(兩都)¹⁰⁹와 비교하여 1등급을 더하고, 문신은 정2품 이상에 한정하여 묘당에서 의논하여 추천하며, 대신 무장은 특별히 특지(特旨)로 한다. 그리고 수원부 유수로서 장용외사(壯勇外使)와 행궁정리사(行宮整理使)의 칭호를 겸하게 한다.

1. 유수 겸 외사가 차고 있는 부신(符信)은 내사(內使)가 이미 호부(虎符) 하나를 휴대하고 있으니, 호부로 거행하며, 외사의 수기(手旗)는 이미 장용외군(壯勇外軍)을 겸하여 거느리고 있으니 장용외군사명(壯勇外軍司命)으로 칭한다. 인기(認旗)는 누런 중심에 주변도 누렇게 하고, 누런 대를 곁으로 한다.

1. 수원부 유수가 차고 있는 발병부(發兵符)는 ‘수원부유수 겸장용외사

¹⁰⁹ 양도(兩都) : 개성부와 강화도를 말한다.



水原府留守兼壯勇外使' 라고 쓰고, 오른쪽은 유수에게 반사하고, 왼쪽은 대내에 들인다.

1. 판관의 병부는 단지 '읍호' 만을 쓰고, 오른쪽 1척隻은 판관에게 반사하고, 왼쪽 1척은 대내에 들이며, 또 왼쪽의 다른 1척은 유수에게 남겨 둔다.
1. 수원부 유수의 인신印信 2과類 중에 1과에는 '수원부 유수 겸정리사인水原府留守兼整理使印' 으로 새겨 넣고, 또 다른 1과에는 '장용외사지인壯勇外使之印' 으로 새겨 넣어서 행용行用하게 한다. 판관의 인신 2과 중에 1과에는 '수원부 판관인水原府判官印' 으로 새겨 넣고, 또 다른 1과에는 '장용외영 종사관지인壯勇外營從事官之印' 으로 새겨 넣는다.
1. 외사를 대신이 겸하여 관장하게 하는 것은 비록 정식이 있을지라도, 시임時任과 원임原任은 본래 별천別薦으로 한다. 원임 대신이 겸하여 관장하고 수원부 유수가 시임인 경우에는 그를 대신하여 의망하여 추천하는 일을 정식으로 한다.
1. 문첩의 규식은 정2품의 유수인 경우에는 내영은 초관草關을, 외영은 첩보牒報를 하고, 다른 아문에서는 다른 동품의 아문의 예대로 시행하며, 대신이 유수가 된 때에는 내영과 각 사司에서는 곧바로 수원부 판관이나 혹은 종사관에게 관문을 하고, 외영에서는 판관이 이미 종사관을 겸하므로 유사한 조문을 따라 하며, 대신이 수어사守禦使를 겸대할 때에는 부사를 설치하여 대신 행하는 예로 그 직무에 따라서 혹은 종사관이라 하고 혹은 판관이라 칭하여서 서목

을 갖추어 첩정하는데 다른 아문의 첩정하는 곳에서도 또한 이대로 한다. 그리고 관문을 통하는 곳에서는 사복시司僕寺¹¹⁰의 예대로 유수의 뜻이라 운운하며 서로 관문을 통하게 한다.

1. 수원부 판관 및 변장의 전최殿最는 유수가 곧바로 마감하고, 겸중사관 및 중군 이하 여러 장관의 전최는 외사가 등제等第의 제목題目을 갖추어서 내영에서 함께 의논한 뒤에 수계修啓한다.
1. 외사에 새롭게 제수된 전령傳令은 내사의 예대로 지구관에게 맡겨 전한다.
1. 외사를 새로 제수할 때 내영의 서리 1인은, 양도의 유수가 새로 제수될 때 비변사의 서리가 대령하는 예대로 본부의 서리가 올라가서 물어서 대령하고 거행한다. 사조辭朝¹¹¹할 때에는 교련관 3인, 별무사 3인, 순령수와 뇌자 각 10쌍을 내영에서 정해 보낸 다음 강가에 이르면 뒤에 남게 한다. 교련관과 별무사 각 1인은 그대로 교귀交龜¹¹²하는 장소로 나아가도록 한다.
1. 외사가 교체할 때에 호부虎符와 발병부發兵符는 새로운 유수에게 전해주고, 인신印信과 군적軍籍 등 모든 군무는 교귀하는 날에 전해주도록 전령傳令으로 통지하고, 새로운 유수도 또한 공경히 수령하라

110 사복시(司僕寺) : 궁중의 가마와 말[馬], 목장과 마구간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이다.

111 사조(辭朝) : 외직으로 부임하는 관원이 출발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 인사드리는 것을 말한다.

112 교귀(交龜) : 지방의 관원이 교대할 때 발병부(發兵符)나 인신(印信) 따위를 인수인계하던 일을 말한다.



는 뜻으로 모두 전령으로 통지한다.

1. 외영의 겸종사관 및 중군은 제수된 다음 사조한 뒤에 내영 종사관의 예대로 도제조와 제조, 대장에게 투자投刺¹¹³한다.

1. 본부는 삼남의 요충지로서 이미 원침園寢을 모셨고 또 행궁을 두었으니 그 체모를 존중하고 관방을 중시하는 도리가 전과 비교하여 각별해야 한다. 축성하자는 의논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더구나 유수로 승격된 뒤에는 더욱 즉시 설치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축성의 물력을 우선 구획한 뒤에야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본부 및 안산창安山倉에 있는 환향還餉¹¹⁴의 각종 곡물을 모두 축성곡築城穀으로 만들어 매년 취모取耗하여 차례차례 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

1. 본부에서 아직 성을 설치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경영하는 것은 이미 차례가 정해진 일이니, 성정군城丁軍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에 총융청 소관의 재가 군관在家軍官 150인, 본부 소관의 방어영 제번 군관除番軍官 290인, 토포 제번 군관討捕除番軍官 459인을 수첩 군관守堞軍官으로 명칭을 바꾸고, 본부의 군수 별무사軍需別武士 2002명 가운데, 마사馬士 204명, 유방군留防軍 702명을 감하여서, 성정군이라 명명하여 성을 지키는 제도를 이루게 한다.

113 투자(投刺) : 윗사람을 뵈고 명함을 드리는 일이다.

114 환향(還餉) : 환(還)은 환곡(還穀)을, 향(餉)은 군사용으로 비축한 양곡을 의미하여 환향은 두 가지 명목의 양곡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평상시에는 환곡의 예에 따라 농민들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하고 비상시에는 병사들의 식량으로 쓰이던 곡식이므로 결국 같은 곡식을 말한다. 조선 후기에는 환향을 환자(還上)와 동일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1. 독성산성(禿城山城)은 이미 관방의 중요한 지역이고 또한 군향을 쌓아 둔 곳이니, 방어하는 방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전에 충용청의 소관이었던 장초(壯抄) 2초(哨), 아병 1초, 둔장초(屯壯抄) 68명, 군수보(軍需保) 125명은 아울러 본성의 소관으로 모집한 군관 30인, 수첩 군관 130인, 아병 2초, 보군(保軍) 400명, 별무사 1,523명을 성을 지키는 명목으로 본성에 전속시키되, 그 가운데 장초 2초, 아병 1초, 둔장초 68명, 군수보 125명은 본래 미(米)를 납부하던 군인이니, 납부한 미는 외영에서 거두어 저장한다.
1. 기타 응당 행해야 할 일은 송도(松都)와 심도(沁都)¹¹⁵의 예를 참고해서, 비변사에서 절목을 마련하여 반사하고 시행한다.

115 송도(松都)와 심도(沁都) : 송도는 개성, 심도는 강화를 지칭한다.



陞留守

- 一. 水原府, 自奉園寢之後, 拱護之節, 靡不用極, 而委之於三品邑倅, 有非尊體貌之意. 且戎政, 則本營之內外竝設, 職務, 則行宮之整理有責, 此所以斷自宸衷, 特陞留守者也. 差除段, 依定奪, 比兩都, 加一等, 文臣則限正二品以上, 廟堂議薦, 大臣武將, 須特旨, 以水原留守, 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 稱號爲白齊.
- 一. 留守兼外使, 所佩符信段, 內使, 旣佩虎符一體, 以虎符舉行爲白乎旂, 外使手旗段, 旣兼領壯勇外軍, 以壯勇外軍司命稱之. 認旗段, 黃心黃邊, 雙黃帶爲白齊.
- 一. 水原留守, 所佩發兵符段, 書以‘水原府留守兼壯勇外使’, 右隻頒于留守, 左隻內入爲白齊.
- 一. 判官兵符段, 只書邑號, 右一隻頒于判官, 左一隻內入, 又左一隻留置于留守處爲白齊.
- 一. 水原府留守印信二顆段, 一顆以‘水原府留守兼整理使印’入刻, 一顆以‘壯勇外使之印’入刻, 行用爲白乎旂, 判官印信二顆段, 一顆以‘水原府判官印’入刻, 一顆以‘壯勇外營從事官之印’入刻爲白齊.
- 一. 外使之大臣兼管, 雖有定式, 時任與原任, 自有別薦. 原任大臣之兼管, 水原留守者爲時任, 則其代擬薦事, 定式爲白齊.
- 一. 文牒規式段, 正二品留守時, 內營則草關, 外營則牒報, 他衙門, 則依他同品衙門例, 施行爲白乎旂, 大臣留守時段, 內營與各司, 直以右關水原府判官, 或從事官, 外營則判官, 旣兼從事官傍照, 大臣兼帶

守禦使時，設副使代行之例，隨其職掌，或稱從事官，或稱判官，具書目牒呈，而他衙門牒呈處，亦依此爲之。通關處，依司僕寺例，以留守意云云，互相通關爲白齊。

- 一. 水原府判官及邊將殿最段，留守直爲磨勘爲白遣，兼從事官，及中軍以下諸將官殿最段，外使具等第題目，同議於內營後，修啓爲白齊。
- 一. 外使新除傳令，依內使例，知穀官賚傳爲白齊。
- 一. 外使新除時，內營書吏一人，依兩都留守新除時，備局書吏待令之例，府吏上來問等待舉行爲白乎旆，辭朝時，教鍊官三人，別武士三人，巡令手·牢子各十雙，自內營定送，至江頭落後爲白乎矣，教鍊官，別武士各一人段，仍往交龜所爲白齊。
- 一. 外使替易時，虎符·發兵符，傳授於新留守，印信·軍籍一應軍務，交龜日傳授事，傳令知委，新留守處，亦以祇受之意，一體傳令知委爲白齊。
- 一. 外營兼從事官及中軍，除拜辭朝後，依內營從事官例，投刺于都提調·提調·大將爲白齊。
- 一. 本府以三南要衝之地，既奉園寢，又置行宮，其所尊體貌，重關防之道，比前自別。築城之議，自古有之，而況陞爲留守之後，尤當趁卽設施是白如乎，築城物力，先爲區劃，然後可以始役。以本府及安山倉所在還餉各穀，竝作築城穀，以爲每年取耗，次次經紀之地爲白齊。
- 一. 本府姑未及設城，而來頭經紀，既是次第事，則城丁軍不可不磨鍊。在前摠廳所管在家軍官一百五十人，本府所管防營除番軍官二百九十人，討捕除番軍官四百五十九人，以守堞軍官改號，本府



軍需別武士二千二名，減馬士二百四名，留防軍七百二名，名以城丁軍，俾成守城之制爲白齊。

- 一. 禿城山城，既係關防重地，且是軍餉所峙，則拱禦之方，不可疏虞。在前摠廳所管壯抄二哨，牙兵一哨，屯壯抄六十八名，軍需保一百二十五名，竝本城所管募入軍官三十人，守堞軍官一百三十人，牙兵二哨，保軍四百名，別武士一千五百二十三名，而以守城名色，專屬本城爲白乎矣，其中壯抄二哨，牙兵一哨，屯壯抄六十八名，軍需保一百二十五名，自是納米之軍，納米則自外營捧留爲白齊。
- 一. 他餘應行事件，參互松·沁兩都之例，自備局磨鍊節目，頒行爲白齊。

2. 제치(制置)

제치

1. 유수는 양도兩都의 예대로 비변사 당상이 예겸例兼하되, 자금資級이 보국輔國¹¹⁶과 같으면 추함樞御¹¹⁷을 그대로 유지한다.
1. 유수의 과한瓜限은 양도의 예대로 2주년으로 하고, 판관判官은 경력經歷의 예대로 30삭朔을 정식으로 한다.
1. 본부의 부사府使는 현재 속읍屬邑의 진관鎭管을 남양南陽의 방영防營으로 이송한다.
1. 승보陞補¹¹⁸는 양도의 예대로 유수가 시험을 주관하여 설행設行하되 제술製述과 고강考講으로 각각 2인을 뽑는다. 교수教授는 판관이 예겸한다.
1. 군병이 봄·가을·겨울 삼맹삭三孟朔에 하는 삭조朔操는 내영內營에서 통지하기를 기다리되, 시행 여부의 상황만 비변사에 보고한다.
1. 경내境內의 민인民人 가운데 혹 다른 고을의 역명役名을 가지고 본부로 이사 온 자는 본역本役을 면제해주고 본부에 소속시킨다.
1. 본부에 있는 경사京司 및 순영巡營의 각종 곡식은 이미 향곡餉穀으로 만들었으니, 나누어 보관해 둔 실제 수효를 회계會計하여 마감磨勘

116 보국(輔國) : 보국송록대부(輔國崇祿大夫)의 줄임말로, 문산계 정1품 하계의 관계명이다.

117 추함(樞御) : 중추부(中樞府)의 관직을 말한다.

118 승보(陞補) :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한 가지로 승보시(陞補試)의 약칭이다. 소과(小科) 초시(初試)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성균관의 대사성이 사학(四學)의 유생에게 매년 10회(뒤에는 1회)에 걸쳐 행하였는데, 합격한 자에게는 생원과(生員科)·진사과(進士科)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하고 비변사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모조耗條는 각각의 수용이 있으므로 진분盡分¹¹⁹하지 않을 수 없으니 취모取耗한다.

1. 중군의 인신印信은 관제를 이미 변통變通하지 않았으므로 예전 그대로 쓴다.

1. 유죄流罪 이하의 형벌은 유수가 스스로 결단한다.

1. 본부 아문은 높고 중하여 일이 공간公幹에 관계되니, 비록 다른 도道 수령이 계문啓聞하여 하속下屬을 논감할지라도 이문移文한 다음 추치推治한다.

1. 유수가 왕래할 때 쓰는 품마品馬¹²⁰는 예전대로 역마驛馬를 대령한다.

1. 유영留營의 사체事體는 다른 곳과는 구별되니, 이전의 읍역邑役 중에 순영에서 복정卜定한 연로沿路의 책응責應 등의 절목은 모두 제감하되, 크게는 칙사勅使와 신사信使 및 기타 별성別星¹²¹의 지대支持·초료草料·공궤供饋의 일은 모두 이아貳衛¹²²에서 담당한다.

119 진분(盡分) : 봄에 백성들에게 환곡(還穀)을 방출하는 것을 분(分)이라 하고, 창고에 쌓아두는 곡식을 유(留)라 하는데, 방출하는 환곡에는 구황곡(救荒穀)·아문곡(衙門穀)·군영곡(軍營穀) 등이 있으며, 이 중에 어떤 것은 다 방출[分]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반만 방출하고 반은 보관해 두기도 한다. 진분은 모두 다 방출하는 곡식을 말한다.

120 품마(品馬) : 품계에 따라 지급하던 말을 말한다.

121 별성(別星) : 중앙 정부에서 지방에 파견하는 대소 관원을 두루 일컫는 말이다. 성(星)은 사자(使者)를 의미한다.

122 이아(貳衛) : 판관이 주재하는 관청이다. 판관은 종5품 관직으로 지방 군현의 수령에 해당하며, 유수(留守)를 보좌하여 유수부의 실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데, 1793년(정조17) 1월 수원이 유수부(留守府)로 승격될 당시 수원 판관이 설치되었다. 이아는 동헌 건물인 화청관(華淸館)을 비롯하여 총 102칸이 넘는 큰 규모인데,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의 〈화성전도(華城全圖)〉를 보면 화성(華城) 행궁(行宮)의 오른쪽 아래에 대규모 건물군으로 위치하고 있다.

1. 본부는 이미 관찰사의 관찰이 아니므로 모든 공무와 관계된 것을 순영에 보고하면, 계문하는 것은 유수가 직접 장문狀聞¹²³한다. 각종 문보文報와 같은 경우 삭말朔末 등에 으레 순영에 보고하는 것은 모두 거론하지 말고, 경사에 관계된 일은 유영에서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 보낸다.
1. 비장裨將 5원과 검율檢律 1원에게는 매삭每朔 요미料米 1섬[石] 씩을 영수營需로 지급한다. 가료加料 및 찬기饌價·시柴·유油는 부사 때의 전례前例를 참고하여 본부에서 적절하게 지급한다.
1. 관찰사는 비록 본부를 관찰하는 일은 없지만 유수를 겸하고 있어 접대하는 절목이 마땅히 달라야 하니, 구채驅債 10냥兩을 본부 유수의 늑봉廩俸 중에서 매삭에 실어 보낸다. 경계에 도착할 때의 전배前排·육각六角·탐후探候 등의 절목은 규례대로 거행하고, 기타 별성은 1품 봉명奉命과 각신 봉명閣臣奉命 및 어사御史 외에는 모두 지로나장指路羅將¹²⁴ 한 쌍으로 거행한다.
1. 판관은 유영의 종사관으로 체모가 수령과는 달라서 비록 목사나 부사일지라도 첩정牒呈해서는 안 되고 모두 관문으로 통해야 한다. 경사京司의 경우에는 2품 이상 아문에 이첩移牒한다.
1. 사문敍文¹²⁵을 지수祗受할 때 유수가 유고有故 중이면 판관이 대행하

123 장문(狀聞) : 외부에 파견된 관찰사, 절도사 등이 임금에게 장계를 올려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24 지로나장(指路羅將) : 길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나장(羅將)을 말한다.

125 사문(敍文) : 죄를 사면한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고, 전문箋文을 받들고 나아갈 때는 연석筵席의 하교를 정식定式 삼은 대로 검유수에게 보내어 함께 봉진封進하게 한다.

1. 관찰사의 봄·가을 수미需米¹²⁶는 이미 결역結役¹²⁷에서 나온 것이니, 다른 읍으로 옮겨 정할 필요가 없고 본부에서 예전대로 거두어 보낸다.

1. 본부의 하리下吏는 양도의 예대로 서리書吏로 호칭한다.

1. 설포設庖¹²⁸는 양도의 예대로 상하 관청에서 각각 설치한다.

1. 본부 노비는 원래 숫자가 적으므로 이아貳衙에서 정해 보낸다. 그런데 노奴 7명, 비婢 4명으로 하여 역역을 시키면 부족할 염려가 없지 않으니, 노 9구口와 비 6구를 이아에서 모집하여 역을 시키되, 요미는 인근 고을에 붙인다. 그리고 상진곡常賑穀¹²⁹ 중에서 1천 섬에 한해 유영에 떼어 주어 취모取耗와 지방支拂의 바탕으로 삼는다.

126 수미(需米) : 수요에 따라 쓰이는 쌀을 말한다.

127 결역(結役) : 조선 후기에 토지에 부과되었던 부가세의 일종으로, 정식 세금인 전세(田稅), 대동미(大同米), 삼수미(三手米), 결전(結錢) 이외에 지방의 여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던 세금이다. 원래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여 대동미라는 명목으로 토지에서 결(結)당 12말[斗]을 거두어 백성에게서 일체의 요역(徭役)을 면제하고, 대동미 중의 일부를 유치미(留置米)라는 명목으로 지방에 남겨 두어 경비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원칙으로는 백성에게 잡역(雜役)을 거두는 관행은 없어야 했으나, 지방에서는 불시의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지방관이 적절히 여러 비용을 부과하였는데, 토지 결수(結數)를 기준으로 지방민에게 징수하기 시작하여 결역이란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

128 설포(設庖) : 푸줏간의 설치를 말한다.

129 상진곡(常賑穀) : 상평청과 진흥청의 곡부(穀簿)를 하나로 합치고 붙인 이름으로, 대동법 시행 이후 선혜청 산하의 상평청과 진흥청, 즉 상진청(常賑廳)에서 구관(句管)하였다. 팔도와 광주부(廣州府), 개성부(開城府)에서 이를 환곡으로 운용하여, 가을에 상한 쌀을 10분의 1을 모조(耗條)로 받아 이를 상진모(常賑耗)라 하였고, 진흥곡으로도 널리 활용되었다.

사객使客¹³⁰의 지공支供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에 붙였는데, 약간의 서리와 노비로는 역을 시킬 수 없다. 만약 사객이 빈번한 때를 만난다면 상영上營의 하속下屬도 모두 통용한다.

1. 군정軍丁 가운데 탈이 난 자를 대신해서 채워 넣는 것과 군기軍器가 훼손된 정도에 따라 수선修繕하는 것은 영문에서 담당하고, 기타 봉적捧糶·분조分糶·징세徵稅·징포徵布·검전檢田 등의 일은 모두 판관이 담당한다. 그리고 송옥訟獄 중에 큰 것과 관련된 것은 판관이 품의하여 재가를 받고, 유수는 작은 것과 관련된 것을 모두 스스로 결단한다.

1. 사객使客의 지공支供은 이미 이야에서 거행하였으니 영문에 있는 지공미支供米 150섬은 마땅히 이야로 이속移屬시켜야 한다. 그런데 판관이 약간의 늬료糜料로 한 달의 비용도 지탱할 수 없고, 전錢 50냥 또한 유수의 월봉月俸 가운데서 달마다 이야에 떼어 소속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기타 관청의 잡물 중에서 유청油淸·시초柴草·핑·닭·물고기·과일 등의 종류는 모두 영문에서 나누어 내려주어 사객을 접대할 수 있도록 한다.

130 사객(使客) : 연로의 수령이 봉명 사신을 이르는 말이다.



制置

- 一. 留守, 依兩都例, 備堂例兼, 資級若輔國, 則樞銜仍帶爲白齊.
- 一. 留守瓜限, 依兩都例, 二周年, 判官, 依經歷例, 以三十朔定式爲白齊.
- 一. 本府府使, 時屬邑鎮管, 移送於南陽防營爲白齊.
- 一. 陞補, 依兩都例, 留守主試設行, 而製述·考講, 各取二人, 教授則判官例兼爲白齊.
- 一. 軍兵春·秋·冬三孟朔朔操, 當俟內營知委, 而行不行形止罷, 報備局爲白齊.
- 一. 境內民人, 或以他邑役名, 移居於本府者, 除本役, 屬之本府爲白齊.
- 一. 本府所在京司及巡營各穀, 旣作餉穀, 分留實數會計磨勘, 旬管於備局, 而耗條各有需用, 不可不盡分, 取耗爲白齊.
- 一. 中軍印信, 官制旣不變通, 依前仍用爲白齊.
- 一. 流罪以下, 留守自斷爲白齊.
- 一. 本府衙門尊重, 事係公幹, 則雖他道守令啓聞, 論勘下屬, 移文推治爲白齊.
- 一. 留守往來時品馬, 依前以驛馬入把爲白齊.
- 一. 留營事體, 與他自別, 從前邑役之如巡營卜定沿路責應等節, 一竝除減爲白乎矣, 大而勅使·信使, 及其他別星支持·草料·供饋之事, 竝自貳衙擔當爲白齊.
- 一. 本府, 旣無管轄於觀察使, 凡干公務之報巡營, 啓聞者, 留守直爲狀聞. 各樣文報之, 如朔末等例報巡營者, 竝勿舉論, 而事關京司者,

自留營直爲文移爲白齊。

- 一. 裨將五員·檢律一員，每朔料米一石式，以營需上下，加料及饌價·柴·油，參考府使時前例，亦自本府量宜上下爲白齊。
- 一. 觀察使，雖無管轄於本府，乃是兼留守，接待之節，當自別，驅債十兩，以本府留守廩俸中每朔輸送。到境時，前排·六角·探候等節，依例舉行，其他別星段，一品奉命·閣臣奉命，及御史外，皆以指路羅將一雙舉行爲白齊。
- 一. 判官既是留營從事官，則體貌與守令有異，雖牧·府使，不可呈牒，竝爲通關，京司則只二品以上衙門，移牒爲白齊。
- 一. 赦文祇受時，留守有故，則判官替行，而箋文陪進，則依筵教定式，賚送于兼留守處，同爲封進爲白齊。
- 一. 觀察使春秋需米，既是結役所出，則不必移定他邑，自本府，依前收送爲白齊。
- 一. 本府下吏，依兩都例，書吏稱號爲白齊。
- 一. 設庖，依兩都例，上貳衙各設爲白齊。
- 一. 本府奴婢，元來數少，貳衙定送。奴爲七名，婢爲四名，以此使役，不無不足之慮，奴九口·婢六口，自貳衙，募得使役，料米段，以附近邑，常賑穀中限一千石，劃付留營，以爲取耗·支放之地。而使客支供，既付貳衙，則以如干吏奴，無以使役。若值使客稠煩之時，上營下屬，一體通用爲白齊。
- 一. 軍丁之代頃簽伍，軍器之隨毀繕修，自營門當之，其他捧糶·分糶·徵稅·徵布·檢田等事，竝自判官當之。而至於訟獄大者，判官稟裁，



留守，小者竝爲自斷爲白齊。

- 一. 使客支供，既自貳衙舉行，則營門所在支供米一百五十石，自當移屬於貳衙。而判官之如干廩料，不能支一月之用，錢五十兩，亦於留守月俸中，逐朔割屬於貳衙。其他官廳雜物之，如油清·柴草·雉·鷄·魚·果等屬，竝自營門分牢劃下，以爲接濟使客之地爲白齊。

3. 분공(分供)¹³¹

분공

1. 본부가 이미 유수로 승격하였고 또 판관을 두었다. 유수는 마땅히 양도의 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판관은 마땅히 7도道の 규례를 적용해야 하는데, 나누어 둘로 한다면 끝내 방해가 될 것이다. 경력(經歷)과 판관은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마땅히 양도의 예만을 적용해야 한다.

판관은 양도의 경력과 경사(京司) 낭청의 예를 참고하여 거행하고, 군교(軍校)·이례(吏隸)·노비 등은 서로 공통으로 돌아가며 사역하게 하여 수금(囚禁)¹³²·형곤(刑棍)¹³³에 구애됨이 없게 한다.

1. 심도(沁都)와 송도(松都) 양도 사객(使客)의 지공(支供) 및 치민(治民)·청송(聽訟)·전군(田軍)·조적(糶籍) 등의 일을 유수가 주관하여 거행하는데 일의 체모가 구차한데다가 본부 유수의 체모는 더욱 높고 중하니 제반 사무는 마땅히 판관이 거행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부는 물산이 많고 땅은 넓은데 판관의 경우 군수의 이력(履歷)이 있는 사람에 불과하니, 음관으로서 이력이 얇은 자는 유수의 주장을 거부하기 어려울 듯하다. 서무는 판관으로 하여금 보좌하

131 분공(分供) : 각 고을에서 사신이나 관찰사, 수령 등을 접대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지공(支供)이라 하는데, 분공(分供)은 감사가 휘하의 고을에서 필요 물품을 조달받지 않고 스스로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여 구하는 것을 말한다.

132 수금(囚禁) : 죄인을 잡아 가두는 것을 말한다.

133 형곤(刑棍) : 곤장을 때리는 것과 같이 형벌을 집행함을 말한다.



게 하고, 사객을 지공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에서 거행하도록 하며, 재력財力은 유수영에서 편의에 따라 마련하여 보낸다.

1. 본부에 있는 경사의 각종 곡물 7,606섬[石] 7말[斗] 남짓과 경기 감영의 각종 곡물 4,242섬 8말 남짓은 본부의 향곡으로 삼고, 모조耗條 가운데서 절미折米¹³⁴ 34섬과 각종 곡물 1,000섬은 유수에 획급하여 주고 그 나머지는 모두 회록會錄한다.

1. 양도는 유수의 중요함 때문에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과 대동세를 모두 봉류捧留¹³⁵하고 상납하지 않는다. 하물며 본부의 사체는 양도에 비해 더욱 특별한데, 유수와 관관의 능록廩祿도 또한 마땅히 마련해야 하니 양도의 예대로 본부의 세금과 대동조大同條는 마땅히 모두 본부에 봉류해야 한다.

그리고 호조와 선혜정의 경비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대동세 가운데서 미 1,500섬만 봉류하고 잡비조雜費條는 관관에게 획급한다. 원래의 미는 외탕고外帑庫에 이속移屬시키고, 각 궁방宮房의 면세결免稅結 594결 남짓은 영원히 다른 고을로 옮겨 정한다.

1. 본부가 승격하여 유수가 된 뒤에 능록과 봉전奉錢을 관관의 설치라는 이유로 삭감할 수는 없으니, 본부에서 쓰는 각종 물품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예전대로 유수 아문에 부친다. 본부는 양도에 비해 사체가 더욱 중한데도 녹봉은 도리어 양도에 미치지

134 절미(折米) : 환곡을 받을 때 축날 것을 예상하고 한 섬에 몇 되씩 더 받아들이는 쌀을 말한다.

135 봉류(捧留) : 상납하지 않고 보관해두는 것을 말한다.

못하니, 구획하여 보충하지 않을 수 없다.

독성산성雋城山城의 향미태모餉米太耗 중 절미折米 150섬, 안산安山에 있는 진흥청의 둔전屯田 34결結 남짓에서 거두어들인 미 50섬, 양향청糧餉廳 둔전 11결 남짓에서 거두어들인 조租 40섬 남짓 중 절미 16섬 및 환곡모조還穀耗條 중 절미 34섬, 도합 250섬을 떼어 준다. 본부 환지還上 가운데 각종 곡식 중 모조耗條 1,000섬도 또한 떼어 주어 전錢으로 만든 다음 보충하여 배식排朔¹³⁶할 수 있게 한다.

1. 관관의 늬봉은 참작하여 마련하되 관수官需·잡역雜役 등의 미는 원결元結 중에서 편리한 대로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 궁결宮結에서 세금을 낸 뒤 시작미柴作米 138섬 남짓, 대동미의 봉류조捧留條 중에서 배와 말 등 각종 잡비 450섬, 양향청의 둔세 80섬, 도합 미 668섬 남짓 중에서 296섬을 미조米條로 떼어 주고, 남은 372석 중에서 매 섬당 값 4냥兩 5전錢 가량 씩 도합 전 1,674냥을 전조錢條로 떼어 주어 배식한 다음 수용需用할 수 있게 한다.
1. 유청油淸·치계雉鷄·시초柴草·탄거炭炬는 모두 관용官用을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니, 양도의 예대로 상부 아문에서 적절하게 이아貳衙로 이송移送한다.
1. 군교軍校·이례吏隸·노비奴婢를 서로 공통으로 돌아가며 사역 시키도록 이미 정식을 삼았지만, 상하 관청이 번을 배정하는 수효를 참

136 배식(排朔) : 1년 예산을 12달로 나누어 놓는 것을 말한다.



작하여 정하는 거조가 없어서는 안 되니, 이것은 본부에서 모두 요
조料條를 적절하게 정해서 보낸다.

分供

- 一. 本府既陞留守, 又置判官. 留守當用兩都之制, 判官當用七道之規, 而分而二之, 終涉掣碍. 經歷·判官, 名號雖殊, 只當純用兩都之例是白如乎, 判官段, 參互兩都經歷·京司郎廳例舉行, 軍校·吏隸·奴婢等屬段, 互相通同輪回使役, 囚禁·刑棍無所拘碍爲白齊.
- 一. 沁·松兩都之使客支供, 及治民·聽訟·田軍·糶籍等事, 留守之主管舉行, 事面終涉苟, 且況旣本府留守體貌, 尤爲尊重, 諸凡事務, 當使判官舉行是白如乎. 但本府物衆地大, 而判官不過郡守履歷之人也, 以蔭官歷淺者, 似難彈壓留守主張. 庶務, 使判官承佐, 至若使客支供, 使貳衙舉行, 而財力, 自留守營, 從便磨鍊以送爲白齊.
- 一. 本府所在京司各穀七千六百六石七斗零, 京畿監營各穀 四千二百四十二石八斗零, 作爲本府餉穀, 而耗條中折米三十四石, 各穀一千石, 劃給留守, 其餘則竝爲會錄爲白齊.
- 一. 兩都, 以居留之重, 土地所出稅·大同, 竝爲捧留, 不爲上納. 況旣本府事體, 比兩都尤別, 留守·判官廩祿, 亦當磨鍊, 依兩都例, 本府稅·大同條, 事當一併捧留本府是白乎矣, 戶惠廳經費, 亦不可不念, 大同中米一千五百石益捧留, 而雜費條, 則劃給判官爲白遣, 原米則移屬外帑庫爲白乎旣, 各宮房免稅結五百九十四結零段置, 永爲移定

他邑爲白齊。

- 一. 本府陞爲留守之後，廩祿·俸錢，不可以判官之設置，有所減削，本府所用各種，毋論多寡，一併依前，付之留守衙門爲白乎矣，本府比兩都，事體尤重，而祿俸反不及於兩都，不可不區劃添補是白如乎，以禿城餉米太耗折米一百五十石，安山所在賑恤廳屯田三十四結零所收米五十石，糧餉廳屯田十一結零所收租四十石零折米十六石，及還穀耗條中折米三十四石，合二百五十石，劃給爲白乎旆，本府還上，各穀中耗條一千石，亦爲劃給，以爲作錢添補排朔之地爲白齊。
- 一. 判官廩俸段，參量磨鍊爲白乎矣，官需·雜役等米，不可不於元結中，從便區處是白如乎。宮結出稅後，柴作米一百三十八石零，大同米捧留條中，船馬等各樣雜費四百五十石，糧餉廳屯稅八十石，合米六百六十八石零中，二百九十六石，以米條劃給，三百七十二石，每石價，假令〈量〉¹³⁷四兩五錢式，合錢一千六百七十四兩，以錢條劃給，以爲排朔需用之地爲白齊。
- 一. 油清·雉鷄·柴草·炭炬，皆是官用之不可闕者，此則依兩都例，自上衙量宜，移送於貳衙爲白齊。
- 一. 軍校·吏隸·奴婢，互相通同輪回使役之意，雖已定式是白在果，上貳衙排番數爻，不可無酌定區劃之舉，此則自本府，竝其料條參量定送爲白齊。

137 量 : 원문에는 '승' 으로 되어 있으나 앞뒤 문맥을 살펴 '量' 으로 교감하였다.



4. 친군위(親軍衛)

친군위

1. 본부本府는 한강 이남 응진雄鎭으로 마보군의 제도는 대략 훈련도감을 모방하여 평소에 외도감外都監으로 칭해졌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피폐함이 갈수록 심해져 군졸의 경우에는 비어있는 대오가 생겼고 말의 경우에는 완전한 대오가 없으니, 군정軍政을 생각하면 너무나 허술하다.

이번에 장용외영壯勇外營으로 승격된 뒤에는 체모가 더욱 자별하여 특별히 정병精兵을 귀하게 여기는 뜻에서 수효를 줄이라는 명이 있기까지 하였다. 옛 것을 참작하고 지금의 제도를 모방하여 초哨를 개혁하고 규정을 정했는데, 그대로 마병馬兵이라 칭한다면 특별히 우대하는 뜻이 전혀 아니다. 국초에 영안도永安道の 마병을 친군위親軍衛라고 칭하였는데, 대개 풍패豐沛¹³⁸의 땅이기 때문에 군병의 선발을 중시하고 그 호칭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었다. 더구나 외영의 제도는 여러 도에 비해 더욱 중요하니, 친군위라고 고치는 것은 특별한 은전에서 나온 것이다. 좌우를 각각 100인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고, 훈련도감에서 말을 지급한 예대로 탐라耽羅의 목마牧馬를 복정卜定하여 매 1인마다 각각 1필匹을 지급한다. 각각의 장령將

138 풍패(豐沛) :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군사를 일으킨 곳으로, 천자의 자리에 즉위하자 그 곳 백성의 부역을 면제하여 주었는데, 후세 사람들이 인하여 임금의 고향으로 가리키게 되었다. 여기서는 조선왕조 태조의 고향인 함흥(咸興)을 말한다.

額을 차출하는 규정과 좌우열을 가려 뽑는 방법은 각 항의 조건 왼쪽에 나열하여 기록한다.

1. 장령은 내영內營의 선기 별장善騎別將의 예대로 별장 1원員과 좌장左將·우장右將 각 1원으로 자리를 정하되, 별장은 경내境內의 무관 가운데 이미 변방에서 방어를 해본 사람으로 차하差下하고, 좌·우장은 일찍이 내외의 장수를 역임했거나 혹은 오위장五衛將을 차하한다. 차하한 뒤에는 성명과 이력을 내영에 전보轉報한다.
1. 친군위의 좌열左列 100인은 수원 경내에서 일찍이 향품鄉品이나 장교將校를 거친 사람으로서 당가선堂嘉善¹³⁹ 및 무천 출신無薦出身 가운데서 신체가 좋고 무예가 있는 사람을 각별히 가려 뽑는다. 우열右列 100인은 반드시 문벌이 있고 활쓰기와 말타기에 능하며 선전관 천宣傳官薦¹⁴⁰·부장천部將薦¹⁴¹·수문장천守門將薦¹⁴² 세 천薦 적합한 한량閑良을 특별히 가려 뽑아, 내금위內禁衛의 예대로 3정正과 9령額으로 마련한다.¹⁴³

139 당가선(堂嘉善) : 당상(堂上)인 정3품과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약칭이다.

140 선전관천(宣傳官薦) : 무과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 신분이 좋은 사람으로 선전관이 될 만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141 부장천(部將薦) : 부장이 될 만한 사람을 미리 천거해두는 제도이다. 부천(副薦)이라고도 한다. 1772년에 선천(宣薦)의 사례에 따라 「유천기사절목(有薦騎士節目)」을 만들어 금위영·어영청의 기사(騎士) 1번을 부장천·수문장천 자리로 만들어 이들을 취재해 소속시켰다.

142 수문장천(守門將薦) : 수문장이 될 만한 사람을 미리 천거해두는 제도이다. 말천(末薦)이라고도 한다. 1772년에 선천(宣薦)의 사례에 따라 「유천기사절목(有薦騎士節目)」을 만들어 금위영·어영청의 기사(騎士) 1번을 부장천·수문장천 자리로 만들어 이들을 취재해 소속시켰다.



모두 훌륭한 인재로 선발하고, 처음에 입속入屬할 때에 전령傳令을 만들어 주고 신입新入의 뜰에 납마納馬를 내리며 정령正領의 청廳에 투지投刺를 올리는 것은 한결같이 금군禁軍의 예대로 거행한다.

1. 보직裨直¹⁴⁴은 내금위의 예대로 근착根着이 있는 양정良丁으로 매 열 켜마다 각 2명을 정하여 짐바리[卜駟]를 지는 역에 대비하게 하되, 100인의 짐바리를 형세 상 전부 책임지우기는 어려우니, 매 정포마다 치중마輜重馬 1필匹 씩을 정해 주어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1. 마군에게 3명의 보인保人은 원래부터 통용되던 규례인데, 친군위가 창설된 뒤에 마병이라는 명색名色이 저절로 혁파되었으니, 이 때문에 감마보減馬保¹⁴⁵를 만들었다. 친군위 1인에게 각각 2명의 보인을 지급하되, 1명의 보인은 전錢과 미를 관에서 거두어 들여 접제 물품에 대비하고, 다른 1명의 보인은 자보自保의 예대로 각각 모집하여 충정充定하도록 하여 보탬이 되도록 한다.
1. 처음 설립할 때에 만약 과조科條를 엄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군제가 해이해질 우려가 없지 않다. 향품鄕品 가운데 업무業武인 자가 만일 친군위를 거치지 않았으면 비록 다른 경로로 과거에 합격한 뒤라

143 내금위(內禁衛)의 …… 마련한다. : 금군청(禁軍廳)의 내금위는 2개 번(番)이나 3개 번으로 조직하고, 각 번은 100명씩으로 편성하였는데, 10인을 1명의 영이 통솔하고 3영을 1명의 장이 통솔하였다. 따라서 내금위의 각 번은 번장(番將) 밑에 정 3명과 영 9명을 두었다. 친군위의 직열과 우열도 각각 이러한 제도를 따라 편성하였다.

144 보직(裨直) : 궁전에 편입되어 보포를 바치고 군역을 복무하지 않는 하례의 하나이다.

145 감마보(減馬保) : 한 군영에 딸린 군총(軍摠)에서 일부를 덜어 낸 마보(馬保)를 말한다.

고 하더라도 별군관別軍官으로 입속入屬시켜 벼슬길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한다.¹⁴⁶ 한량 및 장교 가운데 싫어하여 회피하는 자는 비단 벼슬길을 열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교안名校案에서 이름을 삭제시켜서 징계받는 두려움을 알게 한다. 장교는 반드시 이 이력을 얻은 뒤에야 다른 여러 직임과 각종 창고의 감관監官으로 임용되어 옮겨질 수 있도록 한다.

1. 창감倉監에 장교를 차출하는 것은 근거할 만한 예가 많이 있다. 창감 2과窠, 고감庫監 2과는 좌열에 소속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감관은 군임軍任과는 차이가 있으니 겸대하여 거행한다.
1. 나누어준 관마官馬는 경군문京軍門의 예대로 8년 내에 죽거나 잃어버릴 경우 다른 건실한 말로 징수하여 세우고, 기한 내에 비록 병이 생긴 말이 있더라도 사복시에 돌려보내는 일은 실로 할 수 없는 일이니, 말을 끌어다 외영에 바치면 직접 살펴본 뒤에 마안馬案에 현탈懸頓한다. 그 밖에 공무로 인하여 죽은 경우는 연한에 관계없이 단지 피장皮張을 상고하는 것으로만 시행하게 하되, 내영에 날 낚이 보고하여 대신 지급 받도록 한다.

146 향품(鄉品) 가운데 …… 한다. : 별군관은 별효사(別驍士)를 바꾼 호칭으로, 원래 별효사가 200명 이던 것을 별군관으로 바꾸면서 100명으로 줄이고 좌열과 우열로 편성하여 수원 유수에게 소속 시켰다. 추후 마련된 절목에 의하면 이들 별군관은 수원 유수가 취재(取才)를 통해 선발하였으며, 6개월의 복무 기간을 채운 별군관 중에서 해마다 5월과 11월의 도시(都試)를 통해 각 1명씩을 선발하여 초사직(初仕職)에 의망(擬望)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수원의 무사들이 무관직(武官職)에 나가려면 별군관을 거치고 별군관이 되려면 친군위를 거치도록 강제 규정을 만들어서 친군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1. 도안都案¹⁴⁷을 수정한 2건件 중 하나는 내영에 보고하고, 하나는 외영에 올린다. 좌열과 우열은 합쳐서 1책冊으로 만들고, 성명·나이·부친·거주지 및 가자加資·출신出身·한량閑良을 질서 정연하게 구분하며, 마필馬匹의 화모색禾毛色¹⁴⁸도 각각 그 이름 아래에 소상히 기록하여 착오가 생기는 폐단이 없게 한다. 이미 군병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가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도망가거나 사망하여 결원이 생기는 대로 채워 넣은 뒤에 내영에 보고한다.

1. 표하군標下軍은 별장소別將所에 26명, 좌장과 우장에 각 6명씩 마련하여 채운다.

1. 표하군은 급료가 없는 군대이니 장령將領과 배례陪隸를 돌아가며 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경군문의 예를 끌어다 쓸 수는 없다. 별장 및 좌장·우장을 정하여 지급하고, 원래의 배례 1명·서원 1명·방직房直 1명도 또한 정하여 지급하고 모두 요료를 지급하여서 부릴 수 있도록 한다.

1. 봄·가을에 말을 점고點考하는 것은 경군문의 예대로 봄에는 2월, 가을에는 8월에 별장이 좌장·우장과 함께 날짜를 정해 개좌開坐하여 거행하되, 유수도 간혹 직접 거행한다. 좌열·우열의 군장軍裝과 마필을 일일이 점검하여 군장이 파손된 자와 마필이 여윈 자에

147 도안(都案) : 정기적으로 전국의 군사를 조사하여 만든 군안을 말한다.

148 화모색(禾毛色) : 화목색은 이의 개수와 털 빛깔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말의 나이와 털 빛깔을 말한다.

게는 경중에 따라 곤을 쳐서 징계한다. 벌이 있는데 상이 없어서는 안 되니 가장 살진 마필을 매 열레마다 각각 5필까지 뽑아 낸 다음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여 격려하고 권장할 수 있도록 한다.

1. 삭시사(朔試射)는 매 삭(朔)에 1차례 씩 날짜를 정해 거행하되, 원래 정해진 날짜가 되면 장령이 통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친군위가 일제히 모여서 대기하도록 거듭 분명하게 다짐을 받아서 감히 어기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규구(規矩)는 유엽전(柳葉箭) 3순(巡), 기추(騎蓐) 2차(次) 씩으로 정식을 삼아 시행한다. 혹서기인 6, 7월 두 달과 혹한기인 11, 12월 두 달은 설행하지 않는다.

1. 이번에 설치한 것은 사체가 가볍지 않으니, 장령(將領)과 보군 장령(步軍將領)이 함께 돌아가면서 입직하고, 정령(正領)은 매 5일마다 각각 1인 씩으로 각각 전마(戰馬)를 기다였다가 돌아가면서 입직한다.

1. 친군위의 청해(廳廡) 및 장령의 직소(直所)와 포진(鋪陳) 등의 절목은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 청해는 편의에 따라 마련해 주고, 직소는 각 청(廳) 중에서 추이(推移)하여 정하며 포진은 들어간 곳에 따라 마련하여 지급한다.

1. 장령의 수기(手旗)와 인기(認旗), 정령(正領)의 부기(負旗)는 한결같이 방색(方色)을 따라 만들어 지급한다.

1. 동개(筒筒)·궁전(弓箭)·환도(環刀)·편곤(鞭棍)은 내금위의 예대로 관에서 나누어주되, 혹 교체할 일이 있으면 차례대로 전해주고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킨 경우 각별히 징치(懲治)하고 이어 다시 갖추도록 한다.

1. 군복과 전립(戰笠)은 으레 스스로 갖추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창설했



을 때에는 마땅히 진념軫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한다. 공가公家에서 편의에 따라 구획하여 갖추되, 전해 주고 다시 갖추는 법은 군물軍物의 예대로 시행한다.

1. 도시都試 및 유방留防¹⁴⁹하는 일은 별도로 절목을 만들어 시행한다.
1. 원행園行 할 때에 친군위의 찰주札駐¹⁵⁰와 영후迎候¹⁵¹ 등의 절차는 내영에 보고하고 통지하기를 기다려 거행한다.

親軍衛

一. 本府, 以漢南雄鎮, 馬步軍制, 略倣訓局, 素稱外都監. 而近年以來, 凋弊轉甚, 卒有虛伍, 馬無全隊, 言念戎政, 萬萬疏虞. 今陞壯勇外營之後, 體貌尤爲自別, 特以貴精之義, 至有減數之命. 酌古倣今, 革哨定列, 而仍以馬兵稱號, 則殊非優異之意. 國初永安道馬兵, 稱以親軍衛, 蓋以豐沛之地, 重其揀選, 美其稱號. 況外營之制, 視諸道尤重, 改以親軍衛, 寔出於特恩教是如乎, 左右各成百人¹⁴⁹之制, 依訓局給馬之例, 卜定耽羅牧馬, 每人各授一匹¹⁵⁰是白遣, 各將領差出之規, 左右列抄選之法, 各項條件, 列錄于左爲白齊.

149 유방(留防) : 국방상의 요충지에 부방(赴防)하여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에 가서 복무하는 번상(番上)과 대비되었다.

150 찰주(札駐) : 군대가 길을 가다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151 영후(迎候) :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

- 一. 將領, 依內營善騎別將之例, 別將一員·左右將各一員定窠, 而別將, 則以境內武弁, 已行邊禦差下, 左右將, 則曾經內外將, 或五衛將差下爲白乎矣. 差下之後, 姓名·履歷, 轉報內營爲白齊.
- 一. 親軍衛, 左列百人, 以境內曾經鄉品·將校, 堂嘉善及無薦出身中, 好身手有武藝者, 各別揀選. 右列百人, 必以有地闊, 能弓馬, 可合宣·部·守三薦, 閑良另加少擇, 依內禁衛例, 以三正九領, 磨鍊爲白乎矣, 俱是一境雋選, 初頭入屬之時, 成給傳令, 新入之庭, 下納馬, 正領之廳, 上投刺, 一依禁軍例舉行爲白齊.
- 一. 祇直, 依內禁衛例, 以有根着良丁, 每列各定二名, 以備卜馱之役, 而百人卜馱, 勢難全責, 每正輜重馬一匹式定給, 以爲分力之地爲白齊.
- 一. 馬軍之三保, 自是通行之規, 而親軍衛創設之後, 馬兵名色, 自當革去, 此則作爲減馬保. 親軍衛一人, 各給二保, 〈一保,〉¹⁵²以錢·以米, 自官收捧, 以備接濟之需, 一保, 依自保例, 俾各募得充定, 以爲聊賴之地爲白齊.
- 一. 設始之初, 若不嚴立科條, 則軍制不無解弛之慮. 鄉品之業武者, 若未經親軍衛, 則雖從他歧登科之後, 俾不得入屬於別軍官, 以通仕路. 閑良及將校中厭避者, 非但不得通仕路, 汰名校案, 知所懲畏. 而將校, 必得此履歷, 然後諸般任名·各倉監官, 許其調遷爲白齊.
- 一. 倉監之以將校差出, 多有可據之例. 倉監二窠, 庫監二窠, 屬之左

152 〈一保〉: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9월 24일 갑인 2번째 기사에 수록된 '비변사에서 아뢴 장용외영 친군위 절목'을 참고하여 "一保"를 추가하였다.



- 列，以爲沾溉之地爲白乎矣，監官，與軍任有異，使之兼帶舉行爲白齊。
- 一. 分授官馬，依京軍門例，八年內，如有故失，則以他健實馬徵立，而限內雖有生病之馬，還送司僕，實是行不得之事，牽納外營，親審後懸頌馬案。其他因公致斃，不問年限久近，只令相考皮張，施行爲白乎矣，竝只枚報內營，以爲給代之地爲白齊。
 - 一. 都案修正兩件，一報內營，一上外營爲白乎矣，左右列，合成一冊，姓名·年·父·住，及加資·出身·閑良，秩秩區別，馬匹禾毛色段置，消詳懸錄於各其名下，俾無差誤之弊。既與軍兵有異，不必待秋，逃故隨闕填代，後轉報內營爲白齊。
 - 一. 標下軍段，別將所二十六名，左右將各六名式，磨鍊填充爲白齊。
 - 一. 標下既是無料軍，將領·陪隸之輪回定給，不可援用京軍門之例。別將及左右將定給，元陪隸一名·書員一名·房直一名，亦爲定給，一體給料，使喚之地爲白齊。
 - 一. 春秋馬點，依京軍門例，春二月，秋八月，別將與左右將，定日開坐舉行，留守間或親行。而左右列軍裝·馬匹，一一點閱，軍裝之破弊者，馬匹之瘦脊者，從輕重，決棍懲礪爲白乎矣，既有罰，則不可無賞，馬匹之上肥，每列各限五匹抄出，分等施賞，以爲激勸之地爲白齊。
 - 一. 朔試射，每朔一次式，定日舉行，而元定日當次，則不待將領知委，親軍衛一齊聚待事，申明約束，毋敢違越，而規矩段，柳葉箭三巡·騎蒭二次式，定式施行爲白乎矣，盛署之六七兩朔，祈(禱)¹⁵³寒之至

153 禱 : 원문에는 “祈”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禱”로 바로 잡았다.

臘兩朔，勿爲設行爲白齊。

- 一. 今此設置，事面不輕，將領與步軍將領，輪回入直，正領，則每五日，各一人式，各待戰馬，輪回入直爲白齊。
- 一. 親軍衛廳廡，及將領直所，與鋪陳等節，不可不措置。廳廡則從便覓給，直所則各廳中推移以定，鋪陳則從所入磨鍊，造給爲白齊。
- 一. 將領手旗·認旗，正領負旗，一從方色，造給爲白齊。
- 一. 筒箇·弓箭·環刀·鞭棍，依內禁衛例，自官分授爲白乎矣，或有遞代之事，次次傳授，而闕失·破傷者，各別懲治，仍令改備爲白齊。
- 一. 軍服·戰笠，例是自備者，而當此創設之時，宜有軫念之道，自公家，從便區劃，以爲措備之地爲白乎矣，傳授·改備之法，依軍物例，施行爲白齊。
- 一. 都試及留防一款，別成節目舉行爲白齊。
- 一. 園行教是時，親軍衛札駐·迎候等節，稟報內營，待知委舉行爲白齊。



5. 보군(步軍)

보군

1. 본부가 방영防營이었을 때 보군의 정원 총수는 26초哨였는데, 액수가 너무 많아서 겨우 충원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지금은 본부가 외영으로 승격되어 부府의 군병을 모두 단속한다면, 군제는 반드시 정밀하고 실질적으로 되기를 힘쓰며, 군병의 식량도 내부에서 조달한 뒤에야 호보戶保가 서로 도와서 병력兵力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26초 중에서 근착根着이 있고 건장한 양정良丁 13초를 가려서 단속하여 대隊를 만들고, 13초는 보군保軍으로 강등하여 미를 거두어 군병을 기르게 하되, 원군元軍에 궤원이 생기면 차례로 실차로 올려서 한결같이 경영京營의 대년군待年軍의 예와 같이 한다.

다만 지금 양정은 지극히 어렵고 보군을 양인으로 충정하는 것은 7초에 불과하니, 그 나머지 6초는 부득이 사천私賤으로 우선 숫자를 채운다. 이 경우는 3년에 한해 양정으로 바꾸어 정하여 13초의 수효에 준하게 한다.

1. 13초는 이미 삼사三司의 편제로 정했으니, 좌·중·우로 그 사호司號를 정하고 좌사와 우사는 각각 5초, 중사는 좌·중·우 3초로 마련한다.

1. 치중 북마군輜重卜馬軍은 애초에 마군과 보군에 나누어 배속하지 않고 각 초哨에서 혼동하여 사역을 시켰기 때문에 일정한 규정이 매우 부족하였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보군 13초를 매 초마다 7필씩

씩 마련하여 분속分屬시킨다.

1. 장령 가운데 천총千摠의 직임은 그다지 긴요하지 않아서 내영에서도 또한 설치하지 않았으니, 외영도 또한 내영의 예대로 설치하지 않는다. 3사三司의 파총把摠은 경내境內의 당상 무관 중에서 경력이 있는 자를 차출하고, 각 초哨의 초관哨官은 선전관천宣傳官薦 7과窠, 수문장천守門將薦·부장천部將薦 6과로 제도를 정한다.

선전관천·수문장천·부장천 중에서 전직 조관朝官으로 참상參上·참하參下 및 무과 출신을 통틀어 차출해야 하는데, 유천 출신有薦出身은 이미 별군관別軍官에 편성하였으니, 초관으로 배정하여 의망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또 별군관은 군총軍摠과는 다르니 겸대에 구애받지 않는다.

1. 본부는 본래 외도감外都監으로 칭해지기 때문에 군병의 복색도 훈련도감의 예대로 전건戰巾 및 단협수單挾袖·방색 호의方色號衣로 갖추어서 간편하게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경군문의 예대로 스스로 갖추도록 한다.

기계器械인 조총鳥銃·환도環刀·남날개[南飛筒]·화승火繩·약환藥丸 등의 물품은 본부의 군기소軍器所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내영의 단총수單銃手の 법대로 기대장旗隊長과 사수射手의 활과 화살은 마련하지 말도록 한다.

1. 보군保軍의 신역身役은 양인이면 미米 6말[斗] 혹은 전錢 2냥兩, 노奴의 경우에는 미 3말 혹은 전 1냥을 외영에서 편의대로 거둔다.

1. 도안都案은 1건을 내영에 올려 보내고, 다른 1건은 외영에 보관해



두되, 성명·나이·용모 파기·부의 이름·거주지를 상세하게 현록懸錄한다. 북마군卜馬軍은 별도로 각각의 안案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 각 초의 도안 말단에 군인의 성명과 마필의 털 색을 모두 기록한다. 보군保軍의 경우에도 각 초 아래에 기록하여 안案을 만들기를 한결같이 원군의 법과 같게 하여서 호보戶保에게 절대로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보이도록 한다.

1. 도망가거나 늙었거나 죽은 자를 대신한다는 첩지는 반드시 7월 농한기를 기다려야 하니, 이는 본래 외도外道에서 통행하는 규례이다. 그러나 외영의 군병은 한시도 빈 대오로 두어서는 안 되니, 호보를 막론하고 꺾원이 생기는 대로 충원하고 일일이 부표付標한다. 그런데 내영의 도안에 부표하는 것은 계속해서 할 수는 없으니, 연말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한다.

1. 정원을 줄여서 단속한 뒤에 노약자와 어린아이를 다시 전처럼 구차하게 충원한다면 정병精兵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司·초哨를 선발하고 대오隊伍를 정돈하고 조련操練을 분명하게 하고 기율紀律을 엄정하게 하며 복색服色을 선명하게 하고 기계器械를 편리하게 하는 등의 일은 절목節目을 계하 받기를 기다렸다가, 외영에서 과조科條를 엄숙히 세운 다음 별도로 단속을 행하여 반드시 모두 쇄신하고 면모를 일신하도록 한다. 만약 옛 습속을 버리지 못하고 꾸물거리다가 끝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중군 이하 장령은 무거운 것을 따라 논감論勘한다.

1. 내영의 군병이 있는 고을에 어가가 통과할 때는 전원 수가隨駕하는

것이 본래의 절목이라고 한다. 내영이 이와 같다면, 외영도 마땅히 차이가 없어야 한다. 매년 원행(園行)할 때 몇 개의 사司와 초哨가 고을 경계에 모여 대기하다가 수가하고, 읍참(邑站)과 원소참(園所站)을 환위(環衛)하는 등의 절차는 유수가 기일 전에 품지(稟旨)하여 거행한다.

步軍

- 一. 本府防營時, 步軍元摠, 爲二十六哨, 而額數夥多, 未免苟充. 況今本府陞爲外營, 一府軍兵盡爲團束, 則軍制必務精實, 兵食取資其中, 然後戶保相須兵力益強乙仍于, 二十六哨中, 揀其有根着·壯健良丁十三哨, 團束作隊, 十三哨, 降爲保軍, 收米養兵, 而元軍有關, 則次次陞實, 一如京營待年之例. 而第今良丁極艱, 保軍之以良充定, 不過七哨, 其餘六哨, 則不得已以私賤, 姑先充數是白如乎, 此則限三年, 以良丁流伊換定, 以準十三哨之數爲白齊.
- 一. 十三哨, 既定三司之制, 以左·中·右, 定其司號, 而左·右司各五哨, 中司以左·中·右三哨磨鍊爲白齊.
- 一. 輜重卜馬軍, 初不分排於馬步, 各哨混同使役, 殊欠一定之規. 自今爲始, 步軍十三哨, 每哨七匹式, 磨鍊分屬爲白齊.
- 一. 將領中千摠之任, 無甚緊關, 內營亦不設置, 外營亦依內營例, 勿爲設置. 三司把摠, 以境內堂上武弁, 有履歷者差出, 各哨哨官, 宣薦七窠, 守·部薦六窠定制. 宣·守·部薦中, 前銜朝官叅上·叅下及出身, 通融差出爲白乎矣, 有薦出身, 旣團束於別軍官, 則哨官排擬, 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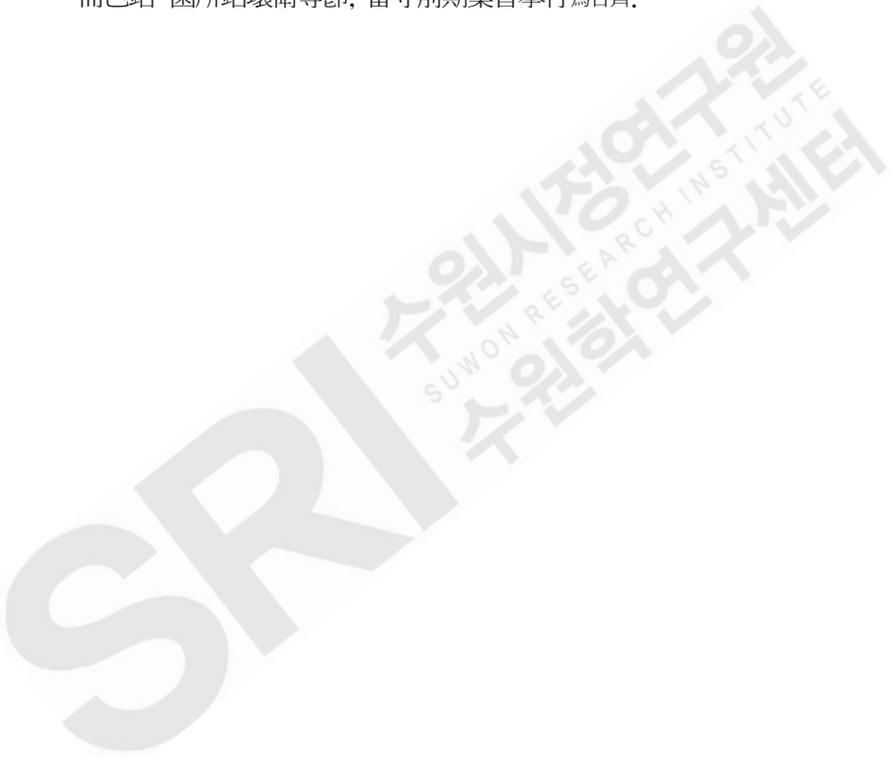


涉苟艱。且別軍官，與軍摠有異，勿拘兼帶爲白齊。

- 一. 本府素稱外都監，軍兵服色，亦倣訓局例，以戰巾及單挾袖·方色號衣措備，以爲簡便省費之道，而依京軍門例，使之自備。器械段，烏銃·環刀·南飛筒·火繩·藥丸等物，以本府軍器所在分授，而亦依內營單銃手之法，旗隊長·射手弓箭，勿爲磨鍊爲白齊。
- 一. 保軍身役，良則米六斗或錢二兩，奴則米三斗或錢一兩，自外營，從便收捧爲白齊。
- 一. 都案段，一件上送內營，一件留上外營爲白乎矣，姓名·年歲·容疤·父名·居住詳細懸錄，卜馬軍，不必別成各案，各哨都案末端，軍人姓名·馬匹毛色一體開錄，保軍段置，亦於各其哨下載錄成案，一如元軍之法，以示戶保不相捨之義爲白齊。
- 一. 逃·老·故代籤，必待七月農隙，自是外道通行之例，而外營軍兵，不可一時虛伍，毋論戶保，隨闕填充，這這付標爲白乎旃，內營都案付標段，不可續續爲之，待歲末都聚舉行爲白齊。
- 一. 減額團束之後，老羸兒弱，又復如前苟充，則烏在其貴精之義乎？選司哨·整隊伍·明組〈操〉¹⁵⁴練·嚴紀律，服色鮮明·器械便利等事，待節目啓下，自外營嚴立科條，另行約束，期於一切振刷，十分改觀爲白乎矣，如或因循玩愒，終蔑成效，則中軍以下將領，從重論勘爲白齊。
- 一. 內營軍兵，所在邑，駕通時，全數隨駕，自是節目是白如乎，內營如

154 操 : 원문에는 “組”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피 “操”로 바로 잡았다.

此，則外營宜無異同。每年園行時，幾司幾哨，聚待境上，延候隨駕，而邑站·園所站環衛等節，留守前期稟旨舉行爲白齊。





b. 유방(留防)

유방

1. 군제의 정원을 줄여서 가려 뽑은 것은 정예군을 편성하는데 힘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니, 기예(技藝)를 연습하는 것이 가장 요긴하다. 좌열과 우열이 돌아가며 외영에서 유방하면서 한편으로는 행궁을 호위하고 한편으로는 날마다 이습(肄習)해야 한다.

보군(步軍)의 유방이 이미 11월·12월·1월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마보군이 동시에 나란히 서는 것은 서로 방해되는 형세가 있을 듯하니, 반드시 봄·가을 농한기에 돌아가며 번(番)을 정해야 한다. 매달 3번으로 나누어서 1월 16일에는 좌열장이 거느려서 1정(正) 중 34인을 입방(入防)하게 하고, 26일에는 우열 1정, 2월 6일에는 좌열 2정이 교대로 입방하도록 한다. 10월 1일부터 30일까지도 이 예대로 한다. 그리하여 입방할 때에 진퇴의 절목을 겸하여 익혀서 기필코 기예를 익힌 효과가 있게 한다.

1. 입방하기 하루 전에 해당 별장은 사적으로 점고(點考)하고, 당일에 장용외사(壯勇外使)가 강무당(講武堂)에 나아가면 이름마다 점고하며, 군장(軍裝)과 마필(馬匹)을 검열한 뒤에 해당 장령이 거느리고 유방[홍살문(紅箭門) 밖 전방(廳房)은 비운다. ○마필을 먹이는 것은 전방 건너편 마랑(馬廊)에서 한다.]하도록 한다.

1. 친군위가 이미 입방하였다면 전마(戰馬)를 대기시켜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입방할 때에는 각각 그 말을 본소(本所)에 남겨 두어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1. 입방할 때 군량軍糧과 마료馬料는 감마보減馬保 및 감마 치중군減馬輜重軍에게 거두는 신미身米로 장령 및 원역의 요미料米와 요태料太의 분수分數를 마련한 다음 지급한다.

1. 단속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상 기예馬上技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 한결같이 소략한 대로 둔다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매 열례마다 장교 중에 각각의 기예에 숙달된 사람을 교관으로 차정한 다음 가르쳐서 완전히 익히도록 한다.

1. 이번 감마보 444명 중에 두목頭目 8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거두는 미는 174섬[石] 6말[斗]이고, 감마 치중군 100명 중에서 두목 2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거두는 미는 39섬 3말이며, 전에 있던 감마보 204명 중에서 두목 4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거두는 미는 80섬이니, 도합 미 293섬 9말이라고 한다.

장령의 요미와 요태는 34섬 12말, 친군위가 유방할 때 요미와 마료馬料는 76섬 8말, 기수旗手·원역·잡색군의 요미 80섬 9말을 마련하여 지급하고, 남은 미 101섬 10말은 외영에 쌓아 두어서 각종 접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1. 이미 외영을 설치하고 또 군제를 정하였으니, 이번 보군은 내영의 향군과 돌아가면서 상변해야 하는데, 설치한 초기라서 갑자기 논의하기는 진실로 어렵다고 한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우선 먼저 행궁에 입방하여 돌아가면서 번을 서도록 하고, 또 유방할 때 날마다 기예를 연마하여 성취가 있도록 한다.

1. 13초哨의 군병을 5번番으로 나누고 번차番次는 15일로 기한을 정한



다. 11월 16일부터 좌사左司로 시작해서 초차初次는 3초, 재차再次는 2초 씩으로 마련하여 번을 세우되 다른 사司도 이것을 본 따서 이대로 교대한다. 중사中司는 이미 3초로 되어 있으니 둘로 나눌 필요 없이 한 사司에만 번을 서게 한다.

1. 입방하기 하루 전에 중군은 사적으로 점고하고, 당일에 장용외사가 강무당에 나아가면 친군위의 예대로 이름마다 점고하며, 군장軍裝을 검열한 뒤에 각 해당 초관이 거느리고 나누어 들어가며[2초哨 중에서 1초는 옛 향청鄉廳[득중정得中亭 좌변左邊], 다른 1초는 옛 초관청[진남문鎭南門 밖], 3초 중에서 1초는 비어 있는 전방塵房 및 옛 초관청] 해당 사司의 파총把總이 모두 거느리고 검칙한다. 지구관 1인·기괘관 2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을 잘 아는 자를 차관差官으로 정하여 함께 절제節制할 수 있도록 한다.

1. 입방을 시작할 때와 번을 마친 뒤에 관서關西의 전례대로 조목별로 나열하여 장문狀聞한다. 계본啓本 중에 장령은 관직과 성명을 쓰고, 군졸은 단지 인원수와 사司명·초哨명만 거론하며, 일조日操·월조月操 등의 형지形止는 성책하여[백지白紙 3절折로 책을 만들고 장황粧纘은 하지 않는다.] 또한 내영에 수보修報한다.

1. 초일初日에는 포진布陣을 사습私習하고, 중일中日에는 포진 및 기예技藝[18기技]를, 종일終日에는 휴식하고 입번入番한다. 제 11일에는 시방試放을 설행한 다음 시상하는데, 진법을 연습한 형지, 기예의 명색, 활과 포의 적중 수효를 각각 이름 아래에 일일이 현록懸錄한다. 매달 두 차례 번을 교대하는 형지를 치보馳報할 때에는 함께 내

영에 수보한다.

1. 상격賞格은 유엽전柳葉箭에서 변邊 1중中 이상은 미* 1말[斗], 변 2중 이상은 미 2말, 관貫 2중 이상은 미 3말, 관 1중·변 2중 이상은 미 4말, 변 4중은 미 5말, 관 1중·변 3중 이상은 미 6말, 변 5중 이상은 미 7말이고, 포砲에서 변 1중 이상은 미 1말, 변 2중 이상은 미 2말, 변 3중 이상은 미 3말, 관 1중·변 2중 이상은 미 4말, 관 3중은 미 6말을 지급한다.
1. 시습할 때 및 시방試放할 때 들어가는 약환藥丸을 마련해서 지급한다.
1. 시습할 때와 시예試藝할 때 교사教師가 없어서는 안 되니, 입방하는 때 초哨마다 각각 진법 교사陣法教師 1명, 기예 교사技藝教師 1명을 정하여 전담해서 가르쳐 성취가 있도록 한다.
1. 매 번을 교체할 때마다 상하번의 군병은 마땅히 동일한 사司의 편제를 이루어야 하니, 반드시 신구변新舊番이 합동으로 조련을 행하여 사련司鍊¹⁵⁵의 법을 알도록 한다. 중사中司 3초哨는 이미 독립된 번이니 하번하기 하루 전날에 합동 조련의 예대로 대사련大司鍊으로 설행한다.
1. 입방할 때 입직하는 장령 및 군병의 요미, 장령의 전마태戰馬太·시초柴草, 그리고 직소直所의 시유柴油, 군병의 밥·떨감·찬가饌價는 실제 들어가는 것에 따라 마련한 다음 지급한다.

155 사련(司鍊) : 군대에서 각 사(司)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 양보良保 840명은 각각 미米 6말[斗], 천보賤保 720명은 각각 미 3말인데, 두목頭目이 거두는 미를 제외하면 실제로 거두는 미는 468섬이다. 그리고 재가 군관在家軍官 147명과 도안 군관都案軍官 102명이 각각 미 6말인데, 두목이 거두는 미를 제외하면 실제로 거두는 미는 97섬 3말이다. 도합 미 565섬 3말 내에서 입방할 때 각종 요미와 잡비 373섬 11말을 제외하면 남는 미가 191섬 7말이 된다고 한다. 이것은 본부에 두어서 접제의 비용으로 대비한다.

留防

- 一. 軍制之減額辭擧, 出於務精團束之意, 技藝鍊習, 最爲緊關. 左右列輪回留防於外營, 一以衛護行宮, 一以逐日隸習之地爲白乎矣, 步軍留防既在至·臘·正三朔, 則馬步軍之一時竝立, 似有相妨之勢, 必於春秋農隙, 輪回排番. 而每朔分三番, 正月十六日, 左列將率領, 一正內三十四人入防, 二十六日, 右列一正, 二月初六日, 左列二正, 交替入防. 十月自初一日至三十日, 亦依此例爲之. 而俾於入防之時, 兼習進退之節, 期有成就之效爲白齊.
- 一. 入防前一日, 該別將私點, 當日外使詣講武堂, 逐名點考, 閱視軍裝·馬匹, 後該將率領留防[紅箭門外, 空塵房 ○馬匹喂養, 塵房越邊馬廊]爲白齊.
- 一. 親軍衛既已入防, 則戰馬不可不立待. 入防時, 各以其馬留置本所, 以爲騎射鍊習之地爲白齊.

- 一. 入防時，軍糧·馬料，以減馬保及減馬輜重軍，所捧身米，竝將領及員役料米太，而分數磨鍊上下爲白齊。
- 一. 團束屬耳，馬上技藝，專味向方，一任濶略，難責實效。每列以將校中熟諳各技者，差定教官，以教成之地爲白齊。
- 一. 今番減馬保四百四十四名，除頭目八名，實收米一百七十四石六斗，減馬輜重軍一百名，除頭目二名，實收米三十九石三斗，在前減馬保二百四名，除頭目四名，實收米八十石，合米二百九十三石九斗是白如乎，將領料米太三十四石十二斗，親軍衛留防時料米·馬料七十六石八斗，旗手·員役·雜色料米八十石九斗段，磨鍊上下是遣，在米一百一石十斗，儲留外營，以備各樣接濟之需爲白齊。
- 一. 既設外營，且定軍制，今此步軍，當與內營鄉軍，輪回上番，而設始之初，固難遽議是白如乎，自每年至月，至翌年正月，姑先入防於行宮，以寓輪番之義，而且於留防之時，逐日鍊藝，俾有成就爲白齊。
- 一. 十三哨軍兵，分作五番，而番次，以十五日定限。自至月十六日，左司爲始，初次三哨，再次二哨式，磨鍊立番，而他司倣此交替爲白乎矣，中司則既爲三哨，不必分而二之，專一司立番爲白齊。
- 一. 入防前一日，中軍私點，當日，外使詣講武堂，依親軍衛例，逐名點考，閱視軍裝，後各該哨官率領分入[二哨，則一哨舊鄉廳[得中亭左邊]，一哨舊哨官廳[鎮南門外]，三哨，則一哨分入空塵房，及舊哨官廳]，而當司把摠，都領檢飭爲白乎旆，知穀官一人·旗牌官二人，必以解事者，定爲差官，以爲眼同節制之地爲白齊。
- 一. 入防之初·畢番之後，依關西已例，條列狀聞爲白乎矣，啓本中將領則



書職姓名，軍卒則只舉名數而司名·哨名，日操月操形止修成冊[白紙三折作冊，除粧績]，亦爲修報內營爲白齊。

- 一. 初日布陣私習，中日布陣及技藝[十八技]，終日休息入番。第十一日，設行試射放施賞爲白乎矣，練陣形止·技藝名色·射砲得中數交，各其名下，一一懸錄，每朔兩次，替番形止馳報時，同爲修報內營爲白齊。
- 一. 賞格段，柳葉箭，邊一中以上米一斗，邊二中以上米二斗，貫二中以上米三斗，貫一中·邊二中以上米四斗，邊四中米五斗，貫一中·邊三中以上米六斗，邊五中以上米七斗，砲，邊一中以上米一斗，邊二中以上米二斗，邊三中以上米三斗，貫一中·邊二中以上米四斗，貫三中米六斗上下爲白齊。
- 一. 私習時及試放時，所入藥丸磨鍊，上下爲白齊。
- 一. 私習時·試藝時，不可無教師，入防每哨，各定陣法教師一名·技藝教師一名，以爲專一教成之地爲白齊。
- 一. 每番交替時，上下番軍兵，當成一司之制，必行新舊番合操，俾知司鍊之法是白乎矣，中司三哨，既是獨番，下番前一日，依合操例，設行大司鍊爲白齊。
- 一. 入防時，入直將領及軍兵料米，將領戰馬太·柴草，竝直所柴油，軍兵飯·柴·饌價，從實入磨鍊，上下爲白齊。
- 一. 良保八百四十名各米六斗，賤保七百二十名各米三斗，除收米頭目，實收米四百六十八石。在家軍官一百四十七名·都案軍官一百二名各米六斗，除收米頭目，實收米九十七石三斗。都合米五百六十五

石三斗內，入防時，各樣料米·雜費三百七十三石十一斗，除之，則在米爲一百九十一石七斗是自如乎，此則留置本府，以備接濟之需爲白齊。





7. 별군관(別軍官)

별군관

1. 별효사(別驍士)를 창설할 때 엄중하게 가려 뽑고 그 칭호를 아름답게 한 것은 경내(境內)의 무사(武士)들을 모두 격려하여 흥기하는 효과가 있게 하려던 것이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아무 때나 출입하여 대오(隊伍)가 공허해져서 한갓 도시(都試)나 관무재(觀武才)를 할 때 서울과 지방의 한량(閑良)들이 요행히 과거에 급제하는 통호가 될 뿐이니, 군정(軍政)을 생각하면 대단히 허술하다. 그러므로 군제를 변통하는 이때에 마땅히 폐단을 바로잡아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에는 유천(有薦) 한량(閑良)이 모두 친군위(親軍衛)의 우열(右列)에 소속되었으니 과거에 급제한 많은 무사들이 홍패(紅牌)를 안고서 역을 하다는 탄식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별효사의 호칭을 별군관(別軍官)으로 고치고 그곳에 원래 그곳에 거주하던 무과 출신 가운데 사대부인 선전관(宣傳官) 및 중인이나 서얼인 부장(部將)·수문장(守門將)과 장용영(長勇營) 군병 가운데 무과 출신인 자를 통틀어서 차출한 다음 말을 바치게 하고 입속(入屬)시킨다. 원래 정원인 200명은 너무 많으므로 그 수의 절반으로 감하여 100명으로 좌열(左列)과 우열(右列)을 만들고 유수영(留守營)에 직속시켜 난후군(攔後軍)¹⁵⁶의 제도를 이루게 한다.
1. 경내의 무과 출신을 이미 군관(軍官)에 소속시킨 뒤에 별도로 장려하

156 난후군(攔後軍) : 대열의 후미를 담당하는 군사를 말한다.

는 거조가 없어서는 안 된다. 초사(初仕) 1과(窠)는 좌열과 우열에 떼어 주어서 5월과 11월에 도시를 설행한 다음 매 등(等)마다 수석을 차지한 각 1인을 입격(入格)한 화살 수에 따라 후록(後錄)하여 계문(啓聞)하여서 매 도목(都目)을 할 때마다 수용(收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적체를 해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예를 강습하게 하여, 경내의 무사들이 출세하는 길은 이 길이 아니고는 통할 수 없게 하여 앞으로는 기피하는 습속을 막도록 한다.

1. 무과 출신의 숫자가 적어서 원래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우선 자리를 그대로 남겨두고 혹 사람은 많고 자리는 부족해서 정원보다 넘칠 경우에는 다시 품지(稟旨)하여 제도를 정한다.
1. 우열 친군위는 한량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통로가 되었고, 좌열과 우열 별군관은 무과 출신들이 벼슬길에 나가는 계단이 되었으니, 선전관천·부장천·수문장천을 막론하고 과거에 급제하고 월천(越薦)한 뒤에는 유수영에서 취재(取材)하여 입속(入屬)시킨다. 그리고 이미 유수영에서 취재하였다면 병조에서 행하는 장귀천(將鬼薦)의 취재¹⁵⁷에 중첩해서 응할 필요가 없으니, 유영에서 시취(試取)한 뒤에 성책(成冊)하여 병조로 보내 증빙하는 자료로 삼게 한다.

또한 금군의 예대로 반드시 6개월을 준한 뒤에 도시에 응시할 수

157 장귀천(將鬼薦)의 취재 : 선전관천, 부장천, 수문장천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취재로, 병조 판서, 도총부 당상, 훈련원 당상이 합동으로 시행하였다. 그중 선전관천은 선천 내금위(宣薦內禁衛)의 취재로 독립되었다. 내삼청(內三廳)에 천거된 자들은 장귀천에서 입격해야 도목 정사에서 의망될 수가 있었다.



있도록 하여 비로소 벼슬길을 통하게 하되 무과 출신 중에 만약 금
군으로 수행하여 이미 6개월에 준한 자는 개월 수에 구애받지 않
도록 한다.

1. 입속을 위한 시취의 규구規矩는 무과 출신의 장귀천 취재 규구대로
육량전六兩箭 3시矢 90보步, 유엽전柳葉箭 1순巡 5시 2중中, 편전片箭
1순 3시 1중, 기추騎蓐 1차次 5시 1중이고, 병서兵書는 조粗 이상으
로 하여 도합 5기技 가운데 3기에 입격한 자를 취한다. 무과 출신
으로 월천되었으나 취재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이 규구대로 시행
하고, 이미 취재를 통과한 자는 2기에 입격한 것으로 시행한다.

1. 이번에 경내의 무과 출신을 감원하여 단속한 다음 구별하여 벼슬
길로 통하게 한 것은 비단 진작시키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또한 평
상시 완급緩急을 조절하여 힘을 얻고자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
다. 전마戰馬는 반드시 건설한 것으로 하고, 군장軍裝은 힘써 선명
하게 하여 군대의 위엄을 보이되, 만약 쇠약한 사람이나 누렇게 뜬
말로 겨우 채워서 또 다시 무예를 포기한다면 병방 및 장무 등을
각별히 무겁게 처벌하여 진작시키도록 한다.

1. 이미 군관으로 호칭을 고쳐 대열을 만들었고 또 마군馬軍의 편제에
도 들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장령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 경군문의
별장이 권무 병방勸武兵房을 겸대兼帶하는 예대로 친군위의 별장이
병방의 직임을 겸임하게 한다. 그리고 장무 군관掌務軍官은 품채가
좋고 힘이 있으며 근면하고 재간이 있어 직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
으로 좌열과 우열에 각각 2인을 정하여 병방과 함께 전담하여 거

행하게 한다. 새로 소속시킬 때의 취재取才는 유수가 반드시 직접 시험을 실시하여 체모를 높이고, 입격한 무리는 유수가 전령하여 차출差出한 다음 도안都案을 작성하여 한 통은 내영에 올려 보내고 한 통은 유영에 둔다.

1. 납마納馬할 때 별군관은 군복을 갖추어 입고 뜰 아래로 끌고 가는 데, 낙인烙印 및 화모색禾毛色·성안成案 등의 절차는 한결같이 별효 사별驍士 때의 예대로 거행한다.
1. 사회射會는 매달 1차次 씩 원래 정해진 날짜에 하되,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실제 사정이 있는 자 외에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자는 무거운 것을 따라 곤을 쳐서 기예를 익히는 실효가 있도록 한다.
1. 사회의 규구는 유엽전은 5순, 기추는 3차, 편곤은 1차, 별기別技 가운데서 1기技를 1차 하는 것을 정식으로 한다. 그러나 여름의 6, 7월 두 달과 겨울의 11, 12월 두 달에는 마상 기예馬上技藝는 제외한다.
1. 봄·가을에 실시하는 말의 점고는 반드시 도시都試할 때 하지만, 평상시에 틈틈이 추첨해서 입마立馬의 허실을 시험한다.
1. 도시는 양도兩都의 예대로 초시初試를 면제하고 설행하여, 우등優等を 취한 다음 계문啓聞한다.
1. 도시의 규구는 별효사를 시취할 때처럼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실려 있는 대로 철전鐵箭¹⁵⁸은 3시矢 100보步, 유엽전은 5시 1순, 편전은

158 철전(鐵箭) : 철(鐵)로 축을 만든 화살이다. 무게에 따라 육량전(六兩箭, 240g)·아량전(亞兩箭, 160g)·장전(長箭, 40g) 등으로 나뉘었다. 화살촉이 둥글고 날이 없으며 무과시험과 습사에 사용했다.



3시 1순, 기추는 5시 1차, 편추는 1차를 시취한다.

1. 도시하는 날씨는 기일 전에 날씨를 택하여 계문하고, 시관(試官)은 유수를 주시관(主試官)으로 하고, 중군과 종사관을 참시관(參試官)으로 하되, 용복(戎服)을 입고 거행한다.
1. 장무 1인 씩은 다른 청의 장무와 돌아가며 입직하도록 한다.
1. 원행(園幸)할 때 어가가 머무는 일과 어가를 맞이하고 기다리는 일은 유수가 때에 닥쳐 품지(稟旨)한 다음 거행한다.

別軍官

- 一. 別驍士創設時, 重其揀選, 美其稱號者, 使境內武士, 皆有激勸興起之效. 而近年以來, 出入無常, 隊伍空虛, 徒爲都試·觀武才時, 京鄉閑良, 占科之倖路, 言念戎政, 萬萬疏虞. 迨此軍制變通之時, 宜有矯弊, 責實之道. 今則有薦閑良盡屬於親軍衛右列, 則許多武士之登科者, 必有抱紅牌抑鬱之歎乙仍于, 別驍士改號別軍官, 以原居出身中, 士夫宣薦及中庶部·守薦, 與壯勇軍出身者, 通濶充差, 納馬入屬爲白乎矣, 二百原額, 未免夥多, 減其半數, 以一百數作爲左·右列, 直隸於留守營, 俾成攔後之制爲白齊.
- 一. 境內出身, 既屬軍官之後, 不可無別般獎拔之舉. 初仕一窠, 劃付左·右列, 五月·至月, 設行都試, 每等居首各一人, 從其入格矢數, 後錄啓聞, 以爲每都目收用之地. 一以振掩滯, 一以講武藝, 而境內武士, 發身之路, 非此岐, 則毋得許通, 以禁前頭厭避之習爲白齊.

- 一. 出身數少, 未滿原額, 則姑爲留窠, 或人多窠窄, 濫於額數, 則更爲稟旨, 定制爲白齊.
- 一. 右列親軍衛, 爲閑良占科之路, 左·右列別軍官, 爲出身通仕之階, 無論宣·部·守薦, 及其登科越薦之後, 自留守營取才入屬. 而既取才於留守營, 則兵曹將鬼薦取才, 不必疊應, 自留營試取後, 修送成冊于兵曹, 以爲憑考之地. 亦依禁軍例, 必準六朔後, 許赴都試, 始通仕路, 而出身中, 如有禁軍隨行, 而已準六朔者, 勿拘朔數爲白齊.
- 一. 入屬試取規矩, 依出身將鬼薦取才規矩, 六兩三矢九十步, 柳葉箭一巡五矢二中, 片箭一巡三矢一中, 騎蒨一次五矢一中, 兵書粗以上, 合五技, 取三技. 出身之越薦, 而未取才者, 依此規矩施行, 已取才者, 以二技入格, 施行爲白齊.
- 一. 今以境內出身, 減額團束, 區以別之, 至通仕路者, 非但振掩激勸, 亦出於平時節制緩急得力之意. 戰馬必以健實, 軍裝務從鮮明, 以壯軍威爲白乎矣, 若或以人之疲劣·馬之玄黃, 如有苟充, 又復拋置武藝, 則兵房及掌務等, 各別重勸, 期於振刷爲白齊.
- 一. 既以軍官改號作列, 而又不入於馬軍之制, 則不必別設將領, 依京軍門別將之兼帶勸武兵房之例, 以親軍衛別將, 兼管兵房之任. 而掌務軍官, 以有風力勤幹可堪者, 左·右列, 各定二人, 與兵房, 專管舉行爲白乎旆, 新屬時, 取才, 留守必親試, 以尊體貌, 而入格之類, 留守傳令差出, 都案, 一上內營, 一置留營爲白齊.
- 一. 納馬時, 別軍官, 具軍服, 牽納庭下, 而烙印及禾毛色·成案等節, 一依別驍士時例, 舉行爲白齊.



- 一. 射會，每朔一次式，原定日子爲之，而衆所共知實故外，無緣不參者，從重棍治，期有鍊藝之實效爲白齊。
- 一. 射會規矩，柳葉箭五巡，騎葛三次，鞭棍一次，別技中一技一次定式。而夏之六七兩朔·冬之至臘兩朔，則馬上技藝除之爲白齊。
- 一. 春·秋馬點，必於都試時爲之，而常時間間抽牲，以試其立馬虛實爲白齊。
- 一. 都試，依兩都例，除初試設行，取優等啓聞爲白齊。
- 一. 都試規矩，依別驍士時，『通編』所載，鐵箭三矢百步，柳葉箭五矢一巡，片箭三矢一巡，騎葛五矢一次，鞭葛一次試取爲白齊。
- 一. 都試日子，前期擇日啓聞，試官，留守主試，中軍·從事官參試爲白乎矣，以戎服舉行爲白齊。
- 一. 掌務一人式，與他廳掌務，輪回入直爲白齊。
- 一. 園幸時，札駐延候，留守臨時稟旨舉行爲白齊。

8. 도시(都試)

도시

1. 본부의 마병은 도시가 있고 관무재(觀武才)가 있어서 권장하는 방법이 본래부터 분명했지만, 지금 군제를 변동하는 날을 당하여 격려하고 성취시키는 방법을 더욱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봄과 가을 두 차례 하는 도시는 양도(兩都)의 예대로 실행하며, 규구도 또한 송도(松都)의 예대로 철전(鐵箭)은 3시(矢) 100보(步), 유엽전(柳葉箭)은 5시(矢) 1순(巡), 편전(片箭)은 3시 1순, 기추(騎蓐)는 5시 1차(次), 편추(鞭蓐)는 6중(中) 1차, 조총(鳥銃)은 3방(放) 1순으로 시취(試取)한다.

1. 좌열과 우열의 수석 및 유엽전·편전·기추에서 몰기(沒技)한 부류에 대해서는 신역(身役)·성명·기예(技藝)에서 획득한 점수를 개록(開錄)한 다음 계문(啓聞)한다. 좌열 친군위로 초차(初次)에 수석 혹은 몰기한 자는 가선(嘉善)이면 위장(衛將)에 제수(除授)하고, 절충(折衝)과 무친(無薦) 출신(出身)이면 모두 가자(加資)하며, 장교로 전함(前銜)이 한량(閑良)이면 직부 전시한다. 재차(再次)에 수석 혹은 몰기한 자는 가선과 당상을 막론하고 변장(邊將)에 제수한다.

우열 친군위 한량으로 수석 혹은 몰기한 자는 좌열의 예대로 직부 전시하되 모두 순서대로 구별하고 열록(列錄)해서 계문(啓聞)한 다음 해당 조曹의 품처(稟處)를 기다린다.

1. 좌열 가운데 2등이나 3등을 한 자는 창감(倉監)이나 고감(庫監)으로 차례에 따라 차출(差出)하고 수행하는 임무는 그대로 유지하며, 우열 가운데 2등을 한 자는 직부 회시하고 3등을 한 자는 보관하고 있



는 미리로 마련하여 시상하되, 모두 수계修啓한다.

1. 수석으로 위장에 제수된 자는 금위영·어영청 두 영의 기사騎士의 예대로 직임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며, 직부直赴한 자는 방방放榜을 기다려 별군관으로 옮겨 주어 벼슬길을 터주도록 한다.
1. 도시할 때 4시¹ 미만인 자는 참작하여 곤을 쳐서 징계한다.
1. 도시하는 날짜를 미리 택일하여 계문한 다음 회답이 내려오길 기다려 거행한다.
1. 도시의 시관試官은 유수가 주시관主試官을 하고, 중군과 종사관은 참시관參試官을 하며, 복장은 응복戎服으로 거행한다.

都試

- 一. 本府馬兵, 有都試焉, 有觀武才焉, 其獎勸之方, 本自申明, 今當軍制變通之日, 激勸成就之道, 尤宜講明. 春秋兩次, 都試, 依兩都例設行, 而規矩段, 亦依松都例, 鐵箭三矢百步, 柳葉箭五矢一巡, 片箭三矢一巡, 騎藹五矢一次, 鞭藹六中一次, 鳥銃三放一巡, 試取爲白齊.
- 一. 左·右列居首, 及柳葉箭·片箭·騎藹沒技之類, 役·姓名·技藝劃數, 開錄啓聞爲白乎矣, 左列親軍衛, 初次居首或沒技者, 嘉善則衛將除授, 折衝與無薦出身, 竝加資, 將校前衛中閑良, 直赴殿試. 再次居首或沒技者, 無論嘉善·堂上, 邊將除授. 右列親軍衛閑良, 居首或沒技者, 依左列例, 直赴殿試, 而竝爲秩秩區別, 列錄啓聞, 以待該

曹稟處爲白齊.

- 一. 左列中居二·居三者, 倉監·庫監, 從次第差出, 仍帶隨行, 右列中居二者, 直赴會試, 居三者, 以留在米, 磨鍊施賞爲白乎矣, 一體修啓爲白齊.
- 一. 居首之除拜衛將者, 依禁·御兩營騎士例, 仍帶, 直赴者, 待放榜, 移填別軍官, 以通仕路爲白齊.
- 一. 都試時, 未滿四矢者, 叅量決棍懲勵爲白齊.
- 一. 都試日子, 預先擇日啓聞, 待回下舉行爲白齊.
- 一. 都試試官, 留守主之, 中軍·從事官叅試, 而服色以戎服舉行爲白齊.



배봉진(拜峯鎭)

배봉진

1. 옛 원소園所는 사체事體가 자별한데, 나무를 방치해 둘 수 없고 그 초목樵牧과 토지도 방치해 둘 수 없다. 그 같은 지엽적인 것으로 인하여 특별히 하나의 진鎭을 설치하여 본영에서 주관하도록 한다. 이어서 자벽과自辟窠¹⁵⁹로 별장別將을 두어서 경작과 목축을 금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별장 이하의 진속鎭屬을 접제接濟할 밀천과 군액軍額을 설치할 사목事目을 모두 마련한 다음 왼쪽에 조목별로 나열하여 영구히 준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본진 자내字內¹⁶⁰[둘레는 15리이고, 동쪽은 중랑포中涼浦에서 서쪽은 건천乾川에 이르고, 남쪽은 사랑문沙浪門에서 북쪽은 고자촌高者村에 이른다.]의 금양禁養¹⁶¹은 3일마다 부료군관付料軍官 1인·산직山直 1명씩으로 돌아가며 산을 순찰하고, 5일마다 별장이 직접 적간하거나 혹은 별도로 염탐한다.

만일 땔나무를 베거나 뿌리를 베는 폐단이 있는데도 해당 군관과 산직이 덮어두고 있으면 ‘불고지죄不告之罪’¹⁶²로 각별히 무겁게 다스리고, 혹 소나무를 베는 자가 있을 경우, 무거우면 본영에 보고하여 엄히 다스리고 가벼우면 스스로 판단하여 징치한다.

159 자벽과(自辟窠) : 해당 관서의 장관이 자의(自意)로 추천하여 임명하는 벼슬을 말한다.

160 자내(字內) : 각 영에서 분장하여 경계하고 호위하는 구역이다.

161 금양(禁養) : 민간이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162 불고지죄(不告之罪) : 남의 범죄를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고 숨겨둔 죄이다.

1. 둔전屯田은 본진의 비어 있는 곳을 벌목하여 개간한 것으로 전田은 20결結 22부負 2속束 63일 반조전경半朝前耕¹⁶³ [상등은 19일경日耕¹⁶⁴으로 매 일경마다 조租 23말[斗], 태太 7말 ○중등은 36일日 반조전경으로 매 일경마다 조 19말, 태 6말 ○하등은 8일경으로 매 일경마다 조 15말, 태 5말]이다.

답畓은 9결 99부 6속 444말 2되지기[升落只]¹⁶⁵ [상등은 271마지기[斗落只]¹⁶⁶로 매 마지기마다 조 8말 ○중등은 122말 7되지기로 매 마지기마다 조 7말 ○하등은 50말 5되지기로 매 마지기마다 조 6말]이다.

진기陳起¹⁶⁷를 구별하여 매년 세금을 거두는 것은 사복시司僕寺의 전배전縛排田은 39동同[매 1일경마다 1동으로 한다. ○매 동마다 세금을 거두는 것은 전錢 8냥兩 가량이다.]이다. 면목둔전面目屯田은 7결 89부 9속 63일경[상등은 6일 3조전경朝前耕으로 매 일경마다 전 3냥 ○중등은 44일 1조전경으로 매 일경마다 전 2냥 5전錢 ○하등은 12일조전경으로 매 일경마다 전 2냥]이다. 답은 16결 66부 6속

163 반조전경(半朝前耕) : 조전경(朝前耕)의 절반(折半)이다. 조전경은 아침 식전(食前)까지 갈 수 있는 밭의 넓이를 이른다.

164 일경(日耕) : '하루갈이' 라는 뜻으로 소 한 마리가 하루 낮 동안 갈 수 있는 밭의 넓이를 말한다.

165 되지기[升落只] : 한 되[升]의 씨앗을 뿌릴 만한 토지를 말한다.

166 마지기[斗落只] : 한 말[斗]의 씨앗을 뿌릴 만한 토지를 말한다.

167 진기(陳起) : 땅을 개간하지 않고 묵혀 두는 것을 '진(陳) 이라 하고, 개간하여 일구는 것을 '기(起)' 라 한다.



733두 4되지기[상등은 363두 6되지기로 매 마지기마다 조 8말 ○ 중등은 231말 6되지기로 매 마지기마다 조 7말 ○ 하등은 138말 2되지기로 매 마지기마다 조 6말]이다.

각 궁의 초평草坪¹⁶⁸은 55결 47부 3속[수진궁壽進宮은 12결 79부 2속, 딸나무 500동 ○ 명례궁明禮宮은 1결 80부 5속, 딸나무 400동 ○ 용동궁龍洞宮은 1결 73부 4속, 딸나무 150동 ○ 어의궁於義宮은 1결 79부 2속, 딸나무 150동 ○ 선희궁宣禧宮은 8결 50부, 딸나무 400동 ○ 이상의 세금으로 거두는 딸나무는 매 동마다 전 1전 5푼으로 대신한다. ○ 옥상궁毓祥宮은 19결 85부, 세금으로 정한 딸나무 1,600동]이다. 청량리淸涼里는 답 23되지기[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름], 전 3일경[남전藍田 1일경, 홍화전紅花田 2일경]이다. 사포서司圃署¹⁶⁹는 전 8일 3조경[4일경은 봉상시奉常寺의 전에 나무를 심는 대신 토지로 지급한다. ○ 1일경은 양어직養魚直의 어망을 위해 덜어 준다. ○ 3일 3조경은 원두직園頭直에게 떼어 주고 본인의 일용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이다. 모두 이속시킨 다음 정식대로 세를 거두어서 본진에서 지방支放할 밑천으로 삼는다.

1. 총용청의 향미餉米 1,200섬[石], 양주楊州의 환곡 조 1,500섬, 경기 감영의 미米 1,000섬을 본진으로 이속시킨 다음 환곡을 나누어 주고 취모取耗한다.

168 초평(草坪) : 풀이 무성한 넓은 들을 말한다.

169 사포서(司圃署) : 조선시대 왕실 소유의 밭과 채소 재배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이다.

경기 감영의 미는 감영에서 경기 고을에 소속시켜 조적糶糶한 다음 취모한다. 대전代錢 600냥을[매 섬마다 6냥] 매년 12월에 본진으로 이송하여 본진에서 미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삼는다.

1. 본영의 전 500냥, 호조의 전 1,000냥, 경기 감영의 전 1,000냥은 [본래 호조의 전으로 내어줌] 본진으로 옮겨 떼어 주고 편의에 따라 이자를 취한다. 경기 감영의 전은 해당 영에서 이자를 취하여 매년 본진에 이송하고, 사복시 마장馬場 과 문직門直의 반년 요조料條를 모두 이속시켜 접제의 비용으로 쓴다.
1. 군액은 병방 군관兵房軍官 1인, 아병장牙兵將 2인, 기괘관旗牌官 1인, 부료군관付料軍官 2인, 아병牙兵 2초哨[매초 111명] 표하군標下軍 23명[뇌자率子 2명 ○순령수巡令手 4명 ○취고수吹鼓手 12명 ○인기수認旗手 1명 ○서기書記 1명 ○당보수塘報手 1명 ○신기수神旗手 2명]으로 정한다.
1. 진속鎭屬은 서원書員 2인, 고직庫直 4명, 통인通引 3명, 사령使令 5명, 둔차사屯差使 1명, 기수旗手 2명[표하군이 겸함], 취수吹手 10명[표하군이 겸함], 구종驅從 3명, 율원 감관栗園監官 1인, 내산직內山直 2명, 청량리 산직淸涼里山直 2명, 면목둔 산직面目屯山直 3명, 원두직園頭直 1명, 창직倉直 1명, 양어지養魚直 1명, 착어군捉魚軍 1명, 관비官婢 3명으로 정한다.
1. 매년 거두어 들이는 미는 287섬[石] 3말[斗][총용청 향미 모조餉米 耗條는 120섬 ○양주楊州의 환모조還耗條는 150섬, 절미조折米條는 60섬 ○경기 감영의 전錢 600냥으로 본진의 무상조買上條 100섬 ○



마장과 문지의 반년 요조 7섬 3말]이다.

조租는 687섬 13말 7되[升] 3홉[合][진저鎭底의 둔전세조屯田稅條는 87섬 5말 6되 3홉 ○진저의 둔답세조屯畓稅條는 221섬 3말 9되 ○면목둔번세조面目屯番稅條는 357섬 4말 2되 ○본영에서 내보내는 소 22척隻에 대한 세조稅條는 22섬]이다.

태太는 24섬[진저의 둔전세조]이고, 전錢은 1,141냥兩 6전錢 4푼[分][경기 감영의 전 1천 냥에 대한 이자조는 200냥 ○호조의 전 1천 냥에 대한 이자조는 120냥 ○본영의 전 500냥에 대한 이자조는 60냥 ○5궁五宮¹⁷⁰의 초평草坪에 대한 수세조는 204냥 9전 ○사복시의 전배전縛排田 39동同에 대한 세조는 323냥 ○면목둔전面目屯田의 세조는 156냥 1전 5푼 ○마장과 문지의 반년 요조는 24냥 ○면목둔의 고초藁草의 값은 53냥 5전 9푼[세조는 매 말마다 1푼씩]으로 정식대로 거둔다.

1. 매년 거두는 각종 곡물은 곡초穀草 443자내自乃 반半[진저의 둔답세조는 매 마지기[斗]마다 1자내씩[매 3속마다 1자내로 삼음], 울초粟草 189자내[진저의 둔전세조는 매 1일경마다 1자내씩[매 2속마다 1자내로 삼음], 밤[粟] 123말[진저의 울목 300그루[株], 매 그루마다 세稅로 밤 2되 ○청량리 울원栗園은 126그루, 매 그루마다 세로 밤 5되], 땀나무 1,600동同[육상궁 초평의 수세조]으로 매년

170 5궁(五宮) : 명례궁(明禮宮), 용동궁(龍洞宮), 어의궁(於義宮), 선희궁(宣禧宮), 육상궁(毓祥宮)을 말한다.

정식대로 거두어들인다.

그런데 시초柴草는 원래의 수량 내에서 600동을 떼어 주고, 본인의 1,000동은 시초와 청초靑草를 반으로 섞어서 본영이 통지하기를 기다렸다가 상납한다. 밤은 그 종자를 심은 그루 수에 따라 수세한다.

1. 매년 내려주는 미^米 248섬 12말 내에 배삭조^{排朔條}는 233섬 9말[매 달 별장의 배삭조는 3섬 ○병방 군관 1인·서원 1인은 각각 10말 ○아병장 2인, 기패관 1인, 부료군관 2인, 군기서원 1인, 고직 1명은 각각 8말 ○군기 고직 1명, 공수고직^{公需庫直} 1명, 사령 5명, 기수 2명, 취수 10명, 산직 2명, 원두직 1명, 구종 3명은 각각 6말 ○통인^{通引} 3명은 각각 4말 ○관비^{官婢} 3명은 각각 3말]이고, 복마군^{卜馬軍}의 점심료^{點心料}는 1섬 5말[울초^{栗草}는 300속^束[매 3동^同마다 1태^駄로 만든다.], 청초^{靑草}는 350동[매 2동마다 1태로 만든다.], 상납할 때에는 매 사람마다 각각 1되^升]이고, 축조^{縮條}는 13섬 13말[원환미^{元還米} 1,200섬과 모조^{耗租} 1,500섬, 모곡으로 절미^{折米}한 것은 매 섬마다 1되]이다.

조租 321섬 내에 배삭조는 294섬[매달 별장의 배삭조는 12섬 ○식목 감관^{植木監官} 1인은 2섬 7말 5되 ○둔고직^{屯庫直} 1명은 2섬 ○울원직^{栗園直} 5명, 양어직^{養魚直} 1명, 창직^{倉直} 1명, 둔차사^{屯差使} 1명은 각각 1섬]이고, 봄·가을의 의자조^{衣資條}는 21섬[매 등^等마다 식목감관 1인은 2섬 ○둔고직 1명은 7말 5되 ○둔차사 1명, 울원직 5명, 양어직 1명은 각각 1섬]이고, 착어군^{捉魚軍}의 6개월 요조는 6섬[3월부터 8월까지 각각 1섬]이고, 상납조는 100섬[1년에 한 차례]이다.



태太 24섬 내에 배삭조는 12섬[매달 별장의 마태馬太는 1섬] 혼조 태爨造太는 12섬[별장은 6섬 ○병방 군관·기패관 각 1인과 서원 2인은 각각 1섬 ○고직 3명은 각각 10말]이다.

전錢 1,280냥 5전 4푼 내에 배삭조는 588냥[매달 별장의 배삭조는 25냥 ○지채紙債 2냥 ○유탄가油炭價 2냥 ○조보채朝報債 3냥, 서원 1인의 삭하朔下 3냥 ○지채 5전, 군기 서원 1인의 삭하 2냥 ○지채 5전 ○고직 1명, 경사환京使喚 1명의 삭하는 각각 2냥 ○산직 2명의 삭하는 각각 1냥 5전이고, 초혜가草鞋價는 각 2전 5푼 ○장교·기수·사령의 유채油債는 각각 5전 ○아병 양초哨의 지채는 2냥]이고, 봄·가을의 의자조衣資條는 142냥[매 등등마다 병방 군관·기패관 각 1인, 아병장 2인, 서원 2인, 고직 2명, 원두직 1명, 사령 5명, 기수 2명, 취수 10명, 산직 2명, 구종驅從 3명은 각각 2냥 ○통인 3명, 관비 3명은 각각 1냥 5전]이고, 공용조公用條 및 공수고조公需庫條는 440냥 6전 4푼[공용조는 204냥 9전 ○공수고조는 209냥 7전 4푼]이고, 상납하는 태가조駄價條는 73냥 4전[둔조屯租를 상납하는 마세조馬貰條는 10냥 ○울초 300 속에 대한 태가는 2냥 5전 ○떨나무 650동에 대한 태가는 43냥 4전[매 태駄마다 2전, 매 3동마다 1태로 만든다.] 청초 350동에 대한 태가는 17냥 5전[매 태마다 1전, 매 2동마다 1태로 만든다.]]이고, 급대조給代條는 39냥 5전[본영에 상납하는 전배전縛排田 4동에 대한 세稅를 전錢으로 급대하는 조條]이고, 예하조例下條는 23냥[변정邊亭·포진鋪陳 및 위배圍排하기 위한 8냥 ○마장馬場의 전배縛排·철배撤排를 위해 5냥[봄에 3냥,

가을에 2냥], 발매포發賣布 10필¹⁷¹은 매 필마다 1냥으로 대신함]으로 정식대로 값을 지급한다.

1. 매년 내려주는 각종 곡물은 곡초穀草 43자내[본진에서 일용], 울초 189자내[상납하는 것은 150자내 ○본진에서 일용하는 것은 39자내], 땀나무 1,600동[상납하는 것은 1천동[청초 350동, 본색 650동], 본진에서 일용하는 것은 600동]으로 정식대로 값을 지급한다. 밤은 조금씩 나눠서 상납하는데, 연한 밤(軟栗)은 일찍 열리는 것에 따라 매일 2되씩 상납한다.
1. 환미조還米租를 위해 각각 하나의 창고를 설치하였으니 양주楊州의 망우리忘憂里·노원蘆原·해등촌海等村 3면面에 거주하는 백성을 본진에 전속專屬시켜 환미를 받게 한다. 그리고 진저鎭底에 거주하는 백성의 춘궁기에 대한 근심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가운데 약간의 미¹⁷¹와 조租를 덜어 내어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환곡을 나눠줄 때 차보借保와 분수[分數]를 넘는 폐단은 모두 엄칙하고, 환자還上를 거둘 때 만일 기한을 넘거나 납부를 거부하는 백성이 있으면 각 해당 호수戶首는 잡아두어 독촉하여 거둬들이고, 그 가운데 더욱 심한 자는 본영에 보고하여 엄히 다스려서 기한 내에 수량대로 거둔다.
1. 환자를 거두어들일 때 매 섬[石]마다 색미色米¹⁷¹는 1되[升] 낙정미落

171 색미(色米) : 간색미(看色米) 즉, 세곡(稅穀)의 품질을 알아보기 위해 견본으로 빼내어 보는 쌀을 말한다.



庭米¹⁷²는 3되로 정하고, 서축鼠縮¹⁷³에 대해서는 미와 조를 매 섬마다 각 1되로 회감會減한다.

1. 환곡을 나누어 주고 환자를 거두어들일 때 창고를 여는 날짜는 기일 전에 감영에 보고하고, 다 거두어들인 뒤의 상황 또한 감영에 보고한다. 환자를 거두어들일 때에는 10일 사이에 거두어들이되, 미쳐 거두어들이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는 날날이 수보修報한다.

1. 환곡을 다 거두어들인 뒤 본영에서 표지票旨하고 별도로 장관을 보내어 별장과 함께 번고反庫하게 한다. 만일 미쳐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을 번작反作¹⁷⁴하거나 혹은 전용轉用한 폐단이 있으면, 해당 별장은 율에 의거해 논감한다.

1. 환곡은 다른 예대로 회안會案한 다음 마감하고, 그 밖의 전錢·곡穀의 각종 물종은 매년 6월·12월 두 건件을 본영에 수보한다.

1. 별장을 바꿀 때는 전례대로 번고한 다음 전장傳掌하는데, 별장이 날짜를 정하여 기일 감영에 보고하면, 본영은 번고관反庫官[장관 혹은 감관監官]을 품지稟旨하여 보내서 번열反閱한 뒤에 탈頃의 유무를 수보하게 한다. 혹 현탈現頃이 있는데도 숨겨두어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드러나면, 별장과 함께 한 장관 등은 품지한 다음

172 낙미(落米) : 낙정미(落庭米) 즉, 세곡을 받을 때 마되질을 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을 채우기 위해 가외로 더 받는 쌀을 이른다.

173 서축(鼠縮) : 쥐가 곡식을 먹어서 줄어든 양을 말한다.

174 번작(反作, 번질) : 아전들이 환곡(還穀)을 빼내어 돌려쓰고 이를 메우기 위하여 거짓으로 문서를 꾸미는 일을 말한다.

중죄로 다스린다.

1. 본진의 아병牙兵은 진저 인근의 백성으로 모집하여 충원하되, 모든 장리場里的 요역徭役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 침해받지 말도록 한다.
1. 아병은 모두 급료가 없고 매년 봄·가을 시사방試射放을 본진에서 별도로 실행한다. 한 해 걸러 하는 대비교大比較에 또한 응시를 허락하여 이로써 격려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한다.
1. 표하군은 탈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정원을 채우는데,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10리 안에 거주하는 근착根着이 있는 부류로 가려 뽑아 충원한다.
1. 아병장이 꺾원이 생기면 별장은 직접 적합한 사람을 살펴서 실차實差와 예차預差의 망단자를 갖춰 본영에 보고하고, 본영에서는 전령傳令을 성급成給한다.
1. 장교와 군병 가운데 만일 근착이 있고 기예가 출중한 부류가 있으면 감영에 보고하고 승천陞遷시킨다.
1. 새로 정한 군병의 요패腰牌¹⁷⁵는 본영에 보고하여 낙인烙印을 지급하고, 탈이 있는 군병의 요패는 거두어 본진에 둔다.
1. 진야鎭衙의 순경巡更은 2월부터 9월까지 입직하는 사령·기수旗手·취수吹手가 돌아가며 거행한다. 10월부터 1월까지의 진鎭 주변에 거주

175 요패(腰牌) : 군사들이 허리에 차고 다녔던 나무패이다.



하는 백성들이 한결같이 가좌家坐에 따라 돌아가면서 거행한다.

1. 동교東郊에 거동할 때, 별장이 표하군標下軍을 거느리고 사아리沙阿里에서 지영祇迎하고 지송祇送한다. 복병伏兵은 사아리 삼거리 1곳에 장교 1인·군병 37명, 척후斥埃는 사아리 뒤 봉우리 1곳에 장교 1인·군병 4명인데 본진의 아병으로 다른 영문의 예대로 마련하고, 아병장牙兵將이 거느리며 환궁한 뒤에는 영표令票를 제거하고 철수한다. 점심미點心米는 내어 쓴 수효대로 매일 2되[升]씩 감영에 보고하여 회감會減한다.

1. 서교西郊에 거동할 때[원행園行 때도 같음] 본영이 참여하지 않는 예대로 별장은 아병 2기旗를 거느리고 본진에 머무르고 있다가 환궁한 뒤에는 영표를 제거하고 철수하며 상황을 감영에 보고한다.

1. 부료付料 2과窠를 설치하고 진저의 백성 가운데 활을 잘 쓰는 자를 뽑아 정하여 매달 말에 응시하게 하되, 규구規矩는 유엽전柳葉箭 5순巡으로 하고 우등한 자 2인을 취하여 부료로 삼는다.

1. 본진의 군물軍物과 각종 관아의 건물·집기는 모두 본영에서 만들어 지급한다. 별장으로 재임하는 자는 마땅히 유의하여 전수傳授하는데 훼손되는 대로 수개修改해야 한다.

체임된 뒤에 품지하여 별도로 보내는데 군물과 관아의 건물 중에 훼손된 것을 적간한 경우, 만일 수선하지 않았으면 해당 별장을 품지한 다음 무겁게 다스리고 혹 새로 갖추거나 보수하고 고친 것이 있으면, 공로가 가장 많은 자를 품지한 다음 논상論賞한다.

1. 본진의 사체事體는 다른 곳과는 자별하니 벼슬 없는 자가 함부로

들어오는 폐단은 각별히 금단禁斷하고, 만일 소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잡아서 감영에 보고하여 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1. 각처의 식목 및 연못 파기·도로의 정비·눈 치우기·잡초 제거의 역은 진저鎭底의 경우 진속鎭屬과 진의 백성이 힘을 합쳐 거행하고, 동구 밖은 진의 백성이 담당하여 거행한다.
1. 연못·성수省守·양어養魚 등의 일은 창고直倉庫直으로 하여금 담당하여 거행한다.
1. 매년 청과靑瓜¹⁷⁶ 500개, 직과直瓜 3,200개, 상후해霜後蟹¹⁷⁷ 200개를 등급을 나누어 봉진封進하되, 그 밖에 뿌리를 내린 청개靑芥¹⁷⁸·고추古椒·잣栲子·연실蓮實¹⁷⁹·복숭아·은행¹⁸⁰과 같은 것은 그 산물産物에 따라 낱알이 모두 봉진한다.
1. 관아 건물은 외동헌外東軒 14칸間[방 2칸 ○공관公館 4칸 ○익랑翼廊 5칸 ○책방冊房 3칸], 사령의 번소番所 2칸[방 1칸 ○부엌 1칸], 기수旗手의 번소 1칸[방], 내위內衛 18칸[방 2칸 ○다방茶房 1칸 ○청

176 청과(靑瓜) : 푸른 참외를 말한다.

177 상후해(霜後蟹) : 서리 내린 후에 잡은 게를 말한다.

178 청개(靑芥) : 겨자를 말한다. 십자화과의 한해살이 혹은 두해살이풀로서 높이는 1미터 정도이다. 봄에 십자 모양의 노란 꽃이 피고 씨는 누런 갈색으로 양념이나 약재로 쓴다.

179 연실(蓮實) : 연(蓮)의 열매를 이른다.

180 은행 : 원문의 '행(杏)'은 조선시대 여러 고문헌에서 '살구' 아니면 '은행'의 의미로 쓰인다. 문맥을 통해 이를 구별해야 하는데, 본문에서는 둘 중 정확히 어느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은행의 경우 '은행(銀杏)'이라고 쓰는 범례가 여러 번 나타나고, 또한 '복숭아와 살구'를 나타내는 '도행(桃杏)'의 용례도 보인다.



廳 3칸 ○퇴退 1칸 ○익랑 11칸], 양처兩處의 대청大廳 18칸 반[1곳의 방房은 2칸 ○청廳 2칸 반 ○다른 1곳의 방은 2칸 ○청 6칸 ○부엌 2칸 ○서원과 고직이 입접入接하는 방 각 2칸], 정사亭榭 9칸 반 [사정射亭 방 1칸 ○청 3칸 반 ○연당蓮堂 방 1칸 ○청 3칸 ○육우정 六隅亭 청 1칸], 고사庫舍 46칸[환조고還租庫 18칸 ○둔곡고屯穀庫 9칸 ○사고私庫 2칸 ○공수고公需庫 방 3칸 ○부엌 3칸 ○청 4칸 ○헛간 虛間 2칸 ○군기고軍器庫 3칸 ○화엽고火藥庫 1칸], 신당神堂 1칸 반, 문 3칸[외삼문] 모두 127칸이다.

1. 양어지養魚池 3곳[한 곳은 길이 67척尺, 너비 39척 ○한 곳은 길이 32척, 너비 14척 ○한 곳은 길이 28척, 너비 24척], 울원栗園 3곳[청량리 7,322그루[株][126그루에서 세를 거두고, 7,196그루는 계축년癸丑年¹⁸¹에 심었다.] 면목둔面目屯 9,310그루[계축년에 심었다.], 본진의 밤나무 300그루 ○복숭아나무와 살구나무 920그루, 소나무와 잡목 1,379그루]에 별도로 울원 감관 및 양어직養魚直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보호하게 하되, 식목은 매년 빈 땅에 차례차례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는다.

1. 인신印信 1과顆를 본영에서 만들어 주고, ‘배봉별장지인拜峯別將之印’ 이라고 새겨서 사용하게 한다.

1. 별장이 만약 공무로 인하여 여러 날 동안 자리를 비울 때에는 기일

181 계축년(癸丑年) : 정조(正祖) 연간인 1793년(정조 17)으로 보인다.

期日 전에 본영에 보고하여 가장假將을 품지稟旨한 다음 차출하여 보낸다. 영문營門에 왕래할 때에는 남아 있는 진장鎭將이 병방 군관兵房軍官으로서 거행한다.

1. 본진의 임기는 24개월로 기한을 삼고, 과장瓜狀¹⁸²은 임기 만료 1개월 전 본영에 보고한다.
1. 별장이 체임할 때의 해유解由와 관련하여 전錢과 곡물의 각종 물품을 본영에서 관할管轄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고성 첨사古城僉使의 예대로 본영에 보고한 다음 마감한다.
1. 별장이 혹 휴가를 청할 일이 있으면, 본영에 보고하여 거행한다.

拜峯鎭

一. 舊園所事體自別, 樹本不可一任, 其樵牧·土地, 不可一任. 其等業乙仍于, 特設一鎭, 自本營主管. 仍置自辟窠別將, 以爲禁養耕獲之地爲白乎旆, 別將以下鎭屬, 接濟之資, 軍額, 設置事目, 竝只磨鍊, 條列于左, 以爲永久遵行之地爲白齊.

一. 本鎭字內[周廻十五里, 東自中涼浦, 西至乾川, 南自沙浪門, 北至高者村], 禁養段, 每三日, 付料軍官一人·山直一名式, 輪回巡山, 每五日, 別將躬自摘奸, 或別岐廉探. 如有採樵·斫根之弊, 當該軍

182 과장(瓜狀) : 벼슬의 임기가 차음을 보고하는 문서를 말한다.



官·山直掩置, ‘不告之罪’, 各別重治, 或有犯松者, 重則報營嚴治, 輕則自斷懲治爲白齊.

- 一. 屯田段, 本鎮空曠處, 伐木起墾, 田二十結, 二十二負, 二束, 六十三日半朝前耕[上等, 十九日耕, 每日耕, 租二十三斗, 太七斗 ○中等, 三十六日半朝前耕, 每日耕, 租十九斗, 太六斗, ○下等, 八日耕, 每日耕, 租十五斗, 太五斗]. 畝九結, 九十九負, 六束, 四百四十四斗二升落只[上等, 二百七十一斗落只, 每斗落, 租八斗, ○中等, 一百二十二斗七升落只, 每斗落, 租七斗, ○下等, 五十斗五升落只, 每斗落, 租六斗]. 區別陳起, 每年收稅, 司僕寺縛排田, 三十九同[每一日耕爲一同 ○每同收稅, 假令〈量〉¹⁸³錢八兩]. 面目屯田, 七結, 八十九負, 九束, 六十三日耕[上等, 六日三朝前耕, 每日耕, 錢三兩, ○中等, 四十四日一朝前耕, 每日耕, 錢二兩五錢, ○下等, 十二日朝前耕, 每日耕, 錢二兩]. 畝十六結, 六十六負, 六束, 七百三十三斗四升落只[上等, 三百六十三斗六升落只, 每斗落, 租八斗, ○中等, 二百三十一斗六升落只, 每斗落, 〈租〉¹⁸⁴七斗, ○下等, 一百三十八斗二升落只, 每斗落, 〈租〉¹⁸⁵六斗]. 各宮草坪, 五十五結, 四十七負, 三束[壽進宮, 十二結七十九負二束, 柴五百同 ○明禮宮, 一結八十負五束, 柴四百同 ○龍洞宮, 一結七十三

183 量 : 원문에는 ‘슈’로 되어 있으나 앞뒤 문맥을 살펴 ‘量’으로 교감하였다.

184 租 : 원문에는 빠져 있으나, 앞뒤 문맥을 살펴 ‘租’ 한 글자를 추가하여 바로잡았다.

185 租 : 원문에는 빠져 있으나, 앞뒤 문맥을 살펴 ‘租’ 한 글자를 추가하여 바로잡았다.

負四束，柴一百五十同 ○於義宮，一結七十九負二束，柴一百五十同 ○宣禧宮，八結五十負，柴四百同 ○以上收稅柴，每同代錢一錢五分 ○毓祥宮，十九結八十五負，定稅柴一千六百同]. 清涼里，畚二十三斗落只[鑿池養魚]，田三日耕[藍田一日耕，紅花田二日耕]，司圃署，田八日三朝耕[四日耕，奉常寺田，植木代土給 ○一日耕，養魚直魚網次除給 ○三日三朝耕，劃給園頭直，本鎮日用業疏，使之擔當]. 竝爲移屬，依定式收稅，以爲本鎮支放之資爲白齊.

- 一. 摠戎廳餉米，一千二百石，楊州還，租一千五百石，畿營米一千石，移屬本鎮，還分取耗爲白乎矣，畿營米段，自監營屬之畿邑，使之糶糴取耗，以代錢六百兩[每石六兩]，每年臘月，移送本鎮，自本鎮買米需用之地爲白齊.
- 一. 本營錢五百兩，戶曹錢一千兩，畿營錢一千兩[本以戶曹錢出給]，移劃本鎮，從便取值爲白乎矣. 畿營錢段，自該營取值，每年移送本鎮，司僕寺馬場·門直半年料條，一體移屬，以爲接濟之需爲白齊.
- 一. 軍額段，兵房軍官一人，牙兵將二人，旗牌官一人，付料軍官二人，牙兵二哨[每哨一百一十一名]，標下軍二十三名[牢子二名 ○巡令手四名 ○吹鼓手十二名 ○認旗手一名 ○書記一名 ○塘報手一名 ○神旗手二名]爲定爲白齊.
- 一. 鎮屬段，書員二人，庫直四名，通引三名，使令五名，屯差使一名，旗手二名[標下軍兼]，吹手十名[標下軍兼]，驅從三名，栗園監官一人，內山直二名，清涼里山直二名，面目屯山直三名，園頭直一名，倉直一名，養魚直一名，捉魚軍一名，官婢三名，爲定爲白齊.



一. 每年應捧, 米二百八十七石三斗[摠廳餉米耗條, 一百二十石 ○楊州還耗條, 一百五十石, 折米條, 六十石 ○以畿營錢六百兩, 自本鎮買上條, 一百石 ○馬場·門直半年料條, 七石三斗], 租六百八十七石十三斗七升三合[鎮底屯田稅條, 八十七石五斗六升三合 ○鎮底屯畚稅條, 二百二十一石三斗九升 ○面目屯番稅條, 三百五十七石四斗二升 ○本營出送牛二十二隻稅條, 二十二石], 太二十四石[鎮底屯田稅條], 錢一千一百四十一兩六錢四分[畿營錢一千兩利條, 二百兩 ○戶曹錢一千兩利條, 一百二十兩 ○本營錢五百兩利條, 六十兩 ○五宮草坪收稅條, 二百四兩九錢 ○司僕寺縛排田三十九同稅條, 三百二十三兩 ○面目屯田稅條, 一百五十六兩一錢五分 ○馬場·門直半年料條, 二十四兩 ○面目屯藁草價, 五十三兩五錢九分[稅租每斗一分式]], 依定式捧上爲白齊.

一. 每年應捧各種段, 穀草四百四十三自乃半[鎮底屯畚稅條, 每斗落一自乃式[每三束爲一自乃]], 栗草一百八十九自乃[鎮底屯田稅條, 每一日耕一自乃式[每二束爲一自乃]], 栗一百二十三斗[鎮底栗木三百株, 每株稅栗二升, ○清涼里栗園, 一百二十六株, 每株<稅栗>¹⁸⁶五升], 柴一千六百同[毓祥宮草坪收稅條], 每年依定武捧上爲白乎矣, 柴草段, 元數內六百同劃給, 本鎮一千同, 以柴·青草參半, 待本營知委, 上納爲白乎矣, 栗則隨其種植株數收稅爲白齊.

186 稅栗 : 원문에는 없으나, 앞뒤 문맥을 살펴 “稅栗” 두 글자를 추가하여 바로잡았다.

一. 每年應下, 米二百四十八石十二斗內, 排朔條, 二百三十三石九斗
 [每朔別將排朔條 三石 ○兵房軍官一人, 書員一人, 各十斗 ○牙兵
 將二人, 旗牌官一人, 付料軍官二人, 軍器書員一人, 庫直一名, 各
 八斗 ○軍器庫直一名, 公需庫直一名, 使令五名, 旗手二名, 吹手
 十名, 山直二名, 園頭直一名, 馱從三名, 各六斗 ○通引三名, 各四
 斗 ○官婢三名, 各三斗], 卜馬軍點心料, 一石五斗[粟草三百束[每
 三同, 作一馱], 青草三百五十同[每二同, 作一馱], 上納時, 每名各
 一升], 縮條十三石十三斗[元還米一千二百石, 竝耗租一千五百石,
 竝耗折米, 每石一升]. 租三百二十一石, 內排朔條, 二百九十四石
 [每朔, 別將排朔條, 十二石 ○植木監官一人, 二石七斗五升 ○屯
 庫直一名, 二石 ○栗園直五名, 養魚直一名, 倉直一名, 屯差使一
 名, 各一石], 春秋衣資條, 二十一石[每等植木監官一人, 二石 ○
 屯庫直一名, 七斗五升 ○屯差使一名, 栗園直五名, 養魚直一名,
 各一石], 捉魚軍六朔料條, 六石[自三月至八月, 各一石], 上納條,
 一百石[一年一次]. 太二十四石, 內排朔條, 十二石[每朔別將馬太
 一石], 爰造太, 十二石[別將六石 ○兵房軍官·旗牌官, 各一人, 書
 員二人, 各一石 ○庫直三名, 各十斗]. 錢一千二百八十兩五錢四
 分, 內排朔條, 五百八十八兩[每朔, 別將排朔條, 二十五兩 ○紙債
 二兩 ○油炭價二兩 ○朝報債三兩, 書員一人, 朔下三兩 ○紙債五
 錢, 軍器書員一人, 朔下二兩 ○紙債五錢 ○庫直一名, 京使喚一名
 朔下, 各二兩 ○山直二名朔下, 各一兩五錢, 草鞋價, 各二錢五分
 ○將校·旗手·使令油債, 各五錢 ○牙兵兩哨紙債, 二兩], 春秋衣



資條, 一百四十二兩[每等兵房軍官·旗牌官, 各一人, 牙兵將二人, 書員二人, 庫直二名, 園頭直一名, 使令五名, 旗手二名, 吹手十名, 山直二名, 驅從三名, 各二兩 ○通引三名, 官婢三名, 各一兩五錢], 公用條及公需庫條, 四百十四兩六錢四分[公用條, 二百四兩九錢 ○公需庫條, 二百九兩七錢四分], 上納馱價條, 七十三兩四錢[屯租上納馬蕢條, 十兩 ○栗草三百束, 馱價二兩五錢 ○柴六百五十同, 馱價四十三兩四錢[每馱二錢, 每三同作一馱], 青草, 三百五十同, 馱價十七兩五錢[每馱一錢, 每二同作一馱], 給代條, 三十九兩五錢 [本營上納, 縛排田四同稅, 錢給代條], 例下條, 二十三兩[邊亭·鋪陳及團排次八兩 ○馬場縛排·撤排次, 五兩[春三兩, 秋二兩], 發賣布, 十疋, 每疋代一兩], 依定式上下爲白齊.

- 一. 每年應下各種段, 穀草四十三自乃[本鎮日用], 栗草一百八十九自乃 [上納, 一百五十自乃 ○本鎮日用, 三十九自乃], 柴一千六百同[上納, 一千同[青草三百五十同, 本色六百五十同], 本鎮日用六百同], 依定式上下. 栗則流伊, 上納爲白乎矣, 軟栗隨其早實, 每日二升式上納爲白齊.
- 一. 還米租各設一倉, 而楊州忘憂里·蘆原·海等村, 三面居民專屬本鎮, 使之受還. 鎮底居民春窮之患, 亦不可不念, 就其中除出如千米租, 以爲分給之地爲白乎矣, 分還時, 借保·濫分之弊, 一切嚴飭爲白乎旅, 捧還時, 如有過限拒納之民, 各該戶首, 拘留督捧, 其中尤甚者, 報營嚴治, 期於限內, 準捧爲白齊.
- 一. 還上捧上時, 每石色一升·落三升爲定, 鼠縮段, 米·租每石各一升會減爲白齊.

- 一. 還分捧還時, 開倉日子, 前期報營, 畢捧後形止, 亦爲報營爲白乎矣, 捧還時, 則間十日捧未捧數, 這這修報爲白齊.
- 一. 還穀畢捧後, 自本營稟旨, 別遣將官, 與別將眼同反庫. 如有未捧反作, 或那移之弊, 當該別將, 依律論勘爲白齊.
- 一. 還穀依他例, 會案磨勘爲白乎旆, 其他錢·穀各種, 每年六·膈月兩件, 修報本營爲白齊.
- 一. 別將遞易時, 依例反庫傳掌, 而別將定日子, 前期報營, 則自本營反庫官[將官或監官], 稟旨差送, 眼同反閱後, 有無頃修報爲白乎矣, 或有現頃, 掩置不報是白如可, 追後現發, 則別將與眼同將官等, 稟旨重勘爲白齊.
- 一. 本鎮牙兵, 以鎮底附近民人, 募得填充爲白乎矣, 凡係場里徭役, 使之一切勿侵爲白齊.
- 一. 牙兵俱是無料, 每年春秋試射放, 自本鎮別爲設行. 間年大比較, 亦令許赴, 以爲激勸之地爲白齊.
- 一. 標下軍有頃代定, 毋論京外, 十里內所居有根着之類, 抄擇填充爲白齊.
- 一. 牙兵將有闕, 則別將親審可合人, 具實預差望報本營, 自本營成給傳令爲白齊.
- 一. 將校軍兵中, 如有根着技藝出等之類, 報營陞遷爲白齊.
- 一. 新定軍腰牌, 報營烙給, 有頃軍腰牌段, 收置本鎮爲白齊.
- 一. 鎮衙巡更, 自二月至九月, 入直使令·旗手·吹手, 輪回舉行. 自十月至正月, 以鎮底居民, 一從家座, 輪回舉行爲白齊.



- 一. 東郊動駕時，別將領率標下軍，祇迎·祇送于沙阿里爲白乎矣，伏兵段，沙阿里三巨里一處，將一人·軍三十七名，斥堠段，沙阿里後峯一處，將一人·軍四名，以本鎮牙兵，依他營門例磨鍊，而牙兵將領率，還宮後，除令票撤罷爲白乎旆，點心米段，依出用數，每日二升式，報營會減爲白齊。
- 一. 西郊動駕時[園行時同]，依本營闕，別將率牙兵二旗，留陣本鎮是白如可，還宮後，除令票撤罷，形止報營爲白齊。
- 一. 設置付料二窠，鎮底居民中，抄定善射者十人，每於朔末，使之應試爲白乎矣，規矩段，柳葉箭五巡，取優等二人，付料爲白齊。
- 一. 本鎮軍物，各種公廩·什物，俱是本營之造給。別將之在任者，事當着意傳授，隨毀隨改是白如乎，遞任後，稟旨別遣，摘奸軍物·公廩中破傷者，如不繕修，該別將稟旨重勘，或有新備修改，勞績最多者，稟旨論賞爲白齊。
- 一. 本鎮事體，與他自別，白衣攔入之弊，各別禁斷，如有作拏者，執捉報營，以爲嚴處之地爲白齊。
- 一. 各處植木及蓮池疏鑿·治道·掃雪·除草之役，鎮底則鎮屬·鎮民，合力舉行，洞口外則鎮民擔當舉行為白齊。
- 一. 蓮池·省守·養魚等節，使倉庫直，次知舉行為白齊。
- 一. 每年青瓜五百箇，直瓜三千二百箇，霜後蟹二百箇，分等封進爲白乎矣，其他着根青芥·古椒·栢子·蓮實·桃·杏等屬，隨其土產，這這封進爲白齊。
- 一. 公廩段，外東軒十四間[房二間 ○廩四間 ○翼廊五間 ○册房三間]，

使令番所二間[房一間 ○廚一間]，旗手番所一間[房]，內衛十八間[房二間 ○茶房一間 ○廳三間 ○退一間 ○翼廊十一間]，兩處大廳十八間半[一處房二間 ○廳二間半 ○一處房二間 ○廳六間 ○廚二間 ○書員·庫直入接房各二間]，亭榭九間半[射亭房一間 ○廳三間半 ○蓮堂房一間 ○廳三間 ○六隅亭廳一間]，庫舍四十六間[還租庫十八間 ○屯穀庫九間 ○私庫二間 ○公需庫房三間 ○廚三間 ○廳四間 ○虛間三間 ○軍器庫三間 ○火葉庫一間]，神堂一間半，門三間[外三門]，共一百二十七間。

- 一. 養魚池三處[一處，長六十七尺，廣三十九尺 ○一處，長三十二尺，廣十四尺 ○一處，長二十八尺，廣二十四尺]，栗園三處[清涼里，七千三百二十二株[一百二十六株，收稅，七千一百九十六株，癸丑植]，面目屯，九千三百十株[癸丑植]，本鎮栗木，三百株 ○桃杏，九百二十株，松雜木，一千三百七十九株]，別置栗園監官及養魚直，使之看護爲白乎矣，植木段，每年隨其空曠，次次種植爲白齊。
- 一. 印信一顆，自本營造給，而以‘拜峯別將之印’，鐫刻使用爲白齊。
- 一. 別將若因公多日曠官之時，則前期報營，假將稟旨差送，營門往來時，則留鎮將，以兵房軍官舉行爲白齊。
- 一. 本鎮瓜期，以二十四朔爲限，瓜狀前期一朔，報本營爲白齊。
- 一. 別將遞任時解由段，錢·穀各種，無不管轄於本營，依古城僉使例，報本營磨勘爲白齊。
- 一. 別將或有請由之事，報本營舉行爲白齊。



고성진(古城鎭)

고성진

[신해년¹⁸⁷ 12월 각신¹⁸⁸ 서용보¹⁸⁹徐龍輔가 본진에 보임되어 순막¹⁸⁹詢曷하라는 명으로 인해 조목별로 나열하여 장문¹⁸⁹狀聞한 뒤에 이속하였다.]

1. 본진은 관방의 중요한 지역인데 허다한 적폐가 전회¹⁸⁹轉化하여 고질 병¹⁸⁹膏肓이 되었고, 오래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꺼리고 피하여서 차출하여 보낼 사람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영음¹⁸⁹營邑의 침해와 업신여김을 받아 장교와 군졸이 지탱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있는 1년 2년 동안 장차 진이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본영으로 인해 둔전이 멀지 않은 곳에 있게 되어 정강¹⁸⁹政講과 수세¹⁸⁹收稅하는 것이 편의에 따른 계책이 되었고, 근밀한 신하가 마침 외직에 보임되어 삼가 순막하라는 명에 따라 변통하는 방도를 조목조목 진달하였다.

이에 한결같이 배봉진의 전례대로 하여 본영으로 이속하는 거조가 있게 되었다. 비단 본진에 있는 것은 천년에 한 번 있을 일일 뿐만 아니라, 관서의 요충지에 있어서 실로 환하게 달라진 모습이 있게

187 신해년(辛亥年) : 1791년(정조 15)을 말한다.

188 각신(閣臣) : 규장각(奎章閣)의 관원을 이른다.

189 순막(詢曷) : 임금이 신민에게 국가와 사회의 폐단을 묻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되었다. 무릇 설치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대충 짐작하여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장鎭將 이하에게 접제하는 비용 및 합동으로 행하는 군제의 사목을 모두 참작하고 마련한 다음 왼쪽에 조목별로 나열 하니 영구히 준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진저鎭底의 둔전답屯田畝을 궁방과 아문에 이속한 것을 도로 본진으로 소속시켜서 매년 타작打作한 뒤에 풍흉을 참작하여 정한 다음 모두 정식으로 삼아 떼어 주게 한다. 풍년에는 660섬[石]을 떼어 주고 30섬은 으레 종자로 지급하며 360섬은 제하여 본색本色의 지방支放으로 하고, 270섬은 매 섬마다 1냥 2전씩 작전作錢¹⁹⁰하여 가져다 쓰도록 한다.

흉년에는 550섬을 떼어 주고 30섬은 으레 종자로 지급하며 360섬은 제하여 본색의 지방으로 하고, 160섬은 매 섬마다 1냥 5전씩 작전하여 가져다 쓰도록 하고, 남은 수량은 본영에 상납한다.

1. 안주安州·박천博川·정주定州·가산嘉山 등 네 고을 영둔營屯의 작인作人 등에 대해 모두 당초 480인에 준하는 액수로 3초哨의 군제로 만들되[지금은 군액을 아직 채워 넣지 않았으니 배봉진의 예대로 아병 2초로 만들], 수많은 꺾액을 만약 일시에 바꾸어 정하면 폐단이 생길 우려가 없지 않으니, 둔민屯民과 진저에 거주하는 백성을 막론하고 역役이 없는 자를 가려서 차례차례 채워 넣는다.

190 작전(作錢) : 곡식 대신 돈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던 일을 말한다.



그리고 본진의 군병을 이미 본영에 소속시켰으니, 예전에 이른바 모군募軍이라는 명칭은 마땅히 그 호칭을 고쳐야 하므로 지금부터는 장용영군壯勇營軍으로 군안에 기재한다.

1. 군병의 꺾액은 각 진의 예대로 본진에서 해당 지방관에게 이문移文 하면 지방관은 꺾원이 생기는 대로 채워 넣는다. 그리고 본진으로 이송하면 먼저 진에 있는 도안都案에 부표付標하고 매년 세초歲抄¹⁹¹ 하여 성책成冊한 다음 본영에 보고한다.
1. 각 둔의 작인들은 교생校生과 군병을 막론하고 1년 내의 신역身役에 대한 후전後錢¹⁹²은 모두 2냥 2, 3전이고 호역戶役은 마땅히 7, 8전이다. 그런데 진졸鎭卒을 바꾸어 정한 뒤에는 마땅히 넉넉하게 구휼하는 정사를 베풀어야 하니, 신역은 후전을 제하고 매 명마다 1냥씩 거두어들이고 호역은 매 호戶마다 2전씩 거두어서 진장鎭將이 시유柴油의 밑천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진저의 민호에 대한 흥년의 규례는 이미 영구히 떨어 주고 있으니, 호역도 또한 견감蠲減하여 진념軫念하고 안도하는 뜻을 보이도록 한다.
1. 진 아래 거주하는 백성 가운데 대장代將 이하 구종驅從 이상은 현재 진의 역역을 맡고, 관문에서 사환使喚하는 자의 경우에는 역명과 신전身錢을 특별히 탕감한다. 그 나머지 백성들은 호역戶役 외에 다른

191 세초(歲抄) : 매년 6월, 12월에 군적을 정리하여 죽거나 병들거나 도망간 군병의 꺾원을 보충하는 일을 말한다.

192 후전(後錢) : 정식 명목 외에 덧붙여 받는 돈을 말한다.

진졸의 예대로 시행하여 도점圖占¹⁹³하거나 한가하게 노는 폐단이 없게 한다.

1. 본진 군병의 신역과 호역은 다른 곳에 비해 매우 가벼워서 자원自願하여 투속投屬하게 한다면 반드시 장차 분란이 일어날 것이니, 만약 원하는 대로 투속을 허용하여 도망자들의 소굴로 만들게 된다면, 이렇게 양정良丁이 극심하게 어려운 때에 그 폐단을 엄하게 막지 않을 수 없다. 원액 외에 비록 1명이라도 만일 액외 인원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으면 첨사僉使는 각별히 무겁게 다스리고 마땅히 해당 군병과 장교는 엄형하고 멀리 유배한다.

1. 본진의 군병을 지금 이미 본영으로 이속시켰으니, 본도의 군총軍總에서 마땅히 털어 제하여 주고 습조習操에 나아가게 한다. 소속된 곳이 전혀 없어도 이미 단속된 군병이라면 훈련하는 거조가 없을 수 없으니, 도내의 험난한 독진獨鎭의 예대로 10월부터 1월까지 4개월간 첨사가 주관하고 조련한 뒤에 상황을 날날이 본영에 보고한다.

1. 본진에 현재 남아 있는 환향還餉의 각종 곡식은 절조折租¹⁹⁴가 7,800여 섬인데 해가 오래되어 폐단이 자자하니, 정조正租가 변하여 황조荒租가 되고, 황조가 또 변하여 빈껍질虛穀이 되었다. 지금 만약 한결 같이 정실精實한 곡식으로 받는다면 처음에 죄를 지은 것이 비록 때

193 도점(圖占) : 다른 사람의 사일(仕日)을 빼앗아 점유하여 자신이 출근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한다.

194 절조(折租) :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바치는 조세(租稅)를 말한다.



우 애통하지만, 지금 배倍로 납부하는 것 또한 불쌍하니 이렇게 변통하는 때에는 마땅히 영실¹⁹⁵의 죄과에 부쳐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이 절조 7,800섬은 매 2섬 7말 5되마다 정조 1섬씩과 모곡으로 거두어들인 3천섬을 떼어 나누어 주어 모곡을 취한 다음 매년 지방支放의 밀천으로 삼고, 130여 섬은 그대로 창고에 남겨둔다.

1. 본진의 환곡 가운데 공가公家의 곡물은 곡부穀簿에서 바로 수량을 줄이고, 관회管會 외에 군기조軍器租로서 순영과 병영에서 관리하는 곡물 같은 경우는 도내의 공가 가운데 곡물에 넉넉한 곳에서 수량에 맞게 급대^{給代}하여 모두 본영의 곡물로 삼는다.

1. 환곡을 나누어 줄 때 만약 진저의 백성 가운데 각 둔屯의 경작자에 게만 오로지 환곡을 받게 한다면, 실로 호戶는 적고 곡식은 많아 백성이 견디지 못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예전 가산嘉山·박천博川 두 고을 부근 면면의 백성들의 예대로 융통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그리고 매 호戶마다 3섬에 불과하니, 매번 나누어 줄 때마다 본관에서 초실^{稍實}한 백성을 가려 뽑아서 보증하고 성책^{成冊}한 다음 본진으로 이송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환곡을 나누어 주고 환자를 거두어들일 때에 면임^{面任} 및 납부를 거부하는 백성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지 말고 곧바로 본진에서

195 영실(寧失) : 죄가 확실하지 아닐 경우,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과하지 못하더라도 지나치게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서경』 대우모(大禹謨)에서 고요(皋陶)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 보다는 차라리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실수를 하는 편이 낫다.(與其殺不辜, 寧失不經)”라고 하였다.

죄를 따져 다스리도록 일체 정식으로 삼는다.

1. 각 둔전의 둔감屯監은 향임鄉任이나 장교를 막론하고 감당할 만한 사람을 택하고, 진장鎭將은 망정望定¹⁹⁶을 감영에 보고한 다음 차출하고 첩문帖文을 성급成給한다. 비록 현재 둔감을 맡고 있는 자라도 각 고을의 좌수座首·중군·향임·창감倉監 등의 직임에 대해 구애받지 말고 차정하라고 각 그 고을에 분부한다.

둔감으로 차출된 뒤에 만일 꺼리고 피하거나 혹 성실하지 않은 일이 있는 경우 진장은 감영에 보고하여 무겁게 다스린다. 그리고 마름[舍音]·감고監考의 경우 망정과 차첩差帖 등의 절차는 이대로 거행한다. 징치懲治하는 조항에 있어서는 곤棍과 태汰는 감영에 보고하고 태썩와 장杖은 스스로 결단한다.

1. 본진의 관방關防은 서로西路의 요충지이고 또 3초哨의 군병을 설치하였으니, 군기軍器를 차례차례 충당해 놓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외방에 있는 것은 부족하니 적절하게 청하여 뜻밖의 사태에 대비한다.

1. 본진의 군병과 장교들의 봄가을 시사방試射放에 상격의 밑천이 없어서는 안 된다. 목면 1동同 씩을 감영·병영에 한 해 걸러 돌아가며 청하여 가져다 쓴다.

1. 본진 앞에 있는 큰 강에서 땀감과 소금, 고기잡이를 통하는 길을

196 망정(望定) : 관원이나 적임자의 후보를 세 사람으로 지명하여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병영에서 물길을 뚫는 일과 관련해서는 배 가운데 5척^隻에 한하여 가져와서 별도로 정한 착실한 뱃사람을 부리도록 한다. 병영에서 만일 물길을 뚫어야 하는데 감영에 있는 배가 부족하게 되면, 본진과 상의하여 기한을 정하여 가져다 쓴 뒤에 본진에 돌려보낸다.

1. 진저의 텅 빈 곳은 백성의 소원대로 장시^{場市}를 설치하여 물화를 통하게 하되, 날짜는 네 고을의 장시 외에 비어있는 날을 헤아려 한 달 내에 장시를 6번 혹 3번 여는데 좋은 쪽으로 택하여 정하고, 장세^{場稅}는 한결같이 네 고을 가운데서 가장 가벼운 규례대로 시행한다.

1. 본진 군정^{軍政}에 대해 주고받는 장부 가운데 마감해야 할 일이 긴 요한 것은 사인^{私人}이 왕래하면서 내어줄 수 없으니, 병영의 발참^{撥站}¹⁹⁷에 별도로 신칙하여 거행하도록 한다. 해당 발참의 발장^{撥將}이 이미 거행했으면 본진의 사역에 대해서 마땅히 약간의 노고에 보답하는 밑천이 있어야 하니, 봄가을의 옷감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급한다.

1. 본진이 본영에 이속된 뒤에 비단 사체가 다른 곳과는 자별할 뿐만 아니라 군병도 본영에 속하고 곡식도 본영에 속하여 별도로 감영

197 발참(撥站) : 발군(撥軍)이 교대하거나 말을 갈아타는 역참이다. 기발(騎撥)은 25리마다 하나씩 설치하고 발장(撥將) 1인, 군정(軍丁) 5인, 말 5필씩을 두었으며, 보발(步撥)은 30리마다 하나씩 설치하고 발장 1인, 군정 2인을 두었다.

이나 병영에서 관문을 경유할 일이 없고, 본진은 이미 본도 안에 있고 또 두 영營의 부절符節을 차고 있으니 관할하는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다.

참현參現할 때의 절차는 당하 수령의 예대로 하고, 복색은 용복戎服으로 하고 공장公狀은 감사와 병사가 새로 차임할 때만 파발 편에 부쳐 보내고, 전최殿最는 병사가 기일에 앞서 본영 대장 및 본도 감영과 함께 의논한 뒤에 마감한다. 두 영의 월말 공사公事 및 두 영의 영주인營主人 등에 관한 일은 모두 혁파하고, 두 영에서 정한 각 임무의 차원差員·시관試官·제관祭官·겸관兼官의 직임은 절대로 거론하지 말도록 한다.

1. 진장鎭將을 본영에서 차견差遣 하는 것은 본래 별도로 가려 뽑아야 하고, 내려가는 사람 또한 마땅히 각별히 신중하게 살펴야 하니, 둔전을 검찰하고 둔세를 거두어들이며 진곡을 조적糶糶하고 진졸을 통솔하는 책임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혹 두 영에서 구관句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침학侵虐하거나 제멋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백 배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간혹 직임을 잘 수행하지 못하여 소문이 미치는 일이 있게 되면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1. 본인의 기록과 장부의 마감은 매년 6월과 12월에 본영에 수보修報하고, 조적할 때에 나누어 남겨 둔 성책成冊과 창고를 열 때의 형지形止를 모두 거두어서 모두 본영에 수보한다.
1. 부료付料 두 자리를 설치하하고 진鎭의 장교와 방외 무사를 막론하



고 만일 시사試射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응시를 허락하되 매 사맹식四孟朔마다 시취試取한다. 규구規矩는 유엽전柳葉箭 3순巡에서 3분[分] 이상인 자를 취하여 부료로 삼아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한다.

1. 본진은 이미 본영에 속했으니 곡부와 군적 또한 본영에서 마감하고, 첨사가 교체될 때 해유解由는 본영에 직접 보고한 다음 참고하여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

1. 첨사의 임기는 24개월로 정하고 임기가 차기 3개월 전에 본영에 보고한다.

1. 군액은 장별영장壯別領將 2인, 장별군관壯別軍官 200인, 아병장牙兵將 2인, 기괘관旗牌官 2인, 아병牙兵 3초哨[매 초마다 122명], 표하군標下軍 58명[노자牢子 8명 ○순령수巡令手 6명 ○취고수吹鼓手 13명 ○대기수大旗手 22명 ○당보수塘報手 5명 ○등룡군燈籠軍 4명]로 정한다.

1. 진속鎭屬은 훈련 반수訓練班首 1인, 대장代將 1인, 병방 군관兵房軍官 2인, 군기 감관軍器監官 1인, 창감관倉監官 1인, 위전衛前 5인, 고직庫直 7명[관속官屬 1명, 둔창屯倉 1명, 군기軍器 1명, 본창本倉 4명] 통인通引 4명, 방자房子 1명, 급창及唱 2명, 군뢰軍牢 4명, 사령使令 2명, 구종驅從 2명, 식모食母 1명, 원두직園頭直 1명, 두 초哨의 주인主人 2명으로 정한다.

1. 매년 거두어야 할 정조正租는 660섬[石][원래의 환곡 3,000섬에 대한 모조耗條 300섬 ○둔조屯租 연례 획급조 360섬], 전문錢文은 1,918냥[아병의 신전조身錢條 254냥兩 ○둔조 270섬에 대한 연례

획급조[풍총豐摠] 324냥 ○영전營錢 4,200냥에 대한 취식조取殖條 [병영에서 가져 온다] 840냥 ○축통築筒¹⁹⁸할 물력物力으로 소미小米 500섬, 상정한 것 외에 잉여조剩餘條[병영에서 가져 온다] 500냥, 목면 1동同[군교에 대한 상격조, 순영과 병영에서 격년으로 청해 얻는 조]을 정식대로 회록會錄한다.

1. 매년 내리는 정조 643섬 내에 첨사의 배삭조排朔條는 367섬[매달 30섬 8말[斗] 7되[升] 5홉[勺][조租 10섬, 대미大米 5섬, 두료 2섬, 태太 3섬 13말은 절조折租로 대신함]], 방료조放料條는 276섬[매달 대장 代將 1인, 군기 감관 1인, 창감관 1인, 아전 3인, 관청 고직 1명, 둔 창 고직 1명, 군기 고직 1명, 군뢰軍率 4명, 사령 2명, 급창 2명, 구 종 2명은 각각 1섬 ○통인 4명, 방자 1명, 식모 1명은 각각 10말]이다.

전錢 1,758냥 내에 첨사의 배삭조는 600냥[매달 50냥], 옷감과 필 채筆債 조 72냥[매달 아전 3인의 필채 각 1냥 ○대장 1인, 군기 감관 1인, 창감관 1인, 발장撥將 1인, 아전 3인, 급창 2명의 봄가를 옷감으로 매 等等마다 각각 2냥], 공용조公用條는 1,086냥[매달 훈련 반수 1인, 부료 군관付料軍官 2인, 원두직 1명은 각 조租 10말 대신 1냥 3전 3분[分] ○병방 군관 2인, 장별영장 2인, 아병장 2인, 기패관 2인, 아전 2인은 각 조 1섬 대신 2냥 ○아전 2인의 필채는

198 축통(築筒) : 통(筒)을 쌓아 경작지를 마련하는 간척사업의 일종이다.



각 1냥 ○병방 군관 2인, 장별영장 2인, 아병장 2인, 기패관 2인, 아전 2인, 호적수號笛手 2명의 봄가을 옷감으로 매 등마다 각 2냥 ○매년 첨사에게 연례적으로 획급劃給하는 조 400냥 ○대장의 사후伺候¹⁹⁹를 위한 2냥 ○작청作廳·사령청使令廳에 상례적으로 내려주는 것 각 5냥 ○훈련청직, 장교청직 각 5냥 ○발군撥軍의 역가役價 6냥 ○2초哨 주인主人의 역가 각 10냥 ○4강江 진척津尺의 역가 12냥 ○장교청將校廳·작청·군뢰청軍牢廳의 시가柴價 각 6냥 ○상경하는 하인의 노자路資 30냥 ○복마卜馬 1필의 외양가喂養價 15냥 ○조적糶糶할 때 종이를 위한 10냥 ○신연新延²⁰⁰의 다과를 위한 8냥 ○포진鋪陳을 위한 10냥 ○공용지公用紙 위한 29냥 ○4개월마다 합동조련할 때 군병의 호궤조槁饋條 70냥 ○교체할 때 잡비조雜費條 60냥]는 정식定式대로 값을 지급한다.

1. 내려주는 것 외에 나머지 조條는 조租 17섬, 전錢 160냥을 매년 남겨 두어서, 윤달의 지방支放 및 급료 및 군기軍器와 관청을 수보하는 밑천으로 삼는다.

1. 둔전屯田과 관련하여 정주定州 10통筒은 답畓 33결結 80부負 6속束 258섬 1말 5되지기[卍落只][대류통大柳筒은 1결 49부 2속 17섬 8되지기 ○신통新筒은 2결 83부 4속 33섬 4말 7되지기 ○송지통松池筒은 7결 40부 1속 87섬 1마지기[卍落只] ○도산통劔山筒은 4부 8속 8

199 사후(伺候) : 적의 동정을 살피거나 장수의 시종 역할을 담당했던 군사를 말한다.

200 신연(新延) : 고을이나 감영(監營)에 새로 부임하는 감사나 수령을 맞아 오는 일이다.

마지기 ○구룡통九龍筒은 2결 87부 6속 33섬 11말 7되지기 ○습운
 통濕雲筒은 30부 9속 3섬 9마지기 ○노통蘆筒은 58부 7속 6섬 12말
 8되지기 ○대명통大明筒은 31부 5속 3섬 10마지기 ○영뢰1통永賴一
 筒은 3결 38부 6속 13섬 8마지기 ○영뢰2통永賴二筒은 14결 55부 8
 속 58섬 3말 5되지기]이다.

박천博川 7통은 답 23결 32부 6속 155섬 7말 6되지기[대현통大賢筒
 은 2결 60부 8속 17섬 5말 8되지기 ○맹지통孟池筒은 4결 26섬 10
 마지기 ○감지통甘池筒은 1결 53부 7속 10섬 3말 7되지기 ○연지
 통連池筒은 6결 15부 41섬지기[石落只] ○강금통江今筒은 3결 76부 3
 속 25섬 1말 3되지기 ○거가통車哥筒은 4결 36부 8속 29섬 1말 8
 되지기 ○을사통乙巳筒은 90부 6섬지기]이다.

가산순통嘉山巡筒의 답 73부 2속 4섬 13말 2되지기는 모두 본진에
 소속시키고 거둔 곡물은 정식定式대로 떼어 주어 지방支放의 비용으
 로 만들고 나머지는 작전作錢하여 상납하게 한다.

1. 관아 건물은 외동헌外東軒 10칸間[방 4칸 ○청廳 6칸], 내아內衙 23
 칸 반[동방東房 1칸 반 ○부엌 2칸 ○청 4칸 반 ○서방西房 1칸 ○다
 방茶房 1칸 ○책방 1칸 ○청 1칸 ○중문 1칸 ○마방馬房 2칸 ○내협
 문內挾門 반 칸 ○외협문外挾門 1칸 ○대문 1칸 ○마구간 2칸 ○헛간
 3칸 ○부엌간 1칸], 문門 11칸[중삼문中三門 5칸 ○외삼문外三門 6칸
 [상루上樓]], 창고 31칸 반[환곡고還穀庫 24칸 반 ○군기고 7칸 반],
 훈련청 10칸[방 3칸 ○청 3칸 ○부엌 2칸 ○마구간 1칸 ○대문 1
 칸], 작청作廳 5칸[방 2칸 ○청 2칸 ○부엌 1칸], 군뢰청軍牢廳 4칸



[방 2칸 ○청 1칸 ○부엌 1칸], 장교의 직소直所 3칸 반, 각 처 둔창屯倉 91칸 반[박천博川 22칸 ○안주安州 11칸 ○가산嘉山 16칸 ○정주定州 2곳 가운데, 1곳은 12칸 반이고 다른 1곳은 30칸], 갈마창葛麻倉 34칸으로 모두 234칸이다.

1. 군기와 각종 서적, 작물作物은 6월·12월에 전곡錢穀을 마감할 때에 모두 마감하여 본영에 보고한다.

古城鎮

[辛亥臘月, 閣臣徐龍輔, 外補本鎮, 因詢瘼之命, 條列狀聞後移屬]

- 一. 本鎮以關防重地, 許多積弊, 轉成膏肓, 久勤厭避, 而差遣不得其人, 營邑侵侮, 而校卒莫能支, 吾一年二年, 將至無鎮之境矣. 今因本營, 屯田處在不遠地, 政講收稅, 便宜之策, 而近密之臣, 適值外補, 謹遵詢瘼之命, 條陳變通之方. 乃有一依拜峯鎮已例, 移屬本營之舉. 非但在本鎮, 爲千載一遭, 關西要衝之地, 實有煥然改觀之美. 凡係設置規模, 不可草草勘定乙仍于, 鎮將以下, 接濟之需, 及合行之軍事事目, 並以酌量磨鍊, 條列于左, 以爲永久遵行之地爲白齊.
- 一. 鎮底屯田畝之移屬, 宮房·衙門處, 還屬本鎮, 每年打作後, 酌定豐歉, 摠定式劃給爲白乎矣, 豐年則劃給六百六十石, 三十石段, 例給種子, 除三百六十石, 以本色支放, 二百七十石段, 每石一兩二錢式, 作錢取用爲白乎旆, 歉歲則劃給五百五十石, 三十石段, 例給種子, 除

三百六十石段，以本色支放，一百六十石段，每石一兩五錢式，作錢取用，餘數上納本營爲白齊。

- 一. 安州·博川·定州·嘉山等四邑營屯作人等，竝准當初四百八人之額，作爲三哨軍制[今則軍額，姑未填充，依拜峯鎮例，作爲牙兵二哨]爲白乎矣，數多闕額，若一時換定，則不無爲弊之慮，毋論屯民與鎮下居民，擇其無役者，次次填充爲白乎矣，本鎮軍兵，旣屬本營，則曾前所謂募軍之名，自當改號，從今爲始，以壯勇營軍，載錄於軍案爲白齊。
- 一. 軍兵闕額，依各鎮例，自本鎮移文該地方官，地方官隨闕填充，移送本鎮，則先爲付標於鎮上都案，每年歲抄修成冊，報于本營爲白齊。
- 一. 各屯作人輩，毋論校生·軍兵，一年內身役，竝後錢當爲二兩二三錢，戶役當爲七八錢是白如乎，換定鎮卒之後，宜施優恤之政，身役段，除後錢以每名一兩式收捧，戶役則每戶收捧二錢，以爲鎮將柴油之資爲白乎矣，鎮底民戶歉租之規，已在永減之中，而戶役設置，亦爲蠲減，別示軫念安堵之意爲白齊。
- 一. 鎮下居民中，代將以下驅從以上，時帶鎮役，使喚官門者段，役名及身錢，特爲蕩減，其餘民人段，戶役外依他鎮卒例施行，俾無圖占閑遊之弊爲白齊。
- 一. 本鎮軍兵身役與戶役，比他太歇，自願投屬，必將紛紜，若隨願許屬，作爲逋逃之藪，則當此良丁極艱之時，其弊不可不嚴防，原額外雖一名，如有額外是白如可，有所現發，則僉使各別重勘，當該兵校，嚴刑遠配爲白齊。
- 一. 本鎮軍兵，今旣移屬於本營，則本道軍摠，自當減除，而赴操之節，



全無屬處，既是團束之軍，則不可無鍊習之舉，依道內嶺隘獨鎮例，自十月至正月四朔，僉使主管操鍊後，形止枚報本營爲白齊。

- 一. 本鎮時存還餉各穀，折租七千八百餘石，而歲久弊滋，正租變爲荒租，荒租又變爲虛穀。今若一例，以精實穀捧上，則原初作罪，雖甚可痛，目下納倍，亦屬可矜，當此變通之時，宜付寧失之科。今此折租七千八百餘石，每二石七斗五升，以正租一石式，竝耗捧上三千石，畫分取耗，以爲每年支放之資，一百三十餘石，仍爲留庫爲白齊。
- 一. 本鎮還穀，公家穀物段，穀簿中直爲減數，如管會外軍器租之巡兵營所管穀段，道內公家穀物有裕處，稱數給代，竝作本營穀物爲白齊。
- 一. 還分時，若使鎮底民人各屯作者，專當受食，則實有戶少穀多，民不支堪之弊，依前以嘉山·博川兩邑附近面民人，通漚磨鍊。每戶多不過三石爲准，每於分給之時，本官抄出稍實民人，懸保修成冊，移送本鎮，以爲憑考之地爲白乎矣，分還·捧還時段，面任及拒納民人，勿爲文移，直自本鎮推治事，一體定式爲白齊。
- 一. 各屯屯監，毋論鄉任·將校，擇其可堪人，鎮將望定報營差出，成給帖文爲白乎矣，雖時帶屯監人，各邑座首·中軍·鄉任·倉監等任，勿拘差定之意，分付各其官爲白乎矣，屯監差出後，如有厭避，或不勤之事，鎮將報營重勘。至於舍音·監考段置，望定差帖等節，依此舉行爲白乎矣，懲治一款，棍汰則報營，笞杖則自斷爲白齊。
- 一. 本鎮關防，既是西路要衝，又設三哨軍兵，則軍器不可不次充上，見在外不足，量宜請得，以備不虞爲白齊。
- 一. 本鎮軍校，春秋試射放，不可無賞格之資，木一同式，監·兵營良中，

間一年輪回，請得取用爲白齊。

- 一. 本鎮前臨大江，柴鹽漁採，通涉之路，不可不念，兵營疏鑿，船中限五隻取來，別定差實船人，使用爲白乎矣，兵營如有疏鑿之舉，而營在船隻不足是白去等，往復本鎮，定限取用後，還送本鎮爲白齊。
- 一. 鎮底空曠處，從民願許設場市，以通物貨爲白乎矣，日子段，量其四邑場市外空地，一月內六場或三場，從長擇定，場稅段，一依四邑中最歇例施行爲白齊。
- 一. 本鎮軍政去來文簿，磨勘之關緊者，不可以私人往來出付，兵營撥站，另飭舉行爲白乎矣，該站發將，既已舉行，本鎮使役，宜有略干酬勞之資，春秋衣資，別爲磨鍊上下爲白齊。
- 一. 本鎮移屬本營之後，非但事面之與他自別，軍屬本營，穀屬本營，別無關由於監·兵營之事，而本鎮既在本道之內，又佩兩營之符，管轄之制，不可全闕。參現時節次段，依堂下守令例爲之，服色段，以戎服爲之，公狀段，監兵使新差時從，撥便付送，殿最段，兵使先期同議于本營大將及本道監營後磨勘，兩營朔末公事·兩營營主人等節，一併革罷，兩營所定，各務差員·試官·祭官·兼官之任，切勿舉論爲白齊。
- 一. 鎮將之自本營差遣，自當別加別擇，下去之人，亦當別加審慎，而屯田之檢察，屯稅之收捧，鎮穀之糶糴，鎮卒之董率，責任不輕。若或以不爲句管於兩營，略無顧忌，侵虐縱恣，則其所抵罪百倍他人，或有不善舉職，有所及聞之事，照法嚴繩爲白齊。
- 一. 本鎮記簿磨勘，每年六臘月修報本營，糶糴時分留成冊，開倉形止，



畢捧狀，一體修報本營爲白齊。

- 一. 設置付料二窠，毋論鎮校與方外武士，如有願射者，使之許赴，每於四孟朔，試取爲白乎矣，規矩段，柳葉箭三巡，取三分以上付料，以爲激勸慰悅之地爲白齊。
- 一. 本鎮既屬本營，穀簿·軍籍，亦爲磨勘於本營，僉使遞易時，解由直報本營，以爲憑考磨勘之地爲白齊。
- 一. 僉使瓜限，以二十四朔爲定，瓜狀前期三朔，報本營爲白齊。
- 一. 軍額段，壯別領將二人，壯別軍官二百人，牙兵將二人，旗牌官二人，牙兵三哨[每哨一百二十七名]，標下軍五十八名[牢子八名 ○巡令手六名 ○吹鼓手十三名 ○大旗手二十二名 ○塘報手五名 ○燈籠軍四名]，爲定爲白齊。
- 一. 鎮屬段，訓練班首一人，代將一人，兵房軍官二人，軍器監官一人，倉監官一人，衛前五人，庫直七名[官屬一名，屯倉一名，軍器一名，本倉四名]，通引四名，房子一名，及唱二名，軍牢四名，使令二名，驅從二名，食母一名，園頭直一名，兩哨主人二名，爲定爲白齊。
- 一. 每年應捧正租，六百六十石[元還三千石，耗條三百石 ○屯租年例劃給條，三百六十石]，錢文一千九百十八兩[牙兵身錢條，二百五十四兩 ○屯租二百七十石，年例劃給條[豐摠]，三百二十四兩 ○營錢四千二百兩取殖條[自兵營來]，八百四十兩 ○築筒物力，小米五百石，詳定外餘剩條[自兵營來]，五百兩]，木一同[軍校賞格條，巡兵營間年請得條]，依定式會錄爲白齊。
- 一. 每年應下正租，六百四十三石內，僉使排朔條，三百六十七石[每朔

三十石八斗七升五合[租十石，大米五石，豆二石，太三石十三斗，折租代]]，放料條，二百七十六石[每朔代將一人，軍器監官一人，倉監官一人，衙前三人，官廳庫直一名，屯倉庫直一名，軍器庫直一名，軍牢四名，使令二名，及唱二名，驅從二名，各一石 ○通引四名，房子一名，食母一名，各十斗]。錢一千七百五十八兩內，僉使排朔條，六百兩[每朔五十兩]，衣資·筆債條，七十二兩[每朔衙前三人筆債，各一兩 ○代將一人，軍器監官一人，倉監官一人，撥將一人，衙前三人，及唱二名，春秋衣資，每等各二兩]，公用條，一千八十六兩[每朔訓練班首一人，付料軍官二人，園頭直一名，各租十斗，代一兩三錢三分 ○兵房軍官二人，壯別領將二人，牙兵將二人，旗牌官二人，衙前二人，各租一石，代二兩 ○衙前二人，筆債各一兩 ○兵房軍官二人，壯別領將二人，牙兵將二人，旗牌官二人，衙前二人，號笛手二名，春秋衣資，每等各二兩 ○每年，僉使年例劃給條，四百兩 ○代將伺候次二兩 ○作廳使令廳例下，各五兩 ○訓練廳直，將校廳直，各五兩 ○撥軍役價，六兩 ○二哨主人役價，各十兩 ○四江津尺役價，十二兩 ○將校廳·作廳·軍牢廳柴價，各六兩 ○上京下人路資，三十兩 ○卜馬一匹喂養價，十五兩 ○糶糶時紙次，十兩 ○新延茶啖次，八兩 ○鋪陳次，十兩 ○公用紙次，二十九兩 ○四朔合操時，軍兵犒饋條，七十兩 ○遞易時雜費條，六十兩]，依定式上下爲白齊。

- 一. 應下外餘條，租十七石，錢一百六十兩，每年除留，以爲閏朔支放，及軍器·公廩，修補之資爲白齊。



一. 屯田段, 定州十筒, 畚三十三結八十負六束, 二百五十八石一斗五升落只[大柳筒, 一結四十九負二束, 十七石八升落只 ○新筒, 二結八十三負四束, 三十三石四斗七升落只 ○松池筒, 七結四十負一束, 八十七石一斗落只 ○鈎山筒, 四負八束, 八斗落只 ○九龍筒, 二結八十七負六束, 三十三石十一斗七升落只 ○濕雲筒, 三十負九束, 三石九斗落只 ○蘆筒, 五十八負七束, 六石十二斗八升落只 ○大明筒, 三十一負五束, 三石十斗落只 ○永賴一筒, 三結三十八負六束, 十三石八斗落只 ○永賴二筒, 十四結五十五負八束, 五十八石三斗五升落只]. 博川七筒, 畚二十三結三十二負六束, 一百五十五石七斗六升落只[大賢筒, 二結六十負八束, 十七石五斗八升落只 ○孟池筒四結, 二十六石十斗落只 ○甘池筒, 一結五十三負七束, 十石三斗七升落只 ○連池筒, 六結十五負, 四十一石落只 ○江今筒, 三結七十六負三束, 二十五石一斗三升落只 ○車哥筒, 四結三十六負八束, 二十九石一斗八升落只 ○乙巳筒, 九十負, 六石落只]. 嘉山巡筒, 畚七十三負二束, 四石十三斗二升落只, 竝屬本鎮, 所收穀物, 依定式劃給, 作爲支放之需, 餘數作錢上納爲白齊.

一. 公廨段, 外東軒十間[房四間 ○廳六間], 內衙二十三間半[東房一間半 ○廚二間 ○廳四間半 ○西房一間 ○茶房一間 ○冊房一間 ○廳一間 ○中門一間 ○馬房二間 ○內挾門半間 ○外挾門一間 ○大門一間 ○馬廄二間 ○虛間三間 ○廚間一間], 門十一間[中三門五間 ○外三門六間[上樓]], 庫三十一間半[還穀庫二十四間半 ○軍器庫七間半], 訓練廳十間[房三間 ○廳三間 ○廚二間 ○馬廄一間 ○大

門一間], 作廳五間[房二間 ○廳二間 ○廚一間], 軍牢廳四間[房二間 ○廳一間 ○廚一間], 將校直所三間半, 各處屯倉九十一間半[博川二十二間 ○安州十一間 ○嘉山十六間 ○定州兩處, 一處十二間半, 一處三十間], 葛麻倉三十四間, 共二百三十四間.

- 一. 軍器各種書籍作物, 六臘月錢穀磨勘時, 一體磨勘報于本營爲白齊.



1. 장별도시(壯別都試)

장별도시

1. 본진의 훈련에서 신구(新舊)에 부속된 장교 등을 장별군관(壯別軍官)이라 호칭하고 200인으로 인원을 정하는데, 관서(關西)의 경우 무(武)를 숭상하는 지역인데 무예를 완전히 내버려 두고 있으니, 군정(軍政)으로 헤아려 볼 때 허술하기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별도로 도시(都試)를 설행하고 병영의 별무사(別武士)를 취재하는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매년 시취하고, 각 기예의 입격자에게는 등급을 나누어 시상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무예를 강습하고 기예를 익히는 방도로 삼고, 다른 한편으로는 힘껏 권장하여 기꺼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1. 도시(都試)는 매년 9월 한 차례 설행하는데, 병영에서 도시를 마친 뒤에 별도로 시취한다. 개장(開場)하는 일자는 기일 전에 본영에 보고한다.

1. 시취하는 규정은 본래 사체(事體)가 중하여 일개 진장(鎭將)이 담당하여 거행할 수 없으니, 병사가 주시관(主試官)을 하고 첨사는 참시관(參試官)을 하며, 복색(服色)은 시관(試官)은 시복(時服)으로 하고 응시인은 군복을 입는다.

1. 규구(規矩)는 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철전(鐵箭)·기추(騎芻)·조총(鳥銃)을 각각 1순(巡)으로 거행한다.

1. 상격(賞格)은 수석 및 몰기(沒技)한 사람 중에 한량(閑良)은 직부 전시(直赴) 殿試하고, 무과 출신에게는 상을 더해 주고, 다음 사람은 직부 회시

直赴會試 하며, 또 그 다음 1인에게는 목면 3필疋, 또 그 다음 1인에게는 목면 2필을 시상한다.

1. 응시한 사람 가운데 만일 철전鐵箭을 170, 180보를 쏠 수 있고 신수身手가 건장하고 내력來歷이 분명한 자가 있으면 뽑아서 본영에 보고한 다음 별도로 수용收用할 수 있도록 한다.
1. 시험을 마친 뒤에 입격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병영에서 별단을 정리하여 장문狀聞한다.
1. 상격賞格으로 주는 목면은 본진에서 이미 감영과 병영에서 한 해 걸러 거두어 둔 것이 있으니, 매년 소용되는 것에 따라 회감會減한 뒤에 성책하여 본영에 보고한다.
1. 군관 가운데 병영의 별무사와 영장領將의 예대로 특별히 2인을 택하여 장별영장壯別領將이라 부르고 그로 하여금 검속하게 한다. 시험에 응시하는 날 점고點考한 다음 부속시켜서 어지럽게 뒤엎키는 폐단이 없게 한다. 만일 혹 시장試場에서 농간을 부린 일이 있으면 당사자는 엄히 처벌하여 멀리 유배를 보내고, 신칙하지 않은 해당 영장은 무겁게 곤장棍杖을 친다.



壯別都試

- 一. 本鎮訓練之，新舊付屬將校等，以壯別軍官稱號，以二百人定額，而關西尚武之地，武技之全然拋置，揆以戎政，疏虞莫甚。別設都試，仍用兵營別武士取才之規，每年試取，各技入格人分等施賞，一以爲講武鍊藝之道，一以爲聳獎樂赴之地爲白齊。
- 一. 都試，每年九月，一次設行，而兵營都試畢試後，別爲試取。開場日子，前期報本營爲白齊。
- 一. 試取之規，本自體重，不可以一鎮將擔當舉行是白如乎，兵使爲主試，僉使爲叅試，而服色段，試官以時服爲之，赴試人以軍服爲之爲白齊。
- 一. 規矩段，柳葉箭·片箭·鐵箭·騎蒟·鳥銃，各一巡舉行爲白齊。
- 一. 賞格段，居首及沒技人，閑良直赴殿試，出身賞加之，次人直赴會試，又之次一人木三疋，又之次一人木二疋，施賞爲白齊。
- 一. 應試人中，如有鐵箭能射一百七八十步，身手壯健，來歷分明者，抄報本營，以爲別爲收用之地爲白齊。
- 一. 畢試後入格人等，自兵營修別單狀聞爲白齊。
- 一. 賞格木段，本鎮既有監·兵營間年捧置條，每年隨所用會減後，成冊報本營爲白齊。
- 一. 軍官中，依兵營別武士·領將例，另擇二人，以壯別領將稱號，使之檢束爲白乎矣，赴試之日，點考領付，俾無紛拏之弊。而如或有試場作奸之事，當者嚴刑遠配，不飭之該領將，從重決棍爲白齊。

2. 갈마창(葛麻倉)

갈마창

1. 본영의 둔전은 관서關西의 안주安州·박천博川·가산嘉山·정주定州 사 이에 있는데 수세하여 가져다 쓰는 데 불과할 뿐이고, 조적糶糶하고 나누어 둘 향곡餉穀을 아직 설치하지 않았으니 일이 매우 허술하다. 가산에 있는 병영에서 담당하는 갈마창의 회외곡倉外穀²⁰¹은 정묘년丁卯年²⁰² 연간에 처음으로 창설되어 1만 명을 채운 뒤에 1승乘의 변방에 두었는데 원래 수량의 모조耗條 가운데 3분의 2는 으레 병영에서 가져다 쓰고, 3분의 1은 또한 장관과 군병의 지방支放이 부족하여 간혹 보태 쓸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곡부穀簿는 금년의 모조까지 합하여 겨우 7,000여 섬인데 곡물을 갑자기 1만 섬의 형편을 채우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사세로 보아 온당한 것인지 알지 못하니, 진을 설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히 갑자기 논의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막중한 공곡公穀을 감관과 색리에게 일임하여 백성들에게 농간을 부리는 일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니 이것은 이미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본창本倉은 본진과 서로 가까운 곳에 있으니, 금년부터 본창의 곡물 및 둔전에서 거둔 것을 본영의 향곡으로 옮겨서 조적하도록 한

201 회외곡(倉外穀) : 호조(戶曹)와 같은 중앙 재정에 포함된 것이 아닌 지방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곡식을 말한다. 주로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 정묘년(丁卯年) : 1747년, 영조 23년이다.



다. 그리고 모조 가운데 병영에서 가져다 쓰는 것은 편의에 따라 급대給代한다.

1. 본창에 회부會付된 대미大米는 2,375섬 남짓이고 소미小米는 3,061섬 남짓이며, 신해년辛亥年²⁰³의 정퇴조停退條가 소미 1,499섬 남짓으로, 대미와 소미를 합쳐서 6,935섬 남짓인데 금년의 모조까지 모두 옮겨 소속시키되 매년 획분畵分하여 모조를 취하여 7,000섬에 준한 뒤에 남은 수량은 시가市價대로 작전作錢한다.

1. 본창에 소속된 사통답沙筒畓 24섬 3마지기 또한 옮겨 소속시키되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난 뒤에 거두어들이는 곡물은 다른 둔屯의 예대로 시가로 작전한다.

1. 원곡의 모조는 이미 병영에서 장교와 군병의 지방이 부족하여 연례적으로 청하여 가져다 쓰니 급대給代할 비용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병영의 기류전記留錢 중에서 3만 냥을 덜어 내어 빚을 주고 이자를 취하여 좋은 쪽으로 처리하고, 잉여분의 절반은 10년 동안 유치留置하였다가 본전本錢의 수효를 채운 뒤에 본전은 특별히 탕감을 허락해 주고 10년의 잉여분 몫으로 3만 냥을 그대로 또 전과 같이 빚을 주도록 한다.

만일 규정대로 탕감해 준다면 10년 주기로 다시 시작하도록 영구히 정식으로 삼는다. 그리고 빚을 주는 등의 일은 병영에서 별도로 절목節目을 만들어서 거행한다.

203 신해년(辛亥年) : 1791년, 정조 15년이다.

1. 본창의 곡물이 이미 본영으로 소속된 뒤에는 사체事體가 전과는 다름이 있다. 환곡을 받는 민호民戶는 본창 부근 가산과 정주 두 고을의 백성들에게 예전대로 나누어 지급한다. 환곡을 나누어 주고 환자를 거두어들일 때 각 해당 고을에서 부유하고 건실한 호戶를 가려 뽑아 보증을 세우고 이를 정리하여 성책成冊해 본진으로 이송함으로써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1. 본창의 색리色吏 2인과 고직 2명은 예전대로 병영에 소속시킨 다음 그대로 둔다.
1. 본창을 이속移屬시킨 뒤에 전수典守하는 방도에 대해서는 마땅히 과조科條를 더욱 엄하게 하여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한 해 걸러 한 번이나 혹 수년에 한 번씩 본영에서 별도로 장관將官을 파견하여 거두어들인 향곡이 있는 창고나 혹 나누기 전에 변열反關한다. 암행어사가 명을 받들 때에도 혹 모두 변열하여 그치게 할 수 있는 실효가 있도록 연석筵席에서 하교하신 대로 비변사에 있는 암행어사의 재거사목齋去事目²⁰⁴에 기재한다.
1. 본창의 곡물이 민폐를 염려하여 이렇게 이속하는 거조가 있게 되면, 조적하는 법을 십분 살피고 신중히 하여 실효가 있기를 기약하되, 만약 곡부를 농간하거나 번작反作이나 외환臥還²⁰⁵하는 폐단이 있

204 재거사목(齋去事目) : 암행어사가 각 지역의 정황을 탐문하고 규찰하기 위해 떠날 때에 해당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적은 사목을 말한다.

205 외환(臥還) : 환곡 부정의 한 형태로 실제로 곡식을 분급하지 않고 모곡(耗穀)만을 징수하는 것을 일컫는다.



거나 또 흑 미²⁰⁶와 조租가 섞여 곡식의 품질이 조악한 일이 있다가 적발되면 해당 첨사를 병사에게 분부하여 한편으로는 잡아다가 엄히 곤을 쳐서 전용轉用하거나 번작한 죄에 대한 법률을 적용한다. 또 흑 이미 손을 댔다면 장물贓物을 계산하여 형률을 적용하되 의금부로 넘겨서 형추刑推하여 자복自服을 받아 내고, 이미 체차되어 돌아간 뒤 추후에 발각된 자는 본영에서 곤을 치고,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간할 때에 발각되면 해당 수신帥臣에게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²⁰⁶을 시행한다. 감수監守하는 해당 색리와 창속倉屬들도 엄하게 곤을 치고 절도絶島에 충군充軍한다.

1. 창고의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 색락기色落器²⁰⁷는 바로잡아 낙인을 찍어 두어 과다하게 거두는 폐단을 막게 하고, 색락곡色落穀은 다른 예대로 색고직色庫直 등에게 등급을 나누어 마련한다.
1. 본둔의 통속筒屬 등을 차정差定하거나 태거汰去하는 절차는 한결같이 각 통筒의 예대로 시행하되 첩문帖文은 본영에 보고한 다음 성급한다.

206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 왕의 교지 등을 위반한 관리에게 적용하던 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말한다.

207 색락기(色落器) : 색락(色落)을 담는 그릇을 말한다. 색락이란 간색(看色)의 과정과 낙정(落庭)으로 축난 곡식을 채우기 위해 더 받는 곡식이다. 즉 환곡을 받을 때에 품질 확인을 위해 표본으로 걷는 곡식과 땅에 떨어진 사소한 곡식에 대한 벌총 조(條)의 수수료를 의미한다.

葛麻倉

- 一. 本營屯田在於關西安·博·嘉·定之間，而不過收稅取用而已。糶糴分留之餉穀，尙未設置，事甚疏虞。是白在如中，嘉山所在兵營句管葛麻倉會外穀，丁卯年間，始爲創設，滿萬數後，擬置一乘障者，而元數耗條中，三分二段，例自兵營取用，三分一段，亦以將士支放不足，間或請得補用。見今穀簿，竝今年耗，董爲七千餘石，非但穀物之遽難滿萬形便，事勢姑未知其穩當，則設鎮一款，不敢遽議。盆不喻，莫重公穀，一委監色輩，舞弄民弊，轉益滋甚，此已不可不念。是白如乎，本倉距本鎮，爲相望之地，自今年爲始，竝與本倉穀及屯田所收，移作本營餉穀，以爲糶糴之地。耗條之自兵營取用者段，從便給代爲白齊。
- 一. 本倉會付，大米二千三百七十五石零，小米三千六十一石零，辛亥停退條，小米一千四百九十九石零，合大小米六千九百三十五石零，竝今年耗條移屬，每年畫分取耗，准七千石後餘數，則從市直作錢爲白齊。
- 一. 本倉屬沙筒畝二十四石三斗落只，亦爲移屬，而每年秋成後，所收穀物，依他屯例，從市直作錢爲白齊。
- 一. 元穀耗條，旣自兵營以將士支放不足，年例請得取用，則給代之需，不可不磨鍊。兵營記留錢中，除出三萬兩，給債取剩，從長區處，剩條折半，則留置限十年，滿本錢數交後，本錢段，特許蕩減，以十年剩條三萬兩，仍又如前給債。如式蕩減，每十年周而復始事，永爲定



式爲白乎矣，給債等節，自兵營別爲成節目舉行爲白齊。

- 一. 本倉穀物，既屬本營之後，事體與前有異，還戶段，以本倉附近嘉·定兩邑民人等處，依前分給爲白乎矣，分還·捧還時，自各該邑，抄擇富實戶，懸保修成冊，移送本鎮，以爲憑考舉行之地爲白齊。
- 一. 本倉色吏二人，庫直二名，依前以兵營屬，仍置爲白齊。
- 一. 本倉移屬之後，其所典守之方，宜加申嚴科條，期於無犯，間年或間數年，自本營別遣將官，反關於捧餉封倉，或未分之前，而暗行繡衣之奉命也，時或一體反閱，俾有知戢之實效事，依筵教，載之備局所在暗行御史賚去事目爲白齊。
- 一. 本倉穀物，爲念民弊，有此移屬之舉，則糶糴之法，十分審慎，期有實效爲白乎矣，如或有幻弄穀簿·反作·臥還之弊是白去乃，又或有米租相雜，穀品龜荒之事是白如可，有所現發，則該僉使分付兵使，一邊拿致嚴棍，用刑移反作之律。又或犯手入已，則竝以計贓用律，而付之禁府，刑推取服，已遽〈遞〉²⁰⁸歸而追發者，決棍自本營舉行，匿不以報現發於摘奸時，則當該帥臣，施以制書有違之律爲白乎旆，監守該色倉屬段置，嚴棍絕島充軍爲白齊。
- 一. 倉穀捧上時，色落器段，較正烙置，俾杜過濫之弊爲白乎矣，色落穀則依他例，色庫直等處，分等磨鍊爲白齊。
- 一. 本屯筒屬等，差汰之節，一依各筒例施行，而帖文報本營成給爲白齊。

208 遞 : 원문에는 '遞' 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遞' 로 고쳐 바로잡았다.

노량진(露梁津)

노량진

1. 본진本鎭은 매년 원행園行할 때 어가가 지나가다가 주필駐蹕²⁰⁹ 하는 곳으로 사체가 자별하므로 본영으로 옮겨 자벽과自辟窠로 만들고, 별야병別牙兵 1초哨는 부근 백성 중에서 가려 뽑아서 거느리되, 기호旗號는 별야병장別牙兵將으로 호칭한다.
1. 군액軍額은 기괘관旗牌官 3인[1인은 표하군이 차지한다.], 야병牙兵 1초[121명], 표하군標下軍 23명[뇌자牢子和 순령수巡令手 각각 4명 ○대기수大旗手 3명 ○취고수吹鼓手 10명 ○장막군帳幕軍 2명]으로 정한다.
1. 진속鎭屬은 서원·고직庫直·대청직大廳直·서기·통인通引·관령管領·사환군使喚軍 각각 1명, 진부津夫 35명[본진은 15명 ○동작진銅雀津 20명]으로 정하되, 급수군汲水軍은 본진의 진부가 겸하여 행한다.
1. 본진에 있는 금위영의 미 520섬[石]과 전錢 3,492냥, 수어청의 미 500섬을 모두 옮겨 소속시키고 본영에서 관리하되, 예전대로 미는 환곡으로 나누어주고 전은 편의에 따라 이자를 취하여 본진에서 지방支放의 밑천으로 삼는다. 미 20섬은 매년 개색改色하여 창고에 남겨둔다.
1. 진부의 위전位田은 6결結 91부負 9속束[금천衿川은 3결 40부 2속 ○

209 주필(駐蹕) : 임금이 거동하는 중간에 어가(御駕)를 멈추고 머무르거나 묵는 것을 말한다.



과천果川은 5결 51부 7속]이고, 답밭은 7결 74부 7속[과천은 3결 34부 2속 ○금천은 4결 4부 5속]이다. 진부들로 하여금 세금 없이 경작하게 하여 역을 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1. 진선津船 17隻[11척은 본진에 있고[2척은 급수선], 6척은 동작진에 있다.]은 사용연한에 따라 5년이 지나면 개삭改築하고 10년이 지나면 새로 만들며, 매 척마다 물력物力은 개삭할 때 60냥, 새로 만들 때 120냥이 드는데, 예전대로 금위영에서 값을 지급한다. 급수선의 물력도 또한 호조에서 예전대로 값을 지급한다.
1. 선척을 개삭하거나 개조할 때 재료는 호조의 조운선漕運船 중에서 정간井間의 차수에 따라 1년에 1척 혹은 2년에 1척을 떼어 주고 절가折價하여 가져다 쓴다.
1. 매년 거두어야 할 미는 100섬[금위영의 미 500섬 중에 모조耗條는 50섬 ○수어청守禦廳의 미 500섬 중에 모조는 50섬], 전錢은 1,432냥兩 7전錢 8푼[分] 내에 취식조取殖條가 1,187냥 2전 8푼[금위영의 전 3,492냥 중에 구전조口錢條는 349냥 2전 ○이조利條 838냥 8푼]이고, 무세조巫稅條는 160냥[무녀巫女 80명 가운데 매 명당 목면 1필 대신 2냥], 진선津船의 9개월 치 세금 조 85냥 5전[본진의 선세船稅는 매달 7냥 5전이다[매일 2전 5푼]. 동작진의 선세는 매달 2냥[이상은 겨울 석 달 동안 없다.]]을 정식으로 거둔다.
1. 매년 내려주는 미는 80섬 12말[척][매달 기패관 3인에게 각각 5말 ○서기 2명에게 각각 6말 ○서원 1인과 고직 1명에게 각각 12말 ○순령수 3명에게 각각 9말 ○뇌자 2명에게 각각 4말 ○취수吹

手 5명에게 각각 3말]이고, 전錢은 337냥 6전 내에서 삭하 의자조 朔下衣資條로 235냥 6전[매달 대청직大廳直 1명에게 5냥 ○서원의 지 채紙價로 3전 ○사환 순퇴使喚巡牢 1명에게 4냥, 다른 2명에게 각각 1냥, 나머지 1명에게 1냥 5전 ○경주인京主人 1명에게 2냥 ○사환군 1명에게 4냥 ○봄과 가을 옷값으로 매 等等마다 대청직·순령수 각 1명에게 각각 2냥 ○1년에 한 차례 사환군 1명에게 2냥]이고, 행궁 점화조行宮點火條는 36냥[매달 3냥]이고, 시유柴油·세찬歲饌·소설掃雪 조는 16냥[서고방書庫房의 6개월 동안 시유기柴油價는 4냥 ○진속 세찬은 7냥 ○눈을 쓰는 진부 등에게 상례적으로 내려 주는 5냥]이고, 예하조例下條는 50냥[서원 1명에게 15냥 ○고직 1명에게 10냥 ○서기·대청직·관령·사환군 각 1명, 순령수 4명에게 도합 25냥을 내려 준다.]으로 정식으로 값을 지급한다. 통인通引 1명의 요미料米는 매달 6말씩으로 환자를 거둘 때 색미色米 중에서 지급한다.

1. 매년 남은 미 19섬 3말과 전錢 1,095냥 1전 8푼 내에서 미 13섬 6말과 전 105냥 4전을 창고에 남겨 둔다[미 3섬 6말과 전 5냥 4전은 윤달조이다. ○미 10섬은 항류조恒留條이다. ○전 100냥은 군수 조軍需條로 무세전巫稅錢 중에서 매년 제하여 남겨 둔다.] 그 나머지 미 5섬 12말과 전 979냥 7전 8푼은 별장에게 지급할 밑천으로 삼는다.
1. 별장 이하 진속이 다른 아문에서 받은 요포料布·의자衣資는 금위영 미 15섬 3말, 소미小米 3섬 3말, 태太 8섬, 전錢 26냥 4전 8푼, 목



면 49필, 포 5필[매달 별장의 요리는 미 10말, 소미 4말, 노료奴料 9말, 마태馬太 10말 ○서원과 고직 각 1명은 각각 삭하朔下로 목면 1필 ○서원의 삭지朔紙 3권卷을 대신하여 전 5전 4푼, 서고書庫·봉축奉足은 목면 각 9필 ○별장의 봄 가을 옷값은 전으로 각 10냥 ○급수군汲水軍의 겨울 옷값은 목면 5필, 여름은 포 5필 ○서고書庫의 겨울 3개월 시유柴油을 위한 목면 2필]이고, 균역청의 미 4섬 12말, 목면 1동同 2필, 전 8냥[매달 별장에게 지급하는 포는 1필 ○서원의 종이를 위한 목면 2필 ○관령 1명에게는 미 6말, 목면 1필 ○별장의 4等等 옷값으로 매 등마다 목면 1필, 전 2냥]이고, 선혜청의 미 8섬 6말[서기 1명에게 겨울과 여름 두 등등에 매 등마다 4섬 3말]이다. 각 해당 관사에서 정식으로 매년 값을 지급한다.

1. 관아의 건물은 망해정望海亭 10칸間[북향 ○동상방東上房 3칸 ○청廳 3칸 ○동루東樓와 서루西樓 각 1칸 ○전면 뒷간 2칸 [○남쪽에 있는 가퇴假退는 칸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문 2칸, 동쪽과 서쪽의 협문挾門 각 1칸, 내실內室 24칸[서향 ○남상방南上房 2칸 ○다방茶房 1칸 ○청 3칸 ○전면 뒷간 1칸 반 ○남쪽 뒷간 1칸, 북쪽 뒷간 반 칸 ○부엌 2칸 ○서쪽 행각방行閣房 1칸 ○청 1칸 ○헛간 1칸 반 ○중문 1칸 ○북월방北越房 1칸 ○청 1칸 ○부엌 반 칸 ○상방上房 2칸 ○남쪽 뒷간 1칸 반 ○청 2칸[북쪽에 있는 가퇴는 칸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문 1칸[남쪽 협문]으로 모두 37칸이다.
1. 진사鎭舍가 7칸[방 1칸 반 ○다방 1칸 ○청 3칸 ○전면 뒷간 1칸 반], 문 5칸[삼문三門 각 1칸 ○서쪽 협문 두 곳 각 1칸], 내실 9칸

[동상방 1칸 반 ○청 2칸 ○전면 뒷간 1칸 ○부엌 1칸 반 ○서월방 西越房 1칸 ○헛간 1칸 ○중문 1칸], 고사庫舍 12칸[군기고 2칸 ○미고米庫 8칸 ○사고私庫 2칸], 월랑月廊 3칸[헛간 1칸 ○마방馬房 1칸 ○마굿간 1칸], 하인의 번소番所 2칸[방 1칸 ○청 1칸], 고직이 입접入接하는 곳 5칸[방 1칸 반 ○청 1칸 ○부엌 1칸 반 ○건넌방 1칸]으로 모두 38칸이다.

1. 군물軍物의 각종 물품은 5군영에 비축한 것 중에서 넉넉한 것에 따라 청하여 이속移屬시킨다. 군병이 착용하는 군복은 비변사에서 가져온 목면 5동同 내에 2동 36필을 아병 136명에게 나누어 주고 준비하게 한다. 순뢰巡率 8명의 목면과 포와 군복은 본영 및 금위영에서 쓰고 버린 군복 중에서 3건件을 갖춘 다음 가져다 쓴다.
1. 매년 원행할 때 별장은 기수旗手, 고수鼓手, 전배前排 및 아병 1초哨를 거느리고 모여 대기하고, 본진이 경군·향군과 합칠 때 환위環圍하고 작문作門한다. 대가大駕가 행궁行宮에 들어가면 잡인과 말 및 시끄럽게 떠드는 자를 모두 엄금한다. 원소園所에 나아간 뒤에는 그대로 본진에 머물렀다가 다시 행궁으로 나아갈 때에는 출궁할 때의 예대로 거행한다. 환궁還宮할 때는 영표令票를 기다려 계엄을 해제하되, 모두 본영이 통지하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한다. 군물과 기계는 본진에 있는 것으로 가져다 쓴다.
1. 동교東郊와 서교西郊의 능행陵行에서 경숙經宿할 때에는 별장이 두 진津[본진本津 및 동작진銅雀津]의 선척船隻 및 표하군과 진속을 거느리고 강을 건넌 다음 머물러 대령하였다가 환궁한 뒤에는 영표를



제거하고 해산한다.

1. 환곡을 나누어 주는 것은 진저鎭底에 사는 백성 및 금천·과천 양 고을 백성들 중에서 보증인을 세운 경우에 나누어 주되, 혹 납부를 거부하는 폐단이 생긴다면 구류拘留하고 독촉하여 기한 내에 마감 하도록 한다. 거두어들일 때 만일 폐를 끼치거나 함부로 거두어들 이는 폐단이 있으면 별장 이하 서고書庫를 각별히 논감論勘한다.
1. 전錢과 곡식을 거두어서 군물을 지급하는 각종 회안會案은 매년 6 월과 12월에 본영에 보고하여 마감한다. 조직羅羅할 때 창고를 열고 봉인하는 날짜 및 납부 여부에 대한 상황도 또한 수보修報한다.
1. 환곡을 다 거두어들인 뒤에 본영에서 품지稟旨하여 별도로 장관을 보내어 별장과 함께 입회하여 열람하는 등의 일은 배봉진拜峯鎭의 예대로 거행한다. 별장이 체임遞任될 때는 망해정望海亭 이하 각처 관아의 집기 및 전·곡식·군물을 일일이 변열反閱하고 적간한 뒤에 혹 손상되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 별장은 무겁게 논감하고, 진속은 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또 혹 사적 인연에 구애되어 숨겨 두고 보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장관과 함께 모두 품지 하여 무겁게 처벌한다.
1. 별장이 만약 공무로 출타하여 여러 날 자리를 비울 때에는 본인의 기패관이 진에 남아 대장소大將所의 영전수籥을 기다려 거행한다.
1. 새로 정한 군병의 요패腰牌는 본영에 보고하여 낙인烙印을 받고, 탈이 있는 군병의 요패를 거두어들이는 조항은 배봉진의 예대로 거행한다.

1. 별장의 임기는 배봉진의 예대로 24개월로 정하되, 임기 만료는 1달 전에 본영에 보고한다.
1. 별장이 체임된 뒤에 유장(由狀)도 또한 배봉고성(拜峯古城)의 예대로 본영에 보고한 다음 마감한다.
1. 별장의 인신(印信) 1과(顆)는 전임자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1. 본인의 사체는 다른 곳과는 자별하므로 잡인이 난입하는 등의 일을 각별히 엄금하되, 만약 소란을 일으키는 폐단이 있으면 잡아서 감영에 보고하여 엄중히 처단할 수 있도록 한다.
1. 본진은 이미 본영에 소속되어 물이 얼음이 되는 때마다 상황을 일일이 수보(修報)하고, 얼음이 녹을 때에도 또한 이러한 예와 같이 한다.
1. 군안(軍案)은 2건(件)을 작성하여 1건은 본영에 올리고, 다른 1건은 진에 올리는데, 만약 탈이 있어 대신 충정하는 부류가 있으면 일일이 수정한다. 식년(式年)에 도안(都案)을 고치는 것도 또한 다른 예대로 거행한다.
1. 환자를 거둘 때 색락(色落)²¹⁰은 간색(看色)은 1되(升), 낙정(落庭)은 3되로 정한다. 색미(色米)는 통인(通引)의 급료로 주고 낙정은 서고(書庫)에서 나누어 쓴다.
1. 별장이 혹 휴가를 청하는 일이 있으면 배봉진의 예대로 본영에 보고하여 거행한다.

210 색락(色落) : 환곡을 받을 때 간색(看色)과 낙정(落庭)을 이유로 더 받던 곡식을 말한다. 간색은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걷는 표본을 말하며, 낙정은 창고에 떨어진 곡식을 말한다.



露梁津

- 一. 本鎮, 卽每年園行時, 駕過駐蹕之所, 事體自別, 移作本營自辟窠. 別牙兵一哨, 以附近民人, 抄定領率爲白乎矣, 旗號以別牙兵將稱號爲白齊.
- 一. 軍額段, 旗牌官三人[一人, 標下軍次知], 牙兵一哨[一百二十一名], 標下軍二十三名[牢子·巡令手, 各四名 ○大旗手三名 ○吹鼓手十名 ○帳幕軍二名], 爲定爲白齊.
- 一. 鎮屬段, 書員·庫直·大廳直·書記·通引·管領·使喚軍各一名, 津夫三十五名[本鎮十五名 ○銅雀津二十名], 爲定爲白乎矣. 汲水軍段, 以本鎮津夫兼行爲白齊.
- 一. 本鎮所在禁營米五百二十石·錢三千四百九十二兩, 守禦廳米五百石, 一體移屬, 自本營句管, 而依前, 米則還分, 錢則從便取殖, 以爲本鎮支放之資爲白乎矣, 米二十石段, 每年改色, 作爲留庫爲白齊.
- 一. 津夫位田六結九十一負九束[衿川三結四十負二束 ○果川三結五十一負七束], 畚七結七十四負七束[果川三結三十四負二束 ○衿川四結四負五束]. 使津夫等, 無稅耕食, 以爲仰役資生之地爲白齊.
- 一. 津船十七隻[十一隻本鎮在[二隻·汲水船], 六隻銅雀津在], 隨其使用年限, 五年改槩, 十年新造, 而每隻物力段, 改槩六十兩, 新造一百二十兩, 依前自禁營上下爲白乎矣, 汲水船物力段, 亦自戶曹依前上下爲白齊.

- 一. 船隻改梁·改造時, 船材段, 以戶曹漕退(運)²¹¹船中, 依井間次數, 或一年一隻, 或二年一隻割給, 而折價取用爲白齊.
- 一. 每年應捧米一百石[禁營米五百石, 耗條五十石 ○守禦廳米五百石, 耗條五十石], 錢一千四百三十二兩七錢八分內, 取殖條一千一百八十七兩二錢八分[禁營錢三千四百九十二兩, 口錢條三百四十九兩二錢 ○利條八百三十八兩八分], 巫稅條一百六十兩[巫女八十名, 每名木一疋代二兩], 津船九朔稅條八十五兩五錢[本津船稅, 每朔七兩五錢[每日二錢五分]. 銅雀津船稅, 每朔二兩[以上冬三朔則無]], 依定式捧上爲白齊.
- 一. 每年應下米八十石十二斗[每朔旗牌官三人各五斗 ○書記二名各六斗 ○書員一人·庫直一名各十二斗 ○巡令手三名各九斗 ○牢子二名各四斗 ○吹手五名各三斗], 錢三百三十七兩六錢內, 朔下衣資條二百三十五兩六錢[每朔大廳直一名五兩 ○書員紙債三錢 ○使喚巡牢一名四兩, 二名各一兩, 一名一兩五錢 ○京主人一名二兩 ○使喚軍一名四兩 ○春秋衣資, 每等大廳直·巡令手各一名, 各二兩 ○一年一次使喚軍一名二兩], 行宮點火條三十六兩[每朔三兩], 柴油·歲饌·掃雪條十六兩[書庫房六朔柴油價四兩 ○鎮屬歲饌七兩 ○掃雪次津夫等處, 例下五兩], 例下條五十兩[書員一名十五兩 ○庫直一名十兩 ○書記·大廳直·管領·使喚軍各一名, 巡令手四名,

211 運 : 원문에는 '退' 로 되어 있으나, 앞뒤 문맥을 살펴 '運' 으로 고쳐 바로잡았다.



二十五兩都下], 依定式上下. 通引一名料米段, 每朔六斗式, 以捧還時色米中上下爲白齊.

一. 每年餘米十九石三斗·錢一千九十五兩一錢八分內, 米十三石六斗·錢一百五兩四錢, 留庫[米三石六斗·錢五兩四錢閏朔條 ○米十石恒留條 ○錢一百兩軍需條, 以巫稅錢中, 每年除留]. 其餘米五石十二斗·錢九百七十九兩七錢八分, 作爲別將聊賴之資爲白齊.

一. 別將以下鎮屬, 他衙門所受料布·衣資段, 禁營米十五石三斗·小米三石三斗·太八石·錢二十六兩四錢八分·木四十九疋·布五疋[每朔別將料十斗·小米四斗·奴料九斗·馬太十斗 ○書員·庫直各一名, 各朔下木一疋 ○書員朔紙三卷, 代五錢四分, 書庫·奉足木各九疋 ○別將春秋衣資, 錢各十兩 ○汲水軍, 冬等衣資木五疋, 夏等布五疋 ○書庫冬三朔柴油次木二疋], 均廳米四石十二斗·木一同二疋·錢八兩[每朔別將朔布一疋. ○書員紙次木二疋 ○管領一名米六斗·木一疋 ○別將四等衣資, 每等木一疋·錢二兩], 惠廳米八石六斗[書記一名, 冬·夏兩等, 每等四石三斗]. 自各該司, 依定式, 每年上下爲白齊.

一. 公廡段, 望海亭十間[北向 ○東上房三間 ○廳三間 ○東·西樓各一間 ○前退二間[○南有假退, 不計間數]], 門二間, 東西挾門各一間, 內室二十四間[西向 ○南上房二間 ○茶房一間 ○廳三間 ○前退一間半 ○南退一間, 北退半間 ○廚二間 ○西行閣房一間 ○廳一間 ○虛間一間半 ○中門一間 ○北越房一間 ○廳一間 ○廚半間 ○上房二間 ○南退一間半 ○廳二間[北有假退, 不計間數]], 門一間[南

挾], 共三十七間.

一. 鎮舍七間[房一間半 ○茶房一間 ○廳三間 ○前退一間半], 門五間
[三門各一間 ○西挾門兩處各一間], 內室九間[東上房一間半 ○廳
二間 ○前退一間 ○廚一間半 ○西越房一間 ○虛間一間 ○中間
〈門〉²¹²一間], 庫舍十二間[軍器庫二間 ○米庫八間 ○私庫二間],
月廊三間[虛間一間 ○馬房一間 ○馬廄一間], 下人番所二間[房一
間 ○廳一間], 庫直入接處五間[房一間半 ○廳一間 ○廚一間半 ○
越房一間], 共三十八間.

一. 軍物各種, 以五營門所儲中, 隨其有裕, 請得移屬. 軍兵所着軍服段,
以備局移來木五同內, 二同三十六疋, 分給於牙兵一百三十六名,
使之措備爲白乎矣. 巡牢八名木·布·軍服段, 以本營及禁營, 退件軍
服中, 具三件, 取用爲白齊.

一. 每年園行時, 別將率旗·鼓·前排及牙兵一哨聚待, 本鎮與京鄉軍合
竝, 環衛作門. 大駕入行宮時, 雜人馬及喧譁, 一切嚴禁. 進詣園所
後, 仍留本鎮是白如可, 還詣行宮時, 依出宮時例, 舉行. 還宮時, 待
令票解嚴爲白乎矣, 竝待本營知委舉行爲白乎旆, 軍物器械段, 以本鎮
所在者, 取用爲白齊.

一. 東·西郊陵行經宿時, 別將率兩津[本津及銅雀津], 船隻及標下軍·
鎮屬, 渡江留待是白如可, 還宮後, 除令票撤罷爲白齊.

212 門 : 원문에는 '間' 으로 되어 있으나, 앞뒤 문맥을 살펴 '門' 으로 고쳐 바로잡았다.



- 一. 還分段，以鎮底居民及衿·果川兩邑民人中懸保分給爲白乎矣，或有拒納之弊，則拘留督捧，期於限內磨勘爲白乎旡，捧上時，如有貽弊，濫捧之弊，則別將以下書庫，各別論勘爲白齊。
- 一. 錢穀捧下軍物各種會案，每年六·臘月，報本營磨勘爲白乎旡，糶糶時，開倉·封倉日子，及捧未捧形止，亦爲修報爲白齊。
- 一. 還穀畢捧後，自本營稟旨，別遣將官，與別將，眼同及閱等事，依拜峯鎮例，舉行爲白乎旡，別將遞任時，則望海亭以下，各處公廩汁物及錢穀軍物，一一反閱摘奸後，或有虧欠破傷之弊，則該別將從重論勘，鎮屬照律嚴處爲白乎旡，又或拘於顏私，掩置不報是白如可，從後現發，則眼同將官，竝以稟旨重勘爲白齊。
- 一. 別將若因公出他，多日曠官之時，則以本鎮旗牌官，留鎮爲白乎矣，待大將所令箭舉行爲白齊。
- 一. 新定軍腰牌，報本營烙給，有頃軍腰牌收置一款，依拜峯鎮例舉行爲白齊。
- 一. 別將瓜限，依拜峯鎮例，以二十四朔爲定，瓜狀，前期一朔報本營爲白齊。
- 一. 別將遞任後，由狀，亦依拜峯古城例，報本營磨勘爲白齊。
- 一. 別將印信一顆，以曾前行者，仍用爲白齊。
- 一. 本鎮事體，與他自別，閑雜人攔入之類，各別禁斷爲白乎矣，如有作挈之弊，則執捉報營，以爲嚴處之地爲白齊。
- 一. 本鎮旣屬本營，每當水生冰合之時，形止這這修報爲白乎旡，解冰時，亦同此例爲白齊。

- 一. 軍案成出二件, 一件本營上, 一件鎮上, 如有有頃代定之類, 則這這修正. 式年改都案, 亦依他例舉行爲白齊.
- 一. 捧還時, 色落段, 色一升, 落三升爲定. 色米則通引料下, 落則書庫分用爲白齊.
- 一. 別將或有請由之事, 則依拜峯鎮例, 報本營舉行爲白齊.